

# 유럽 게임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2008. 5.



**한국게임산업진흥원**  
*Korea Game Industry Agency*

# 목 차

제 1 장 조사의 배경 및 내용 .....	1
제 1 절 조사의 배경 및 목표 .....	1
제 2 절 조사의 내용 및 범위 .....	2
제 3 절 조사의 방법론 .....	3
제 2 장 EU 개관 .....	4
제 1 절 EU 개요 .....	4
1. EU 회원국 .....	4
2. 우리나라의 對EU 관계 .....	4
제 2 절 EU 정보통신기술 시장현황 .....	7
1. EU 정보통신기술 시장규모 .....	7
2. EU 통신시장 현황 .....	10
제 3 절 EU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	13
1. 유럽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	13
2. 유럽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	13
제 4 절 유럽 주요 국가 개황 .....	17
1. 영국 국가개요 .....	17
2. 독일 국가개요 .....	65
3. 프랑스 국가개요 .....	95
4. 이탈리아 국가개요 .....	117
5. 스페인 국가개요 .....	136
6. 네덜란드 국가개요 .....	158
7. 노르웨이 국가개요 .....	176
8. 덴마크 국가개요 .....	197
9. 벨기에 국가개요 .....	221
10. 스웨덴 국가개요 .....	250
11. 스위스 국가개요 .....	262
12. 오스트리아 국가개요 .....	285
13. 체코 국가개요 .....	310
14. 터키 국가개요 .....	333
15. 폴란드 국가개요 .....	349
16. 핀란드 국가개요 .....	372

<b>제 3 장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 현황</b> .....	<b>396</b>
<b>제 1 절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 개황</b> .....	<b>396</b>
1. 유럽 게임시장의 규모 및 전망 .....	396
2.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의 특징 .....	399
3. 유럽 게임 이용자들의 특징 .....	401
<b>제 2 절 유럽 주요 5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온라인게임 시장분석</b> .....	<b>408</b>
1. 독일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08
2. 영국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21
3. 프랑스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30
4. 이탈리아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38
5. 스페인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44
<b>제 3 절 Nordic(Norway, Denmark, Finland, Sweden) 국가 온라인게임 시장분석</b> .....	<b>450</b>
1. 네덜란드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50
2. 노르웨이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58
3. 스웨덴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65
4. 덴마크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74
5. 핀란드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79
<b>제 4 절 동유럽(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온라인게임 시장분석</b> .....	<b>484</b>
1. 폴란드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84
2. 체코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493
3. 오스트리아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501
<b>제 5 절 기타 유럽 유망 온라인게임 시장분석</b> .....	<b>506</b>
1. 터키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506
2. 스위스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511
3. 벨기에 온라인게임 시장 분석 .....	515
<b>제 6 절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 진출 전략</b> .....	<b>520</b>
1.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으로의 진출의 필요성 .....	520
2.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언 .....	525
<b>제 4 장 유럽 모바일게임 시장</b> .....	<b>532</b>
<b>제 1 절 유럽 모바일게임 시장 현황</b> .....	<b>532</b>
1. 유럽 이동통신 시장 현황 .....	532
2. 유럽 모바일게임 시장 현황 .....	534
<b>제 2 절 유럽 주요국별 모바일게임 시장 분석</b> .....	<b>540</b>
1. 유럽 주요국 모바일게임 시장 현황 .....	540
2. 기타 서유럽 모바일게임 시장 현황 .....	565
3. 동유럽 모바일게임 시장 .....	594
<b>제 3 절 유럽 주요 모바일게임 업체</b> .....	<b>604</b>

1. Gameloft .....	604
2. EA Mobile .....	607
3. Glu Mobile .....	609
<b>제 4 절 유럽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 전략 .....</b>	<b>611</b>
<b>제 5 장 유럽 아케이드 게임 시장 현황 .....</b>	<b>620</b>
<b>제 1 절 유럽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특징 .....</b>	<b>620</b>
1. 유럽 아케이드 게임의 분류와 특성 .....	620
2. 유럽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구조 .....	621
<b>제 2 절 유럽 주요국별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b>	<b>631</b>
1. 독일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31
2. 영국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36
3. 이탈리아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40
4. 스페인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44
5. 프랑스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51
6. 벨기에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53
7. 덴마크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57
8. 네덜란드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61
9. 스웨덴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65
10. 핀란드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67
11. 아일랜드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71
12. 그리스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74
13. 오스트리아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77
14. 체코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80
15. 폴란드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82
16. 헝가리 아케이드 게임 시장 분석 .....	687
<b>제 3 절 유럽 아케이드 게임 시장 진출 전략 .....</b>	<b>693</b>
1. 시장 매력도에 따른 진출 시장 선정 .....	693
2. 비즈 모델별 진출 전략 .....	694
<b>Appendix .....</b>	<b>696</b>
<b>【 참고 자료 】 .....</b>	<b>699</b>

## 표 차례

<표 2-1>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추이 .....	5
<표 2-2> 우리나라의 對EU 수입 추이 .....	5
<표 2-3> 우리나라의 對EU 투자 추이 .....	6
<표 2-4> EU의 부문별 ICT 시장규모 .....	8
<표 2-5> EU의 ICT 및 통신부문 지출금액 .....	9
<표 2-6> EU의 국가별 ICT 시장규모 .....	10
<표 2-7> 유럽 통신서비스 이용현황 및 전망 .....	11
<표 2-8> EU 주요국 브로드밴드 보급률 .....	12
<표 2-9> 유럽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	13
<표 2-10> 유럽 DVD 및 온라인 비디오 시장규모 및 전망 .....	15
<표 2-11>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규모 및 비중 .....	15
<표 2-12> 유럽 디지털음악 시장규모 및 전망 .....	16
<표 2-13> 게임 시장 분석 대상 유럽 주요 국가 리스트 .....	17
<표 3-14> 영국 일반 사항 .....	18
<표 3-15> 영국 경제 지표 .....	19
<표 3-16> 한국-영국 관계 .....	22
<표 3-17> 한국-영국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	23
<표 3-18> 한국의 100대 기업 영국 현지 투자 현황(2007년) .....	24
<표 3-19> 우리나라의 對영국 투자현황 .....	25
<표 3-20> 독일 일반 사항 .....	66
<표 3-21> 독일 경제 지표 .....	67
<표 3-22> 한국-독일 관계 .....	68
<표 3-23> 한국-독일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	69
<표 3-24> 우리나라의 對독일 주요 투자기업 .....	70
<표 3-25> 신규 진출 한국 기업 리스트 .....	70
<표 3-26> 우리나라의 對독일 투자현황 .....	71
<표 3-27> 독일 내 투자시 보조금 제도 .....	73
<표 3-28> 독일 중기업 및 소기업의 구분 .....	74
<표 3-29> 독일의 노동시장 통계 .....	90
<표 3-30> 프랑스 일반 사항 .....	95

<표 3-31> 프랑스 경제 지표 .....	96
<표 3-32> 한국-프랑스 관계 .....	98
<표 3-33> 한국-프랑스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	99
<표 3-34> 우리나라의 주요 프랑스 진출 기업 리스트 .....	99
<표 3-35> 우리나라의 對프랑스 투자현황 .....	100
<표 3-36>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한국 사무소 .....	103
<표 3-37> 연락사무소 등록 절차 및 관계 기관 .....	104
<표 3-38> 이탈리아 일반 사항 .....	118
<표 3-39> 이탈리아 경제 지표 .....	119
<표 3-40> 한국-이탈리아 관계 .....	120
<표 3-41> 한국-이탈리아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	120
<표 3-42> 우리나라의 對이탈리아 투자현황 .....	121
<표 3-43> 스페인 일반 사항 .....	137
<표 3-44> 스페인 경제 지표 .....	138
<표 3-45> 한국-스페인 관계 .....	139
<표 3-46> 한국-스페인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	140
<표 3-47> 우리나라의 對스페인 투자현황 .....	140
<표 3-48> 우리나라의 對스페인 주요 투자기업 .....	141
<표 3-49> 스페인 주요 기관별 지원 내용 .....	142
<표 3-50> 네덜란드 일반 사항 .....	158
<표 3-51> 네덜란드 경제 지표 .....	160
<표 3-52> 한국-네덜란드 관계 .....	161
<표 3-53> 한국-네덜란드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	161
<표 3-54> 우리나라의 對네덜란드 주요 투자기업 .....	162
<표 3-55> 우리나라의 對네덜란드 투자현황 .....	163
<표 3-56> 노르웨이 일반 사항 .....	177
<표 3-57> 노르웨이 경제 지표(2006년 기준) .....	179
<표 3-58> 한국-노르웨이 관계 .....	179
<표 3-59> 한국-노르웨이간 수출입 동향 .....	180
<표 3-60> 한국의 對노르웨이 주요 투자기업 .....	181
<표 3-61> 한국의 對노르웨이 투자현황 .....	181
<표 3-62> 덴마크 일반 사항 .....	198
<표 3-63> 덴마크 경제 지표(2006년 기준) .....	199

<표 3-64> 한국-덴마크 관계 .....	200
<표 3-65> 한국-덴마크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	201
<표 3-66> 우리나라의 對덴마크 투자현황 .....	201
<표 3-67> 우리나라의 對덴마크 투자기업 .....	201
<표 3-68> 덴마크 유형별 등록기관 및 제출서류 .....	204
<표 3-69> 벨기에 일반 사항 .....	221
<표 3-70> 벨기에 경제 지표 .....	223
<표 3-71> 한국-벨기에 관계 .....	224
<표 3-72> 한국-벨기에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0월 기준) .....	224
<표 3-73> 우리나라의 對벨기에 주요 투자기업 .....	225
<표 3-74> 우리나라의 對벨기에 투자현황 .....	225
<표 3-75> 스웨덴 일반 사항 .....	251
<표 3-76> 스웨덴 경제 지표 .....	252
<표 3-77> 한국-스웨덴 관계 .....	253
<표 3-78> 한국-스웨덴간 수출입 동향(2007년 1-9월 기준) .....	253
<표 3-79> 우리나라의 對스웨덴 주요 투자기업 .....	254
<표 3-80> 스위스 일반 사항 .....	263
<표 3-81> 스위스 경제 지표 .....	264
<표 3-82> 한국-스위스 관계 .....	266
<표 3-83> 한국-스위스간 수출입 동향(2007년 1-9월 기준) .....	267
<표 3-84>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현황 .....	267
<표 3-85> 주식회사(AG) 및 유한회사(GmbH) 설립소요기간 .....	273
<표 3-86> 오스트리아 일반 사항 .....	286
<표 3-87> 오스트리아 경제 지표(2006년도 기준) .....	287
<표 3-88> 한국-오스트리아 관계(2007년 10월 기준) .....	288
<표 3-89> 우리나라의 對오스트리아 주요 투자기업 .....	289
<표 3-90> 한국-오스트리아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	290
<표 3-91> 체코 일반 사항 .....	310
<표 3-92> 체코 경제 지표 .....	311
<표 3-93> 체코의 FDI 유치 동향 .....	311
<표 3-94> 한국-체코 관계 .....	312
<표 3-95> 한국-체코간 수출입 실적 .....	313
<표 3-96> 우리나라의 對체코 주요 투자기업 .....	313

<표 3-97> 우리나라의 對체코 투자현황 .....	314
<표 3-98> 체코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조건 .....	317
<표 3-99> 체코의 대상별 세율 .....	330
<표 3-100> 체코의 대상별 세율 .....	330
<표 3-101> 터키 일반 사항 .....	334
<표 3-102> 터키 경제 지표 .....	335
<표 3-103> 한국-터키 관계 .....	336
<표 3-104> 한국-터기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	337
<표 3-105> 우리나라의 對터키 업종별 투자현황(1987~2007.9월 누계) .....	337
<표 3-106> 우리나라의 對터키 주요 투자기업 .....	338
<표 3-107> 터키의 투자지역 구분 .....	340
<표 3-108> 터키의 외국인 투자관련 전문 법률회사 명단 .....	344
<표 4-109> 폴란드 일반 사항 .....	349
<표 4-110> 폴란드 경제 지표 .....	350
<표 4-111> 폴란드의 FDI 유치 동향 .....	350
<표 4-112> 한국-폴란드 관계 .....	351
<표 4-113> 한국-폴란드간 수출입 실적 .....	352
<표 4-114> 한국의 對폴란드 주요 수출품목 .....	352
<표 4-115>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투자현황 .....	353
<표 4-116>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주요 투자기업 .....	353
<표 3-117> 핀란드 일반 사항 .....	372
<표 3-118> 핀란드 경제 지표 .....	373
<표 3-119> 한국-핀란드 관계 .....	374
<표 3-120> 한국-핀란드간 수출입 동향 .....	375
<표 3-121> 우리나라의 對핀란드 주요 투자기업 .....	376
<표 3-122> 핀란드의 직종별 임금 수준 .....	390
<표 3-123> 핀란드의 법인세 및 부가세 .....	392
<표 3-1> 유럽 게임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396
<표 3-2> 유럽 주요 국가별 MMOG 가입자수와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398
<표 3-3> 독일 ICT 시장규모 .....	408
<표 3-4> 독일 ICT 및 통신 지출액 .....	409
<표 3-5> BigPoint의 주요 제공 게임 현황 .....	418
<표 3-6> Koch Media의 주요 퍼블리싱 게임 .....	419

<표 3-7> Gamigo의 주요 퍼블리싱 게임 .....	421
<표 3-8> 영국 ICT 시장규모 .....	422
<표 3-9> 영국 ICT 및 통신 지출액 .....	423
<표 3-10> 프랑스 ICT 시장규모 .....	430
<표 3-11> 프랑스 ICT 및 통신 지출액 .....	431
<표 3-12> 이탈리아 ICT 시장규모 .....	438
<표 3-13> 이탈리아 ICT 및 통신 지출액 .....	439
<표 3-14> 스페인 ICT 시장규모 .....	444
<표 3-15> 스페인 ICT 및 통신 지출액 .....	445
<표 3-16> 네덜란드 ICT 시장규모 .....	451
<표 3-17> 네덜란드 ICT 및 통신 지출액 .....	452
<표 3-18> 노르웨이 ICT 시장규모 .....	459
<표 3-19> 노르웨이 ICT 및 통신 지출액 .....	460
<표 3-20> 스웨덴 ICT 시장규모 .....	465
<표 3-21> 스웨덴 ICT 및 통신 지출액 .....	466
<표 3-22> 2008년 4월 및 4월 4주차 스웨덴 인기게임 순위 .....	470
<표 3-23> Entropia Universe와 Second Life 비교 .....	473
<표 3-24> 덴마크 ICT 시장규모 .....	475
<표 3-25> 덴마크 ICT 및 통신 지출액 .....	476
<표 3-26> 핀란드 ICT 시장규모 .....	479
<표 3-27> 핀란드 ICT 및 통신 지출액 .....	480
<표 3-28> 폴란드 ICT 시장규모 .....	484
<표 3-29> 폴란드 ICT 및 통신 지출액 .....	485
<표 3-30> 체코 ICT 시장규모 .....	493
<표 3-31> 체코 ICT 및 통신 지출액 .....	494
<표 3-32> 오스트리아 ICT 시장규모 .....	501
<표 3-33> 오스트리아 ICT 및 통신 지출액 .....	502
<표 3-34> Game Sultan의 유통 게임 리스트 .....	510
<표 3-35> 스위스 ICT 시장규모 .....	512
<표 3-36> 스위스 ICT 및 통신 지출액 .....	513
<표 3-37> 벨기에/룩셈부르크 ICT 시장규모 .....	516
<표 3-38> 벨기에 ICT 및 통신 지출액 .....	517
<표 3-39> 문화산업 분야별 수출액 추이 .....	521

<표 3-40> 한국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 현황 .....	522
<표 3-41> 유럽 주요 온라인게임 비교 .....	524
<표 4-42> 유럽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Juniper) .....	535
<표 4-43> 유럽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Informa) .....	537
<표 4-44> 유럽 국가별 모바일게임 표준 요금 및 프리미엄 요금 .....	539
<표 4-45> 독일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46
<표 4-46> 독일 모바일게임 이용현황 .....	547
<표 4-47> 독일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48
<표 4-48> 독일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48
<표 4-49> 영국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51
<표 4-50> 영국 모바일게임 이용현황 .....	552
<표 4-51> 영국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53
<표 4-52> 영국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53
<표 4-53> 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56
<표 4-54> 프랑스 모바일게임 이용현황 .....	557
<표 4-55> 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58
<표 4-56> 프랑스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58
<표 4-57> 프랑스 Top 10 모바일게임(2007) .....	559
<표 4-58> 이탈리아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62
<표 4-59> 이탈리아 모바일게임 이용현황 .....	563
<표 4-60> 이탈리아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64
<표 4-61> 이탈리아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64
<표 4-62> 이탈리아 이동통신사업자별 Top 모바일게임 .....	564
<표 4-63> 스페인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68
<표 4-64> 스페인 모바일게임 이용현황 .....	569
<표 4-65> 스페인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70
<표 4-66> 스페인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70
<표 4-67> 네덜란드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74
<표 4-68> 네덜란드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74
<표 4-69> 네덜란드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75
<표 4-70> 벨기에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77
<표 4-71> 벨기에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78
<표 4-72> 벨기에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78

<표 4-73> 스웨덴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81
<표 4-74> 스웨덴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82
<표 4-75> 스웨덴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82
<표 4-76> 덴마크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85
<표 4-77> 덴마크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85
<표 4-78> 덴마크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86
<표 4-79> 핀란드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89
<표 4-80> 핀란드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89
<표 4-81> 핀란드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90
<표 4-82> 오스트리아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93
<표 4-83> 오스트리아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93
<표 4-84> 오스트리아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94
<표 4-85> 스위스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596
<표 4-86> 스위스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597
<표 4-87> 스위스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597
<표 4-88> 노르웨이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600
<표 4-89> 노르웨이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600
<표 4-90> 노르웨이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600
<표 4-91> 폴란드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604
<표 4-92> 폴란드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605
<표 4-93> 폴란드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605
<표 4-94> 체코 이동통신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전망 .....	608
<표 4-95> 체코 모바일게임 시장개요 .....	609
<표 4-96> 체코 이동통신사업자별 모바일게임 서비스 .....	609
<표 4-97> 유럽 Top2 모바일게임 업체의 시장점유율 .....	610
<표 4-98> EA Mobile의 유럽 주요국별 인기 게임 타이틀 .....	614
<표 4-99> Glu Mobile의 2007년 히트 모바일게임 .....	615
<표 4-100> Glu Mobile의 2008년 출시 모바일게임 .....	615
<표 5-1> 유럽 국가별 Gambling 시장 규모(2003) .....	622
<표 5-2> 유럽의 AWP 규제 현황 .....	626
<표 5-3> 유럽 카지노에 대한 국가별 최대 세율 .....	627
<표 5-4> 유럽의 아케이드 게임 리스트(2008년 3월 기준) .....	628
<표 5-5> 독일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31

<표 5-6> 독일 게임기 부문별 시장 규모 (2005-2006) .....	632
<표 5-7> 독일 2006년 1월 게임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 .....	633
<표 5-8> 독일 게임기 시장 (2005-2006) .....	634
<표 5-9> 독일 게임기 보급 현황 (2001-2006) .....	636
<표 5-10> 영국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37
<표 5-11> 영국 게임기 유통 채널별 최대 상금 한도 .....	638
<표 5-12> 영국 게임기 유통 채널별 게임기 대수 .....	639
<표 5-13> 영국의 게임기 유형별 세금 .....	639
<표 5-14> 영국의 AWP/All cash 규제 현황 .....	640
<표 5-15> 이탈리아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41
<표 5-16> 이탈리아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4) .....	641
<표 5-17> 이탈리아 갬블링 사업체 현황 .....	642
<표 5-18> 이탈리아 게임 유통 현황(2005) .....	642
<표 5-19> 이탈리아 AWP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	643
<표 5-20> 이탈리아 갬블링 부분별 세금 현황 (2004) .....	644
<표 5-21> 이탈리아 인기 아케이드 게임 현황 (2005) .....	644
<표 5-22> 스페인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45
<표 5-23> 스페인 Type B(AWP)의 지역별 세율(2006-2008) .....	646
<표 5-24> 스페인 아케이드 게임의 분류와 현황(2006) .....	647
<표 5-25> 스페인 아케이드 게임 유형별 현황(2002-2007) .....	648
<표 5-26> 스페인 게임 유형별 게임기 대수와 총 회전금액(2006) .....	650
<표 5-27> 프랑스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4-2005) .....	652
<표 5-28> 벨기에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54
<표 5-29> 벨기에 게임 종업원 수 및 운영업체 동향 .....	654
<표 5-30> 벨기에 유형별 게임장 라이선스 동향 .....	656
<표 5-31> 벨기에 신규 승인 게임기 수 .....	656
<표 5-32> 덴마크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58
<표 5-33> 덴마크 게임기 협회(DAB) 가입 업체 수 동향 .....	658
<표 5-34> 덴마크 게임장 별 세금 부과 기준 .....	659
<표 5-35> 덴마크 게임장 별 운영 기준 .....	660
<표 5-36> 네덜란드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61
<표 5-37> 네덜란드 게임 분야별 업체 .....	662
<표 5-38> 네덜란드 갬블링 이용자 특성(1993) .....	663

<표 5-39> 네덜란드 슬롯머신 운영자 동향(1993) .....	664
<표 5-40> 네덜란드 AWP 규제 .....	665
<표 5-41> 네덜란드 게임기 운영 인력 현황 (2001-2004) .....	665
<표 5-42> 스웨덴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66
<표 5-43> Svenska Spel의 VLT 매출(GGR) (2001-2003) .....	667
<표 5-44> 핀란드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68
<표 5-45> 핀란드 갬블링 기관 및 현황(2002) .....	669
<표 5-46> RAY의 수입/지출 내역 및 비중(2005) .....	671
<표 5-47> 아일랜드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72
<표 5-48> 아일랜드 아케이드 게임 라이선스 현황 .....	674
<표 5-49> 아일랜드 라이선스 발급 추이 .....	674
<표 5-50> 그리스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75
<표 5-51> 오스트리아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78
<표 5-52> 오스트리아 카지노 현황 .....	679
<표 5-53> 체코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80
<표 5-54> 체코 갬블링 시장 구조(2004) .....	681
<표 5-55> 폴란드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83
<표 5-56> 폴란드 Gambling 사업자 현황(2003-2004) .....	684
<표 5-57> 폴란드 AWP 설치 대수 및 설치 장소 수 현황(2004-2006) .....	684
<표 5-58> 폴란드 지역 인구 규모별 설치 허용 게임장 수 .....	685
<표 5-59> 폴란드 AWP 세금 변천사 (2006) .....	687
<표 5-60> 헝가리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2004) .....	688
<표 5-61> 헝가리 갬블링 게임기 산업 현황 .....	689
<표 5-62> 헝가리 아케이드 게임 관련 라이선스 요금 현황 .....	692
<표 6-1> 유럽 기타 국가들의 국가 개황 및 유무선 인프라 보급현황 .....	696
<표 6-2> 유럽 국가별 PC 대수 .....	697

## 그림 차례

<그림 1-1> 조사의 목적 및 배경 .....	1
<그림 1-2> 조사수준과 조사대상 .....	2
<그림 1-3> 조사의 방법론 .....	3
<그림 2-1> EU 회원국 현황 .....	4
<그림 2-2> 세계 ICT 시장에서의 EU 비중 .....	7
<그림 2-3> EU의 부문별 ICT 시장비중 .....	9
<그림 2-4> 유럽 IPTV 가입자 수 및 전망 .....	14
<그림 3-5> 체코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조건 .....	318
<그림 3-1>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의 규모 추이 및 전망 .....	397
<그림 3-2> 주요 권역별 온라인게임 시장점유율 추이 및 전망 .....	399
<그림 3-3> 유럽 플랫폼별 게임 시장 점유율 추이 및 전망 .....	399
<그림 3-4> 유럽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및 전망 .....	401
<그림 3-5> 유럽 게이머들의 선호 플랫폼 .....	402
<그림 3-6> 유럽 주요 국가별 게이머당 게임 타이틀 보유 개수 .....	403
<그림 3-7> 유럽 게이머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콘텐츠의 종류 .....	404
<그림 3-8> 게임을 다운로드 하는 유럽 게이머 Demography .....	404
<그림 3-9> 유럽 게이머들의 콘텐츠별 공식/비공식 다운로드 사이트 사용 비중 .....	405
<그림 3-10> 유럽 게이머들의 게임 다운로드 이유(동기) .....	406
<그림 3-11> 유럽 게이머들의 향후 게임 다운로드 이용의사 .....	406
<그림 3-12> 유럽 게이머들의 게임 다운로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407
<그림 3-13> 독일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09
<그림 3-14> 독일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10
<그림 3-15> 독일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10
<그림 3-16> 독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11
<그림 3-17> 독일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12
<그림 3-18> 독일 MMOG 가입자수 및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412
<그림 3-19> Hubert Burda Media의 사업 영역 .....	414
<그림 3-20> Burda Digital Ventures의 사업구조 .....	414
<그림 3-21> Burda의 게임서비스 분류 .....	415
<그림 3-22> Burda의 Alaplava 사이트 .....	415

<그림 3-23> GameForge의 Gladius 스크린샷 .....	416
<그림 3-24> 게임 시장에서 BigPoint의 포지셔닝 .....	417
<그림 3-25> BigPoint의 비즈모델 .....	418
<그림 3-26> Axel Springer의 사업구조 .....	420
<그림 3-27> 영국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22
<그림 3-28> 영국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23
<그림 3-29> 영국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24
<그림 3-30> 영국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25
<그림 3-31> 영국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25
<그림 3-32> 영국 MMOG 가입자수 및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426
<그림 3-33> 2007년 영국 게임 플랫폼별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	427
<그림 3-34> 영국 Jagex의 RuneScape 스크린샷 .....	428
<그림 3-35> The Lord of the Rings Online의 스크린샷 .....	429
<그림 3-36> 프랑스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31
<그림 3-37> 프랑스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32
<그림 3-38>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32
<그림 3-39> 프랑스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33
<그림 3-40> 프랑스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33
<그림 3-41> 프랑스 MMOG 가입자수 및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434
<그림 3-42> Ankama의 Dofus의 스크린샷 .....	435
<그림 3-43> GOA.com 서비스화면 .....	436
<그림 3-44> Dark Age of Camelot의 스크린샷 .....	437
<그림 3-45> 이탈리아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39
<그림 3-46> 이탈리아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40
<그림 3-47> 이탈리아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40
<그림 3-48> 이탈리아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41
<그림 3-49> 이탈리아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42
<그림 3-50> 이탈리아 MMOG 가입자수 및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442
<그림 3-51> GmaeTribe의 서비스화면 .....	443
<그림 3-52> 스페인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45
<그림 3-53> 스페인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46
<그림 3-54> 스페인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46
<그림 3-55> 스페인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47

<그림 3-56> 스페인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48
<그림 3-57> 스페인 MMOG 가입자수 및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448
<그림 3-58> 스페인 PC게임 이용자들의 장르별 선호도(이용시간 기준) .....	449
<그림 3-59> OECD 국가별 브로드밴드 보급률 .....	450
<그림 3-60> 네덜란드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51
<그림 3-61> 네덜란드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52
<그림 3-62> 네덜란드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53
<그림 3-63> 네덜란드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54
<그림 3-64> 네덜란드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54
<그림 3-65> 네덜란드 노동자 외국어 구사 인력 비중 .....	456
<그림 3-66> 스펀본 연대기 스크린샷 .....	457
<그림 3-67> GEE의 Martial Heroes 서비스화면 .....	458
<그림 3-68> 노르웨이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60
<그림 3-69> 노르웨이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61
<그림 3-70> 노르웨이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61
<그림 3-71> 노르웨이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62
<그림 3-72> 노르웨이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63
<그림 3-73> Age of Conan 스크린샷 .....	464
<그림 3-74> 스웨덴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66
<그림 3-75> 스웨덴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67
<그림 3-76> 스웨덴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67
<그림 3-77> 스웨덴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68
<그림 3-78> 스웨덴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68
<그림 3-79> 주요국 R&D 부문 산업 협력 수준 .....	469
<그림 3-80> Entropia Universe의 화면 .....	471
<그림 3-81> Entropia Universe의 현금카드 .....	472
<그림 3-82> 덴마크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75
<그림 3-83> 덴마크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76
<그림 3-84> 덴마크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77
<그림 3-85> 덴마크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78
<그림 3-86> 덴마크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78
<그림 3-87> 핀란드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80
<그림 3-88> 핀란드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81

<그림 3-89> 핀란드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81
<그림 3-90> 핀란드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82
<그림 3-91> 핀란드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83
<그림 3-92> 폴란드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85
<그림 3-93> 폴란드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86
<그림 3-94> 폴란드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86
<그림 3-95> 폴란드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87
<그림 3-96> 폴란드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88
<그림 3-97> 폴란드 인터넷 서비스 시장규모 .....	488
<그림 3-98> 폴란드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장소 .....	489
<그림 3-99> 폴란드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빈도 .....	489
<그림 3-100> 폴란드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목적 .....	490
<그림 3-101> 폴란드 ISP별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 .....	490
<그림 3-102> 폴란드 케이블 방식 ISP별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 .....	491
<그림 3-103> Licomp EMPik Multimedia의 서비스화면 .....	492
<그림 3-104> 체코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494
<그림 3-105> 체코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495
<그림 3-106> 체코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495
<그림 3-107> 체코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496
<그림 3-108> 체코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497
<그림 3-109> 체코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장소 .....	497
<그림 3-110> 체코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빈도 .....	498
<그림 3-111> 체코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목적 .....	498
<그림 3-112> 체코 Geewa 서비스화면 .....	500
<그림 3-113> 오스트리아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502
<그림 3-114> 오스트리아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503
<그림 3-115> 오스트리아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503
<그림 3-116> 오스트리아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504
<그림 3-117> 오스트리아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505
<그림 3-118> 터키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507
<그림 3-119> 터키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508
<그림 3-120> 터키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508
<그림 3-121> 스위스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512

<그림 3-122> 스위스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513
<그림 3-123> 스위스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514
<그림 3-124> 스위스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515
<그림 3-125> 스위스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515
<그림 3-126> 벨기에 ICT 분야별 시장 비중 .....	517
<그림 3-127> 벨기에 통신서비스 분야별 시장 비중 .....	518
<그림 3-128> 벨기에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 추이 .....	518
<그림 3-129> 벨기에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이 .....	519
<그림 3-130> 벨기에 브로드밴드 방식별 가입 비중 .....	519
<그림 3-131> 해외 퍼블리셔를 통한 게임 수출 구조 .....	529
<그림 4-132> 서유럽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32
<그림 4-133> 동유럽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33
<그림 4-134> 유럽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34
<그림 4-135> 유럽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Juniper) .....	535
<그림 4-136> 세계 주요 권역별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536
<그림 4-137> 유럽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Informa) .....	537
<그림 4-138> 유럽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이용자 수 .....	538
<그림 4-139> 유럽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이용률 .....	538
<그림 4-140> 유럽 모바일게임 산업의 Value Chain .....	540
<그림 4-141> 유럽 주요국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성장률 .....	541
<그림 4-142> 유럽 주요개국 이동통신 서비스 월(月) ARPU 추이 .....	542
<그림 4-143> 유럽 주요 7개국 이동통신 데이터 ARPU 구성비 변화 추이 .....	542
<그림 4-144> 독일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43
<그림 4-145> 독일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44
<그림 4-146> 독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44
<그림 4-147> 독일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45
<그림 4-148> 독일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547
<그림 4-149> 영국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49
<그림 4-150> 영국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49
<그림 4-151> 영국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50
<그림 4-152> 영국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50
<그림 4-153> 영국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552
<그림 4-154> 프랑스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54

<그림 4-155> 프랑스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54
<그림 4-156> 프랑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55
<그림 4-157> 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55
<그림 4-158> 프랑스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557
<그림 4-159> 이탈리아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60
<그림 4-160> 이탈리아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60
<그림 4-161> 이탈리아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61
<그림 4-162> 이탈리아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62
<그림 4-163> 이탈리아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563
<그림 4-164> 스페인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65
<그림 4-165> 스페인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66
<그림 4-166> 스페인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67
<그림 4-167> 스페인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67
<그림 4-168> 스페인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569
<그림 4-169> 기타 서유럽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570
<그림 4-170> 네덜란드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71
<그림 4-171> 네덜란드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72
<그림 4-172> 네덜란드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72
<그림 4-173> 네덜란드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73
<그림 4-174> 벨기에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75
<그림 4-175> 벨기에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76
<그림 4-176> 벨기에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76
<그림 4-177> 벨기에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77
<그림 4-178> 스웨덴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79
<그림 4-179> 스웨덴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79
<그림 4-180> 스웨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80
<그림 4-181> 스웨덴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81
<그림 4-182> 덴마크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83
<그림 4-183> 덴마크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83
<그림 4-184> 덴마크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84
<그림 4-185> 덴마크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84
<그림 4-186> 핀란드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86
<그림 4-187> 핀란드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87

<그림 4-188> 핀란드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87
<그림 4-189> 핀란드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88
<그림 4-190> 오스트리아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90
<그림 4-191> 오스트리아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91
<그림 4-192> 오스트리아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91
<그림 4-193> 오스트리아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92
<그림 4-194> 스위스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94
<그림 4-195> 스위스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95
<그림 4-196> 스위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95
<그림 4-197> 스위스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96
<그림 4-198> 노르웨이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598
<그림 4-199> 노르웨이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598
<그림 4-200> 노르웨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599
<그림 4-201> 노르웨이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599
<그림 4-202> 동유럽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601
<그림 4-203> 폴란드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602
<그림 4-204> 폴란드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602
<그림 4-205> 폴란드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603
<그림 4-206> 폴란드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604
<그림 4-207> 체코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	606
<그림 4-208> 체코 기술별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및 전망 .....	606
<그림 4-209> 체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추이 .....	607
<그림 4-210> 체코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608
<그림 4-211> Gameloft의 연도별 신규 출시 모바일게임 수 .....	611
<그림 4-212> Gameloft의 모바일게임 제공 휴대폰 모델 수 .....	611
<그림 4-213> Gameloft의 신규 출시 모바일게임(2008.1Q) .....	612
<그림 4-214> Gameloft의 Nokia Ovi 및 N-Gage용 모바일게임 라인업 .....	612
<그림 4-215> Gameloft의 매출 추이 .....	612
<그림 4-216> Gameloft의 지역별 매출 비중(2007) .....	613
<그림 4-217> EA Mobile의 매출 추이 .....	614
<그림 4-218> Glu Mobile의 매출 추이 .....	616
<그림 4-219> Glu Mobile의 지역별 매출 비중 .....	616
<그림 5-1> 아케이드 게임의 정의와 분류 .....	621

<그림 5-2> 유럽 Gambling 시장 규모(2003) .....	623
<그림 5-3> 유럽 아케이드 게임 Value Chain 및 시장 규모 .....	624
<그림 5-4> 유럽 아케이드 운영 사업자의 매출 구조 .....	625
<그림 5-5> 유럽 아케이드 장르별 게임 보급 수(2008년 3월 기준) .....	628
<그림 5-6> 독일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31
<그림 5-7> 독일 AWP 게임기 대수(1998-2004) .....	635
<그림 5-8> 영국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36
<그림 5-9> 영국 게임기 종류별 현황 (2006) .....	638
<그림 5-10> 이탈리아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41
<그림 5-11> 스페인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45
<그림 5-12> 스페인 아케이드 게임 유형별 시장 현황 비교 .....	648
<그림 5-13> 스페인의 주요 아케이드 게임 유형별 발달 지역(2005) .....	649
<그림 5-14> 스페인 Type C(슬롯머신) 매출(GGR) 현황(2000-2004) .....	651
<그림 5-15> 프랑스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5) .....	652
<그림 5-16> 벨기에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53
<그림 5-17> 덴마크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4) .....	657
<그림 5-18> 덴마크 AWP 보급 대수 .....	660
<그림 5-19> 네덜란드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4) .....	661
<그림 5-20> 네덜란드 게임기 라이선스 및 매출 동향(2001-2004) .....	664
<그림 5-21> 스웨덴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4) .....	666
<그림 5-22> 핀란드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4) .....	668
<그림 3-23> RAY 매출 및 비용 구성 내역(2005) .....	670
<그림 5-24> 아일랜드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72
<그림 5-25> 아일랜드 오락실 게임 종류별 구성비(2006) .....	673
<그림 5-26> 그리스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75
<그림 5-27> 규제 전후 아케이드 게임 시장 규모 변화 .....	676
<그림 5-28> 오스트리아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78
<그림 5-29> 체코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4) .....	680
<그림 5-30> 폴란드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3) .....	683
<그림 5-31> 폴란드 슬롯머신 업체 현황(2004) .....	685
<그림 5-32> 폴란드 AWP 라이선스 발급 현황(2001-2003) .....	686
<그림 5-33> 헝가리 Gambling 산업의 시장 규모(2004) .....	688
<그림 5-34> 헝가리 게임장 라이선스 종류별 추이 .....	690

<그림 5-35> 헝가리 게임기 라이선스 종류별 추이 .....	691
<그림 5-36> 시장 매력도에 따른 진출 국가 선정 .....	694
<그림 5-37>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 선택 .....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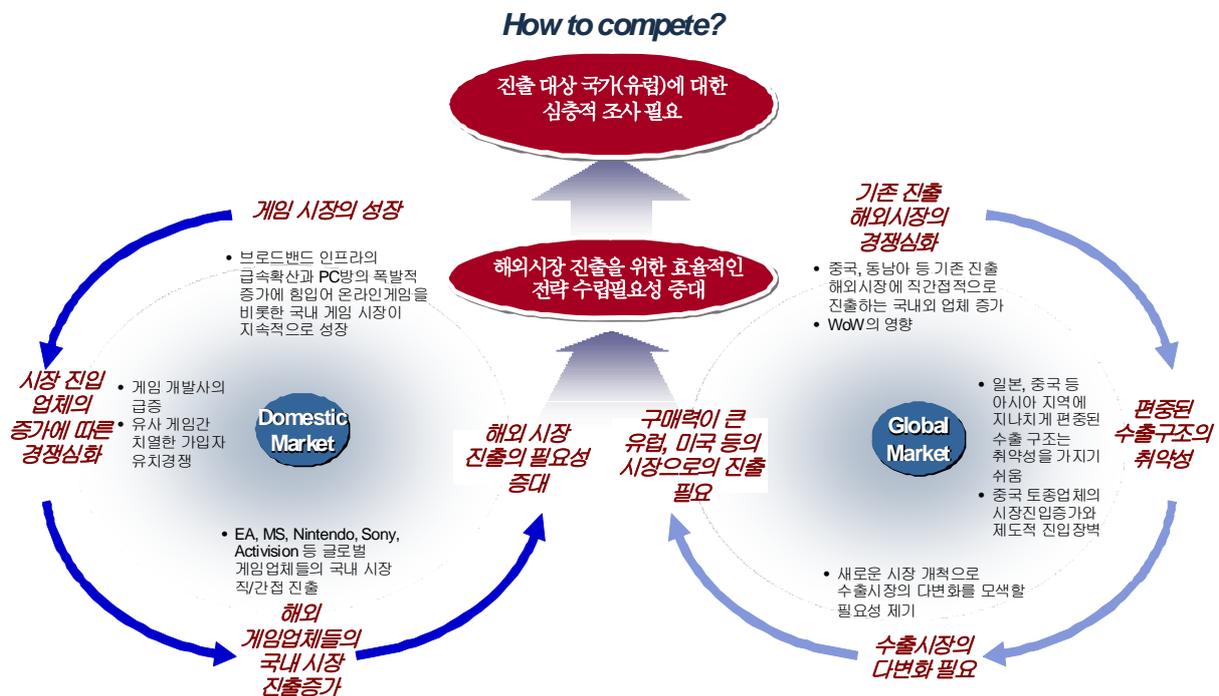
# 제 1 장 조사의 배경 및 내용

## 제 1 절 조사의 배경 및 목표

게임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기반한 새로운 유통 및 배급 채널의 잇따른 등장에 힘입어 시장 매력도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비즈니스모델 운영 경험을 축적한 국내 게임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게임 관련 업체들의 효과적인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국내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번 연구과제는 국내 게임 업계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해외시장 중 유럽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1-2> 조사의 목적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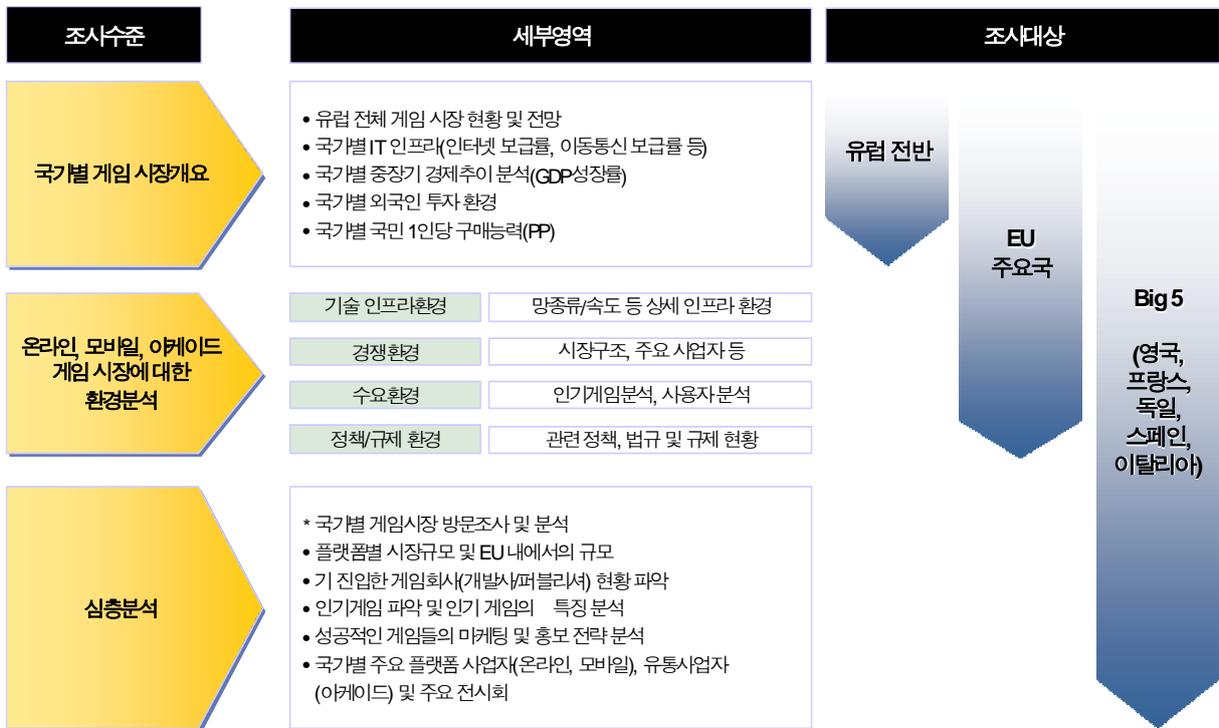


자료원: 스트라베이스

## 제 2 절 조사의 내용 및 범위

본 조사는 유럽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은 해당 시장에의 직접 방문을 통한 업체 인터뷰를 통해 가장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각 국가의 게임 시장의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EU 가입국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과 유망 시장 등 총 16개국을 선정해 각 국가의 개황, 경제개요, 한국과의 관계, IT 시장규모, 유무선 인프라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았다.

<그림 1-3> 조사수준과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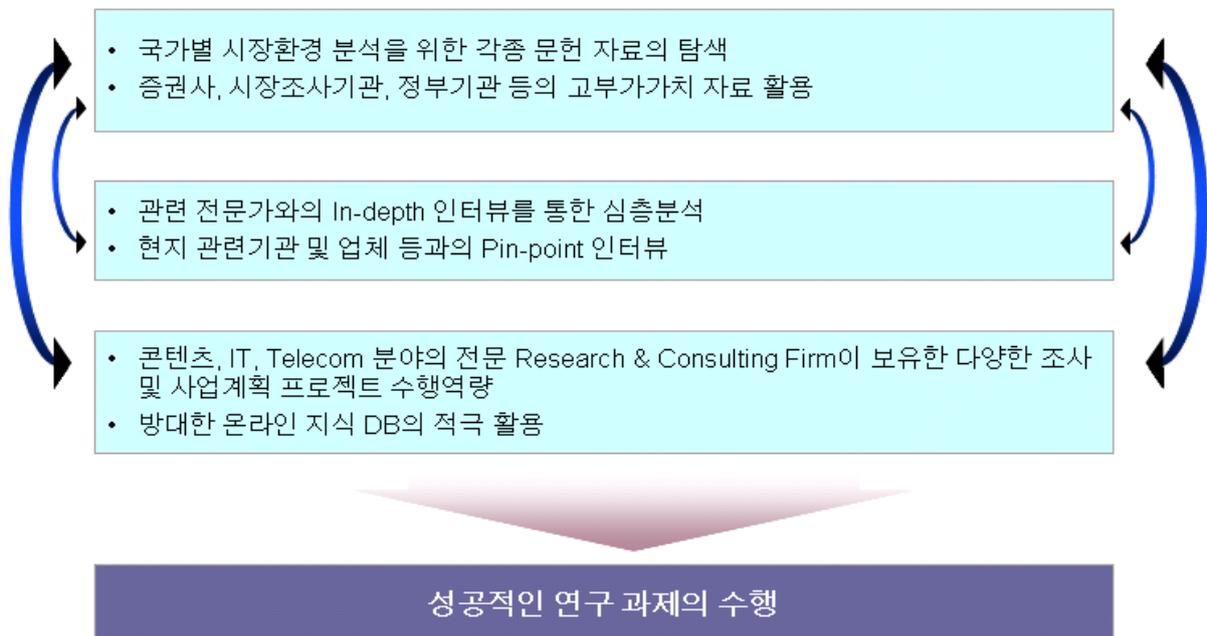


자료원: 스트라베이스

# 제 3 절 조사의 방법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국가별 시장환경 분석에는 문헌조사(Secondary Research)를, 콘텐츠의 유통에 대한 상세 분석에는 해당지역 관련기관 및 업체와의 Pin-Point Interview(Primary Research)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에 있어서는 정보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정보를 1차 필터링하였으며, 해당 정보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2차 필터링을 수행, 정보 및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보다 심도 있고 실질적인 정보의 수집을 위해 주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5개국은 약 한 달 간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4> 조사의 방법론



자료원: 스트라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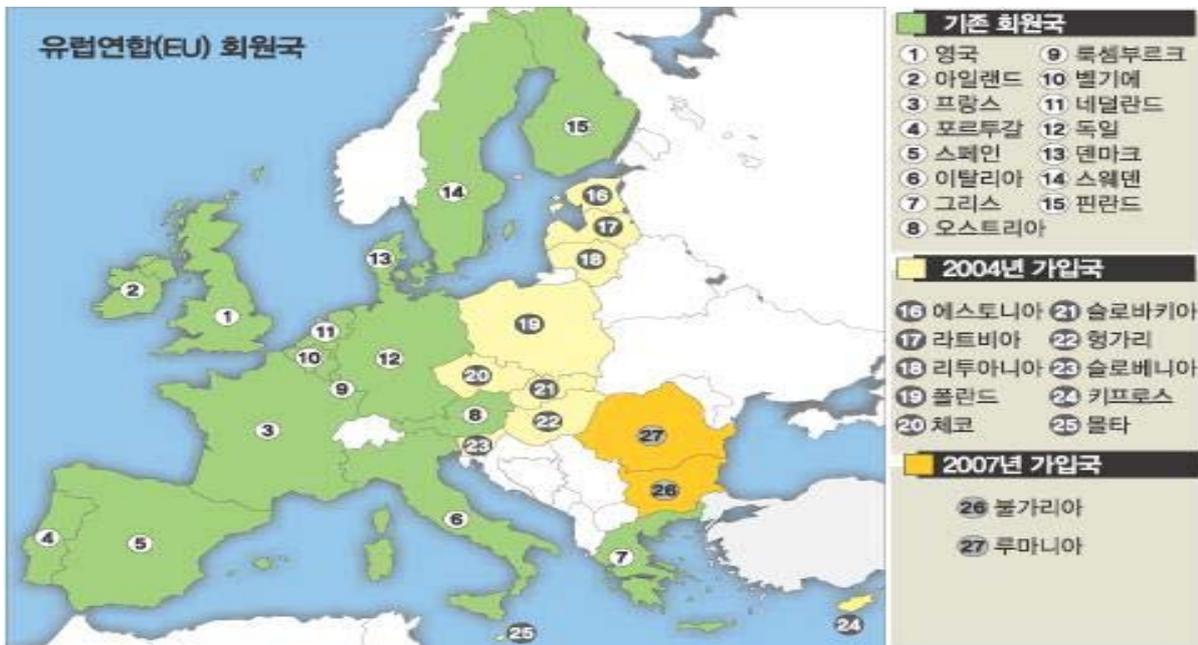
# 제 2 장 EU 개관

## 제 1 절 EU 개요

### 1. EU 회원국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5년까지만 해도 서유럽 15개국이 회원국이었으나, 2004년 중부 유럽 및 동유럽 10개국의 가입으로 인해 25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총 27개국으로 확대됐다. 현재 터키와 우크라이나, 마케도니아 등이 가입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EU 회원국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EU 회원국 현황



### 2. 우리나라의 對EU 관계

#### 가. 한국-EU 교역현황

2004년 10개 신규 국가의 EU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對EU 수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2003년 269억 8,000만 달러에서 2006년 484억 4,700만 달러로 약 80% 증가했다. 이 중 기존 15개국에 대한 수출은 2003년 248억 8,700만 달러에서 2006년 407억 3,400만 달러로 약 64% 증가했으며, 신규 10개국에 대한 수출은 2003년 20억 9,300만 달러에서 2006년 77억 1,300만 달러로 무려 268%나 증가했다. 2006년 기준, EU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14.9%이며, 이 중 기존 15개국이 12.5%, 신규 10개국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기존 EU 15개 회원국	24,887 (14.7%)	33,654 (35.2%)	38,790 (15.3%)	40,734 (5.0%)
2004년 신규 EU 가입 10개국	2,093 (2.7%)	4,176 (99.5%)	4,870 (16.6%)	7,713 (58.4%)
합계(25개국)	26,980	37,830 (40.2%)	43,660 (15.4%)	48,447 (11.0%)
우리나라 전체 수출	193,817 (19.3%)	253,845 (31%)	284,419 (12%)	325,565 (14.4%)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EU에 가입했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  
 자료원: KITA, KOTRA, 2007.11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對EU 수입은 2003년 198억 500만 달러에서 2006년 300억 6,200만 달러로 약 52% 증가했다. 이 중 기존 1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3년 193억 8,000만 달러에서 2006년 291억 3,700만 달러로 약 50% 증가했으며, 신규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3년 4억 2,500만 달러에서 2006년 9억 2,500만 달러로 약 118% 증가했다. 2006년 기준, EU가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이며, 이 중 기존 15개국이 9.4%, 신규 10개국이 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우리나라의 對EU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기존 EU 15개 회원국	19,380 (13.3%)	23,649 (22%)	26,728 (13.0%)	29,137 (9.0%)
2004년 신규 EU 가입 10개국	425 (11.8%)	537 (26.4%)	567 (5.6%)	925 (63.1%)
합계(25개국)	19,805	24,186 (22.1%)	27,295 (12.9%)	30,062 (10.1%)
우리나라 전체 수입	178,827 (17.6%)	224,463 (25.5%)	261,238 (16.4%)	309,383 (18.4%)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EU에 가입했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  
 자료원: KITA, KOTRA, 2007.11

한편, 우리나라의 對EU 투자는 2003년 1억 9,359만 달러에서 2006년 10억 5,133만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04년 신규 EU 가입국인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금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말 기준 9.8%이며, 이 중 기준 EU 15개국 3%, 동유럽 중심의 신규 EU 가입국 10개국 6.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우리나라의 對EU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기존 EU 15개 회원국	157,923 (-82.0%)	550,611 (248.7%)	222,794 (-59.5%)	324,054 (45.5%)
2004년 신규 EU 가입 10개국	35,666 (-13.2%)	123,651 (246.7%)	333,479 (169.7%)	727,284 (118.1%)
합계(25개국)	193,589	674,262 (248.3%)	556,273 (-17.5%)	1,051,338 (89.0%)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4,061,534 (9.9%)	5,988,587 (47.4%)	6,557,190 (9.5%)	10,731,047 (63.7%)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EU에 가입했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A, 2007.11

## 나. EU의 통상정책

EU의 통상정책과 규정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EU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공동통상정책(Common Trade Policy)을 취하고 있으며, 무역부문 평균관세율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장 개방된 경제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10월 새로운 통상정책인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발표하고, ‘개방’과 ‘경쟁’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4월 23일에는 EU 각료이사회가 한국, 인도, ASEAN 등과의 FTA 협상권한을 승인함으로써, 한국과 가장 먼저 1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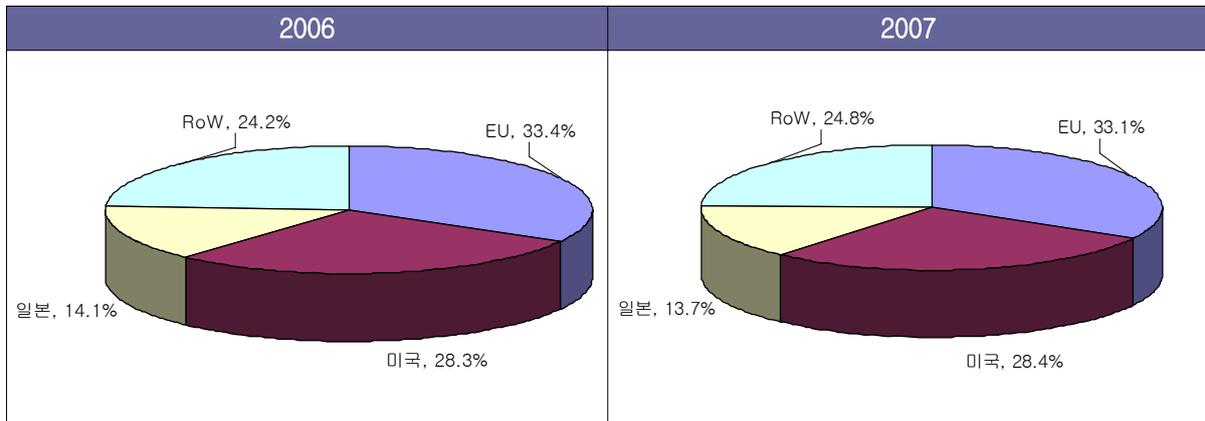
EU 회원국들은 공동의 통상 및 경제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역내 수입관세 및 통관서류 첨부 철폐, 역외 수입에 대한 동일 관세제도 및 무역조치를 적용받는다. 또한 공동의 경쟁정책과 통화정책, 농업 및 환경정책 등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무역과 투자제도도 기존 서유럽 중심의 선진 경제체제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

## 제 2 절 EU 정보통신기술 시장현황

### 1. EU 정보통신기술 시장규모

EU의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sup>1)</sup> 시장의 규모는 2006년 말 기준 6,800억 유로로, 전세계 ICT 시장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미국시장의 비중이 28.3%, 일본시장이 14.1%, 그 외 나머지 지역이 24.2%를 차지하고 있어, 권역별로 볼 때 EU의 ICT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전세계 ICT 시장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28.4%, 일본이 13.7%, 그 외 나머지 지역이 2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 세계 ICT 시장에서의 EU 비중



\*주1: EU 27개 회원국 외에 非EU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스위스 포함

\*주2: RoW - Rest of World

자료원: EITO(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 2007: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위 시장규모에 포함된 EU 27개 회원국 중 시장규모가 미미한 키프로스<sup>3)</sup>와 몰타를 제외하고, 非EU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스위스까지 제외한 EU 25개국의 ICT 시장규모는 2006년 말 기준 6,492억 유로이며, 2007년에는 6,6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말 기준 EU의 ICT 시장규모<sup>3)</sup>를 부문별로 보면, Hardware & Equipment(Computer Hardware, End-user Communications Equipment, Office Equipment, Datacom and Network Equipment 등) 부문이 1,564억 유로로 EU ICT 시장의 24.1%, Software 부문이 715억 유로로 11%, IT Service 부문이 1,256억 유로로 20.4%, Carrier Service(유무선 통신, 인터넷, 케이블 서비스 등) 부문이 2,889억 유로로 44.5%를 차지, Carrier Service 부문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

1) ICT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과 통신(Telecom) 산업을 모두 포함

2) EU 27개국 외에 非EU 회원국 중 ICT 시장이 일정정도 형성된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포함한 시장규모임

3) EU 회원국 중 키프로스와 몰타, 非EU 회원국 중 노르웨이와 스위스 제외된 시장규모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Hardware & Equipment 부문이 1,591억 유로, Software 부문이 762억 유로, IT Service 부문이 1,472억 유로, Carrier Service 부문이 2,960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의 ICT 시장규모를 다시 IT와 Telecom 분야로 구분해서 보면, 2006년 말 기준 IT 시장 규모는 3,068억 유로로 47.3%, Telecom 시장규모는 3,424억 유로로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IT 시장규모가 3,204억 유로, Telecom 시장규모가 3,476억 유로로, 각각 48%와 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EU의 부문별 ICT 시장규모**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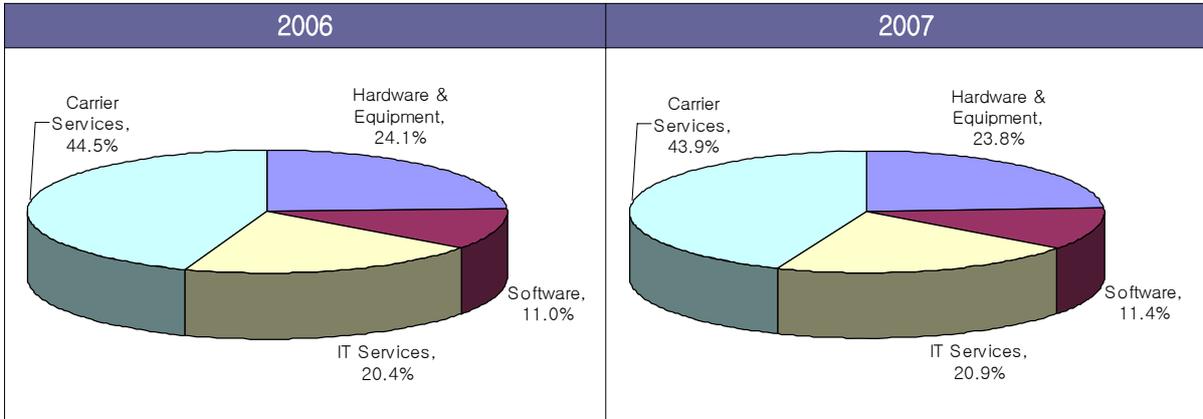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b>Hardware &amp; Equipment</b>	<b>150,109</b>	<b>155,293</b>	<b>156,427</b>	<b>159,151</b>	<b>162,699</b>
Computer Hardware	76,625	79,515	78,729	79,864	82,073
End-user Communications Equipment	25,989	27,000	27,725	28,283	28,715
Office Equipment	7,976	8,109	8,223	8,297	8,362
Datacom and Network Equipment	39,520	40,669	41,750	42,707	43,549
<b>Software</b>	<b>63,319</b>	<b>67,304</b>	<b>71,521</b>	<b>76,193</b>	<b>81,171</b>
<b>IT Services</b>	<b>119,136</b>	<b>125,659</b>	<b>132,380</b>	<b>139,696</b>	<b>147,186</b>
<b>Carrier Services</b>	<b>272,942</b>	<b>282,556</b>	<b>288,939</b>	<b>293,007</b>	<b>296,043</b>
Fixed Voice Telephone Services	89,365	87,247	82,832	78,696	74,710
Fixed Data Services	49,250	53,928	58,512	62,243	65,891
Mobile Telephone Services	120,279	126,834	132,641	136,765	139,849
CATV Services	14,048	14,547	14,954	15,304	15,592
<b>합계</b>	<b>605,507</b>	<b>630,812</b>	<b>649,267</b>	<b>668,047</b>	<b>687,099</b>
IT 합계	282,112	296,078	306,840	320,421	335,487
Telecommunication 합계	323,394	334,734	342,426	347,626	351,613

\*주1: EU 27개국 중 키프로스(Cyprus)와 몰타(Malta)를 제외한 25개국

\*주2: Computer Hardware - 데스크탑 및 노트북 PC, 서버 등, End-user Communications Equipment: 휴대폰 등 Portable Communication Devices 및 장비, Datacom and Network Equipment: 데이터 Communication 및 네트워크 장비, IT Services: SI를 비롯한 각종 IT관련 서비스, Carrier Services: 유선, 이동통신, 인터넷, 케이블 등 통신 서비스. 이하 국가별 ICT 시장규모에서도 동일

자료원: EITO, 2007;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그림 2-3> EU의 부문별 ICT 시장비중



\*주 : EU 27개국 중 키프로스(Cyprus)와 몰타(Malta)는 제외한 25개국  
 자료원: EITO, 2007;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EU 회원국별 ICT 시장규모를 보면, 독일이 2007년 1,360억 유로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 EU 회원국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영국(1,273억 유로), 프랑스(999억 유로), 이탈리아(718억 유로), 스페인(464억 유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주로 다룰 EU 회원국인 체코와 폴란드는 각각 75억 유로와 170억 유로의 시장규모로,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와 2.6%에 불과, 시장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EU 회원국의 국민 1인당 ICT에 대한 지출금액은 2006년 말 기준 1,344 유로로, GDP에서의 비중은 5.74%이며, ICT 중 통신부문에 대한 지출금액은 전체 ICT 지출의 52.8%인 709 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EU의 ICT 및 통신부문 지출금액

(단위: 유로)

구분	2003	2004	2005	2006
1인당 ICT 지출금액(유로)	1,212	1,257	1,308	1,344
GDP에서의 비중(%)	5.85	5.79	5.83	5.74
1인당 통신부문 지출금액(유로)	642	672	694	709
GDP에서의 비중(%)	3.10	3.09	3.09	3.03

\*주: EU 27개국 중 키프로스(Cyprus)와 몰타(Malta)는 제외  
 자료원: EITO, 2007;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표 2-6> EU의 국가별 ICT 시장규모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오스트리아	14,101	14,551	14,908	15,333	15,814
벨기에/룩셈부르크	17,714	18,159	18,496	19,071	19,691
덴마크	12,540	13,009	13,290	13,455	13,678
핀란드	9,521	9,811	10,057	10,247	10,491
프랑스	90,918	94,524	96,688	99,900	103,173
독일	128,615	131,839	133,802	135,997	138,657
그리스	7,806	8,087	8,359	8,647	8,870
아일랜드	6,183	6,406	6,624	6,801	6,972
이탈리아	67,297	69,092	70,389	71,786	73,215
네덜란드	31,391	32,517	33,667	34,758	35,869
포르투갈	8,727	9,107	9,317	9,597	9,811
스페인	40,158	43,003	44,989	46,371	47,616
스웨덴	20,900	21,541	22,089	22,566	23,195
영국	114,947	119,953	123,658	127,297	130,814
불가리아	1,619	1,843	1,994	2,176	2,314
체코	5,630	6,332	6,914	7,494	7,970
에스토니아	709	794	852	899	936
헝가리	5,460	5,775	6,084	6,390	6,669
라트비아	863	1,002	1,102	1,197	1,278
리투아니아	1,088	1,203	1,314	1,371	1,423
폴란드	12,507	14,376	15,858	17,078	18,273
루마니아	3,390	4,122	4,767	5,274	5,763
슬로바키아	2,051	2,248	2,442	2,641	2,823
슬로베니아	1,370	1,519	1,607	1,701	1,784
EU 전체	605,507	630,812	649,267	668,047	687,099

\*주: EU 27개국 중 토티로스(Cyprus)와 몰타(Malta)는 제외

자료원: EITO, 2007

## 2. EU 통신시장 현황

EU를 포함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기타 동유럽 등 유럽 전체의 통신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유선 음성 Main Line 수는 2006년 3억 2,942만 라인에서 2007년 3억 2,376만 라인으로 지난 수년간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유선 음성전화 시장의 하락추세와 동일한 것으로,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역시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인터넷 및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인터넷 이용자 수<sup>4)</sup>는 2006년 3억 190만 명에서 2007년 3억 2,466만 명으로 7.6% 증가

하고, 오는 2010년까지 6.6%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EU 회원국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서유럽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2007년 말 기준 유럽 전체 이용자의 약 80%로, 아직은 서유럽이 유럽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과 2007년에 EU에 가입한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발트 3국 등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직 인터넷 이용자가 유럽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의 경우, 유럽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GSM 방식으로 표준을 통일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동통신 보급률을 확보하고 있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급률이 100%를 넘어져서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다수 국가들이 100%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유럽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6년 7억 8,420만 명에서 2007년에는 8억 4,202만 명으로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10년까지 5.6%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유럽에 비해 동유럽 국가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유럽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6년 3억 2,650만 명에서 2007년에는 3억 6,895만 명으로 13% 증가하고, 오는 2010년까지 9.4%의 높은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 유럽 통신서비스 이용현황 및 전망

(단위: 천 라인, 천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AGR(%) (‘05-’10)
<b>Main Telephone Lines</b>	<b>333,732</b>	<b>329,428</b>	<b>323,760</b>	<b>317,285</b>	<b>310,829</b>	<b>304,361</b>	<b>-1.8</b>
서유럽	239,317	236,146	231,691	226,320	220,956	215,567	-2.1
동유럽	94,415	93,282	92,069	90,965	89,873	88,794	-1.2
<b>ADSL Lines</b>	<b>50,796</b>	<b>68,915</b>	<b>82,782</b>	<b>93,745</b>	<b>102,253</b>	<b>109,356</b>	<b>16.6</b>
서유럽	47,680	63,742	75,282	83,995	90,553	95,901	15.0
동유럽	3,116	5,173	7,500	9,750	11,700	13,455	34.0
<b>인터넷 이용자 수</b>	<b>278,635</b>	<b>301,901</b>	<b>324,663</b>	<b>346,590</b>	<b>366,584</b>	<b>383,261</b>	<b>6.6</b>
서유럽	231,602	244,923	257,399	269,446	279,879	288,753	4.5
동유럽	47,033	56,979	67,263	77,144	86,705	94,508	15.0
<b>Cable Modem 가입자 수</b>	<b>11,219</b>	<b>14,080</b>	<b>16,700</b>	<b>18,923</b>	<b>21,009</b>	<b>23,116</b>	<b>15.6</b>
서유럽	9,619	11,680	13,500	15,123	16,709	18,316	13.7
동유럽	1,600	2,400	3,200	3,800	4,300	4,800	24.6
<b>이동통신 가입자 수</b>	<b>703,462</b>	<b>784,205</b>	<b>842,020</b>	<b>880,762</b>	<b>906,390</b>	<b>923,098</b>	<b>5.6</b>
서유럽	435,836	457,700	473,070	485,986	495,823	504,319	3.0
동유럽	267,627	326,504	368,950	394,777	410,568	418,779	9.4

\*주: EU 외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그리고 나머지 동유럽 국가 포함

자료원: EITO, 2007;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4) 인터넷 이용자 수는 유선 인터넷에 국한된 것으로, 무선 인터넷 이용자와 인트라넷만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만, 조사법 위는 인터넷 계정 수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수로 정함

인터넷 중 DSL, 케이블, Fiber/LAN 등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보면, 2007년 6월 기준 덴마크와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보급률이 30% 내외로 가장 앞서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의 Big3 국가들은 20%를 약간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체코가 12.2%로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가장 높은 편이며, 헝가리(11.6%), 폴란드(8.0%), 그리스(7.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독일이 1,74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이 1,436만 명, 프랑스가 1,425만 명, 이탈리아가 930만 명, 스페인이 748만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2-8> EU 주요국 브로드밴드 보급률**

보급률 순위	국가	보급률(%)					가입자 수(명)
		xDSL	Cable	Fiber/LAN	Other	합계	
1	덴마크	21.3	9.7	2.9	0.4	<b>34.3</b>	1,866,306
2	네덜란드	20.4	12.7	0.4	0.0	<b>33.5</b>	5,470,000
3	핀란드	24.4	3.7	0.0	0.8	<b>28.8</b>	1,518,900
4	스웨덴	17.9	5.6	4.6	0.4	<b>28.6</b>	2,596,000
5	벨기에	14.5	9.2	0.0	0.1	<b>23.8</b>	2,512,884
6	영국	18.4	5.3	0.0	0.0	<b>23.7</b>	14,361,816
7	프랑스	21.4	1.1	0.0	0.0	<b>22.5</b>	14,250,000
8	룩셈부르크	19.8	2.4	0.0	0.0	<b>22.2</b>	105,134
9	독일	20.2	1.0	0.0	0.1	<b>21.2</b>	17,472,000
10	오스트리아	11.4	6.6	0.0	0.6	<b>18.6</b>	1,543,518
11	스페인	13.3	3.6	0.0	0.1	<b>17.0</b>	7,483,790
12	이탈리아	15.4	0.0	0.4	0.0	<b>15.8</b>	9,307,000
13	아일랜드	11.1	1.6	0.0	2.6	<b>15.4</b>	653,000
14	포르투갈	9.2	5.4	0.0	0.1	<b>14.7</b>	1,555,641
15	체코	5.5	2.5	0.3	3.9	<b>12.2</b>	1,252,300
16	헝가리	6.8	4.7	0.0	0.1	<b>11.6</b>	1,170,290
17	폴란드	5.5	2.4	0.0	0.1	<b>8.0</b>	3,040,000
18	그리스	7.1	0.0	0.0	0.0	<b>7.1</b>	787,000
19	슬로바키아	3.9	0.8	1.1	1.0	<b>6.8</b>	368,454
<b>합계</b>	<b>EU 19개국</b>						<b>87,314,033</b>

\*주: 2007년 6월 말 기준. EU 주요국 19개국 대상. 순위는 가입자 수가 아닌 보급률 순위

자료원: OECD, "OECD Broadband Statistics to June 2007", 2007.11;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 제 3 절 EU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 1. 유럽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기타 동유럽 등 非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sup>5)</sup>의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2006년 626억 3,200만 달러에서 2007년 739억 4,300만 달러로 18.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디지털콘텐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방송으로, 2006년 약 149억 달러에서 2007년 약 186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정보나 신용정보, 마케팅정보 등과 같은 온라인 정보콘텐츠가 2006년 약 122억 달러에서 2007년 약 130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디지털영상과 게임이 각각 2006년 약 115억 달러와 112억 달러에서 2007년 약 123억 달러와 128억 달러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MP3와 같은 디지털음악은 2006년 17억 8,600만 달러에서 2007년 25억 달러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9> 유럽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추정치)	2008(전망치)
디지털방송	11,771	14,916	18,623	23,336
온라인 정보콘텐츠	11,536	12,239	13,027	14,149
디지털영상	10,229	11,569	12,351	13,495
게임	9,990	11,205	12,800	14,477
디지털음악	1,096	1,786	2,502	3,450
기타	7,565	10,917	14,640	18,651
(모바일콘텐츠)	(1,985)	(3,210)	(4,392)	(5,665)
<b>합계</b>	<b>52,187</b>	<b>62,632</b>	<b>73,943</b>	<b>87,558</b>

\*주1: 기타에는 전자책, 온라인포털, 이러닝, 솔루션 등 포함

\*주2: 모바일콘텐츠 중 모바일게임은 게임에, 모바일음악은 디지털음악에, 모바일동영상은 디지털영상에, 모바일정보는 온라인 정보콘텐츠에 포함되므로, 전체 시장규모에서 모바일콘텐츠는 제외

\*주3: 게임 시장 규모는 수평적인 비교를 위해 타 콘텐츠 시장 규모수치의 원소스와 같은 자료를 사용했으며, 3장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규모 도출에서는 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시장규모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원: PwC(PriceWaterhouseCoopers), 2007; CIBC(CIBC Worlds Market Research), 2007; Cowen and Company 2007; MRG(Media Research Group), 2007

## 2. 유럽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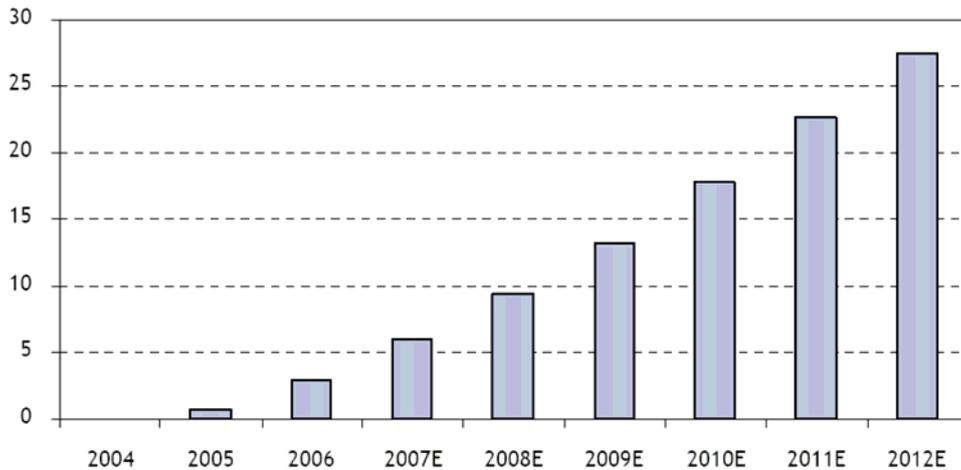
### 가. 디지털방송

5)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유럽 전체에서 EU 27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므로, 본 조사에서는 EU 회원국을 포함한 기타 다른 유럽 국가의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까지 포함하기로 함

유럽 디지털방송 시장은 세계시장의 약 22%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 각 국가들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IPTV나 VOD와 같은 신규 서비스들도 유럽 전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IPTV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럽 지역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브로드밴드 보급이 급속히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조사사업체인 RBC Capital에 따르면, 유럽 지역 IPTV 가입자 수는 2006년 300만 명에서 2007년 600만 명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는 2012년에는 2,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 유럽 IPTV 가입자 수 및 전망**

(단위: 백만 명)



자료원: RBC Capital Markets, 2007.9

## 나. 디지털영상

유럽 디지털영상 시장은 세계시장의 약 25% 가량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DVD와 온라인 비디오를 포함한 홈비디오 시장이 박스오피스(영화관) 시장을 2배 이상 능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영상 시장의 대부분은 DVD가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 서비스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표 2-10> 유럽 DVD 및 온라인 비디오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추정치)	2008(전망치)
DVD 판매(오프라인)	7,075	7,778	8,106	8,561
DVD 대여	1,901	2,051	2,206	2,432
- 오프라인 대여	1,682	1,713	1,676	1,604
- 온라인 주문을 통한 오프라인 대여	219	338	530	828
온라인 비디오	0	1	11	42
<b>합계</b>	<b>8,976</b>	<b>9,831</b>	<b>10,323</b>	<b>11,035</b>

자료원: PwC, 2007; Digital Vector, 2007; Screen Digest, 2007

#### 다. 온라인게임

유럽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콘솔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이 시장의 주류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국내와는 달리 온라인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5.1%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4년에 MMORPG 게임이 출시되고, 최근 들어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온라인게임이 전체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온라인게임 비중은 5.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평균성장률(CAGR)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1> 유럽 온라인게임 시장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추정치)	2008(전망치)
온라인게임	337	572	741	1,290
전체 게임시장에서의 비중	3.4%	5.1%	5.8%	8.9%

자료원: PwC, 2007; Jamma, 2007

#### 라. 디지털음악

유럽 디지털음악 시장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음악시장보다 모바일을 통한 음악시장이 더 크다. 이는 불법 인터넷음악 유통 때문으로, 2007년 말 기준 유럽의 인터넷 음악시장은 약 5억 달러인데 반해, 모바일 음악시장은 4배 가까운 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Big5 국가들의 인터넷음악 시장에서 불법 음악 파일 유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성장세는 인터넷음악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2> 유럽 디지털음악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추정치)	2008(전망치)
인터넷음악	136	275	500	900
모바일음악	960	1,511	2,002	2,550
합계	1,096	1,786	2,502	3,450

자료원: PwC, 2007

## 마. 모바일콘텐츠

유럽지역 중 서유럽이 주축이 된 EU 국가들은 세계에서 이동통신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답게 모바일콘텐츠 시장 발달해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매출 및 ARPU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선불제 가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후불제 위주의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에 비해 데이터 매출 비중이 낮은 편이다.

### 1) Message

유럽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SMS나 MMS, IM(Instant Message) 등과 같은 Communication과 관련된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Message 분야가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5%를 모바일음악이나 모바일게임, 모바일동영상 등과 같은 Rich Content가 차지하고 있다.

### 2) 모바일음악

유럽지역 역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나 미국처럼 벨소리 시장의 주류가 화음벨소리에서 원음벨소리로 옮겨가고 있으며, MP3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FTD(Full Track Download) 이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지역에서 활발하지 않던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용률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모바일게임

유럽지역의 모바일게임 시장은 온라인게임 시장에 비해 2006년 기준 3배 가까운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유럽지역은 모바일음악과 모바일게임의 시장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모바일게임이 발달해 있으며, 지난 3년간 급속히 성장하면서 다수의 모바일게임 퍼블리셔들이 뛰어난 실적을 보여 왔다. 또한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게임뿐만 아니라 콘솔게임 등에서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게임들을 모바일로 이식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제 4 절 유럽 주요 국가 개황

아래에서는 국가 및 경제 개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요 게임시장 분석 대상인 16개 국가의 개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 국가는 아래와 같다.

<표 2-13> 게임 시장 분석 대상 유럽 주요 국가 리스트

	국가	EU 가입여부(통화)
1	영국	가입(통화는 파운드 사용)
2	독일	가입(유로)
3	프랑스	가입(유로)
4	이탈리아	가입(유로)
5	스페인	가입(유로)
6	네덜란드	가입(유로)
7	노르웨이	비가입
8	덴마크	가입(유로)
9	벨기에	가입(유로)
10	스웨덴	가입(유로)
11	스위스	가입(유로)
12	오스트리아	가입(유로)
13	체코	가입(유로)
14	터키	비가입
15	폴란드	가입(유로)
16	핀란드	가입(유로)

자료원: 스트라베이스

### 1. 영국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北아일랜드聯合王國,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줄여서 연합 왕국(United Kingdom)이라고 하는 영국(英國)은 유럽 서북 해안의 섬나라로, 북해, 영국 해협, 아일랜드 해 및 대서양에 둘러싸여 있다.

영국의 행정 구역은 꽤 복잡하게 되어 있다. 우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스의 구성 국가들로 나뉜다. 각 구성 국가마다 자체적인 행정 구역 체제가 나뉜다. 스코틀랜드는 32개 주(council area)로 나뉘어 있고, 북아일랜드는 26개 주(district)로 나뉘며, 잉글랜드는 9개의 지역(region)으로 나뉘고, 각 지역은 다시 48개의 주(county)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웨일스는 22개 주(unitary authority)로 나뉜다. 그 밖에 해외 영토(overseas territory)들과 왕실령(crown dependency)들이 존재하나, 이 지역들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는다.

영국은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랫동안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해온 나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체제인 의원내각제를 발전시킨 나라이다. 과거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이

양당 체제를 이루었으나, 1차 대전 이후 자유당이 몰락하고 대신 노동당이 등장하여 새로운 양당체제가 성립되었으며 근래에 들어 노동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지지하는 개혁적 자유주의(중도좌파)정당인 자유민주당이 제3당으로서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극우정당인 BNP(British National Party)등이 등장했으나 기본적인 양당체제의 틀은 아직 유지 되고 있다. 2007년 현재 국가수반은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이고, 총리는 고든 브라운이다.

영국은 "축구 중가"라는 별칭 그대로 축구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영국은 월드컵 예선이나 본선, 국가대표 경기, 청소년대표 경기 때에는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스로 나뉘 출전한다.

**<표 3-14> 영국 일반 사항**

국 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위 치	서부 유럽 (북해와 대서양 사이의 섬)
면 적	244,100km <sup>2</sup> (한반도의 1.2배)
기 후	서안해양성
수 도	런던 (London)
인 구	총인구 60,587,300명 (2006년 중순 공식 통계 기준) 잉글랜드 50,762,900명(83.8%) 웨일즈 2,965,900명(4.9%) 스코틀랜드 5,116,900명(8.4%) 북아일랜드 1,741,600명 (2.9%)
주요 도시	런던(738만 명), 버밍엄(99만 명), 리즈(71만 명) 글라스고우(57만 명), 셰필드(51만 명)
민족(인종)	앵글로색슨 백인(92.1%), 흑인(2%), 인도(1.8%), 파키스탄(1.3%) 등
언 어	영어
종 교	성공회(영국 국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
건국일(독립일)	10세기 통일국가 유지 1927년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공식 국호 명칭.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자료원: 영국 통계청, 영국 정부, The World Fact book; KOTRA 2008.04 재인용

## 나. 경제 개요

전년에 이어 2007년 들어서도 경기 상승기조는 계속되어 3/4분기중 전기 대비 0.7% 성장하였다. 이는 투자와 가계소비가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8월까지 활발한 모습을 보이던 주요 산업활동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9월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1월에는 그간 성장을 주도하던 서비스업 및 건설업 둔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은 경기호조 및 이에 따른 서비스업 등의 고용증

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4/4분기 이후 5%대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실업률 상승은 동구권 저임금 노동력 유입, IT분야의 해외 아웃소싱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기조(2006년중 419억 파운드, GDP 대비 3.2%)는 2007년 들어서도 지속되어 3/4분기중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적자는 140억 파운드를 기록하였다. 이는 유류 수출입 적자규모 증가 등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에 기인한다.

물가는 2006년에 이어 2007년 들어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 3월에는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이 92년 10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최고치(3.1%)를 기록한 후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신용팽창과 함께 소비지출이 호조를 지속한 데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음식료품 가격 오름세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10월 물가는 가스, 전기 요금 인하효과에도 불구하고 유류 및 음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하였다.

**<표 3-15> 영국 경제 지표**

<b>GDP</b>	GDP: 1조 3851억 불
<b>실질경제성장률</b>	2.9% (2007)
<b>1인당 GDP</b>	31,400 불
<b>실업률</b>	5.3%
<b>물가상승률</b>	2.2%
<b>화폐단위</b>	영국 파운드 (GBP)
<b>환율</b>	£1= 1955.31원, £1=2.008 (2008년 3월 11일 매매기준율 기준)
<b>외채</b>	8조2800만 불 (2006년)
<b>외환보유고</b>	388억3천만 불 (2006년)
<b>산업구조</b>	1차 산업: 1%, 2차 산업: 25.6%, 3차 산업: 73.4%
<b>교역규모</b>	-총수출(3,571억 파운드): 9.5% 증가 -총수입(4,081억 파운드): 6% 증가
<b>교역품</b>	-수출: 기계류, 자동차, 원유, 항공/선박기기 -수입: 자동차, 사무용기기, 전자, 전기기기

자료원: 영국 통계청, 영란은행, The World Fact book: KOTRA 2008.04 재인용

영국시장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국민성의 영향으로 브랜드 충성도와 비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으나, 수입규모의 확대와 유통 채널 간 가격경쟁으로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또한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7.5%의 높은 부가가치세와 고 마진 유통구조로 인해 물가가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부활절, 성탄절,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바겐 세일 시즌을 많이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 정기 대바겐세일: 여름(6월말~8월말), 겨울(11월말~1월말)

- 시즌 특수: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과 9월), 성탄절(12월)

한국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과 더불어 상품에 대한 인지도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삼성, LG가 핸드폰과 LCD/플라즈마 TV시장에서의 연이은 판매 성공을 거두며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자사 제품들도 고객평가에서 호평을 누리고 있다. 그 외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단순히 저가의 아시아 국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글래스고우 등 북부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성격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유통 시장 특징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 1) 대형 유통체인에 의한 시장지배 경향

대표적인 유통체인인 M&S가 1930년 런던 시내 중심가 Oxford Street에 대형 매장을 연 이후 특히 의류 및 식품부문에 대형 유통회사들이 속속 설립되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면서 가정용 소비재 전분야에 걸쳐 대형 유통체인들의 시장지배력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브로드밴드 보급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 매출 상위업체들도 테스코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로, 인터넷 쇼핑의 보급확대가 '대형 유통체인에 의한 시장지배 경향'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고 마진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유럽국과 가격 비교 시 동일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에 따라 영국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브랜드 제품의 회색수입시장(Grey import) 규제 완화 등 유통마진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 3) 보수적인 거래관행

기존 거래 선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입선을 바꾸지 않으며, 또한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단 수입상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안정적으로 거래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 4) 소비자의 개방적인 구매태도

상품거래 시 상품의 질과 내용을 중시할 뿐 어느 특정지역의 제품 또는 자국 상품을 선호하는 등의 배타 감정이 없으며, 개성 있는 상품구매를 선호하여 대부분의 거래는 소량, 소액, 다품종 주문 형식을 띠고 있다.

#### 5) 제3국 조달시장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

한 구매조달시장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품목은 중고 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장신구, 신발 등 일반 비내구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명의 구매 담당자가 buying office를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 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L/C 계약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다. 우리나라의 對영국 관계

최근 주로 거론됐던 이슈는 다음과 같다.

### ○ 양국간 항공편 증편

2001.6월 한영 항공회담 시 양국은 한국측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 양국간 항공편을 현행 5회에서 8회로 증편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8월 이 후 대한항공은 런던-서울간 매일 운항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화, 목, 토, 일 4회 운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Convention) 발효

1995.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동 협정체결에 합의하고 1999.4월 양국정부간 서명을 거쳐 2000.8.1자로 발효되었다. 동 협정체결로 영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상사주재원이 지금까지 이중으로 납부하여 온 사회보장세(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가 면제되어 연간 약 65억 원의 세금면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 ○ 운전면허 상호인정

한국 운전면허증이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1996.4부터 영국정부와 교섭하여 온 바, 지난 2001.4월말 양국간 원칙적 합의(1997.1.1 이전 면허에 대해 5년 무사고 증명 조건부)에 도달하였다.

2002.3월 조건부 운전면허증 교환이 영국 국내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97년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우리 운전면허증이 영국 면허증과 교환될 수 있도록 재교섭한 결과, 한영 양국은 2002.9.20 동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상사 주재원, 교민의 생활의 불편 완화는 물론 양국간 경제·통상·투자 활동 증진과 인적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표 3-16> 한국-영국 관계**

<b>체결 협정</b>	1883.1,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1884.4, 한영 국교수립(서울에 총영사관 설립) 1900, 주한영국총영사관 공사관으로 격상 1901, 주영국 공사관 개설(초대 공사 민영돈 부임) 1906,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총영사관으로 격하 1949.1.13, 영국정부,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로 승인 1950.2.17, 주영 한국공사관 개설 1955.7.11, 양국, 공사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 1969.12.18, 사증면제협정(60일간 유효, 30일간 연장가능) 1978.2.19,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1978.5.13, 이중과세 방지협정 1979.3.4,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3.9.22 개정) 1982.7.12, 문화협정 1984.3.5, 항공협정 1985.6.14, 과학기술협력협정 1990.10.24, 항공협정 개정 1991.11.27, 원자력협력협정(92.5.12 제1차 한영 원자력협의회-런던개최) 1996.10.25(서명), 이중과세방지협정(신협약) 1999.4.20, 사회보장협약(2000.8.1)
<b>교역규모</b>	-수출: 12위 (68억 7천만 불) -수입: 26위 (35억8천1백만 불)
<b>교역품</b>	-수출: 기계류, 약제품, 술, 철강 -수입: 전기기기, 자동차, 기계, 고무, 귀금속, 광학기기
<b>교민</b>	체류자: 29,000여명 -정부, 민간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동반가족 등 14,000여명 -어학연수생 15,000여명 -지역별: 런던(25,000여명), 기타(10,000여명)

자료원: 영국 정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KOTRA 2008.04 재인용

우리나라의 대 영국 수출은 2007년 10월말 기준 58억 460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7%의 급증세를 시현하였으나, 대 러시아 수출 호조로 인해 영국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제9대 수출대상국에서 제10위의 수출대상국으로 한 계단 내려갔다.

한편 2007년 중 우리나라의 대 영국 수입은 10월말 현재 29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의 급증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 영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4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2007년에는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주요 교역품목으로는 선박, 무선전화기,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타이어 포함),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을 우리나라가 주로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주류, 의약품, 강반제품, 반도체, 합성수지 등이 우리나라의 주요 대영 수입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한국-영국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11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독일 수출	4,094	5,516	5,338	5,635	5,846	27.7%
對 독일 수입	2,703	3,793	3,149	2,976	2,942	21.0%
무역수지	1,391	1,723	2,189	2,659	2,904	-

자료원: KOTIS; KOTRA 2008.04 재인용

영국에는 2007년 2월 기준 활성투자기업으로 제조업 50개사, 도·소매업 39개사, 서비스업 26개사, 기타 11개사 등 130여 개 업체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 전자 등 가전 3사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 국민, 신한, 삼성증권 등이 대표적 현지 진출 기업이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고임금 등으로 현지 생산기지를 철수하거나(SKM 유럽 법인 등) 수출거점 확보 및 생산단가 인하 등의 이유로 동유럽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제조부문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생산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법인의 진출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표 3-18> 한국의 100대 기업 영국 현지 투자 현황(2007년)

업체명	취급분야(업종)	진출연도
영국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판매업	1984
현대자동차 영국 법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판매업	2005
엘지전자 영국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판매업	1987
삼성생명런던사무소	생명 보험업 (*연락사무소)	2002
에스케이 에너지 유럽	원유 거래 등	2001
국민은행 런던현지 법인	은행업	n/a
지에스칼텍스 런던 사무소	원유 거래업(연락사무소)	1994
기아자동차 영국 판매 법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판매업	2002
(주)케이티 런던사무소	전기 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1995
우리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78
현대중공업 런던지사	강선 건조업 (연락사무소)	1973
에스케이텔레콤 유럽법인	무선 전화업 (리서치)	2002
삼성물산 런던법인	상품 종합 도매업	1975
삼성화재해상보험 런던사무소	손해 보험업 (연락 사무소)	2005
대한항공 런던지점	정기 항공 운송업	1973
신한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91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67
엘지상사 영국법인	상품 종합 도매업	1977
한진해운 영국지사	외항 화물 운송업	1988
하이닉스 반도체 영국법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1986
삼성중공업 런던지점	강선 건조업 (연락사무소)	1977
대우인터내셔널 런던사무소	상품 종합 도매업	n/a
대우건설 런던지사	아파트 건설업 (구매. 연락사무소)	2000
현대상선 영국법인	외항 화물 운송업 (영업대행)	1996
대우조선해양 런던지점	강선 건조업 (연락사무소)	2000
현대건설 런던지사	도로 건설업 (연락 사무소)	1982
현대해상화재보험 런던사무소	손해 보험업 (연락 사무소)	n/a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코리안 데스크	은행업 (코리안 데스크)	2005
동부화재해상보험 런던사무소	손해 보험업 (연락 사무소)	1981
코리안리재보험 런던사무소	생명보험 재 보험업 (연락 사무소)	1978
아시아나 항공 런던지점	정기 항공 운송업	2002
에스티엑스펜오션 영국법인	외항 화물 운송업	2005
씨제이(주) 런던사무소	당류 판매업 (연락 사무소)	1978
삼성테크윈 영국법인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n/a
한진 중공업 런던사무소	강선 건조업 (연락사무소)	1992
대우일렉트로닉스영국생산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생산판매	1988

자료원: KOTRA 런던무역관, 2008.04

2007년 9월 말까지의 우리나라의 대 영 투자는 총536건에 20억712만 달러로 투자액 기준으로 영국은 우리나라의 제8위의 투자대상국이다. 2006년에는 42건 7144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07년에는 9월 말까지 44건에 8444만 달러를 투자하여 증가세를 보였다.

**<표 3-19> 우리나라의 對영국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3분기)	누계
건수	12	18	61	42	44	177
금액	95	273	74	71	84	597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1979년 외환관리법이 폐지된 이래 외국인투자(해외투자 포함)를 포함한 국제 자본의 거래 및 이동이 완전 자유화 되었다. 즉,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법규 및 규제사항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규 및 제도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를 포함한 자본 유출 입에 대한 수치 파악과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통계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통계법(The Statistics of Trade Act, 1947)이 시행되고 있다.

#### □ 무역 통계법의 주요내용

- 통계청의 통계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 생산, 유통, 서비스에 대한 센서스
- 조사에 대한 회신방법, 회신기간
- 회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 조사결과의 의회보고 관련사항
- 자문위원회
- 정보의 공개
- 정보조사에 따른 강제사항 등

-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가) 기업 환경

- 외자에 대한 규제, 규제업종·금지업종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

영국에서는,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사업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금융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의료기기, 의료·복지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 출자비용 제한은 특별히 없다.

- 외국기업의 토지소유 가부가능. 조건 등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 있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이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있어 규제는 없다. 영국에 있어서 토지의 최종적인 토지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소유의 형태로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일본의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에서는,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를 산업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어, 각 자치체 의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상공업부동산 및 각 지방 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 각 지역의 투자유치기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 개발·건축규제에 대한 상세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 Website: <http://www.odpm.gov.uk>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규제에 따라서 토지소유가 가능하고, 외국기업의 토지소유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 토지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소유권을 등록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leasehold는 통상 15년이고, 5년마다 갱신된다. 또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 임차에 있어서는, 양도증서 작성비용, 인지세(구입시, 상세한 것은 아래에), 지방자치체의 조사 비용, 은행송금 수수료 등의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 토지등록에 관한 상세

- 잉글랜드 웨일즈: Her Majesty's Registry

- Tel: 0845 308 4545 (국내전용)

- Tel: +44-(0)20-7917-8888

- Email: enquiries.pic@landreg.gov.uk

- Website: <http://www.landreg.gov.uk>

○ 스코틀랜드 : Registers of Scotland

- Tel: +44-(0)131-479-3620 / Fax: +44-(0)131-479-3688

- Email: customer.relations@ros.gov.uk

- Website: <http://www.ros.gov.uk>

○ 北아일랜드 : Land Registers of Northern Ireland

- Tel: +44-(0)2890-251700

- Website: <http://www.ilrni.gov.uk>

투기목적의 부동산 투자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에 제한은 없다. 영국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인지세(stamp duty)로 불리는 고정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율은 아래와 같다.

- 60,000파운드까지 비과세

- 60,000파운드 ~ 250,000파운드 1%

- 250,000파운드 ~ 500,000파운드 3%

- 500,000파운드 이상 4%

또한, 비 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 자에게는, 통일사업 세 (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평가 액은 5년마다 재평가가 시행되고, 점유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 의해 정해진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해서, 각 지방자치체에 의해서 설정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北아일랜드에서 각각의 세액에 관한 상세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잉글랜드 웨일즈 Website: <http://www.local-regions.odpm.gov.uk>

- 스코틀랜드 Website: <http://www.scotland.gov.uk>

- 北아일랜드 Website: <http://www.dfpni.gov.uk>

□ 자본금에 관한 규제

외자규제 없다. 국내 기업이라도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 에 앞서 최저 5만 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외자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지역 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신기술의 도입, 경영 관리 기술의 활성화 등의 견지에서 그 진출을 환영하고 있고,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자기 자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 기타 규제

○ 국산화율

- WTO, OECD규정에 따라,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 부품 등의 현지 조달 율을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WTO, OECD규정에 따라,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 부품 등의 현지 조달 율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 율을 높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나) 외자에 관한 장려**

**①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 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투자에 대해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이노베이터즈·스킴(scheme)

전자상거래 등을 기본으로 한 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起業家에 의한 영국으로의 투자에 대해, 지금까지 투자가로서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로 했던 자기 자금이 나 투자 금액 등에 관한 조건에 대신해서, 전자상거래나 그 밖의 기술혁신을 영국에 미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起業 後의 운영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했다. 2000년 9월부터 2년간의 시험적 조치로서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도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동 스킴의 예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이노베이터 로서 18개월간의 체재 허가가 부여된다. 이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간까지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 영국에서 2명 이상의 고용(풀 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신청자는 해당 영국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것

○ 해당 영국 기업이 신청자에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기까지의 기간, 수입 보조 등 영국의 공적 기금이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 것

○ 입국 후 최초 6개월간은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갖고 있을 것

내무성 이민국이 아래 3분야를 점수제로 심사를 시행한다. 동 국의 Business Case Unit가 신청을

수령하고부터 통상 2주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비자는 거주국의 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한다.

○ 인격 : 업무 경험, 起業家로서의 명백한 능력, 학력·자격(특히 기술계, 과학계, 비즈니스 계), 인격에 관한 추천장

○ 사업 계획(일반) : 계획이 기술면, 상업면, 재정면에서 현실적인 것일 것, 경영진 설립에 관한 계획의 내용

○ 사업 계획(영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 : 어떠한 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창출 고용 수, 사업 계획의 신규성 및 창조성(영국이나 특정 산업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R&D 활동에 대한 투자액 등

□ 스킵에 관한 상세

○ Business Case Unit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18th

- Floor,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20-8604-3101

- Fax: +44-(0)20-8604-5933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 비자에 관한 안내 리플렛 청구장소

○ Visa Correspondence Section Ukvisas London SW1A 2AH, UK

- Tel: +44-(0)20-7008-8438 (문의) +44-(0)20-7008-8308 (신청용지청구)

- Fax: +44-(0)20-7008-8359/8361

## ② 노동허가증 발급규제 완화

2000년 10월에 IT관련산업이나 의료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구주경제영역(EEA) 지역 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규제를 완화하였다.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의무」 페이지 참조요망.

○ Work Permits (UK) Integrate Casework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 다) 외국인 취업규제·체류허가, 현지인 고용

외국인 취업규제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에 있어서는 영국인 또는 EEA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 할 필요가 있다.

구주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가맹국민이 아닌 자, 또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가 영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노동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 Work Permits (UK)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일반적인 문의)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 <http://www.ind.homeoffice.gov.uk>

한국인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訪英하는 경우, 협의나 계약교섭, 트레이드 페어, 회의, 트레이닝 등으로의 출석 등 한정된 범위내의 商用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급 또는 무급의 노동, 영국 내에서의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 공공으로의 제품 서비스의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입국 허가는 통상, 각 회 최장 6개월의 관광 비자 또는 상용 비자가 입국 시에 부여되고, 유효 기간 내라면 영국으로의 출입국은 무제한이다. 정기적으로 商用으로 訪英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복수 회(複數回) 유효 비자도 있다.

○ Ukvisas Visa Correspondence Section London SW1A 2AH, UK

- Tel: +44-(0)20-7008-8438 (문의 전반) /+44-(0)20-7008-8308 (신청용지청구)

- Fax: +44-(0)20-7008-8359/8361

- Email: [visas.foruk@fco.gov.uk](mailto:visas.foruk@fco.gov.uk)

- Website: <http://www.ukvisas.gov.uk>

체류허가

EEA 가맹국민이 아닌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

노동허가증

구주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가맹국민이 아닌 자, 또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가 영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노동허가증(Work Permits)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의무」 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참조.

○ Work Permits (UK)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영국으로의 대내직접투자에서 재류허가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과의 관계가 있다. 상세한 것은 「현지인의 고용의무」 페이지 참조.

노동허가제도

- Work Permits (UK)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Home Office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입국허가 기타 출입국관계

- 주한영국대사관 비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500
- Fax: 02-3210-5653
- Email: [consular.seoul@fco.gov.uk](mailto:consular.seoul@fco.gov.uk)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영국 내무성 이민국

-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 Home Office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870-606-7766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노동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자

통상 아래의 노동자가 영국에 입국하는데, 노동허가증은 필요 없다. 단 노동허가증을 대신 해서 입국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입국허가의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 국에 파견되어 있는 영국의외무성의 정부기관에서 시행한다.

영국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가지지 않고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외국기업의 단독대표자(Sole

Representative). 단독대표자는 영국 외에서 채용된 종업원에 한하며, 해당 외국기업의 대주주 가 아닐 것. 우선 1년간의 재류허가가 부여되고, 통상은 그 후 3년간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 영국의 기존 기업을 매수하는 자, 또는 영국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자를 포함.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 사업설립을 위해 상당한 자기자금을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해당기업에 의해 풀 타임으로 고용이 행해지고, 기업은 최저 2명의 고용(풀 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미 영국에 在住하는 자만)

- 자영업의 경우, 영국에서의 사업에 대한 투자 금으로써 최저 200,000파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것 등

#### □ 최근의 동향

정보기술(IT), 의료, 엔지니어링 분야 등 인원이 부족한 직종에서는 노동허가증의 발급요건 이 완화되고 있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높은 수준의 技能 및 경험을 가진 개인에 대해, 영국으로의 이주와 노동을 허가하는 「고도기능(高度技能)이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현지인 고용의무: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에 있어서 영국인 또는 EEA 가맹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에 있어서, 고용자는 대상의 직위에 대해서 거주노동자로는 대체 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노동허가증은 고용자가 신청, 내무성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가 발행한다. 유효 기간은 최고 5년간. 또한 노동허가증은 체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시에 별도 입국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노동허가증은 통상 아래 4가지의 기본 항목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

- 영국에서 결원이 생기고 있는지 여부

- 업무에 필요한 기능, 자격, 경험

- 발급 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적합한 자격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거주 노동자”(Resident Worker: EEA 가맹국의 국민 또는 1971년 입국 법에 의한 定住者) 가운데, 그 업무에 적합한 자격 또는 경험을 가진 노동자가 없는지 여부

노동허가증의 신청은 제1종(Tier 1)과 제2종(Tier 2)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1종 신청은 간소화 신청절차로, 아래 4가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다국적 기업 내부에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는 자가 이동하는 경우

- 임원 정도의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
- 영국으로의 대내직접투자를 동반하는 경우
- 인원이 부족한 직종(Shortage Occupations)의 경우

제2종 신청은 상기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고, 신청은 제1종보다도 복잡하고 아래의 서류나 정보가 필요하다.

- 해당 노동자의 자격·경험의 증명
- 인원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채용 광고 등) 에 대한 정보

노동허가증의 신청은, 소정의 양식·방법으로 우송 또는 E-mail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한번도 노동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영국에 거점을 가진 기업인 것을 명시하는 서류(감사완료 회계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등)의 제출이 필요.

○ Work Permits(UK) Integrated Casework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일반적인 문의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Email: [custmrel.workpermits@wpuk.gov.uk](mailto:custmrel.workpermits@wpuk.gov.uk)

- 신청대상자가 영국 내에 체재중인 신청에 대해서

- Tel: +44-(0)114-259-4441
- Fax: +44-(0)114-259-3728
- Email: [incountry-decision.workpermits@wpuk.gov.uk](mailto:incountry-decision.workpermits@wpuk.gov.uk)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및 <http://www.ind.homeoffice.gov.uk>

고도기능자(高度技能者) 이주 프로그램: 2002년1월28일부터 높은 수준의 기능 및 경험을 가진 개인에 대해, 영국으로의 이주와 노동을 허가하는 「高度技能 이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아래 4분야에서 레벨을 점수제로 자기 평가하여, 합계 75점 이상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 또한 각 분야에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 (학력, 실무경험, 과거의 수입, 전문분야에서의 달성업적)

신청은 현재의 거주지에 따라서 다르고, 영국 거주자인 경우는 Work Permit (UK) 앞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국의 영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신청과 함께 제출한다. 또한 특정 기능이나 직종에 대해서, 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해 외국인의 영국이주, 취업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

○ HSMP (Highly Skilled Migrant Programme) Team Work Permits (UK)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 Home Office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1113

- Fax: +44-(0)114-259-1392

- Email: [hsmp.workpermits@wpuk.gov.uk](mailto:hsmp.workpermits@wpuk.gov.uk)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및 <http://www.ind.homeoffice.gov.uk>

□ 투자허가

○ 외국인 투자를 위한 특별한 인허가 절차 없다. 내국 기업에 준하여 자유로이 투자

- 다만, 폴스로이스나 BAE 시스템 같은 전략물자 취급업체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 인당 전체지분의 15% 지분 소유 금지

- 방송미디어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획득 필요

- 영국 은행지분의 10% 이상 초과 구매 시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신고의무 발생

○ 외국기업의 회사설립 절차·필요서류

- 기본정관, 부속정관, 선언서, 회사설립증명서 등이 필요.

- 영국에서의 회사설립은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설립절차가 다르다.

## 라) 투자인센티브

### ① 일반적인 인센티브

□ 선택적인 재정보조금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s: Tier1, Tier2, Tier3로 분류)을 설정하여 실업문제 해결 및 당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제공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보조금)

- 동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생산성광 기술의 과급효과에 따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10,000 파운드를 무상현금형태로 분할 지급 (주로 총 고정투자비용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다.

- 100,000 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재정 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고용창출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또한 경쟁력이 있고 3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함.

- 고정자산비용에는 대지구입, 부지조성 및 건물 건축, 플랜트 및 기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

원되거나 특허료, 자문료, 기계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측정은 현재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과급 효과를 기준으로 함.

○ 프로젝트는 또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5년 동안 성과를 측정함.

○ EU자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철강, 석탄, 합성섬유, 자동차, 농업, 그리고 어업분야는 지원 가능 산업분야에서 제외. 또한 투자지원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고용대체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 보조금 교부절차는 통산부 담당부서, 각 지역별 정부사무소, Business Link 등을 통해 신청양식인 RSA1을 지역별 정부사무소에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된다. 보통의 SFI 팀에서 보조금의 가능 여부, 범위 등을 심사하나 사업단위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런던에 있는 DTI에서 평가한다.

○ 전담부서명

- Yorkshire Forward SFI Team

- Yorkshire Forward Victoria House

- 2 Victoria Place, Leeds

- LS11 5AE

- Tel: 0113 394 9860 / Fax: 0113 394 9870

- Email: sfi@yorkshire-forward.com

- Website: <http://www.yorkshire-forward.com>

□ 지역선별 보조금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

○ RSA는 스코틀랜드 지역에 제공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계획으로, 유럽 공동체법(지원대상 지역: Assisted Area)에 의해 지역정부 지원 대상 지역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다.

○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주된 형태는 무상현금보조로 자본투자비용, 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나 보통 총 프로젝트 자본 비용의 10~20% 형태로 제공된다.

○ 자본투자가 비교적 적은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금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일자리에 주어지는 처음 2년간의 급여에 따라 산정된다.

○ Website: [www.scottishdevelopmentinternational.co.kr](http://www.scottishdevelopmentinternational.co.kr)

## ② 세제상의 인센티브

개 요

○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다.

일반적 세제상의 인센티브

○ 낮은 법인세율

-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실시. 세금 공제 전 경상이익의 30%

○ 연구개발 및 공장건설 경비 세금면제

- 개발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건설을 위한 자본비용 및 연구 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을 면제

○ 고율의 감가상각 인정

- 사업용도의 건물, 기계류구입 비용에 대해 연 25% 감가상각비를 인정, 세제혜택부여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EUREKA

○ 개 요

- 유럽 내의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국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영국은 통산부가 주관한다)

- DTI 가 50%까지의 경비를 부담

- 인센티브의 내용

-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또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단독 혹은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경비 지원

○ Website: <http://www.eureka.be/contacts/fundingList.do>

LINK 제도 (Link Collaborative Research Scheme)

○ 개요

- 영국 내의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 협동프로그램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대상: 첨단기술 또는 일반제조업의 산학협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5개의 주 카테고리 분류)

- Electronics/Communications/IT

- Food/Agriculture
- Bioscience/Medical
- Materials/Chemical
- Energy/Engineering
- 지원규모: 총 프로젝트 소요경비의 50% 한도
- 기업수혜 요건: 영국 내 제조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 (영국기업 또는 영국 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투자기업)
- Website: <http://www.ost.gov.uk/link/funding.html>
- UK Foresight 제도
- 영국 내의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 대 상: 선정된 연구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을 통하여 보조
- Website: <http://www.foresight.gov.uk/>
- EU Fifth Framework Programme for R&D
- 산업정보기술에서 일상생활, 사회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소요 자금 지원을 통하여 업체간 연구개발 및 산학협동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EU 회원국 회사 또는 EEA 회원국 국적회사로 경쟁력을 갖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영국 내 투자기업 포함)
- 지원조건
- 연구결과의 유용성 즉 연구결과의 보급 및 경제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일 것
- 기술혁신 내지 기술 활용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일 것
- 지원범위: 공동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의 50%까지 지원
- SMART
- 개 요
- 영국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보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지원범위

- 기술평가 (Technical Review) 지원

·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보조되는 것으로 2,500파운드까지 지원되는데, 이것은 기술사용에 대한 Best Practice에 보조된다 (Toward to a best practice review of technology usage).

- 기술연구 (Technology Studies) 지원

· 혁신적인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이끌어 내는 기술적 기회 (to help identify technological opportunities leading to innovative products and processes) 의 확인을 제공하는 개인 이나 중소기업에 보조하는 것으로 5,000파운드까지 보조된다.

- 마이크로 프로젝트 (Micro Projects) 지원

·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2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2,500 파운드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다. 지원금은 기술적 진보성과 독창성 을 지닌 Low-cost 제품의 원형이나 프로세스의 개발(Developing low-cost prototypes of products and process involving technical advance and/or novelty) 에 보조된다.

- 신기술의 상업적 기술적 연구 (Research Projects) 지원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75,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Tier2 지역인 경우 6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총비용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다. 지원금은 혁신적인 기술에 관한 기술적/상업적 타당성 검증 후(Undertaking technical and commercial feasibility studies into innovative projects)에 보조된다.

- 개발 프로젝트 (Development Projects) 지원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Tier2 지역인 경우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지급 금액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다. 지원금은 중대한 과학적 진보성을 지닌 신제품이나 프로세스의 전-생산 원형의 개발에 보조된다. (Undertaking development up to pre-production prototype stage of a new product and process involving a significant technological advance)

- 특별 개발 프로젝트 (Exceptional Development Projects) 지원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50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지원금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고비용 프로젝트에 보조된다. (Exceptional high-cost development projects with a strategic significance)

## 마) EU로부터의 금융지원

EU 금융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European Commission이 유럽 내 각국의 보조금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4가지 구조적 기금 (Structural Fund)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 보조금 종류

- Regional Development Fund(ERDF)
- European Social Fund (ES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FG)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투자방식 개요

외국기업이 영국에 진출했을 경우 택할 수 있는 회사형태로는 크게 i)지점 또는 사무소로 등록하거나, ii)새로운 영국회사(비공개/공개 주식회사) 설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지점 또는 사무소 등록

외국회사가 영국에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때에는 영국에 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영국에 출장 와서 호텔 등과 같이 임시적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 1) 사무소(영업장, Place of Business) 등록

외국회사가 영국에서 보조적, 임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규정 (place of business regime)에 따라 영국에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적인 기능으로는 창고시설, 관리 사무소 및 내부자료 처리시설 등을 일컫는다.

외국기업이 영국 내에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회사등기로 (Register)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공증된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20이며, 개설과 동일자에 등록할 때에는 £100 이다.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 사무소를 개설코자 할 때에는 각각 Edinburgh, Belfast 상업등기소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 공증된 회사의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정의 사본(Certified copy of the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양식 #691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요청된 어떠한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한 사람 이상의 영국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

- 이사 또는 비서에 의한 영업장 설립일자의 법적 공고

□ 사무소 등록 후 신고사항

○ 회계자료 보고

- 사무소는 본사 재무제표를 등기료(15파운드)와 함께 영국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본사 재무제표가 영국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기재해야 한다.

- 본사 재무제표 제출기한은 결산일로부터 13개월이다.

○ 신고내용 변동

- 등록 후 신고내용 변동 시 소정의 서식으로 변동사실을 영국 등기소에 신고

## 2) 지점(Branch) 등록

○ 외국회사가 영국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보조적 또는 임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 등록 규정(branch registration regime)에 따라 지점 등록. 지점은 외국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며, 이는 영국 거주자가 외국회사 본사와 거래하는 대신 영국지점과 직접 거래함을 의미한다.

○ 1개 이상의 지점 설치도 가능. 지점을 설립한 외국회사는 지점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서식 BRI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며 등록비용은 20 파운드이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문번역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최초 지사 개설 후 복수 개설되는 다른 지점은 최초의 지점등록번호를 서식 BRI에 기재하면 정관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 회사 현황소, 메모랜덤 및 회사 정관의 인증된 사본(만약 원본이 영어 이외의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인증된 영문판 문서와 더불어)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BR1 양식

- 외국회사 본점에 관한 사항

· 회사 명칭

· 사업장 명칭(회사 명칭과 다른 경우)

· 회사의 설립국가, 설립국가에서의 법인등록번호, 설립 국가의 등록기관

- 회사의 형태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주소, 국적, 직업, 생년월일 등
  - 제3자와 거래 및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의 정도 신용 또는 금융기관 인지의 여부
    - EU 회원국 이외에서 설립된 외국회사는 추가로 아래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회사의 설립근거 법
  - 설립국가 내 주소, 회사의 목적, 자본금 금액
  - 본사의 회계기간 및 본사 소재국의 법에 따른 회계보고서 작성 및 공시기한
    - 영국 지점에 관한 사항
  - 지점 주소
  - 개설일자
  - 지점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내용
  - 회사의 명칭과 사업장 명칭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명칭을 기재
  - 지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영국 내 거주자의 성명 및 주소
  - 권한의 행사범위(즉, 위임기관이 범위 내 또는 제한을 표시한 정도 내인지) 및 공동대표인 경우 관련된 자의 성명
- 지점 등록 후 신고사항
- 회계자료 보고
    - 본사의 회계보고서 작성, 회계감사 및 공시에 관한 본사 소재지국에서의 의무에 따라 상이
    - 회사 설립국가 내에서의 공시의무가 있는 경우
    - 지점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최근 공시 회계보고서 사본을 번역공증을 첨부, 제출
    - 회사 설립국가 내에서의 공시의무가 없는 경우
    - 사무소 관련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
    - 회계보고서 제출기한
    - 본사 소재국의 법이 공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영국의 회사등기소에 회계보고서 사본 제출. 회계보고서는 등록비 15 파운드와 함께 제출

- 등록사항 변경: 변경 후 21일 내에 변경 신고

## ② 새로운 영국회사설립

### □ 영국의 회사종류

-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
- 칙허회사(Chartered corporation)
- 무한회사(unlimited companies)
- 보증부 유한회사(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 □ 주식회사 설립 절차

#### ○ 비공개주식회사

-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회사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소정 양식은 회사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 비용은 20파운드이다. (설립과 동일자에 등록할 경우 100 파운드)

· 회사설립 시 (모든) 자본출자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회사정관 사본 (이때 자본출 자자는 한 명이 라도 상관없다)

· 초대 이사 및 비서역에 관한 보고서: 이사 및 비서역의 취임 동의서

· (서식 10)와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첨부

· 회사 법 1985에서 규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서약서. 이 서약서는 공증인 입회 하에 변호사, 이사 또는 비서역에 의해 작성

- 회사설립에 필요한 제반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등기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한다. 회사설립증명서의 발급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개시를 인가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 회사설립 후 신고사항

· 회계연도의 신고: 1996년 4. 1일 이후 설립회사는 자동적으로 회사설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 되나, 요건 충족 시 현재의 회계 연도 변경도 가능한 데, 이때는 서식 225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경우에만 해당

· 상호 및 정관의 변경: 회사 상호의 변경은 인가 받는데 통상 10일이 소요 되나 100 파운드의 수

수료를 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명은 '회사 명 변경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n change of name)'이 발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설립 후 이사회회의 소집: 이사는 회사설립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를 설립 하는데 따른 절차를 승인하고, 거래은행 및 회계감사인의 지정, 주주에 대한 주권의 발행 등 제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법인 설립후의 보고의무

- 회계자료 보고: 결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재무제표를 회사 등기소 (registrar) 에 제출

- 연차보고서 보고: 매년 작성, 제출의무가 있으며 작성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회사등기소 (Companies House)에 제출. 제출수수료 £15.

- 연차주주총회 개최: 매년 1회 이상, 이전 주주총회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해야 한다.

-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 설립

- 비공개주식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는 반면, PLC는 자금 조달방법으로 주식공모가 가능하다.

- PLC는 비공개주식회사보다 엄격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개주식 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데,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한 후 PLC로 전환 것은 처음부터 PLC로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일부 기업들은 회사 이름 뒤에 붙는 PLC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주식 상장을 양보하면서도 PLC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 PLC 설립방법은 비공개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차이가 있다.

- PLC 정관에 public limited company로 명기해야 한다.

- PLC의 회사명은 반드시 public limited company 또는 PLC로 끝나야 한다.

- PLC는 최저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비공개주식회사는 최저 1명의 이사

- PLC의 수권자본금은 £50,000 이상이어야 한다.

- 비공개주식회사는 £1 이상으로 사실상 수권자본금 제한 없다.

- PLC의 발행주식 총액은 수권자본금액의 25% 이상이고, 주식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프리미엄 금액 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 PLC의 비서역(company secretary)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PLC가 최저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회사 법(Company Act) 117조가 규정한 설립인가증이 회사등기소 (registrar)로부터 발급되며, 동 인가증 발급 이전에는 업무상 거래나 차입행위가 금지된다.

마. 기타

1) 노동허가제도

- Work Permits (UK)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North
- Home Office
- Level 5, Moorfoot, Sheffield S1 4PQ, UK
- Tel: +44-(0)114-259-4074
- Fax: +44-(0)114-259-3776
- Website: <http://www.workpermits.gov.uk>

2) 입국허가 기타 출입국 관계

- 주한영국대사관 비자과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우편번호: 100-120)
- Tel: 02-3210-5500
- Fax: 02-3210-5653
- Email: [consular.seoul@fco.gov.uk](mailto:consular.seoul@fco.gov.uk)
- Website: <http://www.britishembassy.or.kr>
- 영국 내무성 이민국
- Immigration & Nationality Directorate
- Home Office
-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Tel: +44-(0)870-606-7766
- Website: <http://www.ind.homeoffice.gov.uk>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삼일 회계법인

- PricewaterhouseCoopers LLP
- Korean Service Group, 6th Floor, 1 Embankment Place, London WC2N 6RH
- Tel: 020 7213 4939
- Fax: 020 7804 6763
- Website: [www.pwc.com](http://www.pwc.com)

○ 삼정 회계법인

- KPMG LLP
- 38Floor, Canary Wharf, One Canada Square, London EC14 5AG
- Tel: 020 7311 6404
- Fax; 020 7311 4121
- Website: [www.kworld.kpmg.com](http://www.kworld.kpmg.com)
- Email: [sangmin.nam@kpmg.co.uk](mailto:sangmin.nam@kpmg.co.uk)

○ 한영 회계법인

- ERNEST & YOUNG KOREAN DESK
- 1 More London Place, London SE1 2AF
- Tel: 020 7951 0707
- Fax: 020 7951 9305
- Website: [www.ey.com/uk](http://www.ey.com/uk)
- Email: [kbang@uk.ey.com](mailto:kbang@uk.ey.com)

○ RICHARDS BUTLER

- Beaufort House, 15 St. Botolph Street, London EC3A 7EE
- Tel: 020 7247 6555
- Fax: 020 7247 5091

- Website: www.richardsbutler.com

- Email: law@richardsbutler.com

○ STEPHENSON HARWOOD

- One St. Paul's Churchyard, London EC4M 8SH

- Tel: 020 7329 4422

- Fax: 020 7329 7100

- Website: www.shlegal.com

○ (주) 우리 엔터프라이즈 (영국이민국 공인 컨설턴트)

- Woori Enterprise LTD

- Suite 24 Fitzroy House, Lynwood Drive, Worcester Park, Surrey KT4 7AT

- Tel: 020 8337 4994

- Fax: 020 8337 9449

- Website: www.woori-enterprise.com

- Email: info@woori-enterprise.com

#### 4) 투자입지여건

영국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특정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들은 지역선택보조금을 받고 Greenfield에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특정산업의 기업이 많이 입주한 공업지역이 있으나 엄격히 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공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 및 공공투자유치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정지역을 Industrial Estate (공장지), 또는 Industrial Park(공업지), Business Park(사업장) 등으로 지정, 기업입주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선택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제도를 통해 투자 금액의 50%까지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RSA제도에 따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잉글랜드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공장부지구입, 공장건축 비, 설비투자비 등 공장설립 및 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 선택 보조금제도 수혜를 위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잉글랜드 지역에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 이들 지역이 공업단지과 같은 성격을 띤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산업공단은 없으나 RSA수혜가능 지역별로 20개 이상 기업이 입주한 Industrial Estate 또는 Industrial Park 등의 숫자는 북아일랜드 40, 스코틀랜드 37, 웨일즈

21, 북 잉글랜드 59개 등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국내외기업간 차별이 거의 없으며 영국 내 투자 외국기업은 모두 영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영국은 전체적으로 12개의 경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에 9개 그리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독립된 경제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들 전체의 1년 예산은 05/06년 기준 21억 6천만 파운드 규모이다.

공장 입지 조건은 각 사업 부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공장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영국 무역 투자청(UKTI)이나 각 지역의 지역 개발청(RDA)들이 지역 내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타당한 입지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지역의 경우 이미 16년째 유럽 내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로 뽑혀오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숙련된 인적 자원 확보의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가) 주요 기업 단지

영국 내에서 기업단지(Enterprise Zones)로 지정되는 것은 침체된 도시지역의 재활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이며 이미 거의 모든 단지 들이 그 특혜가 보장되던 10년이 만료된 상태이다.

### 나) 주요 체크 포인트

- 지역 내 기 위치한 산업 부문과 비즈니스의 종류
- 관련 클러스터와의 연계 용이성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 등의 지원/혜택 수혜 가능성
- 실질 설립 비용 (부동산/설비 구축 포함)

### 다) 지역별 투자여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법(Housing Act, 1989)에 의거 해당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위임 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하다. 주로 Grants (보조금), 저리의 자금대출, 지급보증, 투자기업에 자본참여,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① 잉글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잉글랜드 지역은 Great London, South East, South West, East of England, East Midlands, West Midlands, North West, Yorkshire and the Humber, North East 의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방관할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낙후 지역인 Yorkshire and the Humber와 North East의 대부분 지역을 투자 지원지역(Assisted areas: Tier1, Tier2, Tier3-중소기업에 한함)로 지정해 보조금 인센티브 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 Yorkshire and the Humber 지역: 관할기관 Yorkshire Forward

○ 선별적인 재정보조금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실업문제 해결 및 당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보조금).

· 동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생산성광 기술의 과급효과에 따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10,000 파운드를 무상현금형태로 분할 지급 (주로 총 고정투자비용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다.

· 100,000 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재정 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고용창출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또한 경쟁력이 있고 3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정자산비용에는 대지구입, 부지조성 및 건물 건축, 플랜트 및 기계구입에 소요 되는 비용에 지원되나 특허료, 자문료, 기계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측정은 현재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과급 효과를 기준으로 한다.

- 프로젝트는 또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5년 동안 성과를 측정한다.

- EU자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철강, 석탄, 합성섬유, 자동차, 농업, 그리고 어업분야는 지원가능 산업분야에서 제외. 또한 투자지원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고용대체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이 제한한다.

- 보통의 SFI 팀에서 보조금의 가능 여부, 범위 등을 결정하나 사업단위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런던에 있는 DTI에서 평가한다

- 전담부서명:

· Yorkshire Forward SFI Team

· Yorkshire Forward Victoria House

· 2 Victoria Place, Leeds

· LS11 5AE

· Tel: 0113 394 9860 / Fax: 0113 394 9870

· Email: sfi@yorkshire-forward.com

· Website: <http://www.yorkshire-forward.com>

○ Northeast England 지역

- 관할기관: One North East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선별적인 재정보조금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이전의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와 EG(Enterprise Grants)가 통합된 형태로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 현대화 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 이 제도의 목적은 생산성, 기술, 고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촉진키 위한 것이다.

- 생산성, 기술향상,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형태로 분할 지급되며, 보조금은 영국에서 투자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위험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이 상향 될 수 있다.

○ 연구개발비 지원

- Micro Projects

·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12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총 예산이 2,5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Research Projects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75,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Tier2 지역인 경우 65%)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 금액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Development Projects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Tier2 지역인 경우 40%)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 금액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Exceptional Development Projects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500,000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기타 투자 인센티브

- NESTA

·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지적 재산권의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NESTA에서 조사, 개발, 실험을 지원. 지원금은 개인당 65,000 파운드까지 가능하다.

- 전담부서명: NESTA

· Fishmongers' Chambers

- 110 Upper Thames Street, London
- EC4R 3TW
- Tel: 020 7645 9500
- Email: [nesta@nesta.org.uk](mailto:nesta@nesta.org.uk)
- Website: [www.nesta.org.uk](http://www.nesta.org.uk)

○ Cultural Business Venture

- 영국에서 가능한 문화산업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Prince's Trust 와 파트너쉽에 의해 운영. 25명 미만의 종업원을 갖추고 있는 신설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자문이 필요하다.

- 보조금은 1,000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총 비용의 75%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단계에서 24%의 매치펀드 근거제시 필요하다.

- 전담부서명: Cultural Business Venture
- Arts Council England, North East
- Central SquareForth Street
- Newcastle upon Tyne NE1 3PJ
- Tel: 0191 2558500
- Fax: 0191 2301020
- Email: [northeast@artscouncil.org.uk](mailto:northeast@artscouncil.org.uk)
- Website: [www.artscouncil.org.uk](http://www.artscouncil.org.uk)

○ Carbon Trust Grants

- 산업/공적 분야에 산업적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다.
- 전담부서명: Barrie Brass
- Regional Manager
- Carbon Trust
- One NorthEast, Stella House
- Goldcrest Way, Newburn Riverside
- Newcastle/Tyne, NE15 8NY

- Tel: 0191 229 6200
- Email: barrie.brass@thecarbontrust.co.uk
- Web: www.thecarbontrust.co.uk/foundation

## ② 북아일랜드 지역 투자인센티브

관할기관: Invest Northern Ireland (Invest NI)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 자본지출에 대한 현금지원 (Cash Grants)

- 국제적으로 유망한 사업으로서 북아일랜드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는 투자로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공장건설비(부지 포함), 기계설비 구입비의 최고 50% 까지 부상지원
- 동 보조금은 타 지역과는 달리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세금이 면제된다.

#### ○ 창업초기 인건비 보조(Start-up Costs, Employment Grants)

- 북아일랜드 투자로 인해 창출된 고용 인력의 규모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규모는 창업기간 동안의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짐.
- 지원기간은 3년이며 고용인력 규모를 Invest NI 측에 보장하는 경우 3년 분의 보조금을 일시에 지원받아 투자 또는 운전자본으로 전환사용이 가능하다.

#### ○ 이자감면 (Interest Relief Grants)

- 비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최대 7년까지 금리보조
- 최초 3년간은 상업금융기관 금리, 이후 4년간은 3%의 금리를 보조

#### ○ 공장임대료 보조 (Factory Rents)

- 공장 임대 시 임대료의 100%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Rent Grants)

#### ○ 시장 개척 비 보조 (Marketing Development Grants, 40/60 Scheme)

- 설립 후 최초 3년까지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최대 60,000 파운드 범위 내에서 보조

### 세제지원

- 기계, 설비,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Invest NI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최대 45% 까지 포함) 중,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연 25%,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연 4%의 감가 상각을 허용
-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100%를 감면

금융지원

○ 운영자금을 비롯하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에 대해 IDB 측이 정부 자금을 융자하여 줌. 동자금은 무이자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보 제공 등 채권보전 조치가 필요하다.

○ 특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Invest NI 가 직접 주식투자의 형태로 참여

종업원 교육훈련 지원

○ Invest NI 의 방계기관으로 훈련고용 청 (Training & Employment Agency)을 설립, 북아일랜드 투자기업에 대해 종업원 교육훈련 비용 (교육기간 중 임금, 교육비용, 여행 비 포함)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연구개발비 지원

○ 시장지향적인 제품 및 제조공법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획단계 (Project Definition Phase)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15,000 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

- 개발단계 (Project Development Phase)에서는 최대 40%까지 (10% 추가 지원 가능: Green Bonus) 250,000 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

- Website: <http://www.investni.com>

**③ 웨일즈 지역 투자인센티브**

관할기관: Wales Development Agency (WDA)

인센티브 제공

○ 외국 기업이 투자 타당성 조사 단계 에서부터 최종 마케팅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WDA가 관련기관과의 협력 하에 패키지형태로 지원. 다른 지역과는 달리 TAX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세제지원

○ 소득세(Personal Tax)

-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처음 세 전 이익이 US\$3,000 10%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일 경우 22%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지방 소득세는 없다.

○ 법인세 (Corporate Tax)

- 법인세 역시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를 실시. 세금공제 전 경상이익의 30%. 배당 소득, 이자, 로열티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없다. 환전 및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가 없다.

○ 부가가치세 (VAT)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17.5%의 세금이 부과되고 연료 및 전기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비율은 제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 되며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세금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UK 로 수입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 그 밖의 주요 인센티브

○ 교육훈련 인센티브

- 종업원의 채용,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지원범위는 개별 계약에 의함)

- 종업원의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지원

○ 부동산,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

- 공장시설 가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건설지원 (공장부지까지의 전력선, 진입로, 상수도 등 관련 시설 건설지원)

- 관련 웹사이트: <http://www.locate-in-wales.com>

**④ 스코틀랜드 지역 투자인센티브**

관할기관: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 지원 대상 지역(Assisted Area)에 지대 및 건물 임대료, 공장 및 기계, 소프트웨어 및 지적 재산권 등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중에서 보조금이 지급

- 보조금의 규모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예상 자본 경비의 10-20% 수준이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창출되는 일자리 한 개당 5000~10,000파운드에서 조정된다.

○ SMART

- 두 단계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첫 단계는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개인과 소기업들이 6-18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금 4만 5천 파운드 내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생산 전 단계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35%를 지원. 두 단계를 합친 최대 지원금은 15만 파운드이며 두 번째 단계의 프로젝트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 SPUR

- 상당한 수준의 기술 발전을 동반하는 신제품 생산이나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비용의 규모가 최소 5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 통신이나 생명공학과 같은 고가의 첨단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의 규모가 최소 1백 파운드 이상이면 SPUR plus 대상기업이 되어 지원을 받게 된다.

- 단, 이 때 지원대상 대상 기업은 방위산업을 제외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 연구개발비 지원

-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이고 연간매출이 약 2,500만 파운드 이하이면서 대기업이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

- 수익을 내는 기업의 경우 R&D 비용에 100~150%까지 세금을 면제

- 수익을 내지 않는 기업의 경우 R&D 비용 100 파운드마다 24 파운드의 현금으로 지원

- 대기업의 경우 세금 혜택 조건을 만족하는 R&D 비용에 대해 첫 해 100% 세금 공제와 25% 추가 세금 공제

○ 부동산, 인프라관련 인센티브

- 스코틀랜드 내 개발촉진지구, 중간지구내의 공장부지 사무실부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성, 개발, 구입지원

- 공장부지에 대한 상수도, 가스관, 전력선, 진입로 등 공장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지원 (설비 건설지원 또는 무상건설지원)

- 스코틀랜드 내의 도심지 입주업체를 위한 사무 공간, 건물구입정보 제공 및 구입 지원

○ 종업원 고용 및 훈련관련 인센티브

- 미숙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보조금 지원

- 종업원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지원

○ Website: <http://www.scottishdevelopmentinternational.co.kr>

## 5) 노무관리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광고, 지역 직업 안정소(Job Centre), 전문 직업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분석가 등의 고급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가) 고용계약

## □ 고용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조건으로는 의료진단(medical examination), 동인의 영국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사본, 노동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 □ 고용주의 고용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개시일
- 급여액, 급여계산방법, 급여지급일
- 근로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주요 업무
- 근무지
- 징계정책 및 불만사항 처리방법

상기 고용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계약 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계약서의 작성이 권고되며, 고용 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종업원의 법적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기준 또는 법적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고용만료통지권(right to notice of termination):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계약만료 통지기간을 갖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 한 통지기간은 2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주씩 증가(최고 12주까지)한다. 즉, 1개월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만료 통지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평등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평등법(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유급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4주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최저급여(minimum wage): 2007년 10월 1일부로 법정 최소 임금 인상

○ 성인 근로자의 경우 현 5.35파운드에서 5.52파운드

○ 18~21세의 경우 4.44파운드에서 4.60파운드

○ 16~17세의 경우 3.30파운드에서 3.40파운드

○ 현재 정규직 근로자들에 있어 연 20일간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 유급휴가를 연 24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2009년 4월 1일부로, 28일로 재차 확대 예정이다.

#### □ 명시조항(express terms)

법령에 강제된 종업원 법적보호권이 충족된다면 고용주와 종업원은 기타의 고용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문서화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명시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비밀유지조항: 종업원은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경쟁금지(non-competition) 조항: 종업원은 고용만료 후 고용주의 경쟁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종업원이나 고객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 지적재산권 조항: 종업원이 고용 중에 개발한 각종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가 보유하는가에 관한 사항이다.

#### □ 묵시조항(implied terms)

일부 조건들은 법령에 의해 계약서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고용주와 종업원간 상호 신의성실 의무는 이러한 묵시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다.

#### □ 위임조항(incorporated terms)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된 조건들을 다른 문서의 고용관련 부분에 위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위임한 것이 좋은 예다. 위임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종업원을 대신하여 급여수준, 유급휴가일수 등을 협상할 수 있다.

### 나) 고용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고용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종료 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상호합의에 의한 고용종료

- 법적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

- 고용계약서상 고용기간의 종료이다.

- 고용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기간이 만료된다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 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

○ 종업원의 자발적인 시작

- 종업원은 고용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고용주가 계약상의 고용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

- 고용주가 고용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이에 불구하고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해고

- 고용주는 고용계약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최소통지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기간은 계약상 통지기간이나 법정최소통지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최소통지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 고용계약에 의하여 통지기간에 대한 급여지급(복리후생비가 있다면 복리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기간동안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지기간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며 종업원에게 수당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주는 통지수당지급의무가 없이 즉시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즉시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고용계약종료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해고에 의한 고용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종료시 법정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 법정정리해고 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법정정리해고수당은 주급

(현재 최고 270파운드)에 근무연수(현재 최고 20년)과 연령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해고 수당은 8,100파운드 이다. 종업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계약종료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해고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정리해고 수당외에 퇴직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 공정 해고 조건 (이유)

- 무능(capability).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 품행(misconduct)
- 정리해고(redundancy).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위치에 필요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 부당해고

·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조치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한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인정해고(constructive dismissal)

·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평균 임금**

○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 기준 전체 노동인구의 주급 기준 평균치는 350.7파운드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성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 440.8파운드 여성의 경우는 269.8파운드이다.

○ 파트타임을 제외한 풀타임 노동인구의 평균임금은 447.1파운드로 남성은487.4파운드 여성은 386.8파운드로 통계되었다.

○ 1년 이상 근무경력인 정규노동인구의 평균 총연봉은2006년 기준 2만4천3백파운드로 남성이 2만5천8백파운드, 여성이 2만1천파운드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지역별로는 잉글랜드 지역의 평균임금이 2만4천3백파운드로 타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런던

던지역의 경우는 광역지역을 포함해서는 평균 3만7천754파운드였으며 런던시(Inner London)만으로는 4만6천506파운드에 달한다. 금융중심지인 시티(City of London)지역의 평균 연봉은 8만1천110파운드로 최고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라) 노무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 사회보장제도

○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국민보험

○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보험국(DSS)를 대신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로서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금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 부담분 :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후 최소 52주가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 한다.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의무가 없다.

## 6) 조세제도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당해연도 세출규모 결정 등 조세정책을 총괄하며 국세청(Inland Revenue)이 소득세, 자본소득세, 인지세 등을,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부가가치세, 기타 관세, 사회보장세 등, 교통환경부가 도로 관련세 징수 행정을 맡고 있다.

영국 정부는 주요 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주요세제

-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 소득세
  - 법인세
  - 자산 매각 소득세
  - 석유세(PRT)
- 거래에 관한 조세
  - 부가가치세
  - 관세 및 물품세
  - 보험료세
  - 항공 통행세
  - 인지세
  - 상속세
- 재산에 관한 조세
  - 단일 영업세율
- 항공 통행세
  - 영국 공항에서의 여행에 대한 물품세
  - 영국과 EU회원국내 기착지의 경우 승객당 5파운드
  - 기타 지역이 기착지인 경우 10파운드
- 기타 조세
  - COUNCIL TAX
  - 사회보장세

## 나) 소득세(Income Tax)

- 과세연도: 매년 4. 6 ~ 익년 4. 5일
- 과세대상: 영국내 소득발생 내. 외국인

○ 원천징수제도와 소득신고

- 원천징수(PAYE):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 징수된다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다.

- 종합소득신고: 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 투자소득이 있는 자, 해외파견 주재 원 등은 종합소득세신고서(SA 100)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 근로소득세율

- 근로소득액에 따라 각각 아래 3단계로 세율이 적용, 종합 산출된다

· Starting rate (Lower Rate): 10%. 최초 소득 1,920파운드에 한해 적용

· Basic Rate: 22%. £1,920 초과 ~ £29,900 미만 소득에 대해 적용

· Higher Rate: 40%. £45,385 이상 소득에 대해 적용

○ 세금경감혜택

- 각종 개인공제, 주택구입 대출금, 고령자에 대해선 일정 한도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 다) 법인세(Corporation Tax)

○ 법인신고

- 회사가 영국 회사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에 통보되며, 영국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 영국 내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 지점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조약상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체결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지점(Branch):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 영국 내 자회사(Subsidiary): 해외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법인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한도 내에서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된다.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제도(Corporate tax self-assessment: CTSA)에 따라 법인이 회계기간(4.1 ~ 익년 3.31) 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 자진신고 제도로 변경 이후 이전세(Transfer Pricing)과 해외관계회 (CFSs: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세액 등에 대한 책임은 신고회사가 지도록 되어 있어 진출법인들은 세금 신고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사전에 전문 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인세율

- Full Rate: 30%. £1,500,000 이상 기업이익
- Small companies' rate: 19%. 당해 연도 기업 이익 £300,000 미만 회사
- Effective marginal rate: £300,001 ~ £1,500,000 기업이익 \* 11/400
- 법인세 30%는 EU국 중 최저세율로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일조하고 있다.

○ 세무조정사항(세금공제)

- 세무상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
- 접대비
- 자본적 지출(법률비용, 수선비, 특허, 상표권 관련비용) 등

## 라) 유의사항

○ 한국기업 및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현지의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및 회사의 관리 담당자는 연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외부용역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 회사 형태의 종류에 따라 관리 업무 대상범위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회계/감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원천징수 절차(PAYE), 국민보험 및 개인소득세 등 사업관리상 필요한 기본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의한 환율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다.

### 가) 과실송금

영국은 외국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송금, 곧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 나)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79년 10월에 외국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는 따라 국내자금, 해외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 달러 등 외국통화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다. 단, 금융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은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도 차입도 가능하다. 단, 국제연합이나 구주연합의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의 규제는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현지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사업등록자나 기 영업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자금조달 필요시 현지 거래 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 협회(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업체들의 경우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들의 경우 보통개설 3년 미만의 현지 업체에 대한 최초 대출 시는 한국 본사의 보증을 요청하는 예가 많으며 향후로는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등급에 따라 대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현지 지사의 경우 올 4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에 따라 대출시 기존 대출 금리에 0.36%의 추가금리인상 효과가 있어 대출부담이 더할 전망이다.

## 다) 주재 한국 은행 리스트

### ○ 국민은행 런던현지법인

- 6th Floor, Princes Court, 7 Princes Street, London EC2R 8AQ

- 전화: 020 7710 8300 /팩스: 020 7726 2808

### ○ 기업은행 런던지점

- Leaf B, 38th Floor, Tower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 전화: 020 7847 5582 /팩스: 020 7374 2693

### ○ 신한은행 런던지점

- 3rd Floor, 51-55 Gresham Street, London EC2V 7HB

- 전화: 020 7600 0606

- 팩스: 020 7600 1826

### ○ 우리은행 런던지점

-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HD
- 전화: 020 7680 0680
- 팩스: 020 7481 8044
-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 전화: 020 7426 3550
- 팩스: 020 7426 3555
- 한국 수출입은행 런던현지법인
- Boston House, 63-64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JJ
- 전화: 020 7562 5500
- 팩스: 020 7588 3642
-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
- 30 Old Jewry, London EC2R 8EB
- 전화: 020 7606 0191
- 팩스: 020 7606 9968

## 8) 투자유의사항

### 가) 문화와 언어의 상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국내영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사의 제품을 외국에 팔아야 하는 해외수출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마케팅 요소 중 하나가 상대업체와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란 자체가 결국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한 관계이기에 간혹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투자에 있어 아주 소홀한 업체들도 있다. 한마디로 그래도 일단 언어가 다르고 또 그 내면에 깔린 문화가 다르기에 여러 가지 오해나 실질적인 사업/제품 설명 부족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아마 해외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막상 직접 업무를 수행 시 그와 관련된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영국에 살아본 적이 있거나 국가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성향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 보수성은 사회적/문화적 우월감에서 기인한 것이라 단순화해서 보면 무척 오만해 보이는 예가 많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어떤 만남에서고 쉽게 상대

방에게 인상을 구기거나 싫은 내색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일명 영국신사들이지만 막상 그 반응을 지레 오버해서 받아드렸다면 낭패보기 쉽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도 영국이 원산지임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은근히 답답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영국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야 기를 쓰고 들으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별 그럴 필요 없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 나)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제품(특히 소비재)의 경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

영국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지켜보면 특히나 IT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분명한 편이며, 브랜드가 생소한 제품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짙다. 이는 영국의 보수적인 국가성향과도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구매에 있어서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고가라 하더라도 본인이 쓸 물건은 좋은 걸 쓰는 경향이 있어 Apple i-Pod같은 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별다른 경쟁자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제품의 국가 기원 (NATIONAL ORIGIN, 원산지와는 별도)에도 비중 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판매업자들은 누구나 그러한 소비자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을 꺼린다. 우선 별도의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할뿐더러 그 연후에도 판매성장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제품의 시장성이 아주 탁월할 경우라도 바이어들이 선뜻 제품을 구입하는 예는 없다. 마케팅 비용을 빌미로 터무니없이 가격을 다운시키려 하기가 예사인 것이다. 그 속에서 판매상은 일단 리스크를 포함한 충분한 고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초도 진출 및 마진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국 시장의 특성상 회사 및 제품의 브랜드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해외영업 인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장개척 지원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2. 독일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독일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고 EU 내에서는 GDP를 기준으로 약 20 %를 차지한다. 독일 시장은 대체적으로 자유 시장 원리가 지배하지만, 사회 보장 제도 및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CeBIT, Medica, Hannover 산업 박람회, Automechanika 등의 대형 전시회를 통해 국제 교역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EU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은 유럽 경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의 비유연성과 세금 및 신규 사업을 확립에 있어 과도한 규제, 높은 사회 보장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독일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고 다방면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애 쓰고 있다. 독일 산업의 주된 분야는 자동차, 화학, 첨단기술 분야이다. 하지만 소매 분야 성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 다수의 주요 제조업들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겨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높은 실업률과 무관하지 않다.

**<표 3-20> 독일 일반 사항**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영문: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현지어: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위 치	서부 유럽
면 적	357,022km <sup>2</sup>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기 후	온대성, 연평균 섭씨 7-10도 수준
수 도	베를린 (Berlin)
인 구	8,225만 명 (2007년 7월 기준)* - 외국인 비중: 8.2%(2007. 11월 기준 연방통계청 발표 최근 수치임)
주요 도시	Berlin (340만 명), Hamburg (174만 명), Muenchen (126만 명)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 어	독일어
종 교	개신교 (33.2%), 카톨릭 (32.8%), 기타 (34%)
건국일(독립일)	1871.10.3일 (비스마르크 재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자료원: KOTRA, 2008.04

## 나. 경제 개요

2007년에도 독일 경제는 2006년의 경제호황을 이어가고 있으나 연초 부가세 인상, 원유값 상승, 유로화 강세, 재정정책 축소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기 호황은 독일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덕분에 더 이상 외향적인 요인에 휘청이지 않고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 200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 경제가 2007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반면, 2008년에는 다소 둔화된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독일 6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추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화 강세 원유 값 상승, 물가상승률,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 위험 및 금융시장 리스크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설비 투자, 민간소비 증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21> 독일 경제 지표**

<b>GDP</b>	23,027억 유로 (2006), 24.226억 유로 (2007년 예상치)
<b>1인당 GDP</b>	약 29,400 유로
<b>실질경제성장률</b>	2.5% (2006). 2.8% (2007 예상치)
<b>실업률</b>	9.0% (2007년 12월 기준)
<b>물가상승률</b>	2.1%
<b>화폐단위</b>	유로(Euro)
<b>환율</b>	1 유로 = 약 1,350 원
<b>총 설비투자</b>	4,102.8억 유로
<b>국내 총 소비</b>	17,733.8억 유로
<b>교역규모</b>	10,343.1억 유로(수출), 9,202억 유로(수입) (상품 및 서비스포함)
<b>주요 교역품</b>	-수출: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및 전기, 의약품, 화학제품 -수입: 전자 및 전기, 자동차

자료원: KOTRA, 2008.04

#### **다. 우리나라의 對독일 관계**

2005년 아태주간 행사(Asia-Pazifik Woche)에서 한국이 포커스국가로 선정되었다. 아태 주간 행사는 베를린에서 격년으로 아태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경제 및 문화 소개 행사이다. 2005년 9월 이 행사에 한국이 포커스국가로 초청되었다. 이외에도 2005년은 ‘한국의 해’로 4월 산자부 장관은 30여 개의 중소기업 소위 ‘테크노 캐러반’을 이끌고 베를린을 방문하여, 한·독 중소기업간의 활발한 기술수출입, 합작투자, OEM, 전략적 제휴, 제품수출, 공동연구개발 등 관련 상거래 상담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삼아, 한국의 현대 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부 차원에서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의 DMB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뮌헨의 ‘디지털 코리아 데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구촌 축제를 한국 제품 마케팅에 십분 활용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7년 7월 개시한 한-EU FTA 협상 또한 양국간 최대 통상 현안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EU 수입 관세인 10%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업체가 이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 독일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각각 1위 및 2위의 수출 품목인 점을 고려할 때, FTA 체결 시 국내 독일 자동차업체의 점유율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도에 들어서 Axel Springer사, SAT1 등 독일 대형미디어 그룹의 국내 온라인기업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8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게임 컨퍼런스에

서 국내 우수 온라인 개발 업체와 독일 미디어 그룹 간의 수출/투자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콘솔 게임이 강세인 독일에서는 향후 온라인 게임의 선진국인 한국과의 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영화가 유럽 주요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2004년을 기점으로 독일 영화 시장의 상영권 진출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개봉된 한국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사마리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그리고 이광호 감독의 <천년호> 등 4편이다.

**<표 3-22> 한국-독일 관계**

<b>체결 협정</b>	통상.우호항해 조약 (1883.11 체결) 민철훈 공사, 신임장 제정 (1901. 8) 외교관계 재개 (1955.12) 주독 대사관 설치 (1958. 8) 손원일 초대 주독대사 부임 (1958. 8.) Richard Hertz 초대 주한대사 부임 (1958.10) 이수혁 대사(18대) 신임장 제정 (2005. 6) Norbert Baas 대사(제12대) 신임장 제정 (2006. 9)
<b>교역규모</b>	-독일로의 수출 : US\$ 103억 8,000만 -독일에서의 수입 : US\$ 122억 7,000만 (2007년 11월 기준)
<b>교역품</b>	- 독일로의 수출 :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기기,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금속공작기기 등 - 독일에서의 수입 :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요소, 반도체,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 분석기, 기타 화학 공업 제품, 기타 기계류 등
<b>교민</b>	약 28,500여 명 (독일 국적 취득자 6,800여 명)

자료원: 독일 연방 통계청, 독일 연방 은행, 독일 연방 정부; KOTRA 2008.04 재인용

독일은 2007년7월 기준, 한국의 제5위 수출국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순)이며, 한국의 제5위 수입국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UAE순)이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한국의 제1위 수입국이자 수출국이다.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대로 독일로의 수출은 지속 증가세를 타다가, 2006년도에 소량 감소했다. 이는 2003년 - 2005년 기간 동안 한국의 수출 급증세로 인한 반작용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에 들어, 독일의 경기 호황으로 한국의 대 독일 수출 및 수입 모두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다. 2007년 11월 기준, 한국의 대 독일 수출은 104억불을, 대 독일 수입은 123억불을 기록, 227억불 규모의 교역을 기록했다.

품목 별 대 독일 수출의 경우, 선박, 자동차, 영상기기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무선통신 기기 및 평판디스플레이 등 일부 주력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2007년 11월 기준, 對 독일

주요 수출품으로는 선박,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순위다. 對 독일 주요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반도체. 원동기 순으로 기계 및 기계부품 분야가 주를 이룬다.

독일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11월 기준, 독일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입대상국으로 2006년 한 해 국내 총 수입 자동차 물량 중 독일산이 31.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23.3%, 미국이 6.2% 순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한-EU FTA 체결로 국내 자동차 수입관세인 8%가 철폐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자동차의 EU 수입 관세가 10%로 미국의 수입 관세율인 2%보다 8%나 높은 고 관세임을 고려할 때 한-EU FTA가 체결 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이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표 3-23> 한국-독일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11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독일 수출	5,603	8,334	10,304	10,056	10,382	10.5%
對 독일 수입	6,822	8,486	9,774	11,364	12,269	16.3%
무역수지	-1,219	-152	530	-1,308	-1,887	-

자료원: 관세청; KOTRA 2008.04 재인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유럽본부를 독일에 설립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왕래가 간편하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고급인력(영어 및 한국어 구사 인력 등)을 쉽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 독일투자는 1980년 이후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우리나라의 대 독일 투자 유형은 그린필드형 투자 보다는 현지지사 설립에 집중하고 있어 독일을 생산거점으로 보다는 판매거점으로서의 의미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 기업들의 독일투자는 기본적으로 현지 법인을 통한 판매망 구축, 마케팅과 기술 및 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은 전반적으로 활기를 보이고 있으나 현지공장 설립은 최근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독일이 판매시장, 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서는 좋은 지역이나 높은 인건비 및 세금 등으로 인해 생산공장 설립에는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도 본부는 독일에 두더라도 생산공장은 동구권 등에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의 대 독일 투자는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금융,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분야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 초기이기는 하나 금융업계의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표 3-24> 우리나라의 對獨일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No.	회사명	투자연도	진출형태	투자금액
1	기아자동차	1999	현지법인	96,685
2	삼성전자	1982	현지법인	96,117
3	현대중합상사	1987	현지법인	70,757
4	효성	1977	현지법인	61,373
5	삼성물산	1975	현지법인	57,004
6	삼성코닝	1994	현지법인	33,400
7	현대자동차	1992	현지법인, 연구소	31,361
8	삼성SDI	1992	현지법인	26,784
9	하이닉스	1988	현지법인	26,314
10	LG상사	1975	현지법인	11,437

자료원: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및 개별법인 접촉; KOTRA 2008.04 재인용

<표 3-25> 신규 진출 한국 기업 리스트

(단위: 천 달러)

No.	회사명	투자연도	진출형태	취급분야
1	글로벌비스	2006	판매 법인	자동차관련제품
2	대한통운	2006	서비스 법인	운송관련대리서비스
3	위니아 만도	2006	생산 법인	PAC, RAC
4	아리온테크놀로지	2006	연락사무소	Sat-Receiver
5	이노션월드와이드	2006	연락사무소	광고 기획 및 제작
6	현대제철	2007	지사	철강
7	옵코법인	2006	법인	평면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8	태화국제운송	2006	연락사무소	항공, 해상, 통관, 내륙운송

자료원: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보유자료 및 개별법인 접촉; KOTRA 2008.04 재인용

<표 3-26> 우리나라의 對독일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3분기)	누계
건수	14	17	17	21	36	105
금액	28	206	58	51	52	395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2;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독일의 투자유치 시스템

독일에서 외투기업은 국내기업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촉진 법과 같은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투자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나 현재 독일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 외국 인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독일의 고질병이었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투자 유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IPA인 Invest in Germany를 통한 연방 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과 각 지자체별 유치활동의 두 가지로 나뉜다.

○ Invest in Germany: 우리나라의 Invest Korea 와 같은 기구로 독일 내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전반을 통합. 조정한다. 독일 투자를 위한 일반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며 이를 외국기업 및 개인 그리고 지방 정부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지사 및 독일 해외 상회의 소(German Chambers of Commerce Abroad(Auslandshandelskammern, AHK)를 통해 잠재 투자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다.

○ 지자체: 각 지자체 또한 개별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며 지자체별 경제개발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Invest in Germany를 통해 투자 수요가 접수될 경우 Invest in Germany는 가장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 연락하고 지자체는 투자자의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투자 유치 활동은 독일 경제부 및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이 상호 연계하거나 독자 적으로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부 내에는 외국투자정보 안내 센터가 있고 각 주별로 주정부 또는 경제개발 공사나 관련 투자 진흥 기관들이 투자 유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방 경제부는 지금까지 연방 정부, 주정부, 경제개발 공사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던 투자 유치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2003년도에 우리나라 Invest KOREA에 해당하는 투자진흥기관(IPA)인 Invest in

Germany를 설립하였으며 올해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ICC(The New German Länder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가 올 해 Invest in Germany를 통합, 독일 전체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투자 희망자 지원 수준에서 벗어나 잠재 투자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나) 투자 허가, 감독 기관

독일은 기업 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허가, 감독 기관은 없다. 따라서 독일에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 관청의 기업과 (Gewerbeamt)에 정관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된다.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기업 과에서 지역 관할 법원(Amtsgericht)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으로도 등록해 준다. 그러나 금융, 보험 등의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에 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행정조직은 연방 정부-주정부-지역 관청 (대도시는 시청) 구역 관청으로 크게 구분 되는데, 투자나 기업 설립 등의 경우에는 구역 관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지역 관청의 관할 범위는 우리나라의 '면' 정도에 해당하며, 구역 관청의 관할 지역은 우리나라의 읍 단위 정도의 규모이다.

## 다) 투자 제한 분야

공식적으로 독일 투자 시 공식적인 제한분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원칙적으로는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 시 사전 승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독과점 위반 여부

시장독점을 막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독일기업 인수 및 투자 시에 전체 시장 점유율이 50% 를 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Bundeskartellamt(독일 카르텔 연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박, 환경 오염, 국방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

독일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방 및 금융,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시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제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보험업
- 은행업
- 부동산 중개소 및 브로커
- 국방 및 안전관련 산업분야
- 도박업

○ 전당포업 또는 경매

**라) 투자 인센티브**

근본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적용을 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우대 제도는 없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중요성과 국내 투자 진흥을 위하여 독일연방정부는 2002년부터 40%대의 법인세율을 25%로 인하 하였으며, 2008년부터 15% 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방 경제개발 공사 등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주재원 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취득에 유리한 정보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독일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인센티브 패키지를 운영 중이며, 혜택은 외투기업 및 독일기업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패키지에 따른 최대 지원 정도는 대기업의 경우 30%, 중기업의 경우 40% 이며 소기업의 경우 최대 50% 정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 대출 형태의 지원까지 포함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25% 정도의 투자금만 가지고 독일(구 동독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Investment Allowance 와 Investment Grant 를 들 수 있다. Investment Allowance는 구 동독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원제도이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 12.5 %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nvestment Grant 의 경우 동서독 지역 관계 없이 EU 의 규제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시행되는 지원 제도이다. 두 제도를 포함한 인센티브 패키지에 따른 지원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7> 독일 내 투자시 보조금 제도**

(단위: %)

구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A지역	50%	40%	30%
Region in transition	50%(2010년까지) 40%(2011년부터)	40%(2010년까지) 30%(2011년부터)	30%(2010년까지) 20%(2011년부터)
C 지역	35%	25%	40%(2010년까지) 30%(2011부터)
D 지역	15%	7.5%	7.5% 최대 200.00 EUR까지 3년 이내
C/D 지역	35%/15%	25%/7.5%	15% 최대 200.00 EUR까지 3년 이내
E 지역	특별한 인센티브 없다		

자료원: 독일 투자청(Invest In Germany) 및 무역관 자체정보, KPMG 자료 인용

○ A 지역: Regions in Transition 및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지역

- Regions in Transition 지역:
  - 울젠(Uelzen), Lüchow-Dannenberg,
  -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지역: Havelland, Potsdam, Potsdam-Mittelmark,
  - Brandenburg, Teltow-Fläming, Dahme-Spreewald, Cottbus, Spree-Neisse, Ober-Spreewald-Lausitz, Elbe-Elster
  - 작센-안할트 및 작센 주 지역: Mansfelder Land, Sangerhausen, Saalkreis, Halle, Merseburg
  - 니더작센 및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지역,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 라인란
  - Querfurt, Weißenfels, Burgenlandkreis, Leipziger Land, Leipzig, Muldentalkreis, Döbeln, Torgau-Oschatz, Delitzsch
- C 지역(동독 지역 및 구 서독 지역 중 산업의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곳)
  - 트팔츠/자알란트 지역, 바이에른 지역 등
- D 지역(동독 및 서독지역 중 인프라 구축이 C 지역 보다는 나으나 아직 미흡한 곳)
  -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지역,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 바이에른 지역 중 일부 도시
- C/D 지역: Lübeck, Berlin, Göttingen, Neustadt, Weiden
- E 지역: 구 동서독의 경계였던 지역(Herzogtum Lauenburg, Gifhorn, Wolfenbüttel, Hersfeld-Rotenburg, Fulda, Rhön-Grabfeld, Hassberge 등)

**<표 3-28> 독일 중기업 및 소기업의 구분**

구분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규모
중기업	250인 미만	5천만 유로 이하	4천 3백만 유로 이하
소기업	50인 미만	1천만 유로 이하	천만 유로 이하

자료원: 독일 투자청(Invest In Germany) 및 무역관 자체정보, KPMG 자료 인용

그러나 독일의 투자지원 제도는 각 주별로 매우 상이하며 상기 지역 구분도 동일 주 내에서 도시별로 달라지는 등 매우 복잡하게 적용된다. 일부 주의 경우 투자 전에 기업과 지방 정부간 협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 및 논의가 필요하다.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지사 설립

독일 내 지사 설립

○ 외국 주식회사가 독일 내 지사 설립 시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지사 설립 및 연락사무소 설립 시에 법원의 등기는 필요하다.

○ 그러나 지사는 독일 내에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사 설립 전에 납세의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사는 '법 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장 외에 별도 경영 조직이 있어야 한다' 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협의회는 합자회사의 경우와 같이 관련 노동법 규정에 의거 하여 인정되며, 주로 회사 경영상의 조언을 구한다든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 설립 절차

○ 외국기업의 독일 지사 설립 시에 특별한 사전허가 절차는 없다. 지사는 영업 프로필 없이도 비독립적 형태 또는 독립적인 형태로 활동할 수 있다. 비독립적인 지사는 연락 사무소 또는 소형의 판매사무소이며,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이와 달리 소정의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 독일에 설립된 외국모기업의 지사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지사장을 선임한 후, 모기업을 대신해 직접 거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사의 활동은 모기업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 외국기업의 지사는 관할지역의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모기업의 설립 인정서와 같은 몇 가지 서류가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을 한 경우, 독일 주재 공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지사 경영 관련 정보

##### ○ 영업행위

- 본사를 대신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독자적인 영수증 발급 혹은 자금수령은 본사(모기업)가 직접 하여야 한다.

##### ○ 운영경비

- 지사 운영경비는 본사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일부 지사의 경우에는 지출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받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환급에 대한 법적 권리 존재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정되므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 ○ 직원비자

- 2005년 비자협정 발효 후 원칙적으로 비자취득은 현지(독일 내) 외국인 청에서 발급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오는 것도 고려 할 만하다.

##### ○ 파견직원 소득세 납부

- 파견직원의 경우 현지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02.10월 한-독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사회보장제 면제 협정에 의해 사회보장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절차

- 지사설립 지역(지사 소재지)시청에 신고(Gewerbeanmeldung) 의무가 있다. 신청서는 설립 예정 관할지역 소재 시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관련서류

-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회사정관, 서울본사 등기부등본, 이사회 명단, 자본금, 회사소재지, 현지파견자 인적 사항 등 이며, 공증이 필요하다.

### 나) 연락사무소 설립

□ 연락사무소 설립

○ 연락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할 수 없고, 단지 광고업무 또는 정보 수집 및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회계장부의 의무는 없다.

□ 사무소 설립 필요서류

- 한국에 회사가 존재함을 증명; 설립증명서 및 법원의 등기자료
- 필요 시 영업활동 허가증
- 필요 시 대표위임장

### 마. 공장설립

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투자대상 지역 관할 관청 기업담당 부서(Gewerbeamt)에 투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회사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 필요한 경우 기업과에서 확인 가능
- 최소 납입 자본금 (25,000유로) 증명서 - 유한책임회사 이상 규모의 법인 설립 시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 관할 법원(Handelsregistergericht 혹은 Amtsgericht)에 상업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 투자신청 후 관할지역 기업담당부서로부터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관사무서(Finanzamt), 산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주 통계청(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조합 (Handwerkskammer), 상공회의소(IHK) 등에 자동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성을 위해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바. 부동산 취득

부동산 취득절차

원 소유주와 매매계약 체결-매매대금지불-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관할지역 등기소(Grundbuchamt)의 등기부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완료된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내, 외국인의 구분이 없다.

다만, 취득대상 부동산의 법적 하자 및 행정 규제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에는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고, 도시계획에 따라 부동산 사용목적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근거법률인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의 시행세칙은 각 기초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사. 건축 및 관련허가

건축감독(Bauaufsicht)

헷센(Hessen)주의 경우 헷센 주 건설법(Hessische Bauordnung)을 통해 부지, 시공 등에 대한 일반조건(도로인접간격, 비상계단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 소방규정, 주차장 규정, 상가규정, 빌딩규정에 관한 시행령이 있다.

담당 관청

헷센 주의 경우 37개의 기초 지자체청이 담당관청으로 있다. 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시청 제4국인 도시계획국의 건축 감독과가 담당관청이다. 헷센주에는 상위 감독관청으로서 Darmstadt, Giessen 및 Kassel에 각각 1개의 정청이 있다. 정청은 지방 주와 기초 지자체 중간에 있는 기구로서 각각 1개의 구(Regierungsbezirk)를 관할하고 있다. 헷센주의 최고 감독기관은 주 정부 내무성 건설국이다.

건축허가 신청

담당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에는 설계도와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건물높이, 상하수도 영향, 대기오염, 대지 형질변경 등을 검토하며, 연방 배출물 규제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및 사용 용도 시행령 (Baunutzungsverordnung)을 적용, 검토한다. 관청은 필요 시 TUEV 검사를 의뢰한다.

건축계획 입안에서 허가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되며, 건축허가 절차 및 초기 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임대공장 또는 지자체에 의해 기 조성된 공업 단지 또는 상공회의소의 창업보육단지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공장의 생산시설 설치허가: 건축허가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헷센 주의 경우, 담당 관청은 건축허가 담당관청과 동일하다. 허가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 □ 참조사항

지역에 따라 건축 및 관련 허가 절차에 차이가 있다. 헷센주의 경우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 하나 바이에른 주의 경우 건축보전법을 적용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투자 시 토지의 장기 임대 등 관련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사전에 지방 정부 또는 투자유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기 절차 진행 시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인센티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 현지법인 설립

○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외국인이 사전허가 또는 신고 없이 투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체류허가증 및 노동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 독일의 대표적인 법인은 크게 AG(주식회사) 및 GmbH(유한회사)로 구분되며, 두 법인 형태에 해당되는 회사는 총 95% 정도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인 회사 및 파트너쉽 형태(합명, 합자 등)의 회사가 존재한다

○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 독일 대기업 다수가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로서 최소 자본금은 50,000유로이다. 현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할 시에는 총 자본금의 25%만 예치하면 가능하다. 주식의 이동이 자유롭고 주식상장이 용이한 형태의 법인이다.

○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 mit begrenzter Haftung)

- 대부분의 독일 중소기업 및 일부 대기업이 선택하고 있는 형태로,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 예치 시에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25%의 금액만 예치하면 된다.

○ 합자회사(KG)

표 1명(limited partne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우리 상법의 무한 책임사원)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우리 상법의 유한책임사원) 형태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 가능.

○ 2008년 주요 변경사항

- 유한회사의 설립 자본금 최소한도를 10,000 유로로 인하하고, 설립 당시 자본금이 없더라도 추후 잉여금의 자본적립을 통해 조달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또한 공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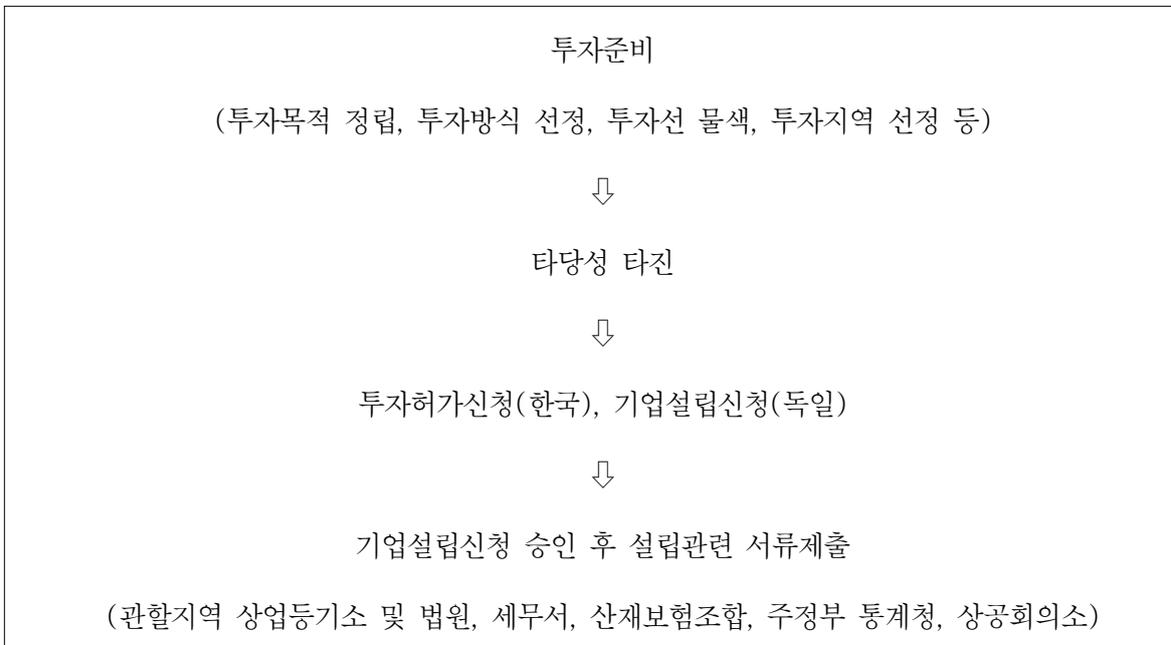
나. 법인 설립 절차

□ 법인설립 필요서류

- 회사설립 정관 (Gesellschaftsvertrag) 및 공증서
-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등
- 최소 납입 자본금(EURO 25,000) 납입 증명서
- 필요 시 대표위임장

□ 법인 신청 절차

○ 법인 설립 신청 기관은 투자대상 지역의 관할 관청의 기업과 (Gewerbeamt)이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상업등기(Handelsregister) 절차

○ 관할 법원 등록: 해당지역 관할 법원(Handelsregistergericht/Amtsgericht)이며 2007 년부터 전자적 등기도 가능([www.unternehmensregister.de](http://www.unternehmensregister.de)).

○ 등기 완료 후 연방관보에 게재

- 투자신청 시 기업과의 담당자에게 동 등기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재원 사무소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동 등기가 필요 없다.

○ 등기 비용: 개인 및 파트너쉽 형태 250 유로, 유한회사 400 유로, 주식회사 500 유로 (최소 비용, 공증비용 별도)

□ 유관기관 통보 절차

○ 투자 신청 후 관할 기업과로부터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각 기관들에게 통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소요기간 단축이나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보 필요 기관: 세무서(Finanzamt), 산재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 주정부 통계청(Statistische Landesamt), 수공업자조합(Handwerkskammer), 상공회의소(IHK)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가) 중앙기관

○ Invest in Germany

- 주소: Anna-Louisa-Karsch-Strasse 2,10178 Berlin
- 전화: +49-(0)30-20657-0, 팩스: +49-(0)30-20657-111
- E-Mail: office@invest-in-germany.com
- 홈페이지: www.invest-in-germany.de

#### 나) 지방정부 기관(하기 리스트 외 다수)

○ 프랑크푸르트 경제개발 공사 (Wirtschaftsfoerderung Frankfurt)

- 주소: Hanauer Landstr. 182, 60314 Frankfurt/M, Germany
- 전화: +49 69 212 36 209
- 팩스: +49 69 212 36 230
- 홈페이지: www.frankfurt-business.de
- 기관개요: 프랑크푸르트의 경제개발을 위한 기관으로 파트너 발굴도 한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국제경제협력청 (Baden-Wuerttemberg Agency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Ltd. (GWZ))

- 주소: Willi-Bleicher-Str. 19, 70174 Stuttgart, Germany
- 전화: +49 711 22787
- 팩스: +49 711 22787
- 홈페이지: www.bw-invest.de
- 기관개요: 지방정부 투자담당 부서

○ Invest in Bavaria

- 주소: Prinzregentenstr. 28, 80538 Muenchen

- 전화: +49 89 2162-2642

- 팩스: +49 89 2162-2803

- 홈페이지: [www.invest-in-bavaria.de](http://www.invest-in-bavaria.de)(한국어 정보 제공)

- 기관개요: 바이에른주 투자담당 기관

○ NRW. Invest GmbH

- 주소: Voelklingerstr. 4, 40219 Duesseldorf

- 전화: +49 211 13000-0

- 팩스: +49 211 13000-154

- 홈페이지: [www.nrwinvest.com](http://www.nrwinvest.com)

- 기관개요: NRW 지역 투자담당 기관

자료원: 독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hk.de](http://www.ihk.de)), Invest in Germany 홈페이지 및 무역관 보유 자료

#### 4) 투자입지여건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FEZ(경제자유구역청)이나 FTZ(자유무역지구)에 해당하는 특별경제 구역은 없다. 다만 지역 또는 산업별로 지원정책이 있으나 회사의 진출방식 또는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여러 곳에 문의하여 세밀하게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 가) 투자진출지역의 신중한 결정

###### 1) 투자진출 목적의 명확화

현지진출 목적을 정보수집용 연락사무소 설치, 상품의 판매유통, 현지생산 및 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지역, 투자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 2) 지역별 각종 투자지원 정책 및 혜택 비교조사

독일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각 지방정부들의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범위가 상이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지역별로 상이한 바, 이러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각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기관을 접촉하면 상세한 정보와 조언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나) 구(舊) 동독지역 투자

### 1) 지역 특징 및 지원제도

구 동독 지역의 개발을 위해 독일 정부에서는 구 동독 지역 투자 시에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법령 INVZULG 2007을 통하여 투자보조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장지대의 경우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 동독 지역에 투자한 기업의 특징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연구개발 센터가 다수를 차지하며,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높은 자동화(automization)로 고용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구 동독 지역에만 적용되는 투자인센티브로는 Investment Allowance 가 있다.

- 대기업 진출 시: 총 투자액의 최대 12.5% 지원
- 중소기업 진출 시: 총 투자액의 최대 25% 지원
-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 시: 총 투자액의 최대 12.5% 지원

여기에 다른 투자지원제도까지 활용할 경우 타 소기업의 경우 최대 5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경우 최소 5년간 지원 대상 자산이 동 지역 내에 있어야 하는 등의 제약도 있다.

### 2) 동독 지역 투자 시 유의점

무엇보다 구 서독 지역에 비해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 통독 이후 천문학적인 금액이 구 동독 지역 개발을 위해 쓰여 졌지만 현재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 층이 대거 구 서독 지역으로 빠져 나가면서 지역 자체가 쇠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강해 외국인 특히 동양인의 경우 생활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다.

삼성전자에서 브라운관 공장을 설립한 바 있으나 현재는 연구소 및 일부 시설만 남기고 폴란드로 철수한 상태이다. 구 동독 지역 투자 시에는 해당 사업의 시장성, 독일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다) 독일의 지역별 투자여건

### 1) 바덴-뷔르템베르크

- 면 적: 35,752km<sup>2</sup>
- 인 구: 1,071만7천명(외국인 128만1천명 /12%)
- 주 도: 슈투트가르트
- 주요기관: 칼스루에에 독일 최고의 사법기관인 연방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 소재
- 주요산업: 자동차와 마이크로칩(Benz, Bosch, IBM), 정유산업(Karlsruhe), 버스 및 인쇄기계체

조, 서비스산업 독일의 연방 주 가운데 최강의 경제수준 자랑

○ 특기사항: 칼스루에의 핵 연구 센터, 하이델베르크의 독일 암 연구 센터, 다수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아홉 개의 종합 대학 등이 있다.

## 2) 바이에른

○ 면 적: 70,550km<sup>2</sup>

○ 인 구: 1,244만3천명(외국인 117만5천명/9.4%)

○ 주 도: 뮌헨

○ 주요산업: 관광(알프스의 산악지대, 구릉지대, 호수, 독일 최초의 국립공원),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 전자 및 전기, 보험, 출판, 기계제조 및 완구산업(뉘렌베르크), 섬유 산업, 자동차산업(아우구스부르크), 농업, 맥주산업

○ 주요 외국 기업: Denso (일본), Lear (미국), Johnson Controls (미국), Faurecia (프랑스)

○ 특기사항: 독일 최대 면적의 주, 종합대학 및 다수의 전문대학 소재,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Oktoberfest” 가 열리는 도시

## 3) 베를린

○ 면 적: 883km<sup>2</sup>

○ 인 구: 338만7천명(외국인 45만4천명/13.4%)

○ 주 도: 베를린

○ 주요기관: 연방의회, 연방행정부

○ 주요산업: 기계제조, 식품 및 주류산업, 제약산업, 섬유산업

○ 특기사항

- 독일의 수도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 수많은 극장과 박물관, 마이트너 원자물리학 연구소, 헤르츠 통신기술연구소, 프로이센 문화재단 소재

- 쇼핑의 중심 도시. 독일에서는 드물게 평일에는 제한 없이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가능

## 4) 브란덴부르크

○ 면 적: 29,476km<sup>2</sup>

○ 인 구: 256만7천명(외국인 6만7천명/2.6%)

○ 주 도: 포츠담

○ 주요산업: 농업, 강철, 갈탄, 기계제조 및 자동차 산업(벤츠의 화물차 조립 공장), 전자공학, 기계산업 및 서비스 산업

○ 주요 외국기업: UHY Deutschland AG (회계법인, 영국), Rolls Royce(영국), ebay (미국), 이외 주요 국제 호텔 등(예: Holiday Inn, Mercure Hotel)

○ 특기사항: 과거 농업 및 철강 등을 생산하는 도시였으나 최근 서비스 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과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산업이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5) 브레멘

○ 면 적: 404km<sup>2</sup>

○ 인 구: 66만3천명 (외국인 8만4천명/12.8%)

○ 주 도: 브레멘

○ 주요산업: 해상교통 및 조선, 항공 및 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커피

○ 주요 외국 기업: 에어버스, Maersk Logistics 등 국제운송 업체

○ 특기사항

- 두 개의 도시(Bremen, Bremerhaven)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연방주 구성, 면적과 인구 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작은 주

- 지역 GDP의 1/3 이 해상운송 및 대외교역에 의해 발생할 정도로 물류가 발달

#### 6) 함부르크

○ 면 적: 755km<sup>2</sup>

○ 인 구: 173만4천명(외국인 24만4천명/14.1%)

○ 주요기관: 세계각국의 영사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도시

○ 주요산업: 해외무역 및 교통의 중심지, 조선소, 정유소,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산업, 정밀산업, 화학공업, 북부 독일 금융 및 서비스의 중심지, 언론도시

○ 주요 외국 기업: 쉘, BP 등

○ 특기사항

-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및 금융이 산업의 중심

- 유럽에서 2번째,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컨테이너항. 중부와 북부 유럽의 물류 중심지

## 7) 헤센

- 면 적: 21,114 km<sup>2</sup>
- 인 구: 609만7천명(외국인 69만4천명/11.4%)
- 주 도: 비스바덴
- 주요기관: 유럽중앙은행(ECB, 프랑크푸르트), 연방은행 본점 (프랑크푸르트)
- 주요산업: 금융, 박람회 중심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중심지, 기계제조, 기관차 및 객화차제조, 자동차제조(Hoechst, Opel), 가죽산업(Offenbach), 광학산업(Wetzlar)
- 주요 외국 기업: Canon, General Motors, ITT, 펩시 콜라, Honeywell, 모토로라, Proctor&Gamble, Adam Opel AG, 삼성, 다우 코닝, DyStar, Kyorin Phamaceutical (Japan), 은행 (예: 유럽 중앙은행, Cr dit Suisse), 보험사, 회계법인(예: Ernst & Young 등)
- 특기사항: 유럽 최대의 화물항공사 두 번째로 큰 여객항공인 프랑크푸르트공항소재 괴테의 탄생지(프랑크푸르트), 대학도시(Marburg, Giessen), 독일의 FDI 유입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

## 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 면 적: 23,173km<sup>2</sup>
- 인 구: 171만9천명(외국인 3만9천명/2.3%)
- 주 도: 슈베린
- 주요산업: 농업, 목축업, 관광업
- 주요 외국 기업: Sakthi Group (인도)
- 특기사항: 1,000개의 호수를 가진 주

## 9) 니더작센

- 면 적: 47,616km<sup>2</sup>
- 인 구: 800만 명(외국인 53만6천명/6.7%)
- 주 도: 하노버
- 주요 기관: 연방 물리기술 센터
- 주요산업: 식품업(베이컨, 꿀), 광산업(철광석, 천연가스), 박람회, 자동차산업 (Volkswagen)
- 주요 외국 기업: GE Money Service (미국), Nedexco (네덜란드), Tulip Danish Crown (덴마크)

○ 특기사항: 하노버를 중심으로 전시 산업도 발달

####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면 적: 34,082km<sup>2</sup>

○ 인 구: 1,807만5천명(외국인 196만4천명/10.8%)

○ 주 도: 뒤셀도르프

○ 주요기관: 통독 전 연방공화국의 수도 소재지 (본)

○ 주요산업: 에너지산업 (31개 발전소 소재), 엔진, 소재산업, 양조, 석탄 및 철강, 화학, 섬유 등

○ 주요 외국 기업: 포트, 오펔, ZTE (일본), UPS (미국)

○ 특기사항: 독일의 연방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유럽 최고의 인구 밀집지역

#### 11) 라인란트-팔츠

○ 면 적: 19,847km<sup>2</sup>

○ 인 구: 406만1천명(외국인 31만1천명/7.7%)

○ 주 도: 마인츠

○ 주요 외국 기업: DaimlerChrysler, 오펔

○ 주요산업: 화학 및 제약 산업 (BASF), 포도주, 자동차 부품

○ 특기사항: 구텐베르트 인쇄박물관 소재

#### 12) 자알란트

○ 면 적: 2,568km<sup>2</sup>

○ 인 구: 105만6천명(외국인 8만8천명/8.4%)

○ 주 도: 자아브뤼켄

○ 주요산업: 박람회산업, 유리 및 도자기 제조, 기계, 금속가공업

○ 주요 외국 기업 : 포트, Terex (미국), Amer Sports (핀란드)

○ 특기사항: 종합대학 집중, 심포지움의 도시

#### 13) 작센

- 면 적: 18,413km<sup>2</sup>
- 인 구: 429만6천명(외국인 11만8천명/2.8%)
- 주 도: 드레스덴
- 주요산업: 박람회산업, 도자기, 전자공업, 자동차(폭스바겐, 폴로), 출판산업(라이프찌히)
- 주요외국기업: AMD (미국), Amazon (미국), Shell Solar (네덜란드), Hitachi Automotive Systems Europe (일본), Transcom (룩셈부르크), Magnetto Automotive (이태리), Wicor Holding (스위스)
- 특기사항: 구 동독지역이면서도 외자 유치에 활발하고 산업이 발달

#### 14) 작센-안할트

- 면 적: 20,446km<sup>2</sup>
- 인 구: 249만4천명(외국인 4만7천명/1.9%)
- 주 도: 막데부르크
- 주요산업: 농업(밀, 사탕무, 채소), 화학공업, 생명공학
- 주요 외국기업: Solvay Chemicals (벨기에), Polytec Plastics (호주), Roba Corrugated (스위스), Coil Aluminium (벨기에)
- 특기사항: 헨텔의 출생지

#### 15) 쉘레스비히-홀슈타인

- 면 적: 15,761km<sup>2</sup>
- 인 구: 282만8천명(외국인 15만1천명/5.3%)
- 주 도: 키일
- 주요산업: 관광업, 농업, 해운 산업 등
- 주요 외국 기업: Sysmex Corporation (일본), Vishay (미국)

#### 16) 튀링엔

- 면 적: 16,171km<sup>2</sup>
- 인 구: 235만5천명(외국인 4만7천명/2.0%)
- 주 도: 에어후르트

○ 주요산업: 공작기계, 정밀 및 광학(Jena, Zeiss), 자동차(Opel), 전기 및 전자(Bosch), 농업(보리, 밀, 감자, 사탕무, 과일), 유리, 장난감

○ 주요 외국기업: Sandoz (스위스), BorgWarner Transmission (미국),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 Group Corporation(중국), TNT (네덜란드)

○ 특기사항: 다른 주에 비해 녹지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독일의 녹색 심장(German Green heartland)로 불리며, 문인들이 많이 살았다.

자료원: 독일투자청(Invest in Germany), 무역관 보유자료

## 5) 노무관리

### 가) 독일 노동법

독일의 노동법제는 매우 엄격하며, 다수의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해고가 용이하지 않기로 알려져 있으며, 해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높기 때문에 고용 관계에 투입되는 회사의 비용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독일의 노동법은 민법 내에서도 독자적 성격을 띠는 특수분야이다.

### 나) 독일의 노조

독일에서는 Kuendigungsschutz(해고보호법)등과 같은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법 이있어, 고용인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담당기관으로는 산 별 노조가 있으며,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DGB(Deutsche Gewerkschaftsbund)라는 독일노조연방이 최고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에는 IG METALL, VERDI, IG CHEMIE, IG BAU 등과 같은 산별 노조가 속해 있다. 근무조건 및 임금인상관련 노조협상은 각 산 별 노조가 경영자협회(BDA)의 각 분과 와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소위 Tarifvertrag (의역: 산별 노조협의회약서)을 통하여 각 산업별 분과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의 개별기업 노조는 Gewerkschaft가 아닌 Betriebsrat로 불리고 있으며,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Betriebsrat를 구성할 수 있다. 각 기업별 노조(Betriebsrat)는 자신의 협상에 유리한 산 별 노조를 선택할 수 있다.

### 다) 노동관련 제도

#### 1) 노동조건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허가(Arbeitsgenehmigung) 및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가 필수적이다. 독일인 및 EU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별도의 노동허가가 필요 없고, 체류허가도 단기간에 부여되는 특권이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타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신청절차 및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문제 타계를 위해 독일 정부는 보다 완화된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07년 10월부터 중-동 부 유럽 출신의 기계, 자동차 및 전기 부분 노동자들은 독일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학생들도 졸업 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 근무시간

일반 직장의 노동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근무하며,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일찍 종료하는 회사가 많다.

일반 관공서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12시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독일 직장의 경우, 우리나라, 미국과 같이 일괄적인 노동법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 별 노조 별로 근무시간을 협상하고 있다. 독일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정도이다.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침체 및 재정적자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연장되는 분위기이며, 일부 주 가운데 특히 헤센 주의 공무원들은 주당 41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독일의 영업시간 규제는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관련 권한은 각 지방 정부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각 주마다 영업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몇몇 대도시의 경우 상점 및 백화점들이 평일 및 토요일에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작센-안할트 주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영업을 가능하다. 점점 많은 주들이 이런 경향을 따르고 있다.

## 3) 임금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6년도 독일 남성 및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각각 3,127 유로 및 2,483 유로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급여에 차이가 있는 편이다.

월평균 급여는 업종별로도 편차가 심해 남성근로자 기준으로 제조업종은 2,596유로인데 반해, 서비스 업종은 3,771 유로이다. 여성의 경우도 일반 비서직은 초봉이 월 2천 유로부터 시작하고, 중간 관리자의 경우 3천 유로 이상이다.

통독 이후에도 여전히 구서독과 구동독의 급여차이는 존재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구동독 지역의 근로자들은 구서독 지역 임금의 80% 수준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독 직후의 40%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이며,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양 지역의 노동자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연봉의 5-15% 또는 월급의 100% 정도이며, 대부분 연말에 지급하므로 독일에서는 이를 13번째 급여라고도 부른다. 이 밖에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비(Urloabsgeld) 또는 추

가 보너스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고용주가 반드시 크리스마스 보너스 또는 휴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회사의 정책(betriebliche Übung)으로 보아 다음 해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대우의 원칙(Gleichbehandlungsgrundsatz)에 따라 임의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4) 휴가 및 병가

독일 노동자의 연차는 25일에서 30일 정도이며, 출산 휴가일수는 총 14주로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이다. 병가는 대부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지나치게 잦은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들도 환자의 요구 대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독일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5) 해고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해고보호법(Kündigungsschutzgesetz)에 따라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었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세가지 경우는 크게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해약,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유로 인한 해약 및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약으로 나뉜다.

최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신규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직원의 고용 및 해고가 용이해 지고 있다.

#### 6) 노동관련 통계

<표 3-29> 독일의 노동시장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용인구(1,000명)	38,752	38,917	38,330	38,910	40,231
실업률(%)	9.8	10.5	10.6	11.2	9.8
임금상승률(2000년=100)	105.7	108.0	109.5	110.7	120.1
주당 평균 근로시간(제조업)	38.2	38.0	37.9	37.9	38.0

자료원: 연방 고용주협회([www.bda.online.de](http://www.bda.online.de)), 독일노총([www.dgb.de](http://www.dgb.de)), 독일연방통계청([www.dstatistics.de](http://www.dstatistics.de))

### 라) 외국인의 채용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인은 노동 및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 EU 국가의 국민은 직업에 관계없이 독일 내 거주허가서 한 장으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그들을 독일시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처음에는 5년짜리 허가서를 발급해 주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 영구허가서를 발급해 준다.

EU 이외의 국가 출신 노동자는 독일로 입국하기 전에 본국 소재 독일 영사관에서 임시 체류허가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선 3개월짜리를 발급해 주는데 입국 후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

해 준다. 노동허가는 고용주를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며, 발급된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우리나라 포함)의 노동자의 경우는 별도의 허가 없이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노동허가 또한 경우에 따라 3년 단위로 갱신해 주기도 한다.

노동허가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고용관계가 변할 때는 재신청 해야 한다. 노동허가는 현지 노동청에 신청하며, 동 분야의 독일 국내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노동허가 취득이 어렵다.

#### 마) 노동관련 유의 사항

독일은 타 국가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이 강한 국가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가 몹시 어려우므로 채용 시 주의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또한 독일 노동자들은 노동법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므로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 6) 조세제도

#### 가) 조세 정책

독일의 기업 조세 부담률은 높은 편으로, 2007년 기준 독일의 법인세율(단순 법인세 뿐 거래세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의미)은 38.7%로 EU의 평균 31.7%를 훨씬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유럽 평균 법인세는 1% 인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1.2% 인상되었다. 외국 기업들은 독일에서 법인세 포함 총 41-4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41%, 벨기에의 40%, 프랑스의 36%, 네덜란드의 35%, 영국의 30%에 비해 턱 없이 높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독일 정부는 법인세율을 30% 이하로 낮출 계획을 발표한 바, 감세로 인한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2006년도까지 독일의 간접세(부가가치세)는 EU국가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16%로서 2007년 1월부터 EU 국가들 간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으로 인해 3% 높은 19%로 인상되었다.

한편 구동독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보조금 특별 공제와 영업세 및 재산세 면제조치 등 다양한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구동독 지역 5개 주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독일 국내업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물론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경계할 수 있지만 이는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반감을 갖지는 않는다.

#### 나) 세제 개황

독일의 세금 적용은 연간 5만 유로 정도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미혼여부, 자녀유무 및 연

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체소득의 평균적으로 35~50%의 직. 간접세(소득세, 연금, 건강보험 등)를 지출하고 있으며, 관련 세제 별 개황은 다음과 같다.

독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각 주 공통으로 법인세, 영업세(거래세), 재산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타 연방세로서 보험세, 담뱃세, 석유세 등이 간접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세로서는 자동차세 및 토지취득세가 있다. 그 외에도 관세 및 지자체세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배당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또한 귀속방식이 적용된다. 법인세는 과세대상 소득의 최저 23.9%, 최고 53%이며, 주주배당금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영업세의 경우도 일종의 법인세로 볼 수 있으며, 각 주, 도시마다 영업세의 기준이 상이하러 차이가 있다.

한편,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Agenda 2010 정책에 의거, 소득세율 인하, 기업의 사회 비용(연금, 실업급여 등) 절감 등이 정책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가세의 경우, 서적과 식료품(음료수 제외)에 부가되는 7%의 부가세는 변동이 없으나, 2007년 1월을 기점으로 부가세가 현행 16%에서 19%로 인상되었다.

#### 다) 근로자 사회보장

독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부대비용이라고도 불리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5대 사회보장제도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및 부양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각각 50%를 분담해야 한다. 월급여 대비 평균적으로 연금보험은 19.9%, 실업보험 4.2% 및 부양보험은 1.7% 정도이며, 의료보험은 공사보험에 따라 상이하다.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Agenda 2010을 통해 실업급여 기간 단축, 실업수당과 연금제도의 통합,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물론 기업의 세부담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2008년부터 일련의 조세제도 개혁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먼저 실업보험이 급여대비 3.3%로 낮아진다.

#### 라) 2008년도 변경 주요 조세제도

##### ○ 법인세 인하

- 법인세율이 15% 인하(solidarity surcharge 5.5% 별도)되어 총 법인세율은 15.8%로 낮아지고 영업세(거래세)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부담률은 약 29.8% 정도로 추정

- 외국법인의 독일 원천 유동자산의 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소득에 대한

- 원천징수세율도 동 비율로 감소
  -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 도입
- 연간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Dpreciation, Amortization)의 30% 까지만 손금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이월. 단 예외 규정이 존재
  - 영업세(거래세)의 손금 산입 제한
- 영업세 납부 금액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마)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오로지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하여 과세된다. 원천소득에 근거한 납세로 인해, 배당금이나 로얄티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으로 인한 세무책임이, 국내 납부법인이 독일 세무당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자소득세로 완전히 해결된다.

조세협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적용되는 곳에는 세무 부담이 없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사무소의 피고용인은 연락이나 기타 부수적인 기능에 업무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시켜야 하고,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로 간주될만한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독일의 외환관리 정책

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1999년 1월부터 가입국에 대한 외환관리를 맡고 있어, 독일 정부 별도의 외환관리 정책은 없다. 12개 Euro화 사용국의 외환관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주재하고 있는 ECB (European Central Bank)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총 12개국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협의체를 통하여 외환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유로화의 경우, 2007년 2분기 기준 1유로 = 평균 1.3 달러 이상으로 원화와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달러대비 유로화의 초강세로 인하여 원화 환율대비 유로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나) 과실 송금

독일은 해외로의 송금 또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의 경우, 외환경제규정 (AWV-Aussenwirtschaftsverordnung) 26조 신고관련 조항에 의해 1만2천5백 유로 이상의 해외 송금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독일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U 권역 내의 거래일 경우에는 5만 유로 이상을 그 보고 대상으로 한다. 동 보고는 원칙상 금융거래자가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를 대신한다. 보고양식은 독일 중앙은행이 제공하며 해외발 국내 입금인 경우와 해외향 송금인 경우에 대해 각각 Z4 와 Z1 서식을 사용 토록 되어 있다.

이 서식에는 송금계좌와 수금계좌 및 계좌 소유인의 이름과 주소, 송금 목적 등이 기재된다. 제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자금 및 해외 대출에 관한 자금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 입출금의 경우 독일 자금세탁 방지법에 의하면 1만5천 유로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권으로 입출금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동 입출금 인의 신분증을 확인 신분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는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다) 자금 조달

투자 기업들은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 설립 시 독일 은행의 평균 대출 이자는 4.5~10% 정도이다. 대출 이자는 각 개별 기업의 신용, 규모 및 자본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외국 기업의 경우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독일의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위치하는 업체에 대해 대출이자율 5.5%까지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입주하려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 8) 투자유의사항

독일에 지사 및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 업체에 문의한 결과 독일에서 사업 수행 시 하기의 애로 사항들을 답변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자 비용 또한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언어의 차이와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꼽혔다. 예컨대, 독일어나 독일 물정에 밝지 못하다 보니 여러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당하게 청구되는 비용이 사후 파악되는 경우도 언어적인 문제의 한 예에 해당된다.

독일의 근로자 중심의 근로법 또한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병가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원의 발병 시, 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병가 기간 동안 고용자 측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지 제도를 악용하여 병가 및 휴가가 남발되는 경우 난감하다고 한다.

한국으로의 송금 시 금융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체계적 송금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독일과 한국 본사 간의 대금 전달에 비용 부담이 있다고 한다. 독일에 여러 한국의 은행 지점들이 진출해 있으나, 이들의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독일 업체에서 한국으로 대금 송부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점으로 꼽혔다.

독일은 현재 EU 가입국으로 EU에서 결정한 각종 규제들이 독일에서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의 발효 시기 및 시행 방법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국 별로 다르고 통일성이 없어 독일에 관한 사항은 따로 확인해서 준비해야 하는 점도 번거로운 점으로 꼽혔다.

전체적으로 독일 바이어들이 품질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고 문화 상의 차이로 가끔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문의를 받은 한국 지, 상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독일에서의 사업에 별다른 어려움은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즉, 독일이 외국인만큼 한국과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 등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독일인들이 사업상 판단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3. 프랑스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프랑스 공화국(프랑스어: République française [repyblik-frãsez], 통용: 불란서(佛蘭西))은 서유럽의 본토와 여러 대륙에 걸쳐 있는 해외주와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프랑스 본토는 남북으로는 지중해에서 영국 해협과 북해까지, 동서로는 라인 강에서 대서양에 이른다. 그 지형적 모양으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종종 이 곳을 L'Hexagone(일명 육각형)이라고 부른다. 유럽 연합을 세울 때부터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이다(1966년 탈퇴, 1992년 재가입). 프랑스의 노동법은 만 16세 미만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표 3-30> 프랑스 일반 사항

국 명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위 치	유럽 중서부
면 적	549천km <sup>2</sup> (한반도 면적의 약 2.4배)
기 후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수 도	파리 (Paris)
인 구	6,319만 명 (본토 기준; 2006년 12월 기준)
주요 도시	Paris(215만 명), Lyon(126만 명), Marseille(111만 명)
민족(인종)	Gaul족(켈트족), 로마족, 노르만족, 프랑크족의 혼합
언 어	프랑스어
종 교	가톨릭(90%), 개신교(2%), 유대교(2%), 이슬람교(4%), 기타 (2%)
건국일(독립일)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 발발 일로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 이념으로 한 현재의 프랑스 탄생)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의 입헌 공화국

자료원: KOTRA, 2008.04

#### 나. 경제 개요

건전 경제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 경제 성장률(2.5%~3%)에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1.9%의 GDP 성장세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예산 적자 누적 및 이로 인한 공공 부채 증가가 다시 경제성장의 제동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2007년 1/4 분기 0.5% 성장률 기록 후 2/4분기 GDP 성장률이 0.3%에 그쳐 상반기 GDP 성장률은 1.3%에 그쳤다. 2/4 분기 GDP 저 성장(0.3%) 요인은 기업 및 공공투자 정체 및 수입급증(2.1%: GDP 기여도 -0.3%)에 기인한다.

기업투자 둔화 요인은 프랑스 기업 특히, 자동차 분야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극히 부진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6월 한 달 동안 250억 유로라는 10년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워 12개월 FDI 누계가 1288억 유로로 40% 증가했다. 프랑스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도 6월말 현재 12개월 누계로 20%가 증가한 764억 유로에 달했다. 상반기 GDP 성장의 0.3% 포인트 감소요인인 무역수지적자(139.3억 유로)악화 요인은 프랑스 기업의 영세성(90%가 10명 미만)으로 인한 수출 부진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한 국제 가격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프랑스 경제 지표**

<b>GDP</b>	1,868십억 유로 (2007년 / EIU통계)
<b>실질경제성장률</b>	1.9% (2007년 / EIU통계)
<b>1인당 GDP</b>	33,231유로 (2007년, EIU)
<b>실업률</b>	7.9% (2007년 9월말 기준)
<b>물가상승률</b>	2.4% (2007년 10월 기준)
<b>화폐단위</b>	유로 (Euro) (2002.1.1일부터 유럽13개국 단일 통화 본격 시행)
<b>환율</b>	US\$ 1 = 0.6528Euro (2008년3월 6일 기준) 1 EURO = US\$ 1.5319 (2008년3월 6일 기준) 1 EURO = 1,454.62 원 (2008년3월 6일 기준) 1 EURO = 6.55957 FFR (고정 환율; 프랑화의 유통은 유로화도입과 동시에 중단)
<b>산업구조</b>	농업 2.6%; 공업 29.2%(식료품 3.9%, 소비재 4.2%, 자동차2.9%, 설비자재 5.9%), 중간재 8.6%, 에너지 3.8%; 건설 6.2%; 상품서비스 48.1%; 행정서비스 13.7%(2006년)
<b>교역규모</b>	447,45 십억 유로(수입), 402.91 십억 유로(수출) (2007년 / EUROSTAT)
<b>교역품</b>	10대 수출품목: 자동차, 항공기, 의약품,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석유제품, 향수 및 화장품, 기초유기화학제품, 기초 플라스틱자재, 포도주 및 샴페인. 10대 수입품목: 원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항공기,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의약품, 철강제품, 컴퓨터 및 정보기기, 기초유기화학제품, 기초 플라스틱자재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통계청, OECD, Eurostat, EIU, NATIXIS; KOTRA 2008.04 재인용

프랑스 시장은 다음의 5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신중한 구매태도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과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한 세금징수로 중산층들도 구매 능력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 태도는 상당히 신중하며,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을 찾아 다니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여 상품의 가격 및 안전도, 친환경 제품 여부 등을 꼼꼼히 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2) 독창적인 디자인 선호

프랑스는 패션이 발달한 나라이며 항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량 다 품종이 거래되는 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바이어들은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선도하려는 모험 정신이 부족한 편이어서 여타 인근 국가에서 시장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쉽게 구매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바이어 설득 과정에서 타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는 것이 좋다.

## 3) 보수적인 거래관행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

프랑스 바이어들은 일단 거래처와 신용관계가 형성되면 쉽게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 보수 성향을 보였는데 최근 세계화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부터는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제는 거래 위험 부담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사라져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거래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새로운 프랑스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상호 신용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첫 거래 성공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사용설명서 불어로 명기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사용법이나 용도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 되어야 한다. 특히 식료품일 경우 프랑스어의 표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5) 수입 대금 결제

프랑스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은행 수수료가 높고 자금이 장기간 예치되어야 하는 L/C거래 보다는 T/T거래를 선호하며,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DA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첫 거래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안전한 L/C거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지 바이어의 대금 결제 관행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L/C이외의 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바이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불 수출이 최근5년간 84% 증가하는 등 교역량이 날로 증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한국의 24대 수출 시장에 불과하다('07년 10월 기준).

프랑스는 '05년 한국의 세계 21대 수출대상국이었었는데 '06년에 22대 및 2007년 10월말 현재 24위로 그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는 동 기간 중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아랍 에미리트 연합, 터키 및 핀란드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대불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데에 기인한 것과 금년도 대불 수출이 부진한 것에 기인한다.

**<표 3-32> 한국-프랑스 관계**

<b>체결 협정</b>	우호통상조약 체결로 최초의 외교관계 수립 1886. 6. 4 을사조약으로 인한 외교권 강제 박탈로 외교관계 일시 중단 1906.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재 수교 1949. 2.15 상표 협력 협정 1961. 2. 1 세관 협력 1963. 4. 1 특허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1963. 4.26 사증 면제 협정 1967. 4.12 문화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72.11.29 발효) 1968. 5. 8 한 불 민간 항공 협정 1974. 6. 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협정 1974.10.19 한 불 투자 보장 협정 1975. 1.22 국제 원자력 기구, 한 불간 안정 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 서명 발효 1975. 9.22 한 불 투자 보장(쌍무) 협정 서명 (77.12.8 서명, 79.2.1 발효) 1977.12. 8 한 불 이중과세 방지 협정 서명 1979. 6.19 한 불 어업 협정 서명 1980. 9.19 한 불 과학 기술 협력 협정 서명 (81.12.18 발효) 1981. 4. 4 한 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1981. 4. 4 한 불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1991. 4. 9 한 불 산업 협력 약정 체결 1993. 9.13 형사 사법 공조 조약 1995. 3. 2 한 불 환경 협력 약정 서명 1994. 3.28 한 불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체결 2000. 3. 6 청소년 교류에 관한 약정 체결 2002. 4.26 한 불 사회보장 협정 체결 2004.12. 6 한 불 사회보장 협정 발효 2007. 6. 1
<b>교역규모</b>	US\$ 3.415백만 (2006년 대 불 수출) US\$ 3.219백만 (2006년 대 불 수입)
<b>교역품</b>	휴대폰, 자동차, 선박(대불 수출) 전자 부품, 의약품, 화장품(대불 수입)
<b>교민</b>	1만 5천 여명 (파리 거주 교민 약 1만 5천명 - 2007년 12월 기준)

자료원: 독일 연방 통계청, 독일 연방 은행, 독일 연방 정부; KOTRA 2008.04 재인용

한국의 對 프랑스 수출증가율이 '04년 50.6% 급증한 이후 '05년 다소 주춤한 20.0%를 기록한 데 이어 '06년에는 7.7%의 증가율 기록했다. 또한 한국은 對 프랑스 교역에서 '03년까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04년부터 흑자로 전환 후 '05년에는 4억불을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06년에도 약 2억불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7년 10월말 현재 370백만 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년도 대불 무역 적자 요인은 지난 해 주종 수출품목이었던 선박의 대불 수출이 금년 들어 거의 전무한 데에 따른 전체 대불 수출의 1.6% 감소 및 대불 수입의 급증(23.7%)에 기인한다.

<표 3-33> 한국-프랑스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11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프랑스 수출	1,755	2,644	3,172	3,415	2,895	-1.6%
對 프랑스 수입	2,220	2,483	2,786	3,219	3,265	23.7%
무역수지	-465	161	413	196	-370	-

자료원: KOTIS; KOTRA 2008.04 재인용

소자본 투자를 제외하고 프랑스에서 두드러진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약 19개사 정도이다. 태평양화학, 삼성전자, LG전자, 엘지 R&D센터, 한진 해운, RG PRINCE FILM, 엘앤에이치 코리아, 기아자동차, 동양 어패럴, 한국타이어, 흥진크라운 등이다.

<표 3-34> 우리나라의 주요 프랑스 진출 기업 리스트

(단위: EURO 천)

No.	회사명	투자연도	투자 내역	투자금액
1	태평양화학	1990	제조업/향수(로리타)	54,213
2	삼성전자	1988	전자제품,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	34,710
3	삼성물산	1977	섬유, 정보기기, 경공품 종합상사	24,249
4	RG PRINCE FILM	2002	만화영화제작	6,273
5	엘지 전자	1990	가전제품 판매업	6,241
6	엘지 R & D 센터	2004	이동통신 단말기 연구. 개발	5,342
7	엘앤에이치 코리아(주)	2000	SPEECH TECHNOLOGY	5,100
8	기아 자동차	2004	자동차 판매업	5,000
9	동양 어패럴	1996	숙녀복 판매업	5,000
10	현대정보기술	1995	IMAGE-IN	4,296
11	유로 대우(주)	2000	중장비 판매 서비스업	4,000
12	(주)이트로닉스	1992	카 스테레오 판매	3,272
13	(주)쌍지	2001-2005	숙녀복, 패션잡화 판매업	2,557+ 847
14	(주)흥진 크라운(HJC)	2001	헬멧(모토사이클, 자전거용)	2,683
15	한국화장품(주)	1997	화장품 판매업	1,357
16	해태(주)	1992	카 스테레오 판매업	1,346
17	한국 타이어(주)	2003	타이어 판매업	1,066
18	KBS 미디어(주)	2003	방송 콘텐츠	1,059
19	브이케이(주)	2005	정보통신기기 판매업	1,051

자료원: KOTRA 2005/2006 해외 진출 한국기업 디렉터리; KOTRA 2008.04 재인용

'68년부터 '07년 6월까지 한국의 對佛 투자 규모는 총 277건에 5억 8천 435만 6천 불이다. 2002년 대불 투자 규모는 9천만 불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4년 동안의 연평균 투자 규모는 25백만

불 수준(연 8건)을 유지하고 있다.

**<표 3-35> 우리나라의 對프랑스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3분기)	누계
건수	17	16	38	30	20	121
금액	13	39	24	29	27	132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2;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 다.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외국인 투자 장려정책

1) 국가매력도 정책을 축으로 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프랑스의 2003년 12월 11일자 투자매력도 강화 대책(50여 개).

- 고급 인력 유치 정책:

- 선정된 전략 분야에 세계적인 연구 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유도(세계 최고의 보수 지급, 25-50만 유로의 연구비 지급)

- 외국 고위임 직원과 가족의 프랑스 입국절차 간소화 및 획기적인 거주 조건 개선 (외국인 상업 허가증 제도 폐지, 노동 허가증 및 체류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배우자의 프랑스 내 근로허가 및 세제 개선),

- 프랑스 대학 및 전문 고등교육 기관 홍보 및 외국 학생의 온라인 학교 등록.

- 기업 및 자본 유치정책:

- 투자관련 안전 보장

- 외국 기업의 프랑스 투자시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의 업무 협력 조율

- 첨단기술 분야 클러스터의 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

- 연구 개발 활동 시 관련 세금 수준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및 인재의 유도

## 2) 프랑스의 국가 매력도 강화 조치

### □ 외국인 주재원과 동반 가족 입국절차 개선 내용

#### ○ 주재원의 현실을 고려한 세제 적용

- 파견 수당의 과세 면제

- 사회보장분담금을 본국에서 지불했을 경우 프랑스에서는 면제

#### ○ 간부 직원 입국절차 간소화

- 외국인 간부급 직원과 동반 가족이 입국 시 프랑스 이민국(OMI)에서 노동허가증 및 체류증 발급 일괄 처리

#### ○ 주재원의 근로 조건 및 자격 관련 신규 조치

- 외국 기업의 프랑스 지사나 법인 장에게 요구되었던 외국인 상업 허가증 폐지

- 주재원 배우자의 프랑스 내 근로 허가(단, 월급이 2,00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및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 교육 환경 개선.

### □ 연구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

#### ○ 프랑스 내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 감세(CIR) 제도 개선

- 동 제도의 영속화

- 연구비 감세(CIR) 예산 증가(5.3억 유로에서 8.5억 유로로)

- 재정적 수혜관련 산출법 완화

-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지출항목의 확대

- 연간 혜택 상환선을 610만 유로에서 800만 유로로 증액

○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250명 미만, 설립 8년 미만이거나 사회보장 분담금 대비 연구 개발 지출이 적어도 15%가 되며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없는 기업)

- 세금 경감(법인세, 직업세, 토지세)

- 사회보장금 고용주 분담금 면제

- 주식 양도 시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 3) 기타 제반 주요 지원제도

### ○ 지역개발 우선지역 지원(PAT), 국토개발청(DATAR) 지원

- 사업용 부동산 임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 할인 지원
- 유럽의 지역 개발 기금(FEDER)
- 직업세 면제
- 중소기업 지원 기금
- 공기업의 금융 지원.

#### 나)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 돈내기 게임 분야의 사업
- 개인의 안전이 법으로 규제된 사업
- 테러 활동 분야에 병원체 또는 독물의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및 동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 문제 예방과 관련된 연구, 개발 또는 생산 활동
- 우편물 가로채기 및 대화 원격 도청용으로 구상된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정보 기술 제품 및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안전도 검사 및 인증 관련 서비스업
-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공, 사립업체와 계약에 의해 연관된 기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보안 분야에서 행해지는 보안 서비스 상품 및 제품 생산 활동
- 민간용 및 군사용으로 공히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상품 관련 사업: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 및 제품 등
- 암호 수단 관련 사업
- 국방 비밀을 위탁받은 기업체들이 행하는 업종
- 군사 또는 전쟁 및 유사 장비용 무기, 탄약, 화약 및 폭발물질의 연구, 생산 또는 상업 활동
- 직접 또는 하청에 의해 국방부 장비 연구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들이 행하는 업종

#### 다) 투자인센티브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에만 주어지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 행위가 투자 예상지역에 고용창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들과 교섭을 통해 보다 유리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근로자 훈련비용 등을 정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하며, 규모가 큰 투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일반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지역

- 투자액의 17%까지 지원 가능하다.
- 투자유치 관심지역
- 정부에서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는 지역으로 투자액의 25%까지 지원 가능하다.
- 투자유치 특별대상지역
- 코르시카 섬과 북부 벨기에 접경지역에는 상기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 도시 면세지역(ZUF) 제도
- 슬림 및 빈민가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장 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유형
- 지방정부 별로 다소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조세 면제보다는 공장부지 제공, 인프라 건설 지원, 근로자 교육훈련비 부담 등의 형태를 지닌다.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대표사무소 설립

- 투자 진출 절차(법인 및 사무소 설립절차, 허가기관)

프랑스에 투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프랑스 투자 진흥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 영문 Invest in France Agency)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 서류는 투자 방식 및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표 3-36>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한국 사무소**

대표자	위베르 프레데릭 (Hubert FREDERIC) 한국사무소장
한국인 투자 담당관	오 성림 투자담당관
전화	(02) 564 0419
팩스	(02) 3452 9025
이메일	korea@investinfrance.org
홈 페이지	www.afii.fr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 빌딩 8층 (우)135-711

- 연락 사무소 등록 절차

프랑스에 진출하는 기업이 상업 활동을 제외한 광고 선전, 정보 제공, 보관, 기타 예비적 단계의 제한적 활동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재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적격이다. 국내 모기업이 프랑스 파견 주재원이나 현지고용인에게 사회보장금의 고용주 부담액을 포함한 월급을 지불해야 하며,

회사등기 지역의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관리기관 URSSAF (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ecurite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프랑스에 설립한 연락 사무소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고용 직원이 2명이 넘으면 상사 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에 연락사무소로서 등기를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세무 당국에게는 항구적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일부 지방세와 급여 관련 고용주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견근로자와 그 동반가족이 프랑스에 입국하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자, 거주 허가 및 노동허가 등을 취득해야 하는데 거주 및 노동허가는 이민 수속 시 이민국(OMI)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연락사무소 등기 시, 상사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etes)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MO > 및 < MO'(작성안내문)>이다. 그 외에 연락사무소 설립 및 대표 임명장, 연락사무소 대표자 인적 서류 (여권, 신원증명서 등), 외국 모회사의 정관, 프랑스 내 거주지 증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자택 임대계약서 등)가 필요하다.

**<표 3-37> 연락사무소 등록 절차 및 관계 기관**

<b>연락사무소 등록 절차</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 비자 신청 및 발급</li> <li>2. 이민 수속</li> <li>3. 주거지 임차계약</li> <li>4. 연락사무소 임차계약</li> <li>5. 연락사무소 등기(고용인원 2명 시)</li> <li>6. 직원 사회보장 가입(주재원 및 피고용자)</li> </ol>
<b>관계 기관</b>	<p>주한 프랑스 영사과 프랑스 이민국(OMI)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임대주 상동 상사 등기소(상사 재판소) 사회보장기관(URSSAF) 관할지역 사무소</p>

○ 연락 사무소 등록 관련 서류

- 등기신청서류 MO와 MO' (작성안내문)
- 사무실 관련 부동산 임대 서류 1부

- 사무소장 호적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 사무소장 신원보증서
- 사무소장의 체류증
- 사무소장의 임명장
- 모회사 정관

. 외국인 투자 형태

현행 프랑스 기업법에 설립 가능한 회사 중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종류는 크게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 1인 유한 책임회사(EURL)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 의사결정 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다.

□ 2인 유한 책임회사(SARL)

투자자가 2인에서 10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이다. 즉, 내부 운영 규칙이나 의사 결정 기관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최고 의결 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임시 총회이어야 하며 그 의결 정족수는 총 인원 지분의 25%(2차 소집 시에는 20%)를 기준으로 결정)이다.

□ 주식회사(SA)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 없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가 자유롭다.

추후 상장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 관련(특히 재무)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다. 회계 승인 및 일반 의사 결정 정족수는 주주 총회의 25% (2차 소집시에는 20%). 임시총회 시에는 20%(2차 소집 시에는 정족수 제한이 없다)이다.

**나) 법인 설립**

1)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 자회사 등기 관련 서류

- 등기신청서류(MO 및 MO' 작성안내문)
- 지사 대표와 회계감사인(해당될 경우)의 임명 사실이 명기된
- 회사의 정관 2부

- 감사보고서 (해당될 경우) 2부
- 사무실 관련 부동산 임대 서류 1부
- 회사 설립 공고가 나간 관보 또는 일간지 1부
- 지사장 호적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 지사장 신원보증서
- 특정 산업에 종사할 경우 요구되는 자격증
- 지사장의 체류증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지사 설립관련 서류

## 2) 서류 공증 방법

필요서류 불문 번역 후 법무사 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불어 번역 및 공증

## 3) 투자 서류접수 및 승인기관

- 투자 진출 절차(법인 및 사무소 설립절차, 허가기관)

프랑스에 투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프랑스 투자 진흥청(AFII: Agence Franc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 영문 Invest in France Agency)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 서류는 투자 방식 및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프랑스 법인 설립 절차

주: 서류는 불어로 번역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임명한 대리인이 제출한다. 회사 등기에 소요 되는 기간은 2주이며 행정 수속 비용은 60유로, 회사설립 공고 비용은 200유로 정도이다.

## 4) 투자 허가서 발급 이후 수속 절차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는 투자 허가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구좌 개설

거래희망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구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거래는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법인 도장 신청(관할 시청 및 구청)

프랑스 내 모든 기업은 법인 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 비관세 대상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허가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 제출하여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 노동자 채용 및 회계장부 등록 등

노동자는 노동력 공급기관을 통해 제공받아 채용하거나 외국인 투자 법인이 직접 광고를 내어 채용할 수 있다.

회계장부는 법인의 회계 처리 시스템으로 프랑스 재무부(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프랑스 기업설립청(APCE)

- 주소: 14 rue Delambre 75682 Paris Cedex 14, France

- 전화: 33-(0)1 42 18 58 58 / 팩스: 33-(0)1 42 18 58 00

- E-mail: info@apce.com

- 홈페이지: www.apce.com

○ 사회보장기관( URSSAF)

- 본사 주소: 93518 Montreuil Cedex

- 전화: 33-(0) 820 01 10 10

- 이메일: parisrp@urssaf.fr

- 홈페이지: www.urssaf.fr

- 파리 강북지역 관할 지부: 10, rue du Faubourg Montmartre, 75 009 Paris

- 파리 강남지역 관할 지부: 3 rue de Tolbiac - 75 013 Paris

○ 기업행정수속센터(CFE: Centre de Formalites des Entreprises): 외국인이 프랑스에 상사를 설립할 때 관할 지역 내 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제반 제출 서류 및 행정 수속 절차에 대한 자문 및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상공회의소는 주요 도시마다 소재하고 있다.
- 파리 상공회의소(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 주소: 2 R DE VIARMES, 75040 PARIS CEDEX 01
- 전화: 01 53 40 46 00
- 팩스: 01 53 40 46 08
- 홈페이지: [www.ccip.fr/cfe](http://www.ccip.fr/cfe)

#### 4) 투자입지여건

##### □ 투자 입지 여건

- 프랑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이며 세계 6대 경제 및 무역 국이자 4대 투자 유출 입 국가이다.
-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기는 하나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대적인 개혁 정책 덕분에 주 35시간 근로법이 완화되고 앞으로는 일요일 개점 및 추가 근무 등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 각종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제세 감세 조치들이 단행되고 있어 이제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국가경쟁력을 확립하고 있다.
- 인구 정책의 성공으로 출산율이 2.1에 달하며 서유럽 국가 중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이다.
- 내수가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이 되고 있는 관계로 선진국 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

##### □ 유망 투자분야

###### 가. 식료품산업

- 동 분야는 EU 전체 농 식료품산업 매출의 21.1%를 차지하는 유럽 최대의 규모를 갖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동 분야 대 유럽 수출의 72%가 유럽이다. 미국 및 일본도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이어서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로, 항로 등 뛰어난 교통 연계 시스템 덕분에 유럽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는 효과적인 물류체인 제어를 가증하게 한다.
- 동 산업은 관련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많아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용이하여 프랑스 제 3위의 고용 율을 자랑하는 산업분야로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만한 산업이다. 4,250 개 업체가 농 식료품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93%가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다논(DANON)과 같은 다국적기업도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의 85개 기업이 동 산업 수출의 41%를 차지

하고 있다. 포도주, 치즈 등 전통적인 생산품 외에도, 프랑스는 농 식료품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혁신에 많은 예산 배정되어 있어 정부 출자 연구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전국 40여 개의 기술 센터(ACTIA: Association des Centres Techniques de l'Industrie Agroalimentaire)를 통해 고도의 기술 개발 및 산업에의 응용, 신상품의 생산 및 신규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 프랑스의 농 식료품산업이 강한 이유는 프랑스 전체 면적의 55%가 농경이 가능한 정도로 농경지 면적이 넓은데 기인하며 농산물의 70%를 가공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농 식료품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주 요인이다.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프랑스의 생산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미식가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기도 하다. "Made in France" 제품은 전통적으로 동 분야의 제품의 질과 생산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으며 신선 식품에서 첨단 가공 식품까지 모든 종류의 농 식료품 생산이 가능한 것이 프랑스가 유럽시장 및 세계 수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이다.

#### 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 2001년 현재 바이오테크 기업의 수는 250여 개로 유럽에서 세 번째 규모이며 1997년 이후 프랑스의 바이오산업은 급성장을 이루어 2000년 프랑스 바이오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25%에 달한다. 바이오테크 산업의 매출액은 7억5천7백만 유로이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은 약 5 000명이며 320,000 명에 달하는 풍부한 연구 인력과 공공연구기관, 병원, 대학들이 과학연구에 공헌한 발표 논문 수로 볼 때 프랑스는 세계 4위이다. 프랑스는 거대한 바이오산업 시장으로 유럽 제2의 제약 시장이자 1위의 제약생산국이다.

○ 프랑스는 동 분야에서 근로자 1인 시간당 GDP는 US\$34로 유럽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 인건비는 시간당 80 US\$로 가장 낮아 고용률이 높은 산업이다. 지난 10년간 프랑스는 제약분야에서 고용이 1% 증가한데 비하여 같은 기간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다.

○ 프랑스의 바이오테크 산업은 동 분야 기업의 80%가 인간 건강 관련 기술개발 중심으로 발전해 있다. 프랑스 바이오산업은 주로 기술 플랫폼 기업 (genomics, drug delivery)이 주도했으나 최근 들어 치료약품 개발로 선회하고 있으며 공 기관과 민간 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바이오 산업단지나 각 지역의 혁신기술 네트워크는 공공 연구소, 병원, 대학, 창업 인큐베이터 등을 포괄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비롯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 등을 공유하여 바이오 기업이 창립 초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8개의 "바이오 산업단지 (GENOPOLE)"가 설립되어 있는데 체노폴은 주로 체노믹스와 포스트 체노믹스로 특화되어 있고 설립 지역은 Evry(Paris 남쪽 지방도시), Lille (벨기에 국경 지역 도시), Strasbourg(독일 국경 지방 도시 내 BioValley), Lyon 및 Grenoble (프랑스 중동부 지방 도시 및 남부 지방 도시), Marseille(지중해 지방 도시), Montpellier(중남부 지방 도시), Toulouse(스페인 국경지방 도시) 및 Bordeaux(남서부 대서양 지방 도시) 등이다.

○ 바이오산업 개발을 위한 프랑스의 금융지원책은 다양하다. 국립 기술 개발 지원 청(ANVAR: 2005년 BDPME와 통합되어 OSEO로 바뀜)은 프랑스 공 기관으로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창업 자문 및 자금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벤처 기금은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2000년7월에 조성된 BioAM기금은 국립과학연구원(CNRS), 국립 의약품 연구기관(INSERM), 국립 농작물 학 연구 기관(INRA) 등의 정부 연구기관 과 국립금고(CDC: Caisse des depots et de la Consigne), AXA, Caisse d'Epargne등 금융 회사에서 참여한 것으로 바이오 신생 기업이 창업 구상부터 창업 시까지의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10년간 3천만 유로로 20 내지 25 개사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 벤처캐피털 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민간기금으로 1999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는 약 167개의 바이오테크 산업 프로젝트에 1억5천5백만 유로의 벤처자금이 투자되었는데, 주요 바이오 벤처 투자 자는 Sofinnova Partners, Apax Partners, Atlas Ventures, Banexi Ventures, Auriga Ventures, Genavent 등이다.

○ 프랑스는 동 분야의 외국인 투자 장려책으로서 신생 바이오 업체의 창업 지원 및 기존 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2002년 은행의 장기대출기금(BDPME: Banque de Developpement des Petite et Moyens Entreprises. 2005년 ANVAR와 통합되어 OSEO로 바뀜) 4억 유로 조성 및 신규 씨드 캐피 털 머니 9천만 유로를 정부 등 공기관이 조성해주었다. 그리고 프랑스 연구성은 GenHomme 프로그램으로서 인간 제놈 해독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허용해주었으며 제놈과 포스트 제놈 연구 지원 은 물론 정부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간의 연구 개발 협력을 지원(5년간 5억5백만 유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주고 있어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 다. 물류 산업

○ 유럽 GDP의 8%에 해당하는 약 7,100억 유로의 물류산업 규모를 갖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스는 100만 여 물류 산업체와 약 5백만 명의 종사자 및 1,200억 유로의 물류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 동 산업은 성장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산업분야로서 통합물류업체의 경우 매년 10-12%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망 산업이다. 유럽에서는 약 20여 개의 물류 그룹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액은 18억 유로가 넘는다.

○ 외국물류 기업이 많이 진출하여 프랑스 물류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는데, 영국기업(Hays Logistics, Exel plc 및 Tibbett & Britten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벨기에(ABX logistics, Ziegler, Katoen Natie), 네델란드(TNT Post Group), 독일(Danzas), 미국(UPS, Frigoscandia-Prologis의 계열사) 기업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물류산업은 판매업, 창고업, 포장 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을 포함하는데, 동 분야의 외국인 투자 건 수 및 고용창출 인력 수는 2000년 41건에 2 164명 및 2001년 40건에 2 440명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운송업에서 물류 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 중이고 냉장 및 냉동품,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취급 제품군별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고 물류를 일괄 처리하는 업체의 등장으로 기업의 물류를 아웃 소싱 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프랑스 전체 기업의 30%에 달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물류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까닭은 프랑스의 뛰어난 교통 운송망(육로, 철로, 항만, 수로, 항공로)의 발달과 풍부한 전문 인력 및 양성교육기관의 발달, 저렴한 토지 및 부동산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급성장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 5) 노무관리

### 가) 프랑스 노동법 개요

프랑스의 노동법은 기업의 경제적 목표를 감안하는 한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노사 관계는 각 경제 산업분야의 관행을 반영하는 마스터 단체협약(conventions collectives) 으로 결정된다. 종업원의 이윤배분 참여 및 종업원 지주제에 대해 소득세 및 급여세를 면제 해 주어 장려하고 있고, 효율적 생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및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 한시적으로 배치된 파견근로자는 프랑스와 본국간에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프랑스나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나) 노사관계

#### 1) 프랑스 관련법령 하에서 자유로이 고용계약 협상 가능

가장 보편적인 계약유형은 CDI라고 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는 고용계약(contrat a duree indeterminee)이다. 관행상 계약서는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론상 계약 쌍방은 자신의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계약서 조항은 노동법이나 해당 기업의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저촉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에는 급여 수준, 근로 시간, 직급, 직장주소 등이 꼭 명시되어야 한다. 보수는 해당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저보수나 법정최저임금(SMIC)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법정최저임금은 매년 6월 말 경에 한번씩 조정이 되고 있는데 2007년 6월 29일에 조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8.44유로이며 주 35시간에 해당하는 월 151.67시간 근무 조건의 월 급여액은 1,280.07유로이다.

2007년 신임 대통령 Nicolas Sarkozy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면제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근무시간 35시간제에 탄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축 근로시간(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의 급여화 및 이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면제 법안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어 주 35시간제가 철폐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는 '더 일하고 더 벌자'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이며 구매력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시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경우 임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임시직 고용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시직이나 시한을 정해놓고 고용하는 경우, 프랑스 노동법은 18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의 임시고용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현 우파 정부가 신설한 신규고용계약(CNE)은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첫 진출하는 젊은이 들의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한 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최고 2년까지 동 고용계약이 유효하며 고용주는 2년 내에 아무 조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물론 동 계약 기간 중이나 만료 후에 정상적인 무기한 고용계약(CDI)을 체결할 수 있다.

## 2) 대표이사의 자격

대표이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가 아니라 회사정관에 대표 임명, 급여수준, 책임 소재 등이 명기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동시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고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편하며, 상업기업등기소에 회사를 등기하면 바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직원 고용 시, 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직원고용 신청서(DUE)를 회사 소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보장 및 국민연금연맹 URSSAF에 제출한다. 신청서는 전자 시스템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된다. 신청서를 토대로, URSSAF 는 고용인을 의료보험, 고용 보험 등 필요한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 새로운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국립 고용청(ANPE)에서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업이 제안하는 직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제공, 이력서 심사, 직원연수 프로그램 등. 프랑스 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책임짐으로 기업이 적합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 보장금 감면이나, 특종 직종에 대한 고용증진수당 등을 통한 고용지원책이 있어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 개인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개인적 사유(실제적이고 중대한 사유, 과실, 중대한 과실)나 경제적 사유(기업의 부실화)로 해지할 수 있다. 고용주는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에는 사회보장 계획, 재취업 또는 지원조치, 노동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비롯한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상 노조대표 및 지방 노동부 사무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 시에는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 4) 60세부터 정년퇴직

근로자는 60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할 경우 항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연령인 65세에 도달하였을 때 퇴직시킬 것인지 혹은 충분한 기간 동안 (40-41년)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근로자들을 60세에서 65세 사이에서 퇴직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 5) 임금 수준

프랑스의 2005년 6월말 현재 평균 임금은 1,903유로(월 NET)이다. 고용주는 동 임금 (NET)의 약 50%(BRUT 임금 기준 시 약 41%)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약 25%(BRUT 임금 기준 시 약

21%)에 해당하는 피고용자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합해서 분기별로 사회 보장 기관(URSSAF)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 비용은 BRUT 임금의 약 141%(NET 임금 기준 시 약 150%)이다.

## 6) 조세제도

프랑스의 조세제도는 기업의 투자, 지역경제 개발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감가상각, 향후 기업 활동에 대한 손실 연기와 면제 등. 프랑스의 조세정책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에 적용된다.

프랑스는 1백 개 이상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 가) 법인세

외국기업이 프랑스에 항시적 사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익은 언제나 프랑스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회사, 지점, 항구적 시설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프랑스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한다.

항시적 시설의 정의는 체결한 조약 문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에 준한다.

#### 1) 과세대상 수익의 정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은 공제되는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말한다. 수익은 모든 영업활동, 판매와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비용 및 원가는 공제 가능하다.

#### 2) 공제 가능한 비용:

-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유형고정자산
- 비품
- 건물과 장비 임대료
- 급여
- 사회보장분담금
- 구입 물품
- 에너지소비
- 광고비

○ 금융 비용

### 3)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가 남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경비에 대해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개인 차량 이용 등 필수항목이 아닌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프랑스의 자회사에게 청구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특히 경영관련 비용, 이자비용, 로열티는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적용된 가격은 시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 4) 감가상각 규정

프랑스의 감가상각 규정은 해당 고정자산의 통상 사용연한에 따라 정액법의 감가상각율에 1.5부터 2.5까지의 가속계수를 적용한다. 중고가 아닌 신제품 생산 설비 구입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은 12개월이다.

### 5) 법인소득세 세율 및 산정방식

한시적인 특별법인세를 제외하고 다음의 요율이 적용된다.

○ 법인소득세 표준 세율은 33.33%.

○ 일부 제한된 경우에는 19%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 소기업(주식의 75%를 개인이 소유하며 1년 매출이 1,0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의 경우 수익이 38 112 유로 미만인 경우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경우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6) 경상 손실의 이월처리

경상 손실은 발생 년으로부터 5년간에 걸쳐 이월 하거나, 발생 년 이전 3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 충당금이나 장기 순자산 손실과 관련된 손실분에는 특수 규정이 적용 된다.

### 7) 기업군에 대한 통합신고제도

프랑스의 통합 조세 제도는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 그룹회사(groups of companies)들이 세액 산정액의 범위 내에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프랑스의 모회사가 자신과 세무상 동일한 그룹으로 통합될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한 95%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 5년 동안 이러한 통합체제를 명백히 유지해와야 한다.

## 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 및 서비스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소비자가 지불한다. 기업은 판매 시 부가가치세 수합의무만 있고, 수합한 총액에서 자신의 구매 및 투자 분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는다. 기업이 자신의 구매 분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수합한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하면 세액공제분을 변제 받는다. 상품의 역외수출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 1) 부가세율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6%이나, 경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식품의 경우 5.5%, 일부 농산물 및 의약품 (5.5% 또는 2.1%), 서적, 호텔, 대중교통, 신문 및 잡지, 여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 2) EU 전역에 걸쳐 균일한 관세의무 적용

상품은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한 EU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시 1회에 한해 관세가 부과된다. 다른 EU 회원국에 재수출되기 위해 프랑스에 도착하는 상품은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프랑스로 반입할 수 있다.

### 다) 연간 도급세 (IFA: IMPOT FORFAITAIRE ANNUEL)

연간 도급세는 2003년에 도입된 기업세로 매출규모가 4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연 1회 부과되며 매년 세율이 책정된다.

2008년부터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연간 도급세(IFA: IMPOT FORFAITAIRE ANNUEL)가 면제되는 개정안이 최종 검토 중이다.

### 라) 원천 공제세

고용 규모별로 사회 원천공제세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주로 직원 복지를 위한 기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는 10명 미만의 소기업들의 고용증대로 인한 세율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 규모 등급 한계를 폐지할 방침이다.

### 마) 지방세

#### 1) 직업세(Taxe professionnelle)

직업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직업세는 납세기업이 소재한 지방행정당국이 매년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지방행정당국은 다음을 고려하여 직업세를 부과한다:

- 기업의 사무실 임대료
- 기업이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치분 고정자산가액의 16%

이 두 가지 수치의 합계의 84%에 대해 매년 지방행정당국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그 밖의 지방세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토지세(Taxe fonciere), 비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이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주거세(Taxe d'habitation) 및 오물 수거세가 있다. 세액은 해당 자산의 임차가액 및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TV 시청료가 주거세의 한 비목으로 취급되어 징수되고 있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외환 관리 제도**

프랑스의 외환 관리 제도는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오다가 1990년에 완전히 폐지되어 현재는 특별한 외환 관리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 **나) 외국 자본 및 기술 등록**

통계 및 통제 목적을 위해 15,0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는 프랑스 금융 기관이 중앙 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것 외에 외국 자본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 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

### **다) 현금 구좌**

모든 프랑스 거주자는 프랑스 혹은 해외에 현금 구좌를 가질 수 있다. 해외에 은행 구좌나 증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은행 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프랑스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 **라) 자본 및 소득의 송금**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외환 규제는 없다.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얄티, 배당금 및 기술 자문료를 포함한 제 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도 없다.

### **마) 자금 조달 방법**

프랑스 은행의 대출은 매우 자유로우며, 대출 방법도 여타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이 없을 경우 모기업 또는 제3자의 지급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지 투자법인의 경우, 상장등록을 하여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 40대 그룹회사들만을 위한 제1주식시장 외에 중견 기업들을 위한 제2 주식시장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활용도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 **8) 투자유의사항**

### **가) 철저한 사전 준비 필수**

투자 인센티브, 투자 방식, 투자 관련 법규 및 제도와 인건비, 경상비 및 사회보장세 등에 대한 철

저한 이해 및 투자 타당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 나) 법인 설립시 법률 전문가 이용은 필수적

제반 제출서류는 불어로 작성해야 하며 각종 계약서 등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서류도 불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인 변호사나 법률 상담가 및 회계사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다) 비자 취득 및 체류증 발급 등에 장기간 소요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경우 비자 취득 특히, 체류증 발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 비자를 받고 활동하다가 매 3개월 마다 한국이나 EU 역외 국가로 가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당한 인내심과 사전 수속 준비 작업이 요구된다.

#### 라) 투자 지역 선정시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

프랑스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치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지방을 대상으로 종합 비교 분석한 후 투자 적정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인센티브 조건이 많은 지방일수록 기업 환경이 취약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리고 투자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 및 주민의 주 구성 인종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좋다. 독일 접경 지방인 알사스-로렌 지방은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독일 및 프랑스 영토로 뒤바뀌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모어로 하는 게르만 민족의 혈통들이 많아 프랑스 및 독일 시장을 겨냥할 경우에는 유리한 지역이다.

#### 마) 합작투자 파트너 선정은 신중하게

파트너는 어느 사업에서나 신중히 선정해야 하지만, 합작 투자 시에는 더욱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양자가 확실하게 합의한 후에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 바) 모든 계약서는 충분히 납득한 후에 서명

프랑스에서는 고용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계약서가 불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며,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식이나 통례에 준하기 때문에 의문 사항이나 사소하지만 반드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서상에 명기하여 차후에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불어 및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는 고용 계약서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피고용자의 모국어인 불어가 우선이기 때문에 번역 상의 유권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 4. 이탈리아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이탈리아 공화국(이탈리아어: Repubblica Italiana 레푸블리카 이탈리아나, 문화어: 이탈리아)은 유럽 남부에 있는 나라이며 수도는 로마이다. 이태리(伊太利)로도 부른다. 원래는 군주제 국가였지만 (통일 이탈리아 왕국) 1946년에 공화정이 되었다. 남유럽의 공화국이며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로마

를 비롯, 밀라노, 제노바, 나폴리, 베네치아, 토리노 등이 있다.

이탈리아는 언어와 종교 면에서는 인구가 동질적인데 비해 문화·경제·정치 면에서는 다양하다. 이탈리아의 인구밀도는 1km<sup>2</sup>당 196명으로 유럽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소수집단은 그 크기가 작운데 가장 큰 집단은 남 티롤의 독일어 사용 인구(1991년 통계: 28만 7503명이 독일어 사용, 11만 6914명이 이탈리아어 사용)와 트리에스테와 그 근교의 슬로베니아어 사용 인구이다.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2004년 현재 (Eurostat 추정) 1.33명이다. 2005년 현재 천명당출산율은 9.9명, 천명당사망율은 10.4명이어서 이민을 제외한다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8> 이탈리아 일반 사항**

국 명	이탈리아 공화국 (La Repubblica Italiana)
위 치	남부 유럽
면 적	301,333 km <sup>2</sup> (한반도의 약 1.36배)
기 후	지중해성 기후
수 도	로마 (Roma)
인 구	5,846만 명
주요 도시	로마 (254만 명), 밀라노 (127만 명), 나폴리 (100만 명), 토리노 (87만 명), 제노바 (60만 명) 등
민족(인종)	이탈리아인(북부에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남부에알바니아계, 그리스계소수 거주)
언 어	이탈리아어(국경 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라브어 병용)
종 교	카톨릭(98%), 기타(2%)
건국일(독립일)	1946년 6월 2일(이탈리아 공화국 선포)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 EIU; KOTRA 2008.04 재인용

## 나. 경제 개요

이탈리아는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공업화가 늦은 편이었다. 또한 산업구조가 한국과 유사하고 경제가 EU 편중 경향을 보여 한국과의 외교, 통상 관계가 독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은 서로 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연안의 반도국가로서 지중해 시장의 진출거점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탈리아 시장구조의 복잡성, 언어 장벽 등은 우리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이탈리아 경제는 전년도의 부진을 극복하고 1.9%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탈리아 최대 수출국인 독일 경제의 호황, EU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 고정 투자 증가, 선거로 인한 경기 호조

등이 성장률 상승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07년에도 수출호조, 설비투자 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부 의 긴축재정 정책에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하여 1.8%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1%이상 저하되어 0.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경제가 2005년 0.2% 성장의 부진을 2006년, 2007년 1.9%, 1.8% 성장을 기록하여 다소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는 3년만에 1% 미만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 현재 이탈리아 경제가 과거의 활력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화강세, 중국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중저가 제품과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과거의 활력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유로화 강세와 이탈리아 최대 수출국은 독일로의 수출둔화는 이탈리아 경제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9> 이탈리아 경제 지표**

<b>GDP</b>	1조7,730억 불(2005년), 1조8,540억 불(2006년), 2조 1,180억 불(2007년)
<b>실질경제성장률</b>	0.2%(2005년), 1.9%(2006년), 1.7%(2007년)
<b>1인당 GDP</b>	31,791 불(2006년), 35,386 불(2007년)
<b>실업률</b>	7.7%(2005년), 6.8%(2006년), 6.2%(2007년)
<b>물가상승률</b>	2.0%(2005년), 2.1%(2006년), 1.8%(2007년)
<b>화폐단위</b>	유로(EUR)
<b>환율</b>	US 1.256 불=1Euro(2006년 평균), US 1.361 불=1Euro(2007년 평균)
<b>외화 표시 정부부채</b>	27,255 백만 유로(2005년), 10,740 백만 유로(2006년)
<b>외환보유고</b>	255억 불(2005년), 257억 불(2006년), 240억 불(2007년)
<b>산업구조</b>	농수산업(1.9%), 제조업(22.8%), 건설업(6.1%), 서비스업(69.2%)(2006년)
<b>교역규모</b>	US\$3,724억(수출), US\$3,718억(수입), 무역흑자US\$6억(2005년) US\$4,171억(수출), US\$4,287억(수입), 무역적자US\$116억(2006년) US\$4,758억(수출), US\$4,821억(수입), 무역적자US\$63억(2007년)
<b>교역품</b>	-수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신발, 귀금속 장신구 등 -수입: 원유,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의약품 등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 Eurostat, EIU, KOTRA 2008.04 재인용

이탈리아는 EU회원국으로서 EU의 공동 통상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EU간 통상 마찰 발생시 EU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은 반덤핑 규제 중 5건, 상계관세 규제 중 1건이다.

통상 문제 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서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비자 및 체류 허가 취득 문제이다. 이탈리아에서 장기 체류 시에는 이탈리아 경찰 당국이 발행하는 국내 체류 허가증을 매년 갱신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다. 또한 상사 주재원의 경우 입국 비자의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

간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표 3-40> 한국-이탈리아 관계**

<b>체결 협정</b>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61) 무역협정('65) 문화협정('70)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75) 경제협력 협정('84)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84)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약('92)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 협정('92) 관광협력 협정('00) 한-이 사회보장협력 협정('05)
<b>교역규모</b>	2007년 상반기 -21억6,400만 불(우리나라 수출) -17억 불(수입): 무역흑자 4억 6,400만 불
<b>교역품</b>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선박, 타이어, 합성수지 등(우리나라 수출) 의류, 의약품, 신발, 기계류, 자동차 부품(수입)
<b>교민</b>	총 교민 수 약 5천1백 여명 (대부분 유학생)

자료원: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KOTRA 2008.04 재인용

2007년 기준 한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41억51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22.9% 증가한 35억8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이 교역규모는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4년 교역규모 50억 달러, 2005년 교역규모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도에도 72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해 2년 연속 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역시 교역규모 77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2003년 이후의 급격한 증가세는 2006년 이후 확실히 둔화되고 있으며 2006년, 2007년은 소폭이나 2년 연속 수출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표 3-41> 한국-이탈리아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이탈리아 수출	2,561	3,408	4,297	4,286	4,151	-3.1%
對 이탈리아 수입	2,382	2,500	2,778	2,916	3,583	22.9%
무역수지	179	908	1519	1373	568	-

자료원: KITA; KOTRA 2008.04 재인용

한국의 대 이탈리아 투자(신고기준)는 2007년 3분기 기준 총 99건, 3억4,631만 달러 규모로 수출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이탈리아 산업구조와 이탈리아 내에 영업환경이 언어 등의 문제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2007년 3분기 동안의 대 이탈리아 투자 신고 실적은 8건 195만 달러이다.

주요 투자 진출 업종으로는 의류, 무역업, 자동차, 전자 등이며, 진출 형태는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사 설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체 투자신고금액의 81% 이상을 도소매업이 차지하고 있다.

**<표 3-42> 우리나라의 대이탈리아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3분기)	누계
건수	6	4	12	20	10	52
금액	0.8	13	4	9	2	28.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2;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다음 3가지 측면에서의 이탈리아 시장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 소비자성향

패션, 디자인에 민감하므로 시장 진출 시 제품의 소재, 색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유럽국가 들에 비해 높아 초기 시장 진입 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삼성, LG, 현대, 기아 등 우리 상품이 활발히 진출하여 자동차, 핸드폰, 소비재 전자제품에 대해 현지 인지도 면에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 바이어특성

이메일 또는 문서교환을 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상담이 유리하다. 하지만 영어 구사 및 해독률이 낮아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성숙한 거래관계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량 오더부터 성실한 수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LC 개설 비용이 높고 은행시스템의 비효율로 인해 결제 지연의 불편이 있는 등 금융 서비스산업이 낙후 되어 있어 자금 운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거래 시작단계에서 독점계약 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주문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적이며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마케팅 방식이 요구된다.

○ 유통구조 및 시장 진출 방안

전국이 지방 중소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시장 구조도 다원화 되어있다. 또한 중소 기업이 산업 및 상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상은 많지 않다. 이에 전문소매상

을 통한 판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각 지역별로 상권이 분화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인 유통구조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형판매점이 확대되고 있다.

유통 구조면에서 전문 소매상을 통한 판매가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전국을 커버하면서 對고객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력 유통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이탈리아는 유통구조가 복잡한 반면, 북부 산업지역 각 도시 별로 연중 실시되는 분야별 박람회(Fiera)를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박람회 참가를 통한 시장개척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지 관련 전문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소비시장 특성 파악도 가능하다. 분산되어 있는 시장, 언어 장벽,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직접 시장 진출보다는 현지 시장에 밝은 에이전트나 현지 딜러를 통한 시장 진출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 입찰의 경우 해외직접 수입의 경우는 거의 없고 자국 내 회사를 설립한 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므로 정부 입찰을 추진 할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 다.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2002년1월 이탈리아 리라화의 유로화 태환 이후 이탈리아 경제제도는 상당부분 EU 규범에 맞춰 개정되었고, 정부와 기업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태도도 과거보다 우호적으로 변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동차, BT, 화학, 식음료, 정보통신, 물류허브, 의약, 관광산업을 외국인투자유치 중점분야로 지정, 집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편 비EU 회원국의 이탈리아 국내선 운항사업, 선박산업, 방위산업체의 민영화 투자, 기타 전략산업인 에너지, 광업, 통신산업, 의약산업, 관광, 보험,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투자제약이 있다.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규제 없이 투자 가능하며 인센티브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 가) 인센티브 관련 법령 및 기관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이므로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EU 지침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며 특별한 평가절차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사후 타당성 평가나 지원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인센티브 수혜 시 관련 절차를 잘 검토해야 한다.

○ 인센티브 관련 이탈리아 국내법령으로는

- 공장의 신규 설립 및 확장에 관한 법(Law 488/92),
- 재개발 및 생산지역 활성화에 관한 법(Law 181/89),

- 지방개발(Location Agreement),
- 여성기업인 관련 법(Law 215/92),
- 연구 및 개발 관련 법(Law 140/97)
- 농업산업 법(Law 266/97) 등이 있다

○ 인센티브 관련 자금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중앙신용평가 기관(Medicocredito Centrale, MCC),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 교육대학 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rch) 등에서 주관하고 있다

○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 받는 인센티브가 달라지며 EU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자는 EU 집행위원회에 총 수혜금액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발표된 EU의 기업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영세기업과 소기업을 합해 SME로 통칭 하며 인센티브 지원기준에 적용된다.

- 영세기업(ME: micro-enterprise): 최대 종업원수 10명, 매출액 및 자산총액 2백만 유로 미만
- 소기업(SE: small business): 최대 종업원수 50명, 매출액 및 자산총액 1천만 유로 미만
- 중기업(LE: medium-sized business): 최대 종업원수 250명, 매출액 및 자산총액 43백만 유로 미만

○ 그러나 기업규모에 상기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대기업이 해당사 주식의 25%를 소유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신법에 의해 벤처캐피탈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지분이 높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많은 투자인센티브가 영세기업 (micro-enterprise)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탈리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4년까지 인센티브 중 53%가 소기업에, 11%가 중기업에, 3%가 대기업에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R&D 관련 인센티브

○ FAR(Fondo per le Agevolazioni alla Ricer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시행령 297/99에 근거하여 교육대학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arch)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공정 개선 등의 연구 개발 활동에 지원된다.
- 국가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구기관 설립 프로젝트 등에 배정된다.

○ FIT(Fondo per l'Innovazione Tecnologi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법 46/1982에 근거하여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첨단기술분류, 경쟁 전단계 개발, 산업연구,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된다.
- 남부지역에서는 통합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지원될 수 있다.

○ Law 140/97에 근거한 인센티브

- 연구 및 경쟁 전단계 개발 프로젝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일괄 신청 한다.

#### **다) 교육훈련 관련 인센티브**

○ Law 236/93에 근거한 인센티브

-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혁신, 안전, 품질, 환경보호 관련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지방정부가 주관한다.

○ Law 236/93에 근거한 인센티브

-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혁신, 안전, 품질, 환경보호 관련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지방정부가 주관한다.

#### **라)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관련 인센티브**

○ Law 341/95에 근거한 인센티브

- 남부 및 저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설비나 기계류 구입시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이다. 제조업 및 광업에 적용되며 수혜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Law 181/98에 근거한 인센티브

-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일시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Law 311/204에 근거한 인센티브

- 역시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개발 지역 투자에 대한 탄력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혜 정도는 지역 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하며 다른 지원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EU규정상의 지원 한도 확인을 위해 EU 집행위 승인이 필요하다.

○ Law 338/2000에 근거한 인센티브

- Law 388/2000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의 '신경제' 촉진정책에 따라 기업이 정보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포탈, 보안, 전자지불시스템, 직원훈련)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60%를 세금 환급해준다.

○ Law 488/92에 근거한 인센티브

- 남부 및 저개발 중북부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제조업, 광업, 상업, 건축업, 에너지 생산 및 유통업, 공예업 등을 위한 타자기 지원대상이다. 동 인센티브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이탈리아 주요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보고서 사업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

서에 근거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 Local Agreement에 근거한 인센티브

- 남부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도에 새로 도입된 인센티브이다. 중-대 외국인 기업과 2005년 3월 31일까지 해외에 있다가 이탈리아로 이전한 이탈리아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된다.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지원방식은 보조금 지급 또는 이탈리아개발공사(Sviluppo Italia)의 부분적 임시 출자 방식이 있으며 지원 절차는 동 기관 및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로 대폭 간소화 되었다.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기업 형태(진출 형태)별 특징

○ 외국인 기업은 Srl, SpA, SApA 등의 세가지 기업 형태 중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역시 가능하나, 상업 활동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투자 실행 전 초기 단계에서 가급적 법률과 세제 관련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 및 회사 설립이 지연될 수 있고, 납세 설계가 잘못될 경우 각종 인센티브 수혜 기회 상실 또는 벌과금 부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일단 법률 및 조세 관련 오류 발생시 수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설립에 필요한 체크 리스트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탈리아 기업법은 1942년 최초 제정 후 2003년 1월 17일 법령 제 6호(Decree No. 6)로 상당 부분 개정 되어 2004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 법에서는 기업형태를 크게 Srl, SpA, SApA 등 3가지로 기업 유형을 정하고 있다.

### 나) Srl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 납입 자본금이 낮고 이탈리아 회사법상 기업의 자율성 정도가 가장 높아 중소기업에 가장 일반적인 기업 형태

- 2-3명 혹은 1인 기업도 가능

- 상업등록소(상공회의소) 및 국세청 등록 의무가 있으며, 등록 완료 전에는 영업 개시 할 수 없다. 등록 완료 전 영업 개시의 경우 설립 대행인이 무한 책임을 가짐.

- 납입 자본금은 10,000 유로 이상. 법인 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는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은행 보증서로도 대체 가능

- 납입 자본금은 현금은 물론, 재화와 용역, 지적재산권 등 모든 형태로 가능. 이때 가치 감정은 감정을 요구한 파트너 측이 지정한 공인 감정 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시행

- 납입 자본금 120,000 유로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총자산 액 3,125,000유로 초과

또는 매출액 6,250,000유로 초과, 상시 고용 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감사를 두어야 한다.

○ SpA (합자회사, joint stock companies)

- 대기업에 일반적인 기업 형태.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은 동 형태가 의무적
- 금융 시장 또는 은행을 통해 기채를 하며, 직접 주식시장에 상장 가능
- Srl의 2, 3, 번 항 설명 동일 적용
- 최소 납입 자본금은 120,000유로 이상. 법인 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은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단, 1인 SpA는 자본금의 전액 현금 예치
- 납입 자본금의 형태 및 은행 계정 평가 등은 관련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시행
- 주식 발행, 채권 발행, 주주총회 개최, 감사, 임원 선임 등은 정관 및 관련법에 따름.

**다) SpA (유한 합자회사, 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 SpA와 거의 유사. 특별한 차이 없다.
- 혼한 유형은 아님.

**라) 연락사무소(자본금 요건 없다)**

- 이 형태는 공식적인 자본금 등록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본국 모기업을 대표하는 지사 책임자 (branch manager) 외의 별도의 공식적인 운영자 및 관리 구조를 갖지 않는다.

- 연락 사무소는 홍보, 정보 수집, 마케팅 활동 등으로 기능이 국한된다. 지사의 역할이 (1) 모기업 상품 및 자산의 예치, 전시, 전달, (2) 모기업을 위한 상품과 자산의 취득, 정보 수집, (3) 모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장점은 초기 진출 시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사로 인한 법적, 경제 문제 발생시 지사는 독립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본국 모기업이 지게 되므로 지사의 부실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마) 회사 등록 절차와 서류**

- 자본금 납입: 법정 예치금 25%를 이자부예금구좌(interest-bearing bank account)에 예치
- 공증 기관 입회 하에 회사 정관 확인 및 서명
- 법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내에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다.
- 이탈리아 상법상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탈리아어로 번역, 공증인(Notaio)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서류 공증이 끝나면 법무사,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 설립에 관한 여타 업무를 대행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인설치 업체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회사정관: 대표자성명, 주주현황, 회사명, 존립기간, 회사의 목적, 자본금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은행인증서: 한국의 외환 주거래은행이 발급한 해외사무소설치 인증(신청)서 등

-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동 이사회 결의서에는 지사의 법적대표(Legal Representative) 이름, 설립지사의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는 본사에서 발급한 지사대표로서의 주재원 임명장도 가능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본사(모기업)가 보증한 지사 법적 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한 서류

· 가능한 한 서류를 모두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오는 것이 편리하다. 이탈리아에서 번역 공증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이다

○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번호(Partita IVA) 및 세무번호(Codice Fiscale)발급

- 부가가치세 번호는 과세, 계산서 발행 등과 관계되는 일종의 회계 번호로서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및 회계업무에 필수적이다.

- 우체국에 상기 부가가치세번호 발급신청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과 소정의 구비 서류(회사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재원임명장의 번역, 공증본)를 함께 제출한다.

○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

- 지사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사 등록국에 신고하고 보통 지사 설립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절차를 수행한다.

○ 사회보장세(INPS), 산업재해보험(INAIL) 등록

- 지역 INPS(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지소에서 INPS 소정 양식인 DM68을 기재한 후 IVA 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INPS에 등록되는데 이때 기업별로 업종 코드(CSC)와 회사의 납부(보장) 범위를 나타내는 CA 코드가 부여된다. INPS는 CSC, CA 의 두 가지 코드에 의해 최종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사회보장세 납부 액을 결정 하며, 기업이 종업원 채용 시 INPS 등록을 위한 제반 서류들을 기업에 제공해 준다.

- INAIL (National Institute for work Insurance). 는 기업이 실제 영업 활동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때 INAIL 신청 양식에는 해당 기업의 업종, 종업원수, 급여액, 작업장에서 사용 하는 기계 및 운송 장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INAIL 등록을 마치면 기업에게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는 종업원들의 급여 명세표와 고용 계약서상에도 명기해야 한다.

## 바) 합작투자

○ 합작투자는 각자의 출자지분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투자형태로서 특정기간에 한시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단위 합작투자', 개별 기업간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기업간 합작 투자'의 형태로 나뉘어지며, 현재는 이탈리아에서도 증가추세에 있다.

○ 합작투자에 따른 별도 법인 설립의 경우 1번 단독투자 부분에서 설명한 3개 회사형태 중 1개를 선택해서 회사설립절차를 따르게 되며, 기존 법인의 주식취득/지분참여의 경우에는 지분관계 변화를 해당 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이를 관보에 공지하게 된다. 세부 서류는 합작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합작투자에 따른 계약체결, 지분관계 등은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작투자 관계 해소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및 경제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 부동산 취득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며 거주자와 동일하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부동산 취득 시 8-18%의 등록세가 부가되며 재산세 2-3%(지역에 따라 차등부과), 공증금 1%, 기타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이 수반된다. 외국인의 건물 매입 후 임대 가능하며 임대 시에는 소득세 지불 의무가 발생한다. 임대료의 25%까지는 건물 관리비로 간주하여 과세 표준가액에서 공제하며 나머지 75%는 수입으로 간주, 소득세를 부과한다. 건물 구입 가격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밀라노등 북부지방의 경우 s/m당 500 유로에서 1,000 유로에 해당하고 있다.

○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영업지역을 관장하는 지방 상공회의소를 방문 그 지역의 매입 또는 임대 가능한 공업용지를 물색

- 적정 용지 발견 시 매입 가격의 10% 선불 빙서를 첨부한 확인 각서에 서명 후 본 계약서 교환

- 매입 가격의 40%는 건축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할부로 납부 가능

- 나머지 매입 잔금의 50%는 건축 완료 후 대상부지가 실지용도로 사용되는 시기에 납부 가능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4) 투자입지여건

## 가) 자유무역지대

현재 이탈리아에는 Trieste, Venice 등의 자유 무역지대가 있는데 외국 원산지 제품이 수출용으로 생산 조립되는 경우 무관세 및 면세로 이탈리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서 권장하는 입주 유망분야는 기계조립, 자동차부품 및 악세 사리, 조선 제조업 등이다.

자유무역 지대의 이점은 물품이 여타 EU국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벗어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80일간 관세가 유예된다는 점, 제 3국으로부터 반입 된 상품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를 적용 받는다는 점, 어떤 국적의 입주업체라도 해당국 노동법에 따라 당해 국가의 국민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 나) 산업단지

이탈리아의 경우 산업 단지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통상 16-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레 형성된 전문 생산지역이다. 동일 분야에 종사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생산공정상의 한 분야를 분업화하고 전문 화하여 상호경쟁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탈리아 산업단지는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정부는 클러스터의 모델을 제시하고 클러스터의 형성은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 산업 단지수는 각 기관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60~200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탈리아 산업진흥원(IPI)의 분류에 의한 이탈리아 61개 산업단지에서 일자리 90만개 창출, 제조업 일자리의 8.6%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199개 산업단지가 이탈리아 제조업 고용 인구의 42.5%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 지원 및 지방 경제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 및 개발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1)Law 317 of 5th October 1991, art. 36, (2)Decree by Minister of Industry of 21st April 1993, (3)Law 598/1994, (4)Law 266 of 7th August 1997, (5)Law 140/199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은 중소기업들이 투자가 어려운 부문인 연구, 실험, 파일럿 프로젝트, 데모, 교육훈련, 생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제 감면 등의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구센터 또는 과학단지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관련 정보 수집, 신기술 전파,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지방 정부, 지방 정부 출자기관, 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협회들과 협력 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 예로, 이탈리아에서 반도체 산업 단지로 성장한 카타냐시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투자한 카타냐투자청 (Investia Catania)이 주동적으로 투자 업체를 유치하고 관련제도 개선 제안 등을 적극 수행하여, 산업단지 형성에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다)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입지 예정지역의 인구, 전력/용수, 교통망, 원자재 수급 여건 등 기본 인프라의 확인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 정부 또는 EU의 낙후지역개발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수혜 가능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좋다.

## 5) 노무관리

### 가) 노사관계

○ 이탈리아에는 3대 전국노조가 있다. the General Italian Confederation of Labour(CGIL), the Italian Confederation of Workers' Union(CISL), the Italian Union of Labor(UIL)이다. 이들은 국제 자유무역노조(ICFTU)와 연계되어 있다. 이들 노조는 전국 노동자를 대표하여 정부, 사용자단체와 당해 년도 임금상승률, 급여 외 수당, 휴가 등 포괄적인 노사합의를 주도하며, 그 결과는 전국의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 적용 된다.

### 나) 채용

○ 이탈리아의 근로자 채용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 개시 전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도 채용기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해져있다. 법률 223/91에 의하면 신규채용의 12%는 장애인 근로자 (dis advantaged worker)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법 시행에는 융통성이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무한 고용 계약'(lavoro indifferente)이다. 계절직업, 기존 직원의 출산 휴가, 질병, 병역, 또는 납득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나 예외적이다. 그러나 고위 관리직(Dirigenti)의 경우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고용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 계약체결 시 법률 CCNL 14/12 1990를 기초로 하되 각 섹터 별로 최소임금 등 별도의 고용관련 법률이 있으므로 세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거한 정식계약에 따를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채용 전 연봉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등급, 기타 근로조건 등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수습기간

○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가질 수 있는데, 직종과 직위에 따라 최대 허용 수습기간이 다르다. 직종별 수습기간 한도는 전국 노조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근로자가 일단 근무를 개시한 후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법적으로 무효), 수습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유롭게 상호 통지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에게 의한 계약 파기일 경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불만족했던 이유들을 상세히 기술, 전달해야 한다.

○ 한편 고용 형태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는 무한 고용 계약이 원칙이다. 하지만 2003년 이른바 Biagi law(입법자 이름)라 불리는 Decree No. 276/2003에 의해 3가지 새로운 계약형태, 임시직 (lavoro intermittente), job-sharing(lavoro ripartito), 부수 노동 (addi tional work, lavoro accessorio - 상시 고용이 필요치 않고 때에 따라 필요한 청소부, 유모, 정원사 등에 해당)가 신규

도입되었다.

## 라)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령(Decree 66/2003)에 의해 농업 종사자, 저널리스트, 여행사 직원 등 일부 직종에 한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된다.

○ 또한 근로자는 24시간 중 11시간, 1주일에 24시간 동안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야간근무는 24시간 내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며, 단체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간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 임금

○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제 (INPS), 신고용주제(IRAP)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탈리아에서는 급여가 연 12회가 아닌 14회 지급된다. 6월과 12월에 각각 14회 차 및 13회 차 급여가 지급되어 1년에 14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13회 차 급여는 당해 연도 1월-12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된다. 또한 14회 차 급여는 전년도 7월-당해 연도 6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불한다.

○ 이탈리아 노동법에 의거 고용주는 해고 또는 사직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 이탈리아의 경우 법적으로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 바) 휴일, 휴가 병가

○ 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휴식이 보장되고 법정 공휴일(연간 11일) 및 연간 4주일 (근로 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전년도 미사용 휴가는 다음연도에 사용 가능하고 재직 중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 병가는 6개월까지(단체협약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 정규봉급 및 직위를 유지하면서 신청 가능하다. 급여는 첫 3일간은 고용주가 급여를 부담하고 이후로는 사회 보장청이 부담한다.

○ 본인 결혼, 친척 경조사, 자녀 간호 등을 위해 연간 15일의 별도 유급 휴가 가능하다.

○ 여성은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간의 유급(80% 회사부담, 20% INPS부담) 휴가가 가능하며, 동 비용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부담. 남성 역시 육아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 사) 해고

○ 현행 이탈리아 노동법에서는 (1) 직무 위반,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당 사유’(Giusta Causa)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2) 납득할만한 사유(Giustificato Movito)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수일에서 최대 몇 개월까지 근로자 등급, 근속연수에 따라 사전 통지 후 해고 가능하다. 이때 납득할 만한 사유란 ‘정당 사유’ 구성 정도는 아니나 상급자의 중요한 직무지시를 어겼거나(주관적인 평가), 기계, 비품 등 물질적 손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 만약 재판을 통해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판명이 되면 15인 이상 고용기업의 경우는 복직 조치와 함께 최소 5개월 분의 급여 상당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복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5개월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5인 이하 고용 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15인 이상 고용 사업체와 동일하나, 노동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복직조치의 의무는 없는 없다.

○ 이탈리아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해고에는 행정적,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해고절차 전에 노무사, 노동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적법 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동관련 소송은 송장과 증거가 최초 변호진술서와 함께 제출되면 일반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되는 데 해고 소송의 경우 재판 종결 시까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판례는 고용주에게 다소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자 권익보호 중의 판결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 아) 노동 시장 유연화 노력

○ 이탈리아 정부는 법령 276/2003을 제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높은 고용비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기피 문제 해소를 위해 (1) 기업 경영이 한시적으로 특별히 호조 또는 저조 시 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형태 도입, (2) 특정 프로젝트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 고용 허용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 6) 조세제도

제 1차 및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구미 각국이 세계의 정비를 서둘러 소득세제를 분류소득세제에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였는데 비하여 이탈리아는 재원 수요를 간접세로 충당하면서 소득세제를 개편하지 않아 영. 미 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능률적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몇 번의 세제개혁을 거쳤으며 특히 97년 이후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조세 개혁의 목적은 특히 1) 정부 하위조직의 재정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2) 과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며 3) 대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부여 및 납세자가 따라야 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탈리아의 조세부과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부과조세로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

특세, 관세가 있다. 지방정부 부과조세로는 직접세인 생산활동지방세, 간접세인 부동산보유세가 있다.

## 가) 세부 세제

### ○ IRES(법인소득세)

- 법인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 대해 33%를 과세하며 국내법인이나 외국법인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며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외국투자자가 이탈리아 내에 등록, 설립한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이탈리아 법인으로 간주한다. 공제항목이 소득을 초과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간 걸쳐 이월공제 가능하며 사업개시 3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월 공제 가능하다.

### ○ 개인소득세(IRE)

- 이탈리아 거주 개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며 비 거주 개인은 이탈리아 내 발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누진소득세 체계로 제반 소득 공제 후 소득액이 2만6천 유로 미만이면 23%, 2만6천 유로 이상 3만3천 5백 유로 미만이면 33%, 3만3천5백 유로 이상 1십만 유로 미만이면 39%, 1십만 유로 이상이면 43%를 과세한다.

### ○ 생산활동지방세(IRAP)

- 각 주별로 소재하는 이탈리아 국내법인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생산 매출액에 대해 4.25% 과세하는데 주 별로 1% 범위 내에서 세율이 다를 수 있다.

### ○ 부가가치세(IVA)

- 모든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20%를 과세하며 일부 제품 종류에 따라 4%, 10%등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 부동산 보유세(ICI)

- 각 지자체 별로 부동산 등기가치에 따라 연간 0.4~0.7% 과세 한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외환규제가 전혀 없으며 완전자유화 되어 있어 내외국인 모두 이탈리아 국내외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으며, 또 직. 간접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금융기관에게 자금수지 및 돈세탁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EU 공통규정인 UIC Instruction 2001/3 (2001.12.21 공표)에 의해 12,500 유로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는 자금수지표에 포함, 보고해야 한다. 모든 외환거래 정보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 산하외환관리청(Ufficio Italiano dei Cambi-UIC)로 전달되며 통계처리 보관된다.

- 자본 본국송금

· 국경 밖으로의 외환송금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법에 따라 12,500 유로 이상일 경우 자금수지표보고 및 돈세탁방지규정에 의해 보고해야 한다.

- 이익송금

· 이탈리아 내에서 실현한 기업의 배당금 및 이익은 자유로이 송금 가능. 자금수지표 및 돈세탁방지규정에 의한 보고는 동일

- 로열티 및 수수료송금

· 관련 서류 및 세제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 없다. 이때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을 적용 받음. 로열티는 2% 미만, 수수료는 2-5% 사이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송금 가능하다. 이 이상의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무역거래에 따른 송금

· 전혀 제한이 없으며, 제반 규정은 동일

○ 자금차입 및 상환에 관한 제한 역시 없으나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담보물이나 보증인이 없을 경우 쉽지 않다.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금융업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어 자금 공급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위주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은행 역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system이며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매년 매출과 이익이 신장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탈리아에서 담보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한도의 1.5배 정도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는 것이다.

## 8) 투자유의사항

### 가) 인력 관리 시 애로사항

○ 이탈리아인들의 직장관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의욕”이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있는 데 비하여 이탈리아인들은 이 같은 의욕이 보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 직원에게 포상하거나, 혜택을 줄 때 이러한 것이 영속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를 반드시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고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탈리아 직원들은 이를 자신이 “획득한 권리”로 여기며 향후 지속되지 못할 경우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의무가 유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 기업 활동을 위해 인력의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약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가르친 과목은 불어, 독어 등으로 영어에 대

한 중요성의 인식이 낮았으며 최근 10여 년 정도부터나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좋은 방법으로 각종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직급에 맞는 책임자를 선발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직원 및 생산직의 경우 인력 공급회사(용역회사)를 통해 선발하면 시간, 경비 및 고용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나) 영업 및 자금 관리 상 애로 사항

○ 이탈리아에서 처음 기업 활동을 하는 한국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의 하나는 이탈리아의 영업환경이 신용에 의한 외상거래라는 점이다. 매출이 늘어나면 외상매출금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결국 은행의 한도를 관리하고 동시에 채권관리만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외상매출금 및 운영자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며, 적은 자본으로 유통산업에 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매출채권을 부보하는 신용보험도 있지만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보상금액도 전액이 아닌 70% ~ 80% 수준에 불과하다.

#### 다) 금융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 한국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은행 역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system 이다.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매년 매출과 이익이 신장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야 은행의 한도가 유지되거나 증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담보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확인만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한도의 1.5배 정도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는 것이다.

#### 라) 세금 관련 애로사항

○ 이탈리아는 만성 재정적자 국가로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20%로서 매우 높은 편이며 외상거래가 전제인 거래관습상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상 일시적 자금부족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지연납부 하게 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에 주의해야 한다.

○ 이탈리아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가끔 “condono(사면)”라는 한시적 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세금 누락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 하고 사면 받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시행 기간 중 본의든 혹은 실수로 발생한 미신고 세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사면 받게 된다.

#### 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이용 시 유의점

○ 이탈리아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전문가를 소개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전문가집단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유용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품질만큼 많은 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다.

## 5. 스페인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스페인 왕국(또는 에스파냐 왕국, 스페인어: Reino de España 레이노 데)은 유럽 서남부의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이다. 스페인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 연합에는 1986년에 가입하였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는 9번째, 유럽 연합에서는 5번째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

남부 스페인인은 정열적이고 밝다고 알려진 스페인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북부 스페인인은 이와 다른 경향이 강하다. 오래된 경기인 투우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집시들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는 플라멩코라는 춤과 노래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관습으로는 시에스타(스페인어: La Siesta)가 있다. 시에스타는 낮 동안에 잠시 일터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스페인의 고유 관습이다. 유럽의 관념에서 스페인의 시에스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많은 상점과 박물관조차 이 시간에는 문을 닫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오후 중 두세 시간 정도 문을 닫는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 의회에서 시에스타를 관공서에서만큼이라도 금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여 스페인 전역에서 반발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스페인의 저녁 식사 시간은 유럽에서도 제일 늦다. 대개 동부 지방에서는 밤 9시, 서부 지방에서는 밤 10시에 저녁 식사를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밤 문화가 흔하며 댄스 클럽이 소도시에서도 아주 흔하다. 대개 이런 클럽은 자정에 문을 열고 새벽까지 영업을 한다.

**<표 3-43> 스페인 일반 사항**

<b>국 명</b>	스페인 王國 (el 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b>위 치</b>	이베리아반도, 지중해 발레아레스 제도, 아프리카 서북쪽 카나리아제도, 북아프리카의 세우따, 멜리아 지역
<b>면 적</b>	505,992 km <sup>2</sup> (한반도의 2.3배) - 경작지 37%, 목초지 14%, 산림 33% 등)
<b>기 후</b>	-지중해안은 지중해성기후, 내륙은 대륙성기후를 보임. -내륙은 여름 내내 고온건조하고 북부 해안지방은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다. -겨울은 우기로 태양일수가 적고 강우량이 많은 편이다
<b>수 도</b>	마드리드 (Madrid)
<b>인 구</b>	4,471만 명 ('06.1월 기준, '07년 6월 스페인통계청(INE) 자료)
<b>주요 도시</b>	Madrid(601만), Barcelona(531만), Sevilla(184만),Valencia(246만), Zaragoza(92만) 등
<b>민족(인종)</b>	이베리아
<b>언 어</b>	-공식어는 스페인어(castellano) -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발렌시아, 나바라, 발레아레스 등 6개 자치주 언어 함께 사용
<b>종 교</b>	국민의 85%가 카톨릭 신자
<b>정부형태</b>	입헌군주제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정부; KOTRA 2008.04 재인용

## 나. 경제 개요

스페인 경제는 지난 수년간 유로지역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여, 2006년 3.5% (민간연구소인 EIU 는 3.5 %, 스페인정부는 3.9%로 집계)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하강 국면에 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인데, 민간연구소인 EIU 는 2007년 2.4%, 2008년 2.2%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까지 경기활성화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낮아졌으며, 소비증가 및 유가상승의 여파로 비교적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표 3-44> 스페인 경제 지표**

<b>GDP</b>	1조 2,258 억 불 ('06년 기준, '07년 3월 IMF 자료) - 한국 8,883 억 불
<b>실질경제성장률</b>	3.5% ('05년 기준, '06년 8월 스페인통계청 자료) 3.9% ('06년 기준, '07년 5월 EIU 자료)
<b>1인당 GDP</b>	27,767 불 ('06년 기준, '07년 3월 IMF 자료) - 한국 18,392 불
<b>실업률</b>	8.5% ('06년 기준, '07년 4월 스페인통계청 자료) 8.6% ('06년 4분기 기준, '07년 5월 EIU 자료)
<b>물가상승률</b>	민간소비증가율 3.7% ('06년 기준, '07년 5월 EIU 자료) 공공소비증가율 4.4% ('06년 기준, '07년 5월 EIU 자료)
<b>화폐단위</b>	유로 (Euro)
<b>환율</b>	1유로 = 1,343.69 원 ('07년 12월 7일)
<b>외채</b>	192억9,255 만 불 ('07년 1월, IMF)
<b>외환보유고</b>	170억 불 ('07년 5월, The World Factbook)
<b>산업구조</b>	서비스업 (66.8%), 공업 (29.2%), 농업 (4.1%) ('06년)
<b>교역규모</b>	(2007년 상반기) -수출 19억 8,119만 EURO -수입 7억 7,801만 EURO -무역흑자 12억 318만 EURO
<b>교역품</b>	수출: 자동차,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농산물, 연료 및 운할유 수입: 연료 및 운할유, 화학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철강제품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중앙은행,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IA; KOTRA 2008.04 재인용

스페인 시장은 다음의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잠재력 있는 소비시장

인구는 4,300여 만 명으로 유럽 5위이며 매년 7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 대국으로서 관련 소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최근 국내 소비 증가로 EU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3% 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경제 활성화로 높은 소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다.

2) 지방상권발달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체가 발달, 경제활동이 지방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마다 특색 있는 산업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바이어 접촉 시 그 지역 특색을 익히거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카탈루냐 주 (바르셀로나) : 자동차, 전자, 화학,플라스틱,직물산업
- 바스크 주: 기계류와 공구류 산업

-알리칸테 및 마요르카 : 신발산업 (최근 중국신발 유입으로 약화)

-발렌시아 주: 식물 (홈텍스타일), 조명, 가구, 유리제품

-안달루시아 주: 가구, 공예품

### 3) 치열한 가격경쟁 시장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산 고가품과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의 중저가상품으로 시장이 구분, 중저가 품 시장은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 4)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 및 높은 인지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 자동차 등 자동차 판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제품 및 이동전화 등 브랜드 인지도가 탄탄하고 고가품으로서 품질경쟁력도 인정 받고 있으며 특히 삼성 핸드폰과 LG 에어컨, LCD, PDP 제품은 해당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 5) 보수적 시장

일반적인 유럽시장 경향으로,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늦고 고객의 호기심이 적어 제품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며 상품수명주기가 긴 편이다. 일반 상품 구입의 예를 들면 제품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오래 들이며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구하며 직접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 홈쇼핑 등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표 3-45> 한국-스페인 관계**

<b>체결 협정</b>	사증 면제 협정(1972)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75) 공업소유권 협정('75) 문화협력협정(1977) 항공협정('89)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1994)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2000)
<b>교역규모</b>	우리나라의 수출 34억7천만 불('06년) 우리나라의 수입 7억8천만 불('06년) 무역흑자 26억9천만 불('06년)
<b>교역품</b>	-수출: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무선전화기, 철강재용기, 공기조절기, 타이어, 건설중장비, 냉장고,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우리나라 수출) -수입: 식물성유지, 의약품, 자동차부품, 기타고속광물, 타일, 가축육류, 계축기부품,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원료, 철강관 등
<b>교민</b>	교민수 : 3,606명(IBERIA 반도내 2,324명, Las Palmas 1,282명)

자료원: 스페인 정부, 스페인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KOTRA 2008.04 재인용

한-스페인 교역규모는 1970년에 1억불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 2억불, 1990년 5억불, 1994년 10억불, 2002년 20억불을 달성한 데 이어, 2006년 약 40억 불을 넘어서는 등 최근 5년 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7년 상반기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총 24억 불이다.

양국간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 스페인 한국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은 2003년 20억불 대, 2006년 30억불 대를 넘어섰으며, 2006년 약 35억 불이 수출 되어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증가하며, 무역흑자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상반기 현재 한국의 對 스페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5.6% 증가한 19억8,1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0.8% 증가한 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3-46> 한국-스페인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1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스페인 수출	1,552	2,016	2,809	2,867	3,479	3,570	13.7%
對 스페인 수입	429	445	562	653	778	765	6.3%
무역수지	1,123	1,571	2,247	2,214	2,701	2,805	-

자료원: KITA; KOTRA 2008.04 재인용

스페인인 연간 540억 불을 해외에 투자하는 세계 5위 FDI 투자국으로서 그간 중남미와 인근 유럽 지역에 집중했던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아시아권으로 진출노력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제약, 유통,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페인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소홀했던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까지는 극동아시아 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한국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볼 때 한국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건수는 26건, 투자금액은 1억 8,272만 달러 규모로, '98년 말 외환위기로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0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7> 우리나라의 對스페인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3월)	누계
건수	1	3	2	2	0	8
금액	300	13,176	1,261	1,204	0	15,94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6;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투자진출업종은 도소매업(63.7%)과 제조업(32.8%)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2.0%), 숙박음식업(1.2%) 등이며,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삼성전자(판매), 기아 자동차(판매), LG 전자(판매), 대우전자(판매), 대우자동차(생산), 한국타이어(지사) 등이다. 주요 투자지역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순이다.

<표 3-48> 우리나라의 스페인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No.	투자기업명	현지법인명	업종	신고금액
1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IBERIA, S.A.	가전, 정보통신기기	60,891
2	대우전자(제조)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ESPANA S.A.	냉장고	43,800
3	대우자동차	CHEVROLET ESPANA, S.A	자동차	38,789
4	LG 전자	LG ELECTRONICS ESPANA S.A.	가전, 정보통신기기	16,634
5	대우전자(판매)	DAEWOO ELECTRONICS ESPANA S.A.	전기, 전자제품	13,550
6	국제상사	KUKJE-CHUN NAM S.A.	양모피	7,500
7	대아	DAEA-SELONA.S.A.	올림픽취장품	1,800
8	제너시스	EUROPA BBQ ESPANA S.A.	Sea Food	1,278
9	MULTIPROSUR	MULTI-PROSUR, S. A	어업	936
10	(주)세라젬	CERAGEM SPAIN S.L.	의료기	45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A 2008.04 재인용

## 다.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외국인투자법 요약

스페인인 법령 Royal Decree 664/1999로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였으며, 동 법령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투자 후 사후신고로 가능하다. 관련법령에서는 3,005,060유로 이하의 외국인 투자(Tax Heaven 국가로부터 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한편, 1) 조세천국(Tax Heaven)으로부터 투자, (2)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해외투자 및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나) 정부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스페인의 산업진흥 정책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산업의 전략적인 발전, 특정 지역의 개발, 중소기업의 지원, R & D, 고용증진 등이 그것들이다.

정부의 지원은 금융 지원과 비 금융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금융지원에는 보조금, 정부대출, 및 벤처 캐피탈에 대한 지분참여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Direct incentive)와 세금감면 등의 간접적인 인센티브 (Indirect incentive)가 있다.

비 금융 지원에는 기술, 경영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에서부터 특별 고용계약 계획, 산업용 부동산 취득 및 회사합병 계획에 대한 인센티브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1) 스페인 중앙정부 및 자치정부

스페인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은 지역개발을 위한 것인데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Royal Decree 에 의하여 지역에 따라 금융지원과 비 금융 지원의 내역이 달라진다. 지역구분은 4가지의 형태(I, II, III 및 IV) 인데 이 지역구분에 따라 투자승인금액의 25 ~ 75 % 가 Non-repayable grants, Interest subsidies on loans granted by finance companies, Subsidies on loan repayments, Rebate of up to 50 % of employ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등의 방법으로 지원된다. 기타 고용훈련 인센티브 와 수출 인센티브가 있다.

2) 민간 및 공공단체

민간 및 공공단체도 금융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별 지원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49> 스페인 주요 기관별 지원 내용

기관 명	지원 내역
Advisory Commissio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AICYT)	Long-term interest-free loans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terdepartmental Commission for Research and Technical Innovation (CDTI)	Financial subsidies for innovative technological projects, the manufacture of new products and development of new industrial projects
Public company for the promotion of innovation (ENISA)	Limited investment in capital-risk companies. Promotes foreign investment through its offices abroad

3) EU 인센티브

E. U. 는 역내국가 회사들의 고용증대,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 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조금, 자금대출 및 지원 등이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3 개의 기금으로부터 나온다.

-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and Orientation Fund

- European Social Fund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의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는 보조금, 융자,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지방 정부를 통해 해외투자기업에 지원된다. EU 차원의 공여인센티브는 유럽투자은행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및 스페인 신용청(ICO; Spanish Official Credit Institute)을 통해 지원된다. EU 공여 인센티브는 EU 역내국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거나 실업률이 높은 저개발지역 및 철강, 조선 등 구조조정 산업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 다) 은행 및 금융기관

스페인의 은행 및 금융기관은 Official credit institutions, Private banks, Savings banks, Credit Cooperatives,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의 형태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Official credit institutions은 정부의 정책금융기구로서 현재 6 개가 있는데 1991년 5월 3일에 공포된 Royal Decree에 의하여 "Corporacion Bancaria de Espana(스페인 은행 공사)" 를 지주회사로 하여 통합되었으며 6개의 정책은행은 다음과 같다.

- Banco de Credito Industrial (산업은행)
- Banco de Credito Agricola (농업은행)
- Banco de Credito Local (지방은행)
- Banco Hipotecariode Espana (부동산은행)
- Caja Postal de Ahorros (체신금고)
- Banco Exterior de Espana (외환은행)

Private banks는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을 말하며 스페인 금융체계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은행은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BBVA)와 Banco de Santander 등이 있다.

Savings banks는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을 말하며 " Cajas de Ahorro "로 표시된다.

당초에는 주택구입자나 공공건물 건축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상업은행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Credit Cooperatives 는 신용금고를 의미한다.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거나 예금을 수신한다.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는Discount houses, Financing companies, Leasing companies 등을 의미한다.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지사(SUCURSAL)

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나 최소자본금 불입 의무가 없는 것이 다르다. 즉, 법률사무소 선임 => 설립신고서 작성 => 투자승인신청 => 외국인 투자등록서 입수 => 스페인 비거주자 확인증 발급 => 미등록 상호증명서 발급 => 납세자 번호 신청 및 세금납부 => 현지 고용원 채용 및 사회 보장제 등록의 순이다.

## 나) 단순사무소(OFICINA DE REPRESENTACION)

현지 단순 사무소(OFICINA DE REPRESENTACION)는 일종의 지사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지사의 경우 수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이 허용되는 반면 단순사무소는 스페인 내 직접 판매 행위는 할 수 없고 마케팅 및 판촉 등 영업에 부수적인 행위만이 허용된다.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92년부터 외국인 투자는 사전허가제 폐지로 일반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감독기관은 없으며 투자제한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심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 관련업무는 경제재무부에서 투자정책 수립을 산업무역관광부의 무역투자총국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며 각 지방정부 및 지방개발기관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기관은 아래와 같다.

### 가) 투자정책 총괄기관

- 담당기관 : 스페인 경제재무부 "무역 정책 해외 투자국"
- 역 할 :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 및 투자진흥 정책수립 총괄
- 연락처
- 주 소 : Paseo de Castellana, 162, 28046, Madrid, Spain
- 전 화 : (34-91)583-7400
- 팩 스 : (34-91)349-3562

### 나) 투자유치 총괄기관

- 담당기관 : 스페인 산업 무역 관광부 무역투자 총국(Direcion Gernal de Comercio e Inversiones)
- 역 할
-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 및 투자진흥 정책수립 총괄
- 투자유치 홍보

-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
-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업무
- 격월간 "Invest News Spain" 발간
- 홈페이지 운영 [www.investinspain.org](http://www.investinspain.org)
- 각종 관련 행사 개최
- 연락처
- 주 소: Paseo de la Castellana, 162 - Madrid 28046 Spain
- 전 화 : 34 91 349 36 16
- 팩 스 : 34 91 349 35 62
- E-mail : [sgiex@mcx.es](mailto:sgiex@mcx.es)

#### 다) 각 자치주 별 투자유치 전담기관

- 기 능 : 지역개발 및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업무 등 업무수행
- 수행업무내역
- 지역 내 해외투자업체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세미나
- 개최, 투자 희망업체 투자조사 지원, 해당지역 투자정보 제공
- 과학기술공원(Technology Park)내 업체유치활동
- 산업공단 개발 및 조성
- 물류현대화 사업
- 지역산업개발프로그램
- 기업 국제화 지원
-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중소기업 종합금융서비스
- 안달루시아(Andalucia)
- 기관명 : 안달루시아개발청(IFA : Instituto de Fomento de Andalucia)
- 주 소 : C/Torneo, 26 41002 Sevilla, Spain

- 전 화 : (34-95)490-0016
- 팩 스 : (34-9)490-6300
- 아라곤(Aragon)
  - 기관명 : 아라곤개발청(IAF : Instituto Aragones de Fomento)
  - 주 소 : C/Tte. Coronel Valenzuela, 9 50004 Zaragoza, Spain
  - 전 화 : (34-976)70-2101
  - 팩 스 : (34-976)70-2103
- 아스투리아스(Asturias)
  - 기관명 : 지방개발청(IFR : Instituto de Fomento Regional)
  - 주 소 : Parque Tecnologico de Asturias 33420 Llanera (Asturias), Spain
  - 전 화 : (34-985)26-0068
  - 팩 스 : (34-985)26-4455
- 발레아레스군도(Balearic Islands)
  - 기관명 : 발레아레스 산업진흥소 (Ofinica de Promocion Industrial)
  - 주 소 : C/Foners, 10, 07006 Palma de Mallorca, Spain
  - 전 화 : (34-971)17-6133/4
  - 팩 스 : (34-971)17-6154
- 빠이스바스코(Pais Vasco)
  - 기관명 : 산업진흥재편공사(SPRI : Sociedad para la Promocion y Reconversion Industrial S.A.)
  - 주 소 : C/Gran Via, 35-3rd fl. 48009 Bilbao, Spain
  - 전 화 : (34-94)479-7700
  - 팩 스 : (34-94)479-7022
- 카나리군도(Canary Islands)
  - 기관명 : 공업에너지 고문 부위원회(Vice-Consejeria de Industria y Energia)
  - 주 소 : Edificio Usos Multiples - 8th fl. 35071 Las Palmas, Spain

- 전 화 : (34-928)37-1612
- 팩 스 : (34-928)38-4070/38-3764
- 칸타브리아(Cantabria)
  - 기관명 : 칸타브리아지역개발공사(SODERCAN : Sociedad para el. Desarrollo Regional de Cantabria)
  - 주 소 : Avda. Los Infantes, 32, Quinta Labat, 39005 Santander, Spain
  - 전 화 : (34-942)29-0003
  - 팩 스 : (34-942)27-3240
- 카스티야-레온(Castilla-Leon)
  - 기관명 : 경제개발공사(Agencia de Desarrollo Economico)
  - 주 소 : C/Duque de la Victoria, 23 47014 Valladolid, Spain
  - 전 화 : (34-983)41-1420
  - 팩 스 : (34-925)41-4970
- 카스티야-라만차(Castilla-La Mancha)
  - 기관명 : 산업발전국(Direccion General de Desarrollo Industrial)
  - 주 소 : Plaza Zocodover 7, 2nd Fl. 45071 Toledo, Spain
  - 전 화 : (34-925)26-9800
  - 팩 스 : (34-925)26-7873
- 카탈루냐 (Cataluna)
  - 기관명 : 기업 정보개발 센터(CIDEM : Centro de Informacion y Desarrollo Empresarial)
  - 주 소 : C/Provenza 339, 08037 Barcelona, Spain
  - 전 화 : (34-93)476-7200
  - 팩 스 : (34-93)476-7300
-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
  - 기관명 : 엑스트레마두라 산업개발공사 (SOFIEX : Sociedad de Fomento Industrial de Extremadura)

- 주 소 : C/Moreno de Vargas, 2 06800 Merida, Spain
- 전 화 : (34-924)31-9159/31-9179
- 팩 스 : (34-924)31-9212
- 갈리시아(Galicia)
  - 기관명 : 갈리시아 경제 진흥청(IGAPE : Instituto Gallego de Promocion Economica)
  - 주 소 : C/Fray Rosendo Salvado, 16, bajo 15701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 전 화 : (34-981)31-54-1150/60
  - 팩 스 : (34-981)31-59-0467
- 리오하(La Rioja)
  - 기관명 : 개발청(Servicio de Fomento)
  - 주 소 : Edificio Simeon C/Portales, 46, 1st fl. 26071, Logrono, Spain
  - 전 화 : (34-941)29-1100 exit 5027/5030 / 팩 스 : (34-941)29-1201
- 마드리드(Madrid)
  - 기관명 : 마드리드경제개발청(IMADE : Instituto Madrilenio de Desarrollo Economico)
  - 주 소 : Gran Via, 42 28013 Madrid, Spain
  - 전 화 : (34-91)580-1568/2517
  - 팩 스 : (34-91)580-1972
- 무르시아(Murcia)
  - 기관명 : 무르시아지방개발청(Instituto de Fomento de la Region de Murcia)
  - 주 소 : C/Garcia Alix, 17 - Bajo 3005 Murcia, Spain
  - 전 화 : (34-968)36-2800
  - 팩 스 : (34-968)29-9548
- 나바라(Navarra)
  - 기관명 : 나바라개발공사(SODENA : Sociedad de Desarrollo de Navarra)
  - 주 소 : Avda. Carlos III, 36-1D 31003, Pamplona, Spain

- 전 화 : (34-948)23-0400
- 팩 스 : (34-948)15-2614
- 발렌시아(Valencia)
- 기관명 : 발렌시아수출청(IVEX : Instituto Valenciano de la Exportacion)
- 주 소 : Pl. America, 2-7 46004 Valencia, Spain
- 전 화 : (34-96)395-2001
- 팩 스 : (34-96)395-2879

## 라)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회사설립 및 투자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스페인 내 주요 컨설팅 사는 아래와 같다.

### 1) DELOITTE Madrid

- Plaza de Pablo Ruiz Picasso s/n
- Torre Picasso 28020 Madrid Madrid SPAIN
- Número de Teléfono: 00 34 91 514 50 00
- Número de Fax: 00 34 91 514 51 80
- www.deloitte.es

### 2) PRICEWATERHOUSE COOPERS

- Senior Partner's Office - Spain Firm
- Edificio Marañón Paseo de la Castellana, 53 28046 Madrid Spain
- Telephone: [34] (91) 568 44 00
- Telecopier: [34] (91) 568 55 90
- www.pwcglobal.com

### 3) ERNST & YOUNG MADRID

- Plaza Pablo Ruiz Picasso, 1
- Torre Picasso

○ 28020 Madrid

○ Tel. 915 727 200 – 915 727 580 – 915 727 370

○ Fax 915 727 238 – 915 727 270 – 915 727 400

4) ERNST & YOUNG BARCELONA

○ Avda. de Sarrià, 102–106 Edificio Sarrià Fórum 08017 Barcelona

○ Tel. 933 663 700

○ Fax 934 053 784 – 934 397 891

○ [www.ey.com](http://www.ey.com)

5) KPMG ([www.kpmg.es](http://www.kpmg.es)) Madrid

○ Paseo de la Castellana, 95 Edificio Torre Europa 28046 Madrid

○ Tel. +34 91 456 34 00

○ Fax. +34 91 555 01 32

6) KPMG ([www.kpmg.es](http://www.kpmg.es)) Barcelona

○ Avda. Diagonal, 682 Edifici La Porta de Barcelona 08034 Barcelona

○ Tel. +34 93 253 29 00

○ Fax. +34 93 280 49 16

7) CONFEAUDITORES ([www.confeauditores.com](http://www.confeauditores.com)) Madrid

○ C/ del Factor, 14 28013 Madrid

○ Teléfono: 91 548 45 00

○ Fax: 91 548 30 27

○ [confeaud@confeauditores.com](mailto:confeaud@confeauditores.com)

8) RSM AUDIHISPANA ([www.audihispana.com](http://www.audihispana.com)) Madrid

○ C/ Velázquez, 24 28001 – Madrid – Spain

○ Telf: 91 576 39 99

○ Fax: 91 577 48 32

9) BDO AUDIBERIA (www.bdo.es) Madrid

- C/ Rafael Calvo, 18 28010 – Madrid – Spain
- Telf: 91 436 41 90
- Fax: 91 436 41 92

10) AUREN (www.auren.com) Madrid

- José Lázaro Galdiano, 4 5ª planta 28036 MADRID
- Tel: +34 912 037 400
- Fax: +34 912 037 470
- mad@mad.auren.es

11) AUREN (www.auren.com) Barcelona

- C/Mallorca, 260 ático 08008 BARCELONA
- Tel: +34 93 215 59 89
- Fax: +34 93 487 28 76
- bcn@bcn.auren.es

12) GASSO AUDITORES (www.gassomri.com) Barcelona

- Mestre Nicolau, 19 2a. planta 08021 Barcelona
- Tel. 34 93 418 47 47
- Fax 34 93 211 11 66
- info@gassomri.com

13) GASSO AUDITORES (www.gassomri.com) Madrid

- Padre Damián, 5 1º 28036 Madrid
- Tel: 914 57 02 39
- Fax: 914 57 18 49
- madrid@gassomri.com

14) MAZARS (www.mazars.es) Barcelona

- Avda. Diagonal 609, planta 10 08028 Barcelona - Sapin
- Telf: +34 934 050 855
- Fax: +34 934 050 770

15) MAZARS (www.mazars.es) Madrid

- Claudio Coello 124, Planta 2 28006 Madrid
- Telf: +34 915 624 030
- Fax: + 34 915 610 224

16) 현지 한국인 변호사 (투자진출 컨설팅 및 업무 대행)

- 장호성 변호사
- 전화번호 : 34) 928 266 432
- 휴대전화 : 34) 659 394 539
- 이메일 : changws@telefonra.net

#### 4) 투자입지여건

스페인 내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는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자유 무역지대 관리소(Consorci Zona Franca de Barcelona)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el-con, sorci.com/index\\_ingl.htm](http://www.el-con, sorci.com/index_ingl.htm) 참조가 가능하다.

이외 카나리아(라스팔마스, 테네리페), 세우따(Ceuta), 멜리야(Melia) 등이 부가세 면제 등 스페인 본토와는 다른 조세체계로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에 소재한 세우따, 멜리야의 경우는 모로코, 알제리 등으로 재수출을 위한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5) 노무관리

##### 가) 노동여건 개관

스페인은 1980년 이후 96년까지 사회당 정부 집권영향으로 근로자 권익우선의 노동관행이 정착, 노동시장이 경직화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임시계약 증가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94년 1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 전체 평균으로는 8.5%를 나타내 2005년 대비 감소하였다. 2007년에는 8.1%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인 여타 EU 국가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 시 노동시장 경직성 및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회보장세율은 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1) 고용

스페인에서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나 노동부 산하 고용청(INEM), 직업소개소,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

단, 노동부 산하 사회보장국 신고, 고용계약 종료 시 각종 노동분쟁 등으로 외국회사의 경우 변호사를 통한 고용계약 자문 등이 추천된다.

### 2) 근무/휴일/휴가제도

근무시간은 단체협약 또는 개별 고용계약에 명시되는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다.

휴일, 공휴일은 최소 주당 하루 半 이상의 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전일, 또는 일요일 전일 및 월요일 오전이 일반적이며 유통업 등을 제외하고는 연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토, 일요일 휴무가 일반적이다.

18세 미만은 주당 2일의 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공휴일은 중앙정부, 주정부 및 각각의 市가 지정하는 연14일이다.

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매년 30일 유급휴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외 결혼 15일, 장례 2-4일, 공무(병역 등) 휴가, 출산 14주, 授乳 1일 1시간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 3) 임금

스페인 급여는 기본급 12개월 이외 상여금을 크리스마스 및 여름 휴가 때 100%씩 지급함으로써 연간 14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별로 단체협약에 의해 12개월 치 지불이 가능하다. 단 이는 14개월 치를 12개월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금액 상 차이는 없다.

인건비 개념으로 급여 이외 사회보장세가 37.2%(고용주 30.8%, 고용인 6.4%)이 납부되어야 한다.

### 4)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근무는 초과근무 일 4개월 이내의 휴가(time-off)로 보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80시간 초과근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근무에 대한 지불이 단체협약 또는 개별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 시간당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통상 수당은 정상급여의 75% 추가 지급하나 근로자와의 합의 시 50%선에서 가능하다.

### 5) 임금수준과 생산성

최저임금은 유로권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가 정해 발표하는데 2006년 현재 540.90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력 수준은 EU내 제 2위의 높은 고등 교육률(25.67%)과 140여 개 기술대학 및 대학원을 보유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노동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OECD국 중 상위수준이다.

생산성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비교적 바르셀로나, 바스크 지방의 생산성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 나) 사회보장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가입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주재 상사 및 교민의 경우 현지인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혜대상은 퇴직연금 47.2%, 미망인연금 25.1%, 장애자 연금 24.1%, 고아연금 3.3%, 다수 가족연금 1.0% 순이다.

보장범위는 전국민 대상이며, 각 기업체에선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보장"과 실업 전 근무년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 결정하는 "실업보장"(1년 근무 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다), 최소 15년-최대 35년간 근무 시 65세 이후부터 수혜 받는 "노후연금"이 있다. (노후 연금은 60세 이후 최대 수혜액은 퇴직 전 8년간 평균급여의 60%, 65세까지 점차 증가, 100% 수혜 받는다.)

2001.12월부터 연금기금 절약과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고용 촉진책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50% 감면하는 인센티브안을 시행하고 있다.

부담범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협의에 따라 일정을 부담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사회 보장금 산정을 위한 최소치 기준이 있다.

## 6) 조세제도

스페인의 세제는 크게 세금(impuestos)과 부과금(tasas), 특별기부금(contribuciones especiales)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 주체는 중앙 정부와 자치주 정부, 지방 도나 시 정부가 있다.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 직 접 세: 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비 거주인 소득세, 세습재산세(개인에게만 부과된다), 재산세 상속 및 증여세)

○ 간 접 세: 부가가치세(재산이전 및 법률행위에 관한 세금, 특별세, 수입관세, 보험금에 관한 세)

○ 내외자기업 소득세율 단 일 : 35%

- 기본적으로 내외자기업 소득세율이 35% 로 단일하다.

- 현재 법인세율은 35% 로, 향후 세제개혁을 통해 연내 30%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 산업별 혜택위주

- R&D, 기술개발 및 혁신, 대체에너지, 관광, 시청각 산업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등 혜택

## 가) 법인세

부과대상 법인은 "거주"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스페인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거나 사업 장이 스페인 영토 내에 소재하거나, 실질적인 운영 본부가 스페인 영토 내에 소재하면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부과 대상이 된다. 거주여부 결정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페인과 해당 법인의 출신국 간에 이중방지과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동 협정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세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기업활동 외 이익, 일반적인 기업활동과 무관한 투자행위에 따른 이익, 주식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부과된다.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35%이며, 부동산투자기금을 포함한 단체투자기금에는 1-7%, 특정 조합 에는 20%, 석유 연구 및 채굴 단체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 방법은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공제가능 항목+순 양도 소득)x 35% 이다.

한편,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 시 10%,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 시 10%, 영화제작 투자 시 20%, 도서 출판에 투자 시 5%, 과학 연구개발 투자 시 30%, 수출이나 관광진흥 목적으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거나(조세피난처는 제외) 광고를 시행하고 국내외에서 개최 되는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년대비 장애자 고용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고용 장애자 1인당 연간 4,808 유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나)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영토 내에 고정 거주지를 보유한 자 : 스페인 영토 내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 하거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직업이나 기업활동의 기반이나 중심이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경우

○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법이 정하는 몇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 (예: 외교관)

○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자 : 거주지 변경 실시 해당 년도와 이후 4년간 납세 의무를 진다.

EU 회원국 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총 소득의 75% 이상을 스페인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소득세 대신 개인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노동 소득, 부동산자본 소득, 동산자본 소득,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투자기관을 통해 얻은 소득, 2년 미만 동안 보유자산 변동으로 발생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세율은 20%~56%까지 누진 적용된다.

한편, 개인소득세 공제 대상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의료비,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액 또는 재건축비, 세우따(Ceuta) 및 멜리야(Melilla)에서 취득한 소득,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 문화자산에 대한 투자 및 지출 등이 있다.

#### 다) 부가가치세(IVA)

기업이나 직업인이 스페인 영토 내에서(카나리아, 세우따, 멜리야 제외)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세율이 적용된다.

- 16%: 기본세율
- 7%: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 물, 승객 및 짐 운송, 호텔, 레스토랑, 연극 및 영화 관람료
- 4%: 빵, 밀가루,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채소,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용 보철기, 공공보호시설

보험, 금융, 의료서비스, 교육, 주택임대 등과 같은 일부 재화및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수출자는 수출 과정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카나리아군도, 세우따 멜리야(Ceuta y Melilla) 지역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데 카나리아군도에서는 대신 일반간접세(IGIC) 4.5%가 부과되며 세우따와 멜리야에서는 부가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으로 생산, 서비스 및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스페인인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외환자유화 관련 법령으로는 칙령1816/1991, 42/1993, 1638/1996 등이 있는데 몇 차례 개정되면서 규제조항이 철폐되었다. 스페인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송금 또는 결제는 제약 없이 가능하다.

다만, 스페인 정부는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스페인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조치에 위반될 경우 비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은행 송금, 외환지급 및 수령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극도로 짧은 기간내의 핫머니의 유출입이 스페인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EU의 자본 흐름과 관련된 규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스페인 거주자가 아래의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스페인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무역거래 또는 서비스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환지급 및 수령을 1년 이상 집행연기 또는 용자하는 경우
- 무역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차관계를 상계 처리 하는 경우
- 금융중개기관이 금융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차관계를 상계 처리 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제공하는 금융융자, 그리고 스페인 거주자가 발행한 채권, 어음 등 (스페인에서 을 비거주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금융 융자로 간주 되 어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가 1인당 6,010.12 유로 이상을 소지하여 출국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이를 압수할 수도 있다. 한편 1인당 6,010.12 유로 이상을 소지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신고의무가 있다.

비거주 개인이나 법인도 거주자와 동등하게 스페인 내 은행구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8) 투자유의사항

### 가) 충분한 타당성 조사

관련 기관이나 기업과의 자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실제 관련 증빙 및 현지 시장에서의 위치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수이다. 스페인의 경우 지역별로 산업이 특화되어 있어 동종 관련 업종이 많이 소재한 지역이 어디인지, 전문인력 확보 또는 원부자재 조달 등이 용이한지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곳을 접촉하여 최상의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것이 좋다.

### 나) 적합한 투자방법 선택

투자목적과 계획에 따라 최적의 진출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며, 진출방법의 결정과 설립절차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기존 투자기업의 성공 노하우 습득

신규 투자진출의 경우 경험의 부족, 현지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무지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난관이나 어려움에 봉착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현지 무역관 또는 공관을 통해 진출기업을 소개받고 투자진출 과정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기업의 진출과정을 지원한 경험 있는 변호사나 컨설팅사를 만날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 현지변호사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업무처리가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인 변호사를 물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라) 파견직원 노동허가 및 비자 취득

스페인인 노동비자와 체류비자 취득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파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주재원 발령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후 비자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체류비자 유효기간이 최초 1년이기 때문에 발급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갱신절차를 밟기도 한다. 또한 주재원의 경우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자를 위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 6. 네덜란드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이며, 2003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4년부터 회복세로 진입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에 올라 2006년 2.9%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교역과 투자유치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가지고 있다.

<표 3-50> 네덜란드 일반 사항

국 명	네덜란드 왕국 (영문명: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현지어명: Koninkrijk der Nederlanden)
위 치	유럽대륙의 북서부 -동쪽으로 네덜란드, 남쪽으로 벨기에, 북·서쪽으로는 북해에 면하고 있다
면 적	41,548 Km <sup>2</sup>
기 후	온화 다습한 해양성 기후
수 도	암스테르담 * 행정수도는 헤이그
인 구	16,398천명(2007.10.30) -높은 인구밀도: 1km <sup>2</sup> 에 475명 정도 거주(벨기에 137명) -남성(8,088,514명), 여성(8,269,478명) - 2007.6.20 기준 -20세 미만 (24.2%), 20-40세(26.4%), 40-65세(34.9%), 65-80세 (10.8%), 81세 이상 (3.7%) - 2007.6.20 기준
주요 도시(인구)	암스테르담(73.7만), 헤이그(46.4만), 로테르담(60만), 유트레흐트 (26.5만)
민족(인종)	네덜란드족(게르만족 계통), 소수인종(모로코, 터키, 수리남)
언 어	네덜란드어, 영어(90%), 독어(30%), 불어(20%)
종 교	카톨릭(32 %), 신교(25 %), 기타(5 %), 무교(38 %)
건국일(독립일)	1558년
정부형태	내각 책임제

자료원: KOTRA, 2008.04

### 나. 경제 개요

네덜란드는 2006년 기준 수입 규모로만 보면 3,319억 유로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부분이 독일을 비롯한 인근국으로 재수출 물량이므로, 자국 제조업이 빈약한 네덜란드 자체의 시장규모는 교역액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가 교역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유럽 대륙의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이로 인해 교역물량을 처리하면서 생긴 조직화된 상거래기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네덜란드를 유럽의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대 네덜란드 수출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네덜란드 시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 시장 및 무역활동의 완전개방

-네덜란드에서는 무역이 생활영위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과 방편이 되어 온 관계로 보호 무역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생활터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까지 간주한다.

-국내 산업의 경우, 경쟁력 있는 산업만 특화 하여 집중 발전시키고, 여타 분야는 외국기업에 과감하게 개방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민 역시 자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저렴하고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편, 대다수의 네덜란드 수입상들은 역사적 유대감을 갖는 베네룩스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동구까지를 활동 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지 수입상과의 확실한 관계 설정 여부는 현지 시장 및 유럽시장 진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 근검절약의 실용적 소비패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물에 젖은 휴지를 말리는 곳이 나타나면 그 곳이 네덜란드이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국민은 대개가 검소하다. 이 같은 국민성을 반영, 제품 구매 시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저렴하고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 Test Market

-무역의 완전 개방화에 따라 시장진출은 용이한 반면, 세계 각국의 제품간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소비자의 까다로운 소비패턴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성공한 제품은 유럽지역의 진출이 보장되는 완전한 "Test Market"이다. 일본과 대만 역시 유럽진출 초기에는 자사제품의 소비자 반응과 시장동향을 분석한 곳이 네덜란드이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유럽시장에 최초 진출한 곳도 네덜란드다.

**<표 3-51> 네덜란드 경제 지표**

<b>GDP</b>	5,346억 유로(2006년)
<b>실질경제성장률</b>	약 29,400 유로
<b>1인당 GDP</b>	32,683유로
<b>실업률</b>	2006(5.5%), 2005(6.25%), 2004(6.4%)
<b>화폐단위</b>	유로(Euro) (2002년 1월부터 변경)
<b>환율</b>	-1 EUR = 1,356.10원 (2007.12.20) -1 EUR = 1.4341 USD (2007.12.120)
<b>외채</b>	총 GDP의 약 52%
<b>교역규모</b>	2006년 (수출 368,201백만 유로, 수입 331,358백만 유로) 2005년 (수출 322,516백만 유로, 수입 287,827백만 유로) 2004년 (수출 287,337백만 유로, 수입 256,990백만 유로)
<b>산업구조</b>	-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59%를 점유 (제조업 비중은 22% 수준) -ICT, 바이오산업을 주요 지식육성산업으로 판단 -화학산업 등 2000년 이후 평균 10% 성장 주요산업으로의 위치
<b>교역품</b>	-수출: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및 전기, 의약품, 화학제품 -수입: 전자 및 전기, 자동차

자료원: KOTRA, 2008.04

### **다. 우리나라의 對네덜란드 관계**

네덜란드는 EU의 회원국으로서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2007년 5월부터 추진된 한-EU FTA에 EU의 회원국으로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EU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 2대 수출시장이며 한국은 EU측에서 볼 때 아시아의 중요시장일 뿐 아니라 최적의 거점으로 한-EU FTA는 양측 모두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에 농업부분과 관련 돼지고기를 비롯해 치즈 등 낙농품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큰 규모를 점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EU 전체적으로 볼 때도 미국과 비교 농림산업 부문의 대한 수출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한-EU FTA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EU 농림산품 대한 수출 증대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한-칠레, 한-미 FTA 체결과정을 통해 EU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의 기존 FTA 체결국(칠레,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EU 회원국으로서 체결 성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표 3-52> 한국-네덜란드 관계

<b>체결 협정</b>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교환 (66.4.29 발표) 사증면제협정 서명 (70.6.1 발효) 항공협정 서명 (70.12.30 발효) 투자보장협정 서명 (75.6.1 발효) 이중과세방지 협정 서명 (81.4.27 발효) 전대차관 협정 서명 (81.6.24 발효)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83.8.1 발효) 해운협정 서명 (95.12.1 발효) 사회보장협정 서명 (2002.10.1 발효) 세관협력협정 서명
<b>교역규모</b>	-(한국의 수출) 2006년 3,609 백만 불 (전년동기비 1.0% 감소) -(한국의 수입) 2006년 3,026 백만 불 (전년동기비 9.6% 증가)
<b>교역품</b>	-네덜란드로의 수출: 승용차, 무선 전화기, 칼라TV, 건설중장비, 컴퓨터부품, 모니터, 프린터 등 -네덜란드에서 수입: 반도체 제조장비, 고철,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낙농품, 의료용기기 등
<b>교민</b>	약 1,200명 (상사 주재원 포함)

자료원: KOTRA, 2008.04

현재 수출 호조 품목으로는 경유, 건설 중장비, 모니터, 휴대용 전화기, 칼라TV, 건설 중장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반도체 생산 관련 기자재, 유기 화합품, 의료용 기기 등 낙농품 등을 들 수 있다.

<표 3-53> 한국-네덜란드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4	2005	2006	2007(1-11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네덜란드 수출	3,007	3,647	3,609	4,034	23.4%
對 네덜란드 수입	1,729	2,760	3,026	3,328	23.6%
무역수지	1,278	887	584	706	-

자료원: KOTIS; KOTRA 2008.04 재인용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EU 4번째 수출 대상국인 네덜란드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6년 네덜란드에 36.1억 불을 수출함으로써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수입은 30.3억 불로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했다.

2007년에는 양국의 교역규모가 더욱 증가, 우리의 대 네덜란드 수출은 1-11월 누계기준 전년동

기비 23.4% 증가한 4,034백만불, 수입은 23.6% 증가한 3,32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표 3-54> 우리나라의 對네덜란드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No.	회사명	투자연도	투자내역	종업원 수 (본사: 현지)	투자금액
1	고려제강유럽	1990	철강	1:3	272
2	삼미유럽	1991	건축자재	1:1	180
3	현대상선	1992	수상운송	3:52	546
4	세브로레네덜란드	1994	자동차	1:48	11,290
5	대우전자베네룩스	1994	전자	2:23	6,000
6	대상유럽	1994	식품, 식품원료	2:2	300
7	삼성전자판매법인	1995	전자	7:95	16,800
8	세브로레유로파츠센터	1996	자동차부품	2:14	363
9	한국타이어판매법인	1996	타이어	2:8	192
10	한국타이어물류법인	1996	타이어물류	2:29	22
11	삼성전자CIS물류법인	1997	전자물류	1:6	100
12	현대엔진서비스	1998	선박기자재	6:10	3,600
13	삼성전자물류법인	1999	전자물류	14:46	15,600
14	LG전자베네룩스판매법인	1999	전자	8:77	3,500
15	삼성물산	2000	의류	1:4	24
16	이수유럽	2001	화학	1:1	240
17	엑스로지스유럽	2001	물류서비스	5:25	120
18	범한물류	2002	물류서비스	2:12	260
19	LG CNS 유럽	2003	정보처리, 컴퓨터	4:8	1,000
20	원진	2004	내화재	4:0	1,200
21	메디슨유럽	2004	의료기기	4:2	500
22	인디텍	2004	LCD TV	2:2	200
23	디지털웨이	2004	MP3 플레이어	4:1	22
24	팬텍	2005	휴대폰	2:1	180
25	하이로직스	2005	물류	7:50	3,671
26	히타치-엘지	2006	광디스크	4:22	-
27	파켄오피씨유럽	2006	프린터부품	1:0	-
28	LG Shared SVC	2006	금융지원	10:4	212
29	로얄소브린홀랜드	2006	문구 등	2:3	
30	쌍용유럽부품센터	2007	자동차부품	2:3	988

\*주: 법인설립형태(100% 지분보유) 진출기업으로 지정설치 기업은 제외된다. 투자금액은 자본금 기준이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어 교역확대 여지가 매우 크다. 한국이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유기화학품 등의 제품 생산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마케팅 활동은 다소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최근 들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신 마케팅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한-네덜란드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LG전자와 필립스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 관계이며, 2003년 LG필립스의 파주 공장 설립 추진은 가장 최근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마케팅의 지원이 가능해 네덜란드 중개상을 이용한 유기 화학품 및 중고 기계의 대 동구권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네덜란드 투자 진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 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유럽 공동물류센터'(KEDC, 주관자는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운영으로, 중소기업형 현지 법인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 유럽 물류센터: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세브로레자동차, 한국타이어, 하이로 등
- 조립생산공장 및 서비스센터: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필립스 등
- 유럽마케팅 및 판매센터: 메디슨, 히타치-LG, 이수화학, 대상 등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투자신고 기준으로 투자건수 19건, 투자금액 11억 2,330만 달러로, 신고기준으로는 중동부유럽 국가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부상했다.

**<표 3-55> 우리나라의 對네덜란드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1-3분기)	누계
건수	11	56	25	259
금액	40.9	204	154	2,783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2;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주요 투자법 개요

네덜란드에는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금지, 제한규정이 없다.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 대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투자유치 선진국과는 달리 별도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도 없으며, 내외국인 동일대우 원칙에 의거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 내외국기업 구분 없이 기업유치를 위한 몇 가지의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

## 나) 투자 장려/제한/금지 분야

네덜란드는 법령을 통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출 경우 외국인 의 현지 지점 설치, 법인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단, 네덜란드가 정책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물류서비스, 농업 등 네덜란드 고유의 강점분야에는 로테르담 항만청 등 부문별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이 왕성하며, 1:1 협상에 의거 외국기업 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 다) 인센티브 개요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과 자국기업간의 차별이 없으며, 외국기업이 네덜란드에 투자할 때의 명문화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산업이나 업종 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정책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인센티브 수혜 사례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의 수혜방법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중앙정부의 IPR (지역투자보조금)

-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
- Greenfield 투자가 주요 대상이며, 네덜란드 북부지역이 주요 수혜지역
- 중앙정부의 투자지원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25%는 자기자본으로 투자

### 2) EU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 ESF-II(유럽연합 사회기금-II)는 신규 채용, 실업직원 채용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EFRO(지역개발펀드)는 유럽연합 조건에 부합시 제공

### 3) 수출촉진제도

- EVD에서 시행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과 유사
- PSB(신규 수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PESP(초기 수출의 타당성을 분석 해주는 프로그램), EKV(수출신용보험제도) 등

### 4) 고용보조금

- 지역고용사무소(Arbeidsbureau)와 협력하여 실업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수혜 가능
- 종업원 교육을 위해서 ESF 등 프로그램 수혜 가능

### 5) 환경, 에너지 인센티브

- 환경의 경우, 유럽연합의 EU THERMIE프로그램 수혜 가능

-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상황호전에 기여한다는 추천을 받는 경우에 수혜 가능

#### 6) R&D 보조금

- BTS: 환경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

- TOP: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s Decree에 의해 신규개발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주기 위해 최대 25%까지 비용지원

#### 7)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FDI 인정여부 및 인센티브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주식취득의 경우로서, 회사설립, 인수합병의 형태를 포함하여, 관계회사간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대출, 채투자이익잉여금, 그룹사간 계정구조 변경) 및 부동산 거래 등을 모두 직접투자로 인정

-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부 분야에 한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직접투자가 에너지 절약형 자산 구입, 환경친화적 자산 구입, 영화(film) 제작산업 투자, 신기술 취득을 위한 조사연구 비용 및 해당 종업원 임금 등과 같이 특정항목에 속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

## 2) 투자 진출 형태

네덜란드에서의 기업진출 형태는 (1)연락사무소, (2)지사, (3)법인 설립 등으로 나누어지며, 법인 설립은 다시 유한회사(B.V.)와 주식회사(N.V)로 나누어 진다.

### 가) 연락사무소(The Representative Office, The Liaison Office)

#### 1) 연락사무소 설치 개요

연락사무소는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도 없으며, 시장정보 수집 또는 국내 연락망으로서 활동한다. 연락사무소는 현지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무실 운영의 필요에 의거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을 해야만 회사 명의의 은행구좌 개설, 전화설치 및 자동차임대, 직원 채용 등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는 소득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대표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물론, 근로허가 및 거주허가는 받아야 하며, 직원 채용 시 일반적인 현지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 2)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를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절차는 '지사'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다.

### 나) 지사 (The Branch Office)

### 1) 지사설립 개요

지사는 현지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모기업의 일부인 지점으로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는 B.V.라고 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상공회의소에 등록은 하여야 한다.

지사설립에는 회사등록증 발급을 위한 상공회의소 등록절차와 부가세 번호 등 발급을 위한 국세청 등록 등 2가지의 등록절차가 있다.

### 2) 지사설립 절차

#### 상공회의소 등록 (회사등록증 발급)

##### ○ 각종 신청서류 제출

- 상공회의소 Form 6(외국기업등록서), Form 11(모기업의 대표이사 인적사항), Form 13(지사장 인적사항) (주) 영어양식도 있으나 제출시는 네덜란드어 양식 이용

-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한국 상공회의소 등록증(영문)

- 대표자 및 지사장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한다.

##### ○ 상공회의소 연락처: Kamer van Koophandel Amsterdam (KVK Amsterdam)

- Add. De Ruijterkade 5, 1013 AA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31-(0)20-5314000 / Fax. 31-(0)20-5314799

- Homepage: [www.kvk.nl](http://www.kvk.nl) (신청절차 상세 안내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국세청 등록 (세무번호 취득)

##### ○ 국세청신고서 제출: 신고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국세청 연락처: Belastingdienst Amsterdam

- Add. kingsfordweg 1, 1043 GN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0800-0543 / Fax. 31-(0)20-6877299

- Homepage: [www.belastingdienst.nl](http://www.belastingdienst.nl)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3) 지사설립의 장단점

#### 장점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는 지사설립이 법인설립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비밀 유지가 용이하다.

#### 단점

지사가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모기업(본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자본금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B.V.(유한책임회사) 또는 N.V.(주식회사)와 다르다. 이 점에서 외국기업들은 지사보다는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다) 법인설립 (B.V.)

### 1) 법인설립 개요

○ 네덜란드에서의 법인은 유한책임회사(B.V.)와 주식회사(N.V.)의 두 가지가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증시상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상 B.V.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 유한책임 회사는 주식 공모를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는 제한되어 있다.

○ 지사 설립시에는 공증인이나 일반 여부에 관계없이 지사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지법인 설립에는 공증인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2) 법인설립 절차

○ 법인설립 발기인이 네덜란드의 공증인(Dutch Public Notary)를 지명한다. 공증인으로 법무법인을 지명하여도 된다. 공증인의 법인설립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약 3,000유로 가 소요된다. (동 수수료는 상호확인, 사업등록, 자본금납입에 따른 은행확인서, 법무부의 '이의 없다' 확인서, 공증수수료, 0.55%의 자본세 및 법률비용 등임)

○ 공증인은 법인설립 발기인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 받아, 네덜란드 법무부에 “이의 없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법무부 승인에는 약 8주가 소요되나, 법무부 승인 이전에라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공회외소에 “설립절차 중인 유한책임회사 - B.V. i.o.”로 등록하면 된다. (i.o.는 설립절차가 진행중임을 의미함.)

- 법인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 공증인에 대한 위임장, 설립자 및 이사의 각종 은행증명서, 설립자의 대차대조표, 법인설립 정관, 설립자의 법인설립 정관, 설립자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위임장 (공증) 등

○ 주식발행 및 납입자본금이 최소한 18,000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45,000 유로), 동 법인자본금 보유 및 투자내역 증명은 은행잔고, 사무실비품구입, 차량구입 내역 등을 합한 자본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 법무부 승인 후 상공회의소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상공회의소 Form 3 (법인등록), Form 11(본사 대표이사 인적사항), Form 13(법인장 인적사항) 등을 작성, 제출한다. 상공회의소 등록비는 약 145유로이며, 동 절차도 법무법인이 대행한다.

### 3) 법인(B.V.) 설립의 장단점

#### □ 장점

현지 법인이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 단점

지사설립의 경우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많이 든다.

(주) 지사 및 법인설립은 네덜란드에 설립할 사무실의 법적 지위이며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할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할 근로자는 (1)근로허가서(Working Permit) 취득, (2)임시체제비자(MVV) 취득, (3)현지 부임 후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취득 등의 3개 단계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동 절차는 '이주정착가이드' 참조)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네덜란드 투자진출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법령, 제도 관련 문의시 충분한 답변을 한다. 특히 서울주재 네덜란드 대사관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 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NFIA는 네덜란드 투자기관인 EVD와 2008년 상반기 중 법령에 의해 통합될 예정이며 EVD가 해외 수출과 투자유치 업무 모두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 등 해외 지부는 EVD 지사로 바뀌게 되며 KOTRA와 같이 수출진흥과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네덜란드 본부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 NFIA)

- Add: Beuzenhoutseweg 2, P.O.Box 20101, 2500 EC The Hague, The Netherlands

- Tel: +31 70 379 8818

- Fax: +31 70 379 6322

- Website: <http://www.nfia.nl>

- Remarks: 투자유치 총괄 및 외국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경제부산하 투자 유치 기관

○ 서울 사무소

- Add: Kyobo Building, 13th fl., Chongno 1-ka, Chongno-ku, Seoul, Korea

- Tel: +82 2 732 1924

- Fax: +82 2 732 1925

- Homepage: <http://www.nfiakorea.com>

- E-mail: [nfiako@chollian.net](mailto:nfiako@chollian.net)

- Remarks: 한국기업의 네덜란드 진출 지원

자료원 : NFIA, PWC Netherlands, 네덜란드 중앙은행 자료종합

#### 4) 투자입지여건

##### 가) 네덜란드의 산업단지

네덜란드는 산업별 특색 있는 산업단지, 외국인 전용 기업단지 등이 없으며, 외국기업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형태에 따라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 물류유통 중심일 경우 로테르담이 유리 하며, 유럽 본부 성격일 경우 스키폴 공항이 있는 암스테르담이 유리하다.

네덜란드에는 특징적인 산업단지는 없으나, 유럽물류거점으로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Warehouse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도시 별로 조성되어 있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공단은 DSM(화학), Hoogeveen(철강)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그러나, DSM(DSM화학회사 소재: 한국의 울산과 유사), Hoogeveen(Hoogeveen 제철 소재: 한국의 포항과 유사) 등도 방대한 규모의 1개 단위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산업단지로 정의할 수는 없다.

네덜란드 내에 소재한 많은 공단들(암스테르담, 림버그, 로테르담, 알미르 등 다수 지방 공단 소재)은 대부분이 Warehouse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공단에 소재한 기업들의 활동은 물류 혹은 부가가치 물류로 집약된다. 즉 단순 물류유통뿐 아니라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일부 가공단계(라벨링, 일부 조립 등 포함)를 거쳐 소비 시장 별로 특화된 상품을 재생산, 수출/판매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제조업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특성상 한국식 산업단지의 개념이 네덜란드 에는 없다.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중심항만도시인 로테르담이 잘 개발되어 있으며, 동 항만을 중심으로 석유화학단지가 일부 집적되어 있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유명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산재해 있을 뿐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중소규모의 산업 클러스터가 일부 생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산업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다.

##### 나) 과학단지 (사이언스파크)

지방자치 단체별로 산업육성 전략으로 "Science Park"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단지 성격의 Science Park에는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벤처중소기업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 설치된 Science Park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의 산업단지 및 과학단지 등을 감안한 지역별 투자여건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로테르담: 유럽 최고의 항만인 로테르담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서비스, 석유화학 입지로 유력하며, 쉘 등 세계적 정유사 및 보폭 등 액화화학 물류기업의 활동이 왕성하다.

- 아인트호벤: 필립스전자, ASML(반도체장비) 등 유력기업이 입주, IT 및 전자산업입지로 유력하다.

- 암스테르담: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및 스키폴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공항물류서비스 및 대기업

마케팅본부 입지로 유력하다.

○ 고린캠: 다멘 조선소가 소재하여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입지로 유력하며 조선기자재 관련 전시회 등도 동 지역에서 개최된다.

## 5) 노무관리

### 가) 노사관계

네덜란드는 노사분규가 적게 발생하는 편이며,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조합과 사측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오랜 기간 형성된 결과이다.

#### 1) 노동조합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결성비율은 27%에 불과한 데, 이는 유럽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노동조합들은 네덜란드 산업노동조합, 크리스찬국가노동조합 연맹 및 중고급 근로자 협의회라고 하는 3개의 노동조합의 지배를 받는다.

####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네덜란드에는 3개의 주요 사용자단체가 있다. 대규모 산업 연합회들을 대표하는 VNO-NCW 연합회, 중소기업들을 통합하고 있는 MKB Netherlands, 농업단체들을 통합하고 있는 LTO Netherlands 등이다.

#### 3) 노동위원회

네덜란드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들은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3인에서 25인까지 다양하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며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금지되어 있다.

### 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은 크게 대상 집단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는데, 국민보험제도(모든 거주자)와 사회보장제도(모든 근로자)이다.

국민보험제도는 모든 거주자가 노령,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자녀보호와 양육, 특별의료비 등으로 인한 금융상의 경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질병, 실업, 장기근로불가 및 진료로 인한 금융상의 결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는 수많은 법률과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의료비, 질병 및 근로불가능 수당, 실업수당 및 기타 수당 등을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지만 근로자가 일부 부담 하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강제적인 분담금도 있다. 사용자 분담금을 피보험 임금의 비율로 표시하면, 불구수당 7.96%, 실업수당(WW) 4.45%, 의무건강보험법(ZFW) 6.25% 등이 있으며, 모든 분담금의 경우 연간 지급할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다.

## 다) 노동법규

네덜란드에서 근로자들의 이익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규에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공휴일 수, 공휴일 수당, 안전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규정 이외에도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근로합의서도 있다.

### 1) 근로시간법

근로시간법은 산업계와 정부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단일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표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여성들을 위한 임신중과 임신직후 근로시간 변경 허용, 어린이 근로금지 및 예외 규정, 16-17세 청소년 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 유지 규정, 근로자들에게 근로형태 변경을 통지할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급직원과 관리직원에 대한 근로시간법 적용 및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 직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봉급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고용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과 공휴일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상근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률에 규정된 최소 휴가일수는 근무일로 20일이며 고용주들이 대부분 1주일을 추가로 준다. 고용기간이 만 1년 미만이면 휴가일 수는 비례적으로 결정된다.

유급공휴일은 신년 1월1일, 부활절 월요일 3/4월(변동), 여왕생일 3월30일, 예수승천일 5월(변동), 화이트데이(변동), 성탄절(12월25일), 박싱데이 12월26일 등이며, 법으로 명시된 다른 유급휴가일은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행사 1-3일, 배우자 또는 자녀사망 3일, 다른 모든 가족 축일 1일 등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고용계약 종료시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2) 고용계약 및 계약의 종료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고용계약은 고용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별고용계약에는 법규정이나 단체노동협약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배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직원 고용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기간으로 개별 계약의 기간에 관계없이 3번

까지의 고용계약은 임시계약으로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즉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4번째 계약부터는 일종의 종신고용으로 들어가며 이때부터는 계약해지를 위해서 법원 및 노동사무소에 직원 해고를 위한 절차를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갱신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직원 계약해지를 위한 조건은 크게 두 유형으로 직원의 근무실적과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사업영역변경이 있다

먼저 근무실적과 관련하여 해고시 퇴직금은 필요없으며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만든 평가시스템에 따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문서를 축적하여 해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된다. 평가시스템과 문서에 대한 현지법 규정은 없으며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있다

조직변경, 사업영역변경에 따른 경우 일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 근무년수 별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즉 5년 근무하였으면 5개월치를 근무하면 된다.

고용계약서는 확정된 일정기간 또는 불특정 기간으로 하여 체결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무기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정 최대 수습기간은 2개월이다. 동 기간내 어느 시점에 양 당사자가 어떠한 의무조건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채용지정일 및 고용개시일, 계약의 성격(상근직 또는 임시직), 수습기간, 근무기간, 특정 계약기간, 직위 및 요구가 있을 경우 간략한 직무기술 내용, 임금, 2차 고용기간(예: 연금지급계획), 해당될 경우 비경쟁조항 및 비밀유지조항 등.

고용주가 피고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종료하기 전에 노동 사무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유한책임 회사의 관리 책임자 해임
- 법원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
- 임시직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 근로자가 수습기간중 해고될 경우
-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 즉각 해고사유(심각한 무능력, 절도 등 수용할 수 없는 행위, 총체적인 업무태만, 합리적인 업무할당에 대한 반복적인 수용거부)에 해당할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질병에 걸려있을 경우. 단, 그 기간이 2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군복부 중일 때. 단, 단체협약이나 법정규정이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출산 8주전부터 출산후 16주까지의 임신부인 경우
- 근로자가 노동협의회 회원인 경우 등

자료원: 네덜란드투자진흥청 투자안내자료(2006년)

### 3)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상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7년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 6) 조세제도

### 가) 조세제도 개괄

#### 1) 법인세

법인세는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부과되거나, 외국법인의 네덜란드내 상설조직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세율은 2007년부터 25.5%로 인하되었고, 과세대상 이익 가운데 최초 25,000유로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35,000유로에 대해서는 2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제를 두고 있다.

거주자인 법인 납세자는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네덜란드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네덜란드 세금을 면제해주는 여러 규정들이 [이중과세방지] 관련 조세협정, 일반 법령 및 참여지분 면세제도 등에 규정되어 있다.

#### 2) 개인 소득세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포함하여 네덜란드에서 창출하는 일정 소득 요인들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옵션 등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이 대상 소득그룹으로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 데, (1군 소득)은 직장가 가정에서 얻는 과세대상 소득, (2군 소득)은 고액의 이자로부터 얻는 과세대상 소득, (3군 소득)은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 손실(비용)을 차감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데, 기초 차감액 1,972유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추가 차감여부는 개인별 소득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과 가정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규모에 따라 4개 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1단계소득(16,893 유로까지)에 대해서는 34.15% (65세 이상은 16.25%), 2단계 소득(16,894 - 30,357유로)에는 41.45% (65세 이상은 23.25%), 3단계 소득(30,358-51,762 유로)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42%, 4단계 소득(51,763유로 이상)에도 나이에 관계없이 52%의 소득세율을 적

용하여 과세한다.

### 3) 주재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 30% 비과세규정

네덜란드에 일시적으로 부임하는 주재원은 일정한 상황하에서 30% 비과세규정을 소정의 협약과 신청요건을 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서 네덜란드 체제와 관련한 추가적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동 일괄 비과세 수당은 최대 총급여와 수당의 총액의 30%까지 가능하며, 이 최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100/70을 곱한 후 이의 30%를 구하면 된다.

### 4) 부가가치세

모든 상행위를 하는 자연인 및 법인(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로도 불리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동 부가세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순환단계마다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부가세 형태를 보면, 기업이 자신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 하지만 (매출 부가세), 구매시에는 자신이 지불한 부가세(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후 해당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며,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며, 반대로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다.

표준 부가세율이 네덜란드는 19%이며, 이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거래에 적용된다. 부가 세율이 6%로 낮은 품목의 경우는 식품, 서적과 신문, 신문광고, 의약품, 승객운송 및 호텔 숙박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제 3국으로 수출될 경우 해당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제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수출입 물류가 많이 제 3국에서 물품이 네덜란드 물류창고로 입고되는 시점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물류창고에서 네덜란드 바이어에게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이 일어나며 이 때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납부 및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네덜란드는 부가세납부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품을 수입통관하는 시점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분기별 정산을 하여 상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동 부가세 상계과정은 통상 네덜란드 물류기업이 대행하고 있으므로 제 3국의 수출업자는 네덜란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 5) 환경세 및 기타

지하수, 상수도, 쓰레기, 연료 그리고 에너지세 등은 환경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환경세법에 규정된 것들이며, 환경세와 유사한 크고 작은 세금들이 있는데, 소비세(excise duties), 자동차세 그리고 승용차 및 이륜구동자동차에 대한 세금 등이 그들이다.

외국기업이 네덜란드내에 보유중인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는 구입 및 매각차액에 따라 CIT Act 규정에 정한 과세표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차액의 최초 25,000유로에 대해서는 20%, 60,000유로 이상은 23.5%, 6만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25.5%를 내야한다

(자료원: 네덜란드 재무부발간 조세안내 번역자료(2004),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투자환경 안내 한글자료(2005)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현지 세무전문 변호사 상담. 2007.12)

## 나)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네덜란드는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 또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이윤에 대한 과세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영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끝난 주식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 비과세
  - 네덜란드에서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면제, 네덜란드로 지불된 분에 대해서도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
  - 세계적인 가수나 영화사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로열티를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이유 도 로열티 비과세제도를 겨냥
- 과세율 사전 설정 가능
  - 관계회사간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과세대상 이윤을 사전에 결정 하는 시스템
  - 해당 과세대상 이윤과 과세율을 세무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투자 결정은 물론 기업의 재무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저율의 원천세 적용을 위해 세계적인 조세협약 유지 확대
  - 네덜란드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과 광범위한 과세협약을 체결
  - 네덜란드가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네덜란드기업은 유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자유로운 외환거래 환경

네덜란드에는 한국과 같은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등과 같이 외국인 투자 및 외환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 법령이 없으며, 내외국인 동일 원칙에 의거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현지 자금조달 방법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동사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보험제도 및 채권추심 기관

이 발달해 있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입상 또는 거래처 부도시 이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Credit Insurance가 발달 하여 일정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기업은 안심하고 영업에 매진할 수 있으며, 매출 채권 담보 부 대출인 경우 한국에 있는 본사의 보증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한국의 LG, 삼성 등 우량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한국외환은행은 물론 ING, ABN-AMRO 등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은행들도 한국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등 영업을 강화 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을 통한 현지대출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다) 과실송금

자금의 입출금 및 대내외 송금에 대해서는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일반 자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외환취급과 관련된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환전 및 송금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도 마찬가지이다.

### 8) 투자유의사항

네덜란드는 교역과 투자유치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진출시 애로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 7. 노르웨이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노르웨이왕국 (The Kingdom of Norway, Kongeriket Norge)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수도는 오슬로이며, 전체 인구는 5백만이 채 안 된다. 14세기 후반부터 덴마크의 영향 아래 있었고 1814년 이후부터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1905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였다. 1945년 국제연합,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59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하였다. 노르웨이 국회의 5인위원회에서 매년 노벨평화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표 3-56> 노르웨이 일반 사항**

<b>국 명</b>	노르웨이왕국 (The Kingdom of Norway, Kongeriket Norge)
<b>위 치</b>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 -위도: 북위 57도 57분 - 71도 11분 -경도: 동경 04도 29분 - 31도 10분
<b>면 적</b>	385,155천 km <sup>2</sup> (남한면적의 약 4배)
<b>기 후</b>	(오슬로 중심 기후임)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온난한 기후 -연평균 기온 6.9도 -여름 최고 기온 28.2도, 7월평균 16.4 -겨울 최저기온 -19.7도, 1월평균 -4.3 봄, 가을의 온난한 시기에 잦은 강우현상으로 저온 발생
<b>수 도</b>	오슬로 (Oslo)
<b>인 구</b>	4,681천명 (2007.1 기준)
<b>주요 도시</b>	Oslo(530천, 메트로기준 76만) Bergen(239천), Trondheim(156천), Stavanger(113천)
<b>민족(인종)</b>	노르웨이족(99%), 사미족(약 4만 명, 소수민족)
<b>언 어</b>	북게르만 계통의 노르웨이어 (영어소통 원활)
<b>종 교</b>	루터 복음교 (95% 이상)
<b>건국일(독립일)</b>	1814년 (제헌, 덴마크로부터 독립)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
<b>정부형태</b>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자료원: KOTRA, 2008.04

## 나. 경제 개요

노르웨이는 전통적인 농수산업 중심에 선박 및 해운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유지해 오다, 1968년 북해산 원유발굴을 계기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여 해양플랜트와 석유시추, 선박기자재, 각종 첨단 기계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풍부한 석유 수출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간접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노르웨이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 자연환경 보전 등으로 국내 산업이 일부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공산품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2.5%의 저 이자율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크로네화가 최근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산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수입 가격은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내수시장 호황은 2006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수시장 발전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노르웨이 수입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총 상품수입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총 Nkr3,539억 수준으로 이중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가 약 25%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조선 및 자동차 부분이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용품으로는 식 음료 및 담배, 의류 및 부 제품류, 섬유직물 및 기타섬유제품이 여타 상품에 비해서는 수입규모가 큰 편이다. 이러한 수입규모는 450만 수준 의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1인당 구매력 측면에서는 경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노르웨이 시장은 적은 인구로 인해 주문물량이 제한적이라는데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총 인구가 2007년 1월 기준으로 약 47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넓은 국토와 산악지형의 험준한 지세로 소비자인 인구가 각 지역에 분산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시장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고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물류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인근 노르딕국가(덴마크와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던 과거로 인해 자체적인 상술의 발달이 상당히 지연되었음. 따라서 노르웨이 바이어가 직접 공급 업체로부터 수입하기보다는 덴마크나 스웨덴의 대형 수입상과 공동으로 수입하여 필요 물량을 분배 받는 간접적 수입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간접 수입은 노르웨이의 인구가 적어 직접 수입할 경우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편 소비자들의 소비특성을 보면 높은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관계로 젊은 층은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연금소득을 받는 67세 이상의 노인층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이 상당히 발달 되어 있다. 노르웨이 소비자들의 소비취향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된다.

노르웨이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20-44세까지가 전체 인구의 35%, 45-66세까지가 25%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생활자인 67세 이상도 약 1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로의 이전 과정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점차 소비성향도 다양 화 되고 있으며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 바이어들도 인근국 바이어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공급업체와 거래를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량이 크지 않은 관계로 수출 업체와의 거래도 가격수준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식음료 등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유통업체 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로 중소 수입상들의 입지는 지속 축소 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활용품 시장은 이들 대형 유통 업체들이 판매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입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표 3-57> 노르웨이 경제 지표(2006년 기준)

GDP	\$3,350억 (경상가격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2.9%
1인당 GDP	\$71,874 (2007.1 기준)
실업률	2.5%
물가상승률	1.0% (2007.1기준)
화폐단위	Norwegian Krone (Nkr, NOK)
환율	1US\$ = NOK6.18(2007.2.15)
외채	NOK2,472십억 (2006.10 기준)
외환보유고	NOK341.2십억 (2007. 1 기준)
산업구조	서비스(59.2%), 제조(20.1%), 원유.가스(12.5%), 건설(6.3%), 농림수산업(1.9%)
교역규모	US\$1,216억(수출), US\$642억(수입) *상품교역(서비스교역 제외)
교역품	(수출)원유.천연가스, 운송기기, 수산물, 금속제품, 화학제품 (수입)선박,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차량, 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료원: KOTRA, 2008.04

#### 다. 한국의 對노르웨이 관계

2006.9.1부터 한-EFTA간 자유무역 협정이 발표되는데 따라 EFTA회원국인 한-노르웨이간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EFTA측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한국은 EFTA원산지인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이번 타결로 한국은 의류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IT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사과와 배, 김치 등 농산물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EFTA에 대하여 99.1%의 상품을 양허하고, 86.3%의 상품은 협정발효 즉시 관세 철폐 특히, 공산품은 100% 양허하고, 91.1%의 상품은 즉시 관세 철폐하게 된다.

<표 3-58> 한국-노르웨이 관계

체결 협정	특허.의장 및 상표권보호('65), 사증면제('69) 이중과세방지('82), 경제.기술(82).해운협정(가서명, '83), 석유.의류('84) 제2차 한.노르웨이 경제공동 위원회(2002), 수산협정(2002), 한-EFTA 자유무역협정('05)
교역규모	한국의 대노르웨이 수출 468백만불, 수입 639백만불 (2005년) 한국의 대노르웨이 수출 851백만불, 수입 857백만불 (2006년)
교역품	-노르웨이로의 수출 : 선박, 자동차, 고무제품, 영상기기, 의류, 전자제품 등 -노르웨이에서의 수입 : 석유제품, 선박기자재, 니켈제품, 원동기 및 펌프 기계요소, 어류
교민	280명 내외, 장.단기 체류자 70명 내외

한국은 스위스로 2006년 851백만 불을 수출하여 전년 대비 81.6% 증가했다. 이는 선박경기의 호황에 따른 선박 수출량의 증가가 주요인이며, 지난 2-3년 전 수주선박에 대한 인도분으로 향후 2-3년간 노르웨이 수출실적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선박, 자동차 및 부품, 영상기기 등이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89.7%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은 스웨덴나 덴마크로부터 대부분 수입되므로, 수출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자동차는 엔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상대적 증가율 감소하는 상태다.

대 노르웨이 수입도 8억 불 초과할 전망이어서, 소규모 역조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선박제조량이 증가하면서 선박부품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 <표 3-59> 한국-노르웨이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5	2006	2005 대비 증감율
對 노르웨이 수출	468	851	81.6%
對 노르웨이 수입	638	856	34.1%
무역수지	-170	-5	-

자료원: KOTIS; KOTRA 2008.04 재인용

우리나라 기업의 대 노르웨이 직접투자는 2004년 12월에 현대자동차가 4백만 유로를 투자 하여 판매법인을 설립한 것이 유일하다. 이외에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및 현대 미포등 조선 분야 4개사가 노르웨이에 진출해 있으나 모두가 현지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 되고 있으며 현대미포 조선은 2007년 2월 철수했다.

노르웨이 기업의 대 한국 투자진출은 우리의 외투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1998년부터 조선 및 선박 기자재 산업, 해양물류 관련부문 및 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OTRA Invest Korea의 통계에 따르면 1983년부터 2005년 말까지 투자자금 도착 기준 으로 노르웨이의 대 한 투자 규모는 총 39건, US\$295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한 대표적인 노르웨이 기업은 세계적인 제지회사인 Norske Skogg 사가 1998년 에, 선박자동화 사업부문의 선두기업인 Kongsberg Maritime 사가 1999년에, 선급인증 부문 의 DNV사 가 2000년에, 그리고 세계 최대 화학물질 물류업체인 Odjell사가 2002년에 아시아물류본부를 온산 항에 설립하였으며, 2004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해)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운반선 사업기업인 빌 헬름센사가 (주)글로벌비스의 주식 25%를 인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추진 중인 기업들이 상당수 있어 앞으로 노르웨이의 대 한국 투자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 한 노르웨이 산업의 특성상 투자분야가 물류 등 유통부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건 별 투자 금액 면에서는 크지

않으나 해당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0> 한국의 노르웨이 주요 투자기업**

회사명	모기업	업종	합작비율	종업원 수	투자진출시기	투자금액
HYUNGDAI MOTOR NORWAY AS	현대자동차	자동차판매	100%	26	2004.12	4백만 유로

자료원: KOTRA, 2008.04

**<표 3-61> 한국의 노르웨이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9	누계
건수	7	7	15	12	41
금액	5	101	36	26	168

자료원: Invest Korea 투자통계(2006년 12 현재); KOTRA 2008.04 재인용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노르웨이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특별법이나 외국기업의 우대제도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내외국인 동일대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즉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투자관련 법규 및 인센티브는 모두 내외국인 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투자관련 법률은 해저 원유와 천연가스탐사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 외국 업체의 과실송금 등을 일부 규정하는 것뿐이며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1) 투자제한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사항으로는 기업지분 이전시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95년 법안 개정으로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율에는 제한이 없어 100% 외국인 지분 확보도 가능하다. 다만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지분 취득이나 신규 금융기관 영업행위는 특별히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공장용지의 취득, 10년 이상의 토지 리스계약, 농지의 취득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분야도 있는데 이들 분야는 의사 및 의료

업, 공증업, 변호사 및 회계업, 증권업, 부동산업, 여행업 등이며 운수업의 경우에는 관할 주의 승인을, 요식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투자금지분야

현재 노르웨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금지는 일부 공공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타 분야는 거의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다만 우편, 철도, 전화 및 기타 통신, 지하철, 공공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민간자본 투자)는 금지 또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철도부문에 있어서는 스웨덴 철도청이 국경지역의 일부 노르웨이 구간에서 기차편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화통신 부문의 경우에는 국영 Telenor사가 있지만 제2, 제3의 민간통신 회사가 설립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 통신의 경우 완전 개방되어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병원과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5년부터 개방되어 스웨덴 등 인근국의 투자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노르웨이 시장의 협소로 투자효과가 크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 3) 투자형태

노르웨이의 일반적인 법인형태는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 ASA), 개인 주식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 AS), 외국법인지사, 무한회사(Ans), 유한합자회사 (K/S), J-Venture, Cooperative Venture등이 있는데 이 중 J-Venture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적 법인격을 갖게 된다.

## 4) 상업등록

일반적인 법인형태인 공개주식회사(ASA)의 경우는 최소자본금 규모가 Nkr100만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개인주식회사도 Nkr10만의 최소자본금이 요구된다. 법인은 창립 받기 후 3개월 이내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후 2-4주가 경과 되면 등록이 이루어진다.

한편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록신청 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자본금은 현금 및 회사설비, 기계, 자동차등 회사관련 자본재 투자액도 포함된다. 등록시 동 자본금의 확보에 대해서는 현지 공인된 회계감사관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5) 제반 의무규정

법인의 자본금이 NOK3백만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 멤버는 3인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 멤버 중 과반수 이상을 노르웨이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시민권과는 무관하고 EEA국가 시민권자인 경우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또한 종업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이사회 멤버 선출권에 관한 권한을 일부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이 NOK3백만 미만이거나 종업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멤버의 수나 구성 등에 별도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법인이 판매행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노르웨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지인 대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통관법인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통관법인이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 6) 법인 의무

공개 상장법인 또는 과거 3개년간 평균 종업원수가 200명 이상인 개인주식 법인은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회계장부에는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와의 연결재무 제표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종업원의 급여지불 및 산업재해에 대비한 관련 보험가입, 고용주로서의 사회보장세 납부 등 종업원 및 사회에 대한 각종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7) 투자인센티브

##### 가) 투자우대 제도

노르웨이 정부의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는 Inovation Norway의 "노르웨이 산업 & 지역개발기금(SND)"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SND는 2004년 1월 1일부로 Norway trade Council과 병합되어 Inovation Norway의 일부가 된 기관으로 특정 기업체가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Project를 노르웨이 내에서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 신용보증 또는 자본참여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 을 막론하고 노르웨이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Inovation Norway의 투자지원 파트를 통한 지원가능성 및 범위 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제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대우는 없고 지방정부가 특정 개발예정 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사안별로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할인 또는 면제시켜 주는 경우는 있다.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개발예정 지구내의 공장용지 또는 건물을 무상 임대해 주기도 하는 등 지역별, 케이스 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노르웨이의 전체적인 투자유치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기업들의 사회보장세 부담분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즉 도시지역의 경우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부담율이 14.1%인데 비해 농어촌 지역 등 원거리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6.4%, 혹은 5.1%만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북부의 Nord-Troms주와 Finnmark주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대해 사회보장세 부담분을 전혀 부과 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여타 지역의 28%에 비해 3.5%가 낮은 24.5%를 부과하며 기초소득 공제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 노르웨이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북해의 Svalbard제도와 Jen Mayen제도를 들 수 있다. 이곳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은 법인세 10%와 사회보장세 8.9%가 적용되고 개인소득세가 4%, 자본세 0.2%가 적용되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 지역의 험한 기후와 외부와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적인 문제로 현재 까지 아무런 유치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지사 설립

노르웨이 국내에서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국기업 진출형태는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시장조사와 업무연락 기타 비영리행위에 국한된 활동목적인 경우에는 주재 원 사무소 (Liasion Office)의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각종 경제규제 철폐 정책에 따라 여타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외국 모기업의 지사 설립에도 최소 자본규모와 상업등기 이외의 허가사항이나 부대 조건은 없다

### 가. 지사등록- 현지법인 지사 설립

모국의 본사 방침에 따라 노르웨이내 현지법인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르웨이 정부 기업등록소(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s)에 소정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함으로써 법인 자격을 얻게 된다.

모든 서류는 노르웨이어로 번역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설립 등록 이외 유일한 법적규제 조건의 하나는 지사책임자와 설립 이사회의 멤버중 최소한 과반수는 2년 이상 노르웨이에 체류(시민권과는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인데 EEA시민권자인 법인의 현지지사 설립 시에는 예외로 한다.

#### - 모기업 관련자료

- . 모기업 설립등기, 정관, 조직체계, 상업등록증(Certification), 지사설립 의결서
- . 모기업 업체명, 주소, 법인형태 등 법인정보
- . 모기업의 현지지사 이사회 인선 결과(있을시)

#### - 현지지사 관련자료

- . 지사 명칭, 주소, 법인성격(판매 또는 제조 등)
- . 지사장명, 이사회 멤버명 등
- . 현지지사 책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 - 모기업의 책임

. 지사가 설립되면 지사 활동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모기업이 연대책임을 지며, 지사의 모든 서류에는 유한책임을 지는 모기업의 지사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 등록비용

- . 지사 설립 등록 시에는 소정의 등록 수수료(NKr4,500-4,600수준)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지사설립 - 주재원사무소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는 모기업 관련자료 및 주재원 사무소 책임자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정부 기업등록소에 제출하고 사무소 등록만 하면 설립절차가 완료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주재원 사무소 책임자 및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노르웨이 내에 거주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도 모든 법률적 책임은 모기업이 연대책임을 지는 등 여타사항은 법인 지사와 동일하다

#### 다. 지사설립 참고사항

지사 설립의 사전단계 조사 시에는 무비자로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현지의 단기 체류자는 월별 단위로 임차가 가능한 여행자 호텔을 이용할 수가 있다. 한 달 숙박비는 약 Nkr18,000이상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자체 요리 가능)

무비자 체류는 3개월간 가능하며, 3개월 소진시 재입국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현지 교통편은 버스, 지하철, 전차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시간도 비교적 정확히 지키므로 승용차를 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렌트카도 이용 가능하다

사무실 용도의 건물 물색은 그리 쉬운 편은 아니며 임차료는 정해진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건물 임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후보 대상 물건을 찾아 다녀야 경제적인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

지사 설립이 끝나면 체류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노르웨이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이를 받은 후 재입국하여야 하다(기타 자녀 교육여건, 주택 임차 등은 "이주.정착가이드"를 참고하기 바람)

### 나) 법인 설립

노르웨이는 기업형태로 주식회사(limited company), 합자회사(General Partnership), 개인 기업(Individual Enterprise) 3개로 나뉜다

#### 1) Limited Company: Aksjeselskap/AS)

##### 설립자본금

주식회사로서 Private Limited Company(AS)와 Public Limited Company(ASA)로 나뉜다. AS를 설립 시는 자본금 NOK100,000 이상이어야 하며, ASA는 NOK1,000,000이상이어야 하다.

##### 기업등록

기업등록 시는 아래 4가지 서류를 갖추어 Norwegian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에 정관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비는 NOK6,030(US\$928)이다

○ A memorandum of Incorporation

○ The articles of Association

- The opening balance sheet
- if applicable, statement of share deposit in other means than money

## 2) 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은 필요 없으며 사업개시 전에 Norwegian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양식을 갖추어 Central Coordinating Register for Legal Entities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a confirmed copy of the partnership
- statement where each of the partners accepts to be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s as a partner of the company
- minutes from the partner meeting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is elected (파트너간 이사회를 두기로 결정했을 경우)
- minutes from the partner meeting where the company's auditor is elected(회계 감사를 두는 경우)
- a declaration of willingness from the company's auditor in original

## 3) Individual Enterprise

설립자본금을 필요 없으며 사업개시 전 Norwegian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양식을 갖추어 Central Coordinating Register for Legal Entities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비는 NOK2,680 (US\$412)이다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가) 투자관련 정부기관(투자진흥 주무부서는 통산 산업성임)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Address: Einar Gerhardsens plass 1 P.O.Box 8014 Dep 0030 Oslo Norway
- Phone: +47 22 24 90 90
- Fax: N/A
- E-mail: postmottak@nhd.dep.no
- Web: www.odin.dep.no/nhd

2004.1.1부로 기존의 노르웨이 관광청(The Norwegian Tourist Board), 노르웨이 무역협의회,

(Norwegian Trade Council), 노르웨이 산업 및 지역 발전국(The Norwegian Industrial and Regional Fund), 노르웨이 투자청(the Government Consultative Office for Investors)을 통합하여 관광, 산업발전, 투자 및 무역업무를 총괄하는 Innovation Norway를 설립하였다

Innovation Norway

- Name: Innovation Norway (counterpart to Kotra)
- Address: Akergata 13 Box 448 Sentrum N-0104 Oslo Norway
- Tel.: +47 22 00 25 00
- Fax: +47 22 00 25 01
- E-mail: post@invanor.no
- Web: www.invanor.no

Directorate of Taxes

- Central Office Foreign Tax Affairs
- add: P.O BOX8031, 4038 Stavanger, Norway
- tel: 47-51-969600
- fax: 47-51-578559
- e-mail: postkassefu@skatteetaten.no
- www.skatteetaten.no

The labor Inspectorate

- add: P.O BOX8174, 0034 Oslo, Norway
- tel: 47-23-080505
- fax: 47-22-22177810
- e-mail: distrikt02@arbeidstilsynet.dep.no
- www.arbeidstilsynet.no

The register of Business Enterprise

- add: 8910 Bronnoysund, Norway
- tel: 47-75-007500

- fax: 47-75-007501
- e-mail: firmapost@brreg.no
- www.brreg.no

#### 나)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Innovation Norway

2004.1.1부로 기존의 노르웨이 관광청(The Norwegian Tourist Board), 노르웨이 무역협의 회(Norwegian Trade Council), 노르웨이 산업 및 지역발전국(The Norwegian Industrial and Regional Fund), 노르웨이 투자청(the Government Consultative Office for Investors)를 통합하여 관광, 산업 발전, 투자 및 무역업무를 총괄하는 Innovation Norway를 설립하였다

- Name: Innovation Norway (counterpart to Kotra)
- Address: Akergata 13 Box 448 Sentrum N-0104 Oslo Norway
- Tel.: +47 22 00 25 00
- Fax: +47 22 00 25 01
- E-mail: post@invanor.no
- Web: www.invanor.no

##### DLA Nordic AS

노르웨이 투자시 회계, 법률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 회사

- Address: Olav Vs gate 4 POBox 1364 Vika N-0114 Oslo
- Tel.: +47 2413 1500
- Fax: +47 2413 1501
- E-mail: info@dlanordic.no
- Web: www.dlanordic.no

### 4) 투자입지여건

#### 가) 산업단지

노르웨이는 복잡한 피요르드 해안과 국토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맥등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경제의 분권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또한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 지방 정부 차원에서 도시별로 일정지역을 비즈니스지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 할 경우 동 분야의 경기변동에 따라 지역경제의 부침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특별히 개발해 놓고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공업단지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지역별 자급자족적인 노르웨이의 기업환경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으며, 소규모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한두 개의 지역소재 기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노르웨이는 도시별로 특성 있는 산업이 발달해 있다. 오슬로 및 인근 외각에는 IT 및 정보통신, 각종 소비자 용품 공장이 산재해 있고 Stavanger에는 석유, 가스산업, Bergen에는 선박기자재, Tromsø에는 수산업이 주종을 이루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가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구오슬로 공항지역이었던 Fornebu지역에 IT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 나) 자유무역지대

노르웨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지대는 없다. 다만 북해의 Svalbard제도 (Spitsbergen) 지역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및 주민이주를 막기 위해 특별세제와 수출입 관련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경제적 특혜지역이라 할 수 있다.

노르웨이 정부가 Svalbard제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출입관리, 직·간접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외국인의 투자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동 지역의 경우에도 노르웨이는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

동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10%의 법인세와 사회보장세 8.9%만 부과되며, 종업원의 소득세 가 4%, 자본세(Capital Tax) 0.2% 정도가 부과되는 특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열악한 기후와 외부와의 연결이 어려운 지형적 한계로 노르웨이 국영 석탄채굴기업인 Store Norske Spitsbergen Kulkompani(SNSK)가 유일하며, 동 지역의 전체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 5) 노무관리

### 가) 고용환경

노르웨이 정부의 완전고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02년 하반기부터 노르웨이 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2005년 말 현재 4.6%에 달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 세가 지속되고 있는 2006년에도 노르웨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석유관련 산업 및 서비스 산업에의 치중으로 실업률은 4%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직 종사인력들의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지 인력수급 사정이 원활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이 현지 인력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문광고나 인력알선 회사를 통하는 방법 등 공개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

2006년 말 기준 노르웨이 총인구는 4.6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중 노동인력으로 평가되는 16세 이상 74세까지의 인구는 약 3,257천명으로 총인구의 약 7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령대 별로는 16-24세까지가 49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6%를, 67세-74세까지가 258천명으로 5.6%를 점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노동인력은 총 2,400천명으로 이중 2,289천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111천 명이 실업으로 실업률이 4.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제조업 부문의 부진과 특히 IT부문의 침체가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노르웨이는 사회활동에서 남녀 차별이 없는 가장 모범적인 남녀 평등사회인 관계로 외국기업이 현지인력을 채용코자 할 경우 이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근로자는 50인 이상 작업장인 경우 노조를 결성하여 대표자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 200명 이하 작업장에서는 2명의 노조대표를 2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원 1/3이상으로 노조회의를 구성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노르웨이 기업노조의 힘은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불법적인 노조활동은 현재까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

## 나) 인력 수준

노르웨이 총인구 4.6백만 명중 약 50% 정도는 수도인 오슬로시 인근과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인력이 풍부한 편이지만 북부의 Finmark, Aust-Augder 지방 등은 카운티 (우리나라의 도) 총인구가 10만 명을 하회하는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고용인력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고 있다.

노르웨이 근로자들은 6세부터 10년간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에도 학비는 없으므로 약 70%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직업과정 포함)와 대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재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성인들도 70만 명에 달해 문맹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노동력의 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 임금 동향

노르웨이에서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분야는 석유 및 가스 채굴분야로 2005년 평균임금이 (Full time 근무 기준) NOK45,600으로 전년보다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금융업이 NOK38,700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다.

제조업 근로자 평균 월 임금은 2005년의 경우 Nok28,900 수준으로 2004년 대비 3.6% 상승 하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 정책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 중 화학산업, 펄프 및 종이산업, 기계 및 설비, 조선 및 원유개발부문의 임금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 목재 및 가구, 식음료 부문은 평균 이하이다.

일반적으로 대졸 취업인력의 월 급여는 Nok24,000 - 26,000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일반 대기

업의 임원급 임금은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대략 월 Nkr400,000 에서부터 높게는 Nkr1,000,000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라) 외국인 고용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국적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근로시작 전에 관할 경찰서에 등록만 해놓으면 된다. EEA회원 국적소지자들도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3개월 이상을 체류할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밖의 국적소유 근로자들은 기업 단체적으로 또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노동허가는 5년 미만의 고용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주재국 노르웨이 대사관으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노르웨이 국내의 State Aliens Office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특정 업종에 따른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관계당국의 별도 허가 없이 직종을 바꾸어도 무관한 영주권 형태의 허가서를 발부해 준다

## 마) 사회보장제도

### 1) 현지인 사회보장

높은 소득세와 원유 수출로부터 창출되는 재정자금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국민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 2) 출산혜택

임신 2개월부터 출산 후 1주일까지 병원진료, 진단, 검사, 치료 등이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며 동네 보건소(1차 진료소)를 통해 예약시간과 장소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출산 3개월 전에 아이용구, 유모차등 구입비로 일시불 NOK35,000 이 지불되며 아동이 3세 미만까지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NOK3,000 지불

-자녀가 18세 미만의 나이까지는 자녀당 매월 NOK972-2,916를 지불(자녀 수에 따라 차등)

-출산을 위한 주부 휴직 시에는 8개월간 기준급여 100% (12개월간에는 80%)를 지급

### 3) 의료비

연간 진료비가 NOK1,550 이하는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연간 공공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지출 총액이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영수증을 모아 국영 의료보험에 신청하면 환불해 준다

또한 대부분의 현지 공공 의료시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함으로 의료비가 일반 사설병원에 비해 약 2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큰 수술이 요구되는 질병이나 장기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완전 무료지원. 단, 치과진료(18

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 성형수술, 치아교정 등은 보험에서 제외한다

#### 4)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9년간 의무교육 실시하여 현재 문맹률이 거의 0%수준이다. 또한 의무교육 기간에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습용구(필기구, 노트, 교과서 등)도 모두 무료 제공한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아니나 수업료는 완전 무료이다. 다만 교재 및 학습용구 등은 개인부담.

#### 5) 실업수당

최저 임금수준(현재 연간 약 800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수입을 가졌던 사람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면 이전 3년간 최고수입에 근거하여 첫해에는 80%, 두 번째 해에는 60%, 3년째까지는 50%의 실업수당을 지원한다.

단, 노동부나 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하는 직장이나 연수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혜택을 박탈한다.

#### 6) 노령연금

97년부터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높여 실시하였으나 노조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노령연금 수혜나이를 63세로 인하하여 실시 중이다

노령연금 금액은 정년퇴직 전까지 납부한 세금과 수입규모에 비례하여 개개인의 형편에 맞는 연금을 지불한다

평생 동안 직장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도 국민보험에 해당되면 월 70만원 상당의 최저 연금액을 받게 되며 노령연금 최고액 상한은 약 300만원/월 수준이다

#### 7) 외국인 사회보장

현지에 거주하면서 노르웨이 정부에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외국인도 노르웨이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단기 또는 외교관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주재국에 소득세 등 세금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사회 보장 혜택을 공여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보장 중 의료보험은 국가보험으로 운영되므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 8) 의료보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도 자발적으로 국가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보험료는 연간 총 소득액의 약 14%를 6등분하여 2개월마다 납부해야 한다.

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는 지나친 의료서비스 이용객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 예약과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을 인근국으로 이송시켜 의료 적체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 9) 참고사항

현재 오슬로에는 3-4개의 사설 종합병원(치과제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Volvat 병원의 경우 연간 성인은 본인Nkr1,200, 배우자 Nkr. 900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료비의 25%를 할인해준다.

현지의 부족한 의료시설 및 의료진으로 대기시간이 길고 부실한 서비스 등으로 말미암아 사설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자국 부유층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설병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지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제 3국의 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 하는 것도 현지점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 바) 노동법 주요 내용

- 근무시간: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 법정휴가비 지불: 지난해 연간 총급여의 10.2% 지불 (11월 급여를 지불하며 마지막 12월은 법정휴가비 지불)
- 고용주세 지불: 고용자는 총급여의 14.1% 고용주세 지불
- 직장연금보험료 지불: 노르웨이 정부는 피고용주가 퇴직 후 받는 연금이 부족하다고 판단 2006.7.1 부터 모든 고용주는 최소 월급여의 2%에 해당되는 직장연금가입 지원한다

#### 사) 채용 및 해고조건

현지인 채용시는 통상 3개월간의 Probation 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는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중 해고시에도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채용시 뽑은 조건에 합당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 일을 하지 못한다 또는 마음에 안 든다 등의 무조건적 사유는 안되며, 업무에 스웨덴 말 구사자가 필요해 선정했는데 이를 못한다는지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하며, 3개월 probation 기간이 지나면 해고하기가 어려워진다

해고시에는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 없으나, 회사가 문을 닫아 불가피 자진 사직하는 경우에는 통상 2-4개월간 퇴직위로금을 지불한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전 2-4개월간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진다

### 6) 조세제도

#### 가) 조세제도 개황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부과는 국회(Storting)에서 결정하도록 헌법상 규정되어 있고 소급입 법에 의한 세금징수는 금지되어 있다. 세무업무는 국회의 위임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시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Tax Directorate)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2년 3월 1일부로 국세청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각 주(19개)에 지방 국세청(The Fylke Tax Office)을 두고, 그 산하조직을 예전의 436개 지방 세무서(Tax assessment Office)를 99개로 통폐합하였다

그 외에 특별 세무서로는 그룹기업과 다국적기업을 담당하는 The Central Tax Office, 외국 인과 외국인 지배법인의 세무를 전담하는 The Central Office for Foreign Tax Affairs (외국인 세무서)를 국세청 직접 산하기관으로 두며, 국내 천연자원 개발세를 전담하는 석유 세무서(The Oil Tax Office)를 재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세제개황

노르웨이의 조세제도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가능하며,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국가의 총 세수에서의 직간접세 비율은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소득세등 직접 세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음. 세수의 근원을 살펴보면 소득세비중이 약 44.4%로 가장 높으며 자산세가 13.1%, VAT등 간접세 33.7%, 천연자원개발세 5.8%, 그외 보험등 기타 세입이 약 3%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세는 원유, 가스에 대한 세금과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가 약 6:4 비율 이며 간접세는 부가세(VAT)가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세 가 87.2%, 지방세 12.2%수준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 다) 직접세

### 1) 소득세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소득이 합산되어 단일체계로 과세되며 대상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1.1-12.31일간의 소득인데, Svalbard제도 및 북부의 Finnmark, Nord-troms 주를 제외하고는 조세 특혜가 부여되지 않다.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 세무서는 개인에게 세금 카드 (Skattekort)를 발급하며, 연말 정산 시 소득의 증감에 따라 추가징수 혹은 환불이 이루어진다.

평균적으로 기본 소득세 공제액을 제외한 총 소득액의 28%의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개인 및 기업의 경우가 동일하다. 소득세가 제외되는 최저점은 연소득이 Nkr80,000 이하 수준이다. 고소득자에게는 55.3%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독신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Nkr329,000 초과, 부부의 경우에는 Nkr830,000을 초과시 해당된다.

### 2) 자산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자동차와 보트, 유가증권, 가구 등 각종 동산의 평가액을 종합한 금액을 근거로 매년 자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부과한다. 자산세의 면제점은 Nkr 120,000이하이며, 총자산이 면제점 초과 Nkr540,000이하까지는 0.2%, 초과시에는 0.4%의 국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자산세율은 Nkr120,000 초과시 0.7%이다.

### 3)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8 -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면세점은 Nkr20만이다. 직계 자녀(입양자녀 포함)와 부모간의 상속의 경우에는 Nkr20만 초과 Nkr30만 이하는 8%, Nkr30만 초과시에는 2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 외 친지나 타인간의 상속인 경우에는 Nkr20만 초과 Nkr30만 이하는 10%, Nkr30만 초과 시에는 3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 라) 간접세

##### 1) 부가가치세(VAT)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단계별로 2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수출품, 예술품, 중고차 거래, 신문, 잡지, 재고등에는 VAT가 면제된다. 식료품인 경우에는 2006. 1.1부터 새로운 부가세 13%가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인근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VAT가 10%대로 낮아지면서 노르웨이인들의 스웨덴 국경지역에서의 쇼핑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부가 가치세 및 각종 과세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석유기금의 공공 부문 예산활용을 자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수년 이내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특별소비세: Excise Tax

알콜, 탄산음료, 화장품, 초콜릿, 설탕, 자동차, 귀금속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제품별 및 사양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동 세금이 노르웨이의 자동차, 주류 등의 가격이 인근국에 비해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환경세(Green Tax)가 신설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기타 간접세로 인지세(2.5%), 수입관세, 부동산세(0.2%-0.7%), 등록세, 증권거래세(1.25%, 증권브로커 수수료 기준) 등이 있다.

#### 마) 사회보장세

##### 1) 고용주

고용주 소재지역에 따라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총 급여(각종 Benefit)의 일정액을 지방세로 납부해야 한다. 오슬로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1지역"으로 분류되어 종업원 총 급여의 14.1%를 고용주세로 납부하며, 중소도시 지역(2지역)은 10.6%, 도시근교 지역(3지역)은 6.4%, 농어촌 지역(4지역)은 5.1%로 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며, 북부 지역인 Nord-Troms 및 Finnmark지역은 면제된다.

또한 피고용인의 연간소득이 사회보장세 부과 최저소득의 16배 이상일 경우에는 12.5%의 추가세가 부과되며, 62세 이상의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4%의 고용주세만을 부과한다.

##### 2) 개인 및 피고용자

개인 및 피고용자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세(의료보험 포함)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원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일반 근로자 및 농림수산업 부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총소득의 7.8%의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며, 여타부분 자영업자는 10.7%, 연금생활자는 3%의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노르웨이 외환관리는 Exchange Ac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 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1990년을 기점으로 완전 자유화된다. 따라서 배당금의 송금이나 현지 지사 이익금, 로열티 및 각종 서비스대금의 제 3국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즉 국제간 환거래나 자금이동 사항은 단지 거래은행에 신고(실제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거래 자체가 신고에 갈음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것도 외국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노르웨이인(법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된 이익금 이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금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현지진출 외국 기업들은 이익금이나 배당금 중 세금해당 액수만큼을 사내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송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거주인(법인포함)은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외국환을 소지하거나 시중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 은행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구 하여 중앙은행인 Norges Bank에 신고하며, 중앙은행은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자금조달방법

외국기업이 노르웨이 진출시 보통 일반은행에서 대출함. 정확한 표준금리는 없고 기업의 회계상황과 담보물에 따라 차이가 나나 대략 주택대출금리 보다는 높음. Dnb Nor은행 (노르웨이에 가장 큰 은행)의 경우 현지 법인 대출금리는 6-7%의 경우가 보통이고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기업이 공장건설이나 기계구입등으로 투자를 할 경우 Innovation Norway(KOTRA와 같은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대출서비스가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도인 오슬로의 경우에는 대출서비스가 전혀 없고 개발이 안된 노르웨이 북쪽지방의 경우에는 대출과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nnovation, Norway에서 제공하는 대출서비스는 대략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가 담보대출로 이 경우 시장금리(현재 5%)가 적용되고 두 번째가 위험부담대출로 이 경우 더 높은 금리(현재 대략 7%)가 적용된다. Innovation에서 대출을 지원받더라도 보통 은행에서 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즉 10을 투자하는 경우 4는 Innovation에서 4는 은행에서 나머지 2는 기업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원의 예도 기업의 투자성격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공장건설 등의 경우

크게는 투자금액의 25%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Innovation에서 기술혁신을 진흥 하기 위해 마련된 Skattefun이라는 일종의 세금감면혜택 프로그램이다

## 나) 유의사항

현금지참 출입국시에는 노르웨이 화폐와 외환을 포함하여 총 Nkr25,000상당 이상의 금액을 지참하는 출. 입국자의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 8) 투자유의사항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듯이 인근국가와의 T/T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신용장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업체와 가격이나 품질 등 모든 상담 조건에 만족하면서도 최종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첫거래시 바이어로부터 통상 선적대금의 50% 정도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선적 후받는 T/T 방식 등 다양한 거래조건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의 공식적인 문서가 현지어로 되어 있어 회사설립 등 업무추진에 불편하며 영어로 된 신문도 발간되지 않아 현지인의 고용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 8. 덴마크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정식명칭은 덴마크 왕국(Kingdom of Denmark)이며, 덴마크어로는 단마크(Danmark)라고 한다. 북해(北海)와 발트해를 가르는 곳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북쪽으로는 스카게라크 해협, 동쪽으로는 카테가트 해협을 끼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스웨덴과 마주한다. 해외 영토로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Grønland)가 있다.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 현재 EU)에 가입했으나 유로(Euro)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은 14개 주(amt)와 2개 자치구(amtskommune)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7년부터 14개 주와 5개 구로 재조직될 예정이다.

**<표 3-62> 덴마크 일반 사항**

<b>국 명</b>	덴마크 (The Kingdom of Denmark)
<b>위 치</b>	북위 54°34'부터57°까지, 동경 8°5'부터 15°12'까지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 반도 및 592개 섬으로 구성)
<b>면 적</b>	43,098km <sup>2</sup> (한반도의 1/5)
<b>기 후</b>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심함 [평균기온: 0.4℃(2월), 16.5℃(7월)] 연평균 강우량은 664mm이며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60일
<b>수 도</b>	코펜하겐(인구 50만 명, 수도권 포함 137만 명)
<b>인 구</b>	542만 명
<b>주요 도시</b>	Aarhus(29만 명), Odense(18만 명), Aalborg(16만 명) 등
<b>민족(인종)</b>	전체인구의 96%가 북게르만계의 데인족
<b>언 어</b>	(공용어)덴마크어 / (상용어)덴마크어, 영어, 독일어
<b>종 교</b>	덴마크 루터복음교[87%], 기타(카톨릭, 침례교, 유대교)[12%]
<b>헌법제정일</b>	1849. 6. 5일
<b>정부형태</b>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자료원: KOTRA, 2008.04

## 나. 경제 개요

2006년에 덴마크의 경제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덴마크 경제가 호조를 보인 것은 낮은 이자율, 부동산가격 상승,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개인소비 확대가 가장 큰 요인이며, 또한 예상보다 높은 세계경제 성장에 힘입은 수출 호조와 소비 및 수출호조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도 한몫을 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낮은 실업률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현상이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둔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또한 개인소비 증가율도 하락할 전망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EU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2.0%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덴마크 시장의 특성은 다음의 6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소비패턴이 양극화 되어 있는 시장이다. 덴마크는 2006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미화 5만불 대의 고소득 국가인 관계로 의류, 전기, 전자제품, 신변용품 등은 고급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율의 세금부담으로 인해 생활용품 등은 저가품을 선호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급품 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이다. 덴마크는 인구 540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일부 제품은 덴마크에서 수입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 국가와 독일 등 중부 유럽에도 공급하기도 하지만 전체 수입량 규모는 크지 않다.

세 번째로는 상거래 형태가 매우 보수적인 시장이다. 첫 번째 거래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간이 걸리나 일단 거래관계를 형성하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려 하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네 번째로 일반 소비제품의 경우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가전제품, 생활용품, 안경 등 일반 소비재는 소수의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는 시장이다. 덴마크는 깨끗한 국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다. 덴마크인들은 환경 문제를 하나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방안이 유익하다고 판명되면 당장 그 방안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당연히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은 시장에 내어놓을 수 없다.

여섯 번째로는 비교적 의사 결정 속도가 느리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한번 수입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된다.

**<표 3-63> 덴마크 경제 지표(2006년 기준)**

GDP	2,754 억 불
실질경제성장률	3.5%
1인당 GDP	50,649 불
실업률	3.5% (평균)
물가상승률	1.9% (평균)
화폐단위	Danish Kroner (DKR)
환율	US 1불=DKK5.9470 (평균)
외채	134억 불
외환보유고	289억 불
교역규모	공공 서비스(26.4%), 무역 운송 통신(23.8%), 금융(20.3%), 광공업 에너지(22.0%), 건설업(4.6%), 농수산업(2.8%)
교역품	상품수출(838억 불), 수입(745억 불)

자료원: KOTRA, 2008.04

#### 다. 우리나라의 對덴마크 관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과 큰 이슈 및 현안 사항은 없으며, 남, 북한과 동시 수교국 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전쟁 중에는 병원선(유틀란드호)과 600여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사람들 중에 40여명이 현재 생존해 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으로부터 고아들을 꾸준히 입양하여 현재 덴마크 내에 한국계 입양아가 8,000여명에 달해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계 입양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EU가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을 때 EU가 이렇게 하도록 덴마크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의 조선산업으로 인해 덴마크 조선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거의 몰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나 WTO로부터 한국이 무 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이 문제도 해소되었다.

2006년에는 덴마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써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에 당선되도록 한국측을 지지하였으며, 덴마크 수상이 방한하여 양국간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바 있다.

2007년 10월에는 사상최초로 덴마크 여왕이 방한하였으며, 여수 엑스포 유치 시에도 한국을 지지한 바 있다.

### <표 3-64> 한국-덴마크 관계

<b>체결 협정</b>	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60), 사증면제 협정('69), 개발차관 협정('69), 이중과세 방지협정('77), 해운협정('80), 재입국 사증 면제협정('87), 투자보장협정('88)
<b>교역규모 (2006년)</b>	653백만 불 (수출), 574백만 불 (수입)
<b>교역품</b>	수출: 선박, 자동차, 의류, 컴퓨터,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등 수입: 돈육, 닭고기, 발전기, 냉난방기, 기계요소, 의약품 등
<b>교민</b>	약250여명

자료원: KOTRA, 2008.04

한국의 대 덴마크 수출은 90.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2004년 이후 연 6.2~6.5억 불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자동차와 선박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따라서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무역 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2007년에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수출은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과 현대의 중형차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승용차 수출감소, 무선전화기 등의 인근국가를 통한 우회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감소를 보인 반면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은 돈육, 의약품, 화학기계, 선박부품, 조립식완구, 보일러 등의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65> 한국-덴마크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11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덴마크 수출	335	639	620	653	375	-30.8%
對 덴마크 수입	404	471	560	574	590	21.6%
무역수지	-70	168	60	79	-215	-

자료원: KOTIS 한국무역통계; KOTRA 2008.04 재인용

우리기업이 덴마크에 투자한 것은 2007년 9월 말까지 총 9건에 183만 3천 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2001년 이전에 투자된 것이 2건 10만6천 불이며, 그 이후 2003년에 1건 20만 불, 2006년에 3건 139만 8천 불, 2007년에 3건 13만불이 투자되었다.

2001년 이전에 투자된 2건의 경우 실체가 정확하지 않으며, 2003년에 20만불은 ADVANCED VEHICLE MANAGEMENT AS에 투자된 것이며, 2006년에 투자된 3건은 요식업에 대한 지분투자 20만9천 불, 덴마크 회사에 지분 투자 가 17만1천 불, Cell Biotech이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101만8천 불이다. 2007년에도 투자된 것도 소액으로 실제 한국인이 파견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덴마크에 직접 투자 없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한국선급, 대한항공, 두산 중공업, 엠텍비전, 서울반도체 등 5개사이다.

<표 3-66> 우리나라의 對덴마크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3분기)	누계
건수	1	0	0	3	3	7
금액	200	0	0	1,398	130	1,72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2;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표 3-67> 우리나라의 對덴마크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No.	회사명	모기업	투자진출시기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 수
1	Cell Biotech Europe	Cell Biotech	2006	판매법인	유산균	90.9%	96,685

자료원: KOTRA, 2008.04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투자유치관련 법규

외국인의 덴마크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덴마크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법적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 나) 외국인투자 장려, 금지, 제한분야

##### 장려분야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는 없으나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 금지분야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되어 있으나 통신(통신장비 제조는 제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천연가스 배급 업종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 제한분야

아파트 빌딩, 주거용 건물, 농장, 농토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되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해서는 특별조건을 두고 있다. 현재 외국은행이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할 경우 초기자본금 또는 등록된 지사의 자본금이 최소 DKK40백만(5백만 유로) 되어야만 승인해 주고 있으며, EU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다) 투자인센티브

덴마크의 투자유치 정책은 내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을 막론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외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덴마크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덴마크 정부의 투자장려 정책은 일반적인 장려정책이 아닌 특정지역 혹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촉진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보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지며, 활동보조는 주로 수출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에 투자하는 산업부문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된 경제기반 위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대부분의 장려정책은 저리의 대출 혹은 정부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협의하여 저가로 토지를 제공받거나 혹은 신 공업단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 Growth Fund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덴마크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growth Fun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세가지 형태로 지원되는데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의 형태이다.

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이 유망하지만 아주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은행 또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이 Fund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출은 연간 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250명 이하인 기업이 유망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총 소요자금의 45%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보증은 최소 연간 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2/3에서 1/2까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 세제 우대

덴마크 내의 혹은 덴마크의 특정 지역 내의 외국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 우대 제도는 없다.

#### 금융 지원

덴마크 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는 없다. 다만 덴마크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현지 금융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덴마크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내국 및 외국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신용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담보용자기관이나 은행을 통하거나 혹은 연금관리회사 및 투자회사를 통하여 장기신용이 가능하다.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투자 허가

외국인이 덴마크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필요하며, 일부 업종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덴마크에 새로운 회사나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 등록 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회사설립자는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등록을 위해 Erhvervs og Selskabstilsynet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회사 등록소)에 투자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 계약서에는 정관, 회사명, 회사의 위치, 사장의 성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덴마크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영업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지방 세무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당국에 등록을 하면 지방 세무당국으로부터 회사 고유번호(SE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세 번째로는 기업 등록소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위해서 등록된 회계사 또는 국가 공

인 회계사를 지명해야 한다. 회계보고서는 주주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허가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호텔경영, 음식점 운영, 외환 환전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3-68> 덴마크 유형별 등록기관 및 제출서류**

업체유형	허가, 설립신청기관	제출서류
<b>현지법인</b> -A/S: 주식회사 -ApS: 유한회사	Erhverve og Sleskabsstyrelsen (주1 참조)	법인신청서
<b>Branch Office</b>	Erhverve og Sleskabsstyrelsen	지사설립신청서 (주2 참조)
<b>연락사무소</b>	신청 및 허가기관 없다	없다

주1: Erhvervs og Selskabstyrelsen (회사등록소)

- 주소: Kampmannsgade 1 DK-1780 Copenhagen K
- 전화: (+45) 3330 7700
- 팩스: (+45) 3330 7799

주2: 지사설립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는 우선 덴마크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한국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필요 신청서 양식 >

- 법인(A/S, ApS) 신청서
  - Owners, managers, accounts 리스트, 연락처 작성양식
  - Owners, managers, accounts 변경사항 기재양식
  - 회사명, 주소, 전화 등 연락처 기재양식
  - 자본금 관련사항 기재양식
  - 지사설립 신청서

## 나) 투자진출 형태

덴마크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식회사(A/S), 유한회사(ApS), 지사(Branch),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 ① 주식회사(A/S)

#### □ 설립절차

주식회사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체에 의해서 설립될 수 있으며, 설립자는 정관을 포함한 설립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설립계약서에 서명한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등록소(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비는 없다. 회사는 설립 계약서에 서명한 즉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등록 전에는 의무를 지거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정관에는 회사명, 회사의 목적, 회사 설립지역, 자본금, 이사회 인원수, 회계 년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의 2/3 이상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다.

#### □ 자본금

최소 자본금은 DKK500,000이며, 자본금은 회사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두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이름으로 명목상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사가 주식을 인수할 경우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권의 5% 이상 또는 최소 DKK100,000에 해당하면서 총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는 그의 주식 소유 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또한 어떤 주주가 5% 제한을 초과하거나 또는 투표권 및 총 주식의 1/3, 2/3에 달하는 주식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내용을 변동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5%, 1/3, 2/3의 제한을 초과하는 주주의 리스트를 확보해야 하며, 이 리스트와 Annual Report상의 연간 회계정보를 포함한 회사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 □ 경영

모든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3년 연속 평균 35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의 경우 종업원이 이사의 절반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사장을(General Manager)를 선임하며, 사장은 이사회 멤버가 될 수는 있으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 이사진의 다수는 회사의 경영진이 아니어야 한다.

이사회와 함께 사장은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고 회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이사회에 의해서 소집되는 일반적인 연례 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기업은 4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 연간회계

주식회사는 감사를 받은 회계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회계기록은 최소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포함해야 하고 Annual Report도 준비되어야 한다. 회계기록은 덴마크어로 작성되어야 하나 종종 다른 언어로도 작성될 수 있다. 화폐단위는 덴마크 크로네 또는 유로로 표시되어야 한다.

연간회계 기록이 주주총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즉시,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 후 4-5개월 이내에 Annual Report와 함께 기업 등록소에 제출되어서 일반인 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청산

청산의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2/3 이상의 주주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청산이 결정되면 주주총회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의 결정은 덴마크 관보를 통해 공고되어야 하며, 모든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유한회사(ApS)

유한회사는 법 및 조세 차원에서 볼 때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유한회사 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제한된 유동성으로 소규모 회사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며 설립절차 등은 주식회사와 동일하나 주식회사와 크게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 납입자본금이 최소 DKK125,000이어야 한다.
- 자본금이 일인 또는 그 이상의 설립자에 의해서 납입한다.
- 주식이 주식 소유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주식 소유자는 주식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또는 주식 소유자가 되지 않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회사는 주주명단을 유지해야 하며, 자본금이 DKK500,000이상인 회사는 주주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 한 명의 주주에 의해 모든 주식이 소유되었다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물론 주식 소유자의 신분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유한회사는 회사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유한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General Manager) 선임은 안 해도 된다. 경영진은 한 명의 이사, 한 명의 Director, 한 명의 General Manager로 구성할 수 있다.
- 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정관의 변경은 모든 주주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한다.
- 자본금의 40% 이상을 잠식할 경우 회사는 자본금의 재 출자 받거나 또는 해산해야 한다.
- 유한회사의 회사의 청산절차가 주식회사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가) 투자관련 정부기관

#### 회사 등록기관

○ 기관명: Erhvervs og Selskabsstyrelsen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 주 소: Kampmannsgade 1 DK-1780 Copenhagen K

- 전 화: (+45) 3330 7700

- 팩 스: (+45) 3330 7799

- 이메일: ebst@ebst.dk

- Web : www.ebst.dk

#### 투자지원 정부기관

○ 기관명: Invest In Denmark

- 주 소: Slotsholmgade 10-12, DK-1216 Copenhagen K.

- 전 화: (+45) 3546 6000

- 팩 스: (+45) 3546 6001

- E-mail: Info@investindk.dk

- Web : www.investindk.dk

□ 공장설립 승인기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를 접촉해야 하는데 코펜하겐의 경우 아래와 같다.

○ 부서명: Byggeri & Bolig 내의 Byggesagsafdelingen

- 주 소: Postboks 432, Otteliavej 1, 4. sal, DK-2500 Valby

- 전 화: (+45) 3366-5200

- 팩 스: (+45) 3366-5200

- E-mail: byggesagsafd@tmf.kk.dk

□ 공장설립을 위한 환경관련 승인기관

공장을 설립 시 환경 관련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접촉해야 하는데 코펜하겐의 경우 아래와 같다.

○ 부서명: Environmental Division

- 주 소: Postboks 432, Otteliavej 1, 4. sal, DK-2500 Valby

- 전 화: (+45) 4322-2849

- 팩 스: (+45) 4322-2866

- E-mail: aaslyn@tf.kbhamt.dk

#### 나)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회계법인

○ Price Water house Coopers

- 주 소: Strandvejen 44, DK 2900, Hellerup

- 전 화: (+45) 39453945
- 팩 스: (+45) 39453987
- 이메일: dk-webmaster@pwc.com
- Web : <http://www.pwc.com>
- KPMG
- 주 소: Borups Alle 177, Postboks 250, 2000 Frederiksberg
- 전 화: (+45) 38183000
- 팩 스: (+45) 72293030
- 이메일: kpmg@kpmg.dk
- Web : <http://www.kpmg.dk>
- BDO Scanrevision
- 주 소: Kristinebjerg 3, 2100 Copenhagen East
- 전 화: (+45) 39155200
- 팩 스: (+45) 39155201
- 이메일: koebenhavn@bdo.dk
- Web : <http://www.bdo.dk>
- 법무법인
- Jonas Bruun
- 주 소: Bredgade 38, 1260 Copenhagen K
- 전 화: (+45) 3347 8800
- 팩 스: (+45) 3347 8888
- 이메일: jb@jblaw.dk
- Web : <http://www.jblaw.dk>
- Kromann Reumert
- 주 소: Sundkrogsgade 5, 2100 Copenhagen Ø

- 전 화: (+45) 70121211
- 팩 스: (+45) 70121311
- 이메일: cph@kromannreumert.com
- Web : <http://www.kromannreumert.com>
- Niels Ahlmark(Member of the Law Firm Ret & Raad)
- 주 소: Vester Voldgade 90, 1552 Copenhagen V
- 전 화: (+45) 3315 1563
- 팩 스: (+45) 3313 0707
- 이메일: koebenhavn@ret-raad.dk
- Web : <http://www.ret-raad.dk>

#### 4) 투자입지여건

##### 가) 입지 여건

덴마크는 대부분 공업용지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동 지역 내 공장부지는 업체유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부지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 외곽지역인 Glostrup, Bronby, Ballerup 지역이 공장설립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많은 외국기업 생산공장 및 판매사무소도 이곳에 설립되어 있다.

덴마크의 대표적 기업들은 대부분 각 지방의 소도시에서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소재지에서 커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Danfoss사가 본토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Grundfos사는 중북부지방, Lego는 중부지방, Vestas 사는 중서부지방의 소도시에서 위치하고 있다.

덴마크 본토의 북부지방인 Aalborg지역에는 IT업체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조선산업이 발달해 있던 지역이었으나 조선업이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대체산업으로 IT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대학 등의 관련 학과 증설, 직업학교과정 확대로 인력을 조달하는 한편 금융지원을 통해 관련업체 유지한 결과 현재는 덴마크 뿐 아니라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IT산업 지역으로 발달했다.

2000년 코펜하겐-말뫼를 잇는 교량의 완공된다는 데 따라 동 지역(Oeresund)의 경제권이 단일화 되고 있으며, 특히IT 및 생명공학 관련산업이 집중 발전되고 있어 이를 Medicon Valley로 부르기도 한다.

상기 이외에도 Herning 및 Ikast시를 포괄하는 지역의 섬유디자인 산업클러스터, Horsens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 및 농업용 철물산업클러스터, Esbjerg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여행산업 클러스터, Funen 지역의 묘목산업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 동부를 중심으로 한 운송산업클러스터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해당 지 자체 및 정부의 산업정책과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특정산업에 특화, 발전한 지역들이다.

한편 Invest in Denmark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의 목적에 맞는 공장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Invest in Denmark를 접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vest in Denmark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나) 산업단지

덴마크에는 특별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없다.

## 5) 노무관리

### 가) 인력

덴마크의 노동인구는 약280만 명이며 그 중 150만 명이 남성이고 130만 명이 여성이다. 대체적으로 노동인력의 질이 높고, 안정되어 있다. 임금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편인데, 연간 물가상승률이 2%이면, 임금 상승률은 3-4% 수준 정도이다.

국립학교를 비롯 고등학교, 대학교는 무료이고 산업 근로자는 전문인 양성과정 혹은 기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여러 분야에 숙련된 노동력을 찾을 수 있으며 효율성과 훈련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력의 수급 (ARBEJDFORMIDINGEN)을 위해 주어진 지역의 일자리를 구하는 개인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등 노동력의 유동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호황으로 건설 등의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동구 등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나) 노사관계

피고용인-고용주와의 관계는 월급 고용인에 대한 법과 덴마크 고용주 연합(DA)과 덴마크 노동조합연합(LO) 간에 '73.10.31일 체결된 주 협정문 및 그 후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노사합의 내용을 적용 받는다.

상기 법과 합의내용은 피고용인의 고용은 물론 법정최소 휴가일, 해고통보, 초과근로 수당, 여성 및 남성의 출산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피고용인의 보호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 다) 노동조합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기술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회원이다. 따라서 일정 분야의 기업 피고용인들은 여러 개의 노동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회원가입은 의무적 이지는 않지만 회원들이 비회원과의 근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간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합의하여 특정 조합의 회원만을 고용하기도 한다.

노사의 총체적 합의는 그 회사가 속한 고용주 단체와 관계되는 노동조합 간에 2년 또는 3년, 4년 마다 이루어지며, 여기서 임금,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덴마크 고용주 연합과 덴마크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공식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

## 라) 근로자 평의회

고용주연합과 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모든 산업체는 35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 정보 공유와 대화를 통해 노사간의 협력의 유지와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평의회를 두어야 한다.

## 마) 피고용인의 이사 선출권

지난 3년간 평균 35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나 기업의 피고용인은 그들 중 최소 2명과 대리인 2명을 이사회에 이사로 선출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에서의 피고용인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절반 이상의 피고용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용인이 이사회에 이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그 회사에 최소한 일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바) 피고용자 Stock Option Scheme

산업근로자의 기업공동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The Tax Assessment Act”는 Stock Option Scheme이 덴마크 조세당국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라면 피고용인이 획득한 주식에 대해 조세감면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 사) 근로조건

### 1) 임금

덴마크에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없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니다.

2006년 기준으로 일반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0,485 덴마크 크로네이며, 간부직 평균임금은 44,825 덴마크 크로네이다.

### 2) 수당

많은 회사들이 은행, 보험회사와 협력하거나 독자적인 연금자금을 마련하여 부가적인 연금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위하여 적합한 식사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은 식사와 음료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는 매점을 설치해 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간혹 주거시설도 제공된다. 회사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회사차량이 지급되어지기도 한다.

덴마크에서는 연금을 제외하고는 높은 특별 수당을 주는 것은 그리 널리 행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별 수당은 피고용인에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 3) 근무시간

임금 근로자의 경우 단체계약에 의해 주당 5일, 37시간 근무가 규정되어 있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매 38시간 근무 시 2시간의 별도 유급휴가 권리가 부여된다.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수당은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

고용인 연합(EMPLOYEE'S ASSOCIATION)의 회원일 경우 초과근무 수당의 계산은 첫 3시간은 50%를 지급하고 그 이후는 100%를 지급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에는 100% 지급한다.

### 4) 유급휴가 및 공휴일

모든 피고용인들은 공휴일도 임금이 지불되며, 휴가 및 휴가비 지급은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데, 피고용인은 법에 의해 연간 5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식으로 고용된 월급 근로자는 휴가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는다. 월급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총 급여의 12.5%가 휴가비로 주어진다.

병가에 대해서는 월급근로자인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월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병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총 52주를 가질 수 있는데 출산 전 어머니가 4주, 출산 후 어머니가 14주, 아버지가 2주를 가질 수 있고, 32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다. 출산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50%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 산 후 46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 5) 해고

고용주가 월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칙에 따라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 6개월 이내 근무직원: 해고 1개월 전 통보
- 6개월- 3년 근무직원: 해고 3개월 전 통보
- 3년- 6년 근무직원: 해고 4개월 전 통보
- 6년- 9년 근무직원: 해고 5개월 전 통보
- 9년 이상 근무직원: 해고 6개월 전 통보

월급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사직은 통보한 당월로부터 1개월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인턴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월급 근로자가 12, 15, 18년 혹은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되면 부수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분의 추가월급을 보상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1, 2, 3년 혹은 그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인 및 18세의 미망 자녀가 부양 가

족으로 있으면 1개월, 2개월, 3 개월 분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임금근로자 해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노동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임금근로자는 9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21일의 사전 통보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21일의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용인의 사직통보는 이에 반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 6) 기회균등

법령에 의해 인종, 국적, 종교 혹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봉급, 임금 혹은 혜택의 수준이 성별이나 앞서 언급한 기준에 의해서 고용인에게 달리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이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동료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 7) 보건 및 안전

모든 기업은 근로보건 및 안전법(ARBEJDSMILJØLOVEN)에 근거한 산업보건 및 안전규정, 노사 합의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안정요원을 지명하거나 최소한 1개의 안전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인지도 높은 보험회사에 피고용인의 근무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와 비위생적인 근로 조건 혹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구 부상 및 건강 악화를 보상해주는 보상재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8) 교육훈련

현지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을 위하여 기본훈련 혹은 고등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훈련 과정과 수련인의 시험 관리는 정부가 보조하는 교육기관이나 현지 시당국이 맡고 있다. 아울러 고용주는 여러 과정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체 훈련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 아) 사회보장

#### 1) 사회보장제도

덴마크는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

- 공공기금으로 충당하는 연금, 의료 및 아동복지
- 공공기금으로 충당하는 실업자 및 장애인 복지
- 피고용인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추가연금
- 산업재해 보험
- 공공기금으로 충당하는 피고용인 보장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s)

#### 2) 보장

피고용인보장기금에서 제공하는 추가연금 혜택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 피고용인을 막론하고 덴마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까지 적용된다.

### 3) 기부

사회보장기금의 기부는 주로 정부출자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사회보장비용도 직접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출자되지는 않는다.

### 4) 혜택

#### 연금

모든 덴마크 시민은 다른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외국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덴마크 체류기간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금은 65세가 된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1999.6.1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에게는 67세가 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2007년에는 연간 DKK59,424가 연금으로 지급되며, 매년 이 금액은 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조정된다.

만약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개인 1명에게는 연간 DKK59,820이 추가로 지급되며, 부부에게는 DKK27,936이 추가로 지급된다.

모든 피고용인과 근로자 (외국인 포함)는 67세에 추가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99.6.1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은 65세가 된 다음 달부터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연금 이외에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연금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연금은 개인이 연금기금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시기는 65세부터이며, 1999.6.1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은 67세부터이다. 이 연금은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국가공인 실업기금의 회원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기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60에서 64세 사이에서 조기퇴직이 가능하며, 퇴직하는 회원들에게는 65세가 되어서 퇴직한 사람이 받는 연금수령액 보다 약간 작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액은 조기퇴직제도에 규정되어 있다.

#### 질병 및 의료비용

1971년의 봉급 근로자법에 따르면,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결근할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고 있다. 만약 피고용인이 2주일 이상 질병으로 결근하였다에도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였 다면 2주 이상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출산휴가 시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된다.

의료 및 치과 비용은 개인의 의사 및 치과의 선택 제한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환불되거나 50%만 환불되며 입원은 수술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무료이다.

## □ 아동복지

2007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연간 DKK13,640을 받을 수 있으며, 3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연간 DKK12,324을 받을 수 있고, 7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은 DKK9,696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이 금액은 면세로서 소득과 별개로 구분되며 매 분기 마다 미리 부모에게 지급된다.

## □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해당 사람이 국가공인 실업기금의 회원인지 아닌지의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국가 공인 실업기금의 회원일 경우 원래 봉급의 90%, 2007년의 경우 주당 최고 DKK3,415의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나 회원도 아니며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개인은 거주하는 시청에서 생활보조비가 주어진다.

## □ 피고용인 보장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

피고용인 보장기금의 목적은 고용자가 파산할 시 지불되지 못한 보수에 대한 피고용인의 피해를 막는데 있으나 기금은 각 피고용인에게 소득세 후 최고 DKK 90,000을 지불한다.

## 5)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CPR CARD(현지주거자 신분증)를 발급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관은 CPR CARD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아니다.

# 6) 조세제도

## 가) 세제 개황

세금의 종류를 보면 첫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이산화 탄소세,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있고,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자본소득세가 있다. 두 번째로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VAT), 자동차 등록세, 관세 및 여러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지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또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개인에 대한 재산세(법인은 제외함)와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자본세(주식양도세, 부유세 등), 지급 급여세 등은 없다.

국세의 충당은 간접세로 39%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약 61%가 직접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금은 국회에서 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며, 세금은 국가, 주 및 시단위로 부과 가능하다. 비록 각기 다른 정부기관이 세금을 부과하기는 하지만 세금을 신고, 추징 및 수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나) 기업 조세

### 1) 법인세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25%이다. 법인세는 면세항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지만, 비거주 기업은 덴마크에서 발생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모든 덴마크 기업을 포함한 과세 가능한 영구설립기관(예: 지사)을 둔 비거주 외국기업은 매 세무 기간 마다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가 4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인 법인은 늦어도 이듬해 4월30일까지 납세신고서를 끝내야 하고, 회계연도가 1월1일과 3월31일 사이에 끝나는 법인은 당해 5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통 납세신고서 제출은 6월30일 까지 연장 가능하고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또한 납세신고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신고서를 경영진의 결제를 받고 제출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금의 부과는 기업이 제출한 납세신고서를 근거로 현지 세무당국이 실시하며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세금액수의 변동을 가져올 사유를 표시할 수 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 있다 것을 알린다.

납세자가 올바르게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세무당국은 추정치로 부과한다. 납세 신고서의 정보가 미흡하여 세무당국이 만족하지 않으면 추정치 혹은 임의의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다.

만약 법인이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할 시에는 세금 부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4 주 이내에 시 세무위원회(Municipal Tax Board)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을 재심사하여 새로이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결정에 법인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면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일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Municipal Tax Council)로 항소할 수 있다.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다시 8주 이내에 국립 세금 재판소(National Tax Tribunal / Landsskatteretten)로 항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직접 출두하거나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할 수 있다.

그 이후의 항소 절차는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의 항소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고등법원 (High Court)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원 내에서의 항소는 이따금 회계사들의 지원을 받고 변호사들에 의해 처리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무연도 5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금액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재심사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여길 시에 수용할 수 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다.

법인세액은 별개의 고지서로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납기일은 세무연도 이듬해 11월 1일까지이며, 납부가 11월20일을 지나면 안 된다.

## 2) 이산화탄소세

이산화탄소세는 덴마크 영토 내에서 이산화탄소의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산화탄소세는 이산화탄소의 탐사 및 채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이산화탄소세가 부과된다.

이산화탄소세는 2004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채굴된 이산화탄소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순 이익에 대해 70% 가 부과되었으나 2004 1월 1일 이후에는 52% 로 하향 조정되었다.

### 3) 자본소득세

3년 이상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본 소득세가 면제되나 3년 미만 소유한 주식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자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28%이다. 그러나 외국인 주식 소유자는 덴마크 회사의 주식에 대해 덴마크의 자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4) 간접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세, 자동차 등록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25%이며, 관세는 덴마크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물품세는 술, 음료, 담배, 차, 커피, 초콜릿, 물, 자동차 연료, 난방용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에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80% 로 매우 높다.

## 다)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외국기업 및 자사의 경우도 법인세, 이산화탄소세, 자본소득세 등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며, 간접세도 마찬가지이다. 이 외에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 시 원천 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28%의 원천 징수세나 조세협정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협정 체결국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로얄티에 대해서는 28%의 로얄티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영구설립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덴마크내의 산업 및 공업 이윤은 과세된다. 외국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된다. 연락사무소 혹은 대표 사무소는 직원이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면세로 활동할 수 있다.

비거주 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협정에 의해서 덴마크 내에서의 납세의무 정도를 규정하며, 만약 협정이 없다면 OECD모델 협정과 유사한 조항에 의해서 규정된다. 협정에 의해 국내영구설립 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및 상업이윤에 대한 과세가 제한된다.

또한 비 거주 회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되지만 영구설립기관은 거주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대리점이 없는 덴마크 소비자를 위한 재화의 수입은 영구설립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덴마크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비관련 대리점(Unrelated agent) 및 독점 대리점

(Sole agent)이 행하는 상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판매를 담당하는 영구 설립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국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제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판매활동은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될 요인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결정이 덴마크에서 이루어졌는지 외국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즉 판매계약이 덴마크에서 체결되면 영구설립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조항에 따라 지사의 이윤중 법인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지사에 의해 직, 간접으로 발생한 모든 거래소득과, 지사를 위한 자산 혹은 소유권 으로 발생한 소득

- 지사와 관련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5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지사의 소득과 손실을 법인세를 위해 조정하는 방법은 거주자 회사와 같으나, 소득을 수익공제 항목으로 손금처리 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내에서 지사를 통한 무역만을 위한 용도이어야 한다.

- 또한 외부 부채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본사로부터 빌린 부채 대한 이자 지급 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재화의 구입, 광고 및 기타 보조활동을 위한 사무실이나 고정된 장소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에 대한 원천 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덴마크 회사로부터 외국인 주주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또한 28%의 원천 징수세 내지는 조세협정에 의한 세율로 과세된다. 주주총회에서 배분된 배당금뿐만 아니라 비밀 배당금 및 파산절차를 밟지 않는 회사로부터의 주식, 자본의 감소로 인한 지분 그리고 파산절차를 밟는 회사의 역년 이전의 배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조세 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 징수된 금액과 조세 협정에 의한 세율 차이의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당국으로 서면 제출이 필요하며,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주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원천 징수세는 확정세액으로서 다른 원천의 손실로 인해 감소될 수 없다. 외국인 주주들도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국에 해당하면 거주자 회사의 공개된 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주들은 덴마크 주식의 판매 혹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득에 대해 보통 덴마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회사간 주식 판매는 덴마크 세무관계상 배당금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다.

## 라) 개인 조세

### 1) 소득세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덴마크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전국민은 소득액의 9%(8% 실업기금+1% 특별 연금세)를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 소득액에 따라 추가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7년도의 경우 총소득에서 기본 감면액(DKK39,500)과 기타 감면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총 세율이 59%를 초과할 수 없다.

○ 국세(State Tax Rates)

- 기초세율(0 - DKK272,600): 5.48%
- 중간세율(DKK272,600 - DKK327,200): 6%
- 고세율(DKK327,200 이상): 15%
- 지방세(Local Tax Rates) 평균: 32%

이 밖에 종교세가 1% 인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부하고 싶은 사람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실업기금 및 특별 연금세 9%, 국세와 지방세 59%, 종교세 1% 등 총 69%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과전된 고액 연봉자나 과학자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3년에 한해 25%의 특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DKK248,900를 초과(2007년 경우)하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데, 세율은 상속자가 자식, 부모 등 직계일 경우 15%, 상속자가 형제, 자매, 친척 등 기타 관계인 경우 15% 외에 추가로 25% (첫 번째 15% 감면후의 금액에 대해)를 납부해야 하는데 총 세율이 36.25%를 초과할 수 없다.

증여세는 부부간의 경우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면제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DKK55,300을 초과하는 금액(2007년 경우)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되며, 기타 관계인 경우 36.25%의 세금이 부과된다.

3) 재산세

DKK3,040,000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1%, 이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외환규제

일반적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별한 외환규제는 없다. 다만 투자자의 거주지 국가가 덴마크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할 수는 있다.

### 나) 외국자본 및 기술등록

통계 및 통제 목적을 위해 DKK100,000이 넘는 국제송금은 덴마크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것 외에 외국자본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

#### 다) 현금구좌

모든 덴마크 내 거주인은 덴마크 혹은 해외에 현금구좌를 가질 수 있으나 해외에 은행 구좌나 증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은행 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덴마크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더불어 신고해야 하며 다음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덴마크 국세청에 예금 혹은 구좌 조사권 위임
- 해외의 은행기관이 덴마크 국세청으로 이자율 및 잔고에 대한 연간보고 등을 승인하는 신고서

#### 라) 자본 및 소득의 송금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송금에 대한 외환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얄티,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포함하여, 소득의 본국송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 마. 자금조달 방법

덴마크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다른 선진국처럼 매우 자유로우며, 대출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이 없을 경우 모기업 또는 제2자의 지급 보증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8) 투자유의사항

덴마크는 비즈니스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 및 투자진출 시 제도나 법규상의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다. 다만 문화 및 생활방식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바이어의 경우 대체적으로 회신이 느리기 때문에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휴가일수가 5주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쁘다. 따라서 아주 급하고, 충분히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즉각 회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끈기 있게 접촉해야 한다.

덴마크 사람들의 일 처리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느린 편이나 대신 우리보다 꼼꼼한 편이다. 따라서 빨리 처리하는데 익숙한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러한 경향을 이해하고 들어 가야 한다.

의사결정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따라서 한번 거래를 하면 장기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처음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공급업체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공급업체 변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초기 진출이 쉽지 않다.

## 9. 벨기에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벨기에(Belgium)는 북유럽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으로서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도는 브뤼셀이며, 전체 인구는 1,050만 명이다.

지방정부 각기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나 그중에서도 도시단위로 오랫동안 고난의 역사를 헤쳐왔던 2,666개의 많은 도시공동체는 유럽에서 그 예가 없을 정도로 굳건한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다. 일체의 행정은 6년의 임기를 갖는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市議會)에서 회의를 거쳐 행해진다.

<표 3-69> 벨기에 일반 사항

국 명	벨기에(Belgium)
위 치	북유럽, 프랑스, 화란, 독일, 룩셈부르크와 접경
면 적	30,528 km <sup>2</sup> (유럽의 1/330, 경상남북도 크기)
기 후	해양성, 연평균 기온 : 여름 12-25℃, 겨울 0-10℃
수 도	브뤼셀 / BRUXELLES(불어), BRUSSEL(화란어), BRUSSELS(영어)
인 구	10.5 백만 명
주요 도시	브뤼셀(99만 명), 안트워프(94만 명), 리에주(58만 명), 샤를루와 (42만 명), 겐트(50만 명)
언 어	플란더스 지방 : 화란어 왈로니아 지방 : 불어 브뤼셀 : 불어, 화란어 공용 독일어 공동체 : 독일어
종 교	로만 카톨릭 (75%), 그 외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유대교
독립일	1830년 7월 21일
정부형태	입헌군주국으로서 내각책임제 연방국가 -연방정부 -지방정부(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등 3개 지방정부), -언어공동체(왈로니아- 브뤼셀의 불어공동체, 화란어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로 구성

자료원: KOTRA, 2008.04

벨기에는 또한 유럽 예술의 보고이다. 라틴문화와 게르만 문화가 만난 융합된 벨기에 문화는 15세기부터 유럽의 미술 및 음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많은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여러 세기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던 벨기에 문화는 12~13세기에 출현한 부유한 상업도시와 공업도시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 절정을 이루었다.

벨기에에서는 만화의 인기가 높는데, '스머프'와 '탱탱(Tin Tin)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벨기에는 여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페스티벌로 벵쉬

(Binche) 카니발은 매년 2월 개최되며 16세기 스페인의 축제를 재현한다. 오므강(Ommegang) 페스티벌 또한 매년 7월 브랏셀의 대광장(Grand Place)에서 열리며 역사 야외극 공연이다.

## 나. 경제 개요

벨기에 시장은 전세계 수입 상품이 모여드는 곳으로 테스트 마켓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품의 품질, 가격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다. 특히 내구 소비재(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등 가전제품)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므로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벨기에 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작고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지만 조세율이 높고(조세 부담 율 약 GDP의 44.2%, 2006년) 물가 수준 또한 높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충동적 구매를 피하고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비교, 심사 숙고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는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모든 학교가 2주간 방학) 장난감이나 오락기기 책, 비디오, CD 등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며 소형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장식품 등 성인용 선물용품의 70%는 새해, 크리스마스, 어버이날, 성발렌타인데이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입학 시즌인 9월을 전후로 학생용 문방구, 책가방, 의류 등의 판매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또한 1월에는 동계 바겐세일, 7월에는 하계 바겐세일로 재고품이 판매된다.

벨기에에는 소비자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며 동 연맹은 상품의 품질/가격을 비교할 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도와 위생 면을 심층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를 통해 발표 한다. 동 월간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도 동 소비자 단체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다.

유통 업체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고수키 위해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언론을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된 상품은 정부기관이나 소비자 단체 의 반응이 있기 전에 자율적으로 미리 철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통 업체들은 환경 면과 소비자 안전 및 건강 면에서 세심히 검토한 후 상품을 선정한다.

**<표 3-70> 벨기에 경제 지표**

<b>GDP</b>	3110억 유로(2006), 2389억 유로(2007.1-9)
<b>실질경제성장률</b>	2.7%
<b>1인당 GDP</b>	28,584 유로(2006)
<b>실업률</b>	7.5%
<b>물가상승률</b>	1.8%
<b>화폐단위</b>	EURO (2002년 1월 1일부터)
<b>환율</b>	1 EURO = 1.37미불 (2007년 평균 환율)
<b>외채</b>	37.2억 유로
<b>산업구조</b>	서비스업(67.4%: 상품서비스 54.1%, 비상품 서비스 13.3%) 제조업(17.5%, 전기, 가스, 물 제외), 농업(1.2%), 기타 13.9%
<b>교역규모</b>	수출: 2940 억 유로(2006), 2919 억 유로(2007.1-11) 수입: 2817 억 유로(2006), 2789 억 유로(2007.1-11)
<b>교역품</b>	수출: 화학.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기기, 운송기기 플라스틱, 철강제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수입: 기계, 전기, 전자기기, 화학 및 의약품,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철강제품

자료원: KOTRA, 2008.04

## 다. 한국의 對벨기에 관계

2005년 11월 초 Verhofstadt 총리가 한국 기업의 대 벨기에 투자 유치를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혜택 조치를 설명하고자 방한, 노무현 대통령과 1995년 이후 10년 만에 정상 회담을 갖고 한.벨기에 양국간 실질협력강화 방안, 한.EU 관계 및 한반도 안보와 북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베르호프스타트 총리는 벨기에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양국의 경제규모, 개방적 경제 정책을 감안 할 때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여지가 다대함을 확인하고 각각 동아시아 경제권과 EU 경제권의 중심으로서 상대방 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과 아울러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기업들의 벨기에에 대한 투자확대를 적극 희망 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5년 7월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이어 베르호프스타트 총리의 방한 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개정에 합의했다.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 벨기에는 EU 당국과 입장을 같이하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표 3-71> 한국-벨기에 관계**

<b>체결 협정</b>	사증면제협정('70), 투자보장협정('74), 항공협정('75) 이종과세방지 협정('77), 경제협력 협정('78) 문화협정('78) 해운협정('87) 운전면허 상호승인 교환각서('90) 이종과세 방지협정 보조협약 개정 서명('94) 항공 협정 개정('95), 사회보장협정서명('05.7), 한/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 동맹 투자보장 협정서명('06.12), 형사사법공조조약서명('07.1)
<b>교역규모</b>	우리나라의 수출 25.8억불, 수입 11.8억불(2007)
<b>교역품</b>	우리나라의 수출: 선박, 승용차, 건설중장비, 기타석유화학품, 자동차부품, 아연도강판, 합성수지, 복사기, 봉강, 타이어 등 우리나라의 수입: 기타 정밀 화학 원료, 열연강판, 의약품, 기타석유화학제품, 가축육류, 합성 수지, 중후판, 초콜레 및 코코아제품, 사진영화용재료
<b>교민</b>	약 450명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 겸 EU 대표부 집계, 체류자 포함)

자료원: 벨기에 중앙 은행 2008년 2월, KOTIS; KOTRA 2008.04 재인용

한국이 벨기에에 수출하고 있는 주종 수출 품목은 승용차, 건설 중장비, 자동차부품 및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이다. 건설 중장비와 자동차 부품 및 철강 제품은 순수하게 벨기에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수출이라기 보다는 물론 일부 벨기에 수요를 공급하지만 특히 유럽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두산 인프라코아와 현대 모비스, 대경은 벨기에에 유럽 시장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 센터를 벨기에에 두고 있다.

그 외 VCR, 핸드폰, 라디오카세트, 냉동 냉장고,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소비자 전자제품이 벨기에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나 네덜란드를 통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벨기에 수출로 집계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표 3-72> 한국-벨기에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0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6	2007(1-10월)
<b>對 스페인 수출</b>	2,186	2,081
<b>對 스페인 수입</b>	939	984

자료원: KOTIS; KOTRA 2008.04 재인용

한국기업의 벨기에 투자는 뚜렷한 증감추세 없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1980년 이후 2007년 9월까지 대 벨기에 누적 투자 규모는 신고 45건 144 백만 불, 실행 43건 144백만 불에 지나지 않는다. 2007년 3/4분기 중 한국의 대 벨기에 투자는 3건으로 금액으로는 211 천불이다.

대표적 투자기업은 Mons 소재 두산 중공업이며 합병 이전 대우 중공업이 12.2 백만 불 (91년)을

투자하여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를 생산, 유럽 전역에 판매 중이다.

한진해운은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일본 케이라인(K-line), 대만 양밍라인(Yang Ming Line)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투자규모는 1,784 천불이다.

그 외 현지진출 기업으로는 일진(공업용 다이아몬드), 현대상선(화물운송), 현대 모비스 (자동차부품), 기아(자동차), LG전자(전자), 대경(철강), 농협(유통), 범양상선(해운), 아시 아나(항공), 대한항공(항공), 한진해운(항만터미널) 등 이다.

**<표 3-73> 우리나라의 對벨기에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No.	회사명	투자연도	투자내역	투자금액
1	두산 인프라코어 유럽	1990	제조업 (굴삭기, 지게차)	50,920
2	현대중공업	1992	도소매업 (건설중장비)	27,448
3	현대모비스유럽부품센터	1997	운수창고업 (자동차부품)	20,542
4	LG전자	1997	도소매업 (가전제품)	2,291
5	대경(DKC)	2003	도소매업 (철강)	414
6	일진유럽	1994	도소매업 (공업용 다이아몬드)	250

자료원: KOTRA 2005/2006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KOTRA 2008.04 재인용

**<표 3-74> 우리나라의 對벨기에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1-3분기)	누계
건수	0	3	2	3	8
금액	0	3,104	1,230	1,578	5,912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2;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벨기에 정부는 국제 교역을 증진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정책 기조 하에서 벨기에 정부는 일찍이 외국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고 대부분의 투자지원조치가 지방정부의 관할분야가 되면서부터 각 지방정부는 서로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고 내외국인간에 정책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농업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국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인세 등의 면제조항
- 투자액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 명목 법인세율을 39%에서 33%로 인하
- 가상이자 공제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
- 손상이연제도(Advanced tax agreement)
- 개별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유인 조치 제공 등이다.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한 벨기에 기업의 태도는 중립적이나 국내외기업을 막론하고 고용을 증가하며 환경 친화적 신기술을 보유하고 향후 사업전망이 좋은 투자진출업체를 환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외국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차별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도 고용 유지 내지는 증진에 관심을 집중하고 기업의 국적보다는 노동조건 등 대우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벨기에 기업을 인수할 경우 벨기에의 노동관행 등에 대해 서 조언을 받고 이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 투자유치관련법규

1992.6.25일 신 경제 진흥법에 의거 고용인 250명 이하, 매출액 2천만 유로 이하의 중기업 과 소기업에게도 지원대상을 확대,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원 방법 도 투자계획의 재원출처방법에 구별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한편, 고용창출과 환경 및 재사용 등 에너지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국가체제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분권화 되면서부터 재정과 연계되는 투자유치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투자 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나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투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투자액에 따라 각 지방정부 경제부 처장 또는 지방정부 수상에 의해 결정 된다. 약 14만불 미만의 투자는 경제부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25만 불 이상의 투자는 지방정부 수상의 허가를 받는다.

### 나) 투자우대조치

세제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대제도가 전국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특정 개발 지역이나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우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벨기에 경제부흥에 기여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도 전국에 걸쳐서 우대혜택을 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소매업 이나 호텔업도 포함된다. 투자자의 국적이나 사업유형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직접적으로 신

규설비, 확장, 전환, 현대화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국가 이익과 부합해야 한다.

## 다) 투자 인센티브

### 1)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즉, 대기업의 경우 투자 대상은 환경분야이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보조 또는 무이자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규 환경규정에의 적응을 위한 기존시설 대체투자의 경우 투자비용의 12% 지원,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 지원, 환경규정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개선 투자 시에는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의뢰 비용의 50% 지원되며 적용대상은 오염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지역 정화, 환경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종업원 250명 미만, 대기업지분참여율 25% 이하, 총 매출액 최고 20백만 유로 또는 총 대차대조차액 10백만 유로)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지원(보조금 부여 후 6개월 후부터 최대 3회 분할 상환 조건)의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신규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자산 매입 등이다.

무이자 대출 시 지원규모는 매년 최고 625,000 유로에 해당되는 투자 계획 시 승인 투자액의 50% 무이자 용자가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마케팅, 품질검사, 산업구조, 판매화, 환경재선, 기술 및 경영 관리 등의 향상을 위한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신기술 적용, 지적소유권보호, 신규희망 분야 개발 등을 위한 연수이다. 환경투자 시 투자성격에 따라 투자액의 12-15%가 지원된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관할 지방 내 낙후 개발 지역을 정하고 낙후 지역 별로 투자 보조금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플란더스 지방의 LIMBURG 주 투자 시 21%까지 누적지원이 가능하고 왈로니아 지방의 Hainaut 주는 EU가 지정한 낙후지역으로 최대 4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각 지방 정부에서는 자기 지방 투자기업에게 Capital Premium, Cash Grant, Interest Rebate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 외 DISTRIBUTION CENTER, SERVICE CENTERS, 신규 투자 등에 특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 2) 유통센터에 대한 특혜

유통센터(벨기에 법인이던 외국 법인의 BRANCH던 상관없다)에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혜택 기간은 5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DISTRIBUTION CENTER는 최소 고용인 수나 매출액,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제조건이 없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무 당국은 세제 혜택 대상 유통 활동 리스트를 발표한다. 리스트에 없는 활동을 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세무 당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가함).

단, 재판매(resale)용으로 구입한 완제품의 제품 성격을 향상하거나 변경하는 활동과 순수한 포장 활동(완제품 포장이나 벌크로 들여 온 상품을 재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은 유통 센터의 활동으로 인

정하지 않는다.

### 3)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특혜(Notional interests)

벨기에 정부는 투자 유치의 주요 무기로서 2007년부터 자기자본을 자사에 투자할 때 Notional interests라 일컫는 세계에서 유일한 혜택을 도입했다. Notional Interests란 자사에 투자한 자기자본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더라면 은행에 지급해야 할 대출 이자(가상적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동 제도는 기업의 자기자본 투자를 장려기 위한 제도다.

#### 라) 투자타당성 조사

벨기에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기업들은 유럽시장 진출 거점으로 벨기에를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지리적으로 유럽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로, 항구, 항공 통신 등의 인프라가 발달되었다.

- 고속도로: 1,802 km / 국도(아스팔트): 14,252 km

- 고속철도가 브뤼셀-런던, 암스텔담, 파리, 쾰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 브뤼셀 자브렘(Zaventem) 국제공항의 화물 취급 능력은 연간 50만톤에 달하고 자브렘 공항 이외에도 Bierseet, Charleroi, Antwerp, Oostende 공항이 있고 브뤼셀에서 프랑스 북부 Lille, 파리(Charle De Gaule), 암스텔담(Schipol) 공항까지 3시간 내 닿을 수 있다.

- 주요 항구로는 유럽 2위 항구인 Antwerp(연간 210 백만 톤의 화물과 15,000 대의 선박을 취급)항구를 비롯하여 Zeebrugge, Gent, Oostende, Brussels, Liège 등 해운 화물 항구가 있다. 또한 내수로(1,532km)를 통해 유럽 주요 항구와 연결된다.

○ 다국 언어를 구사하는 고급 인력이 풍부, 전통적인 공업국으로 다분야에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본부가 위치하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 정책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공해가 비교적 적고 레저 인프라 구조가 발달하여 생활의 질이 높다.

이 같은 장점을 감안할 때 유통, 서비스 센터, R&D 센터 등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전반적인 투자 환경 이외에도 투자 전에 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타당성 사전 조사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수한 정보를 이중 체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전통적 경영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현지 기존 투자 기업으로부터 현지 영업 경험담 및 조언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마) 투자제한 및 금지분야

##### 1) 투자 제한

벨기에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며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간 차별대우제도가 없으며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영업 활동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한도액, 투자비율, 지분소유, 투자분야 등의 제한이 없다.

또한, 벨기에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ONSS)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사회보장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근래 검사가 강화되었다.

## 2) 투자 금지

벨기에에는 보험이나 은행, 리스, 운송, 의약품, 식품과 같은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법도 투자 금지가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보호,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조건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상관 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즉, 내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금지 조치는 없고 외국인 투자의 금지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사회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천연자원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업은 우선 공장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므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내국기업도 마찬가지다.

## 2) 투자 진출 형태

은행, 운송, 보험, 식품 제조 및 판매, 유통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 없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히 정해진 회사설립 신청서와 정관서는 없다.

외국 법인은 현지 진출 목적에 따라 현지에 연락 사무소나 지점 또는 현지 법인 등 회사 형태를 선정할 수 있다. 현지에서 직접 제조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 업체 들은 대부분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형태를 택하고 있다.

### 가)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non-commercial branch를 의미하며 특별한 설치 신청서는 없고 하기 구비서류를 벨기에 경제부내 공증담당부서에 제출, 공증을 받으면 된다. 연락 사무소 형태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 구비서류

- 본사정관(주한 벨기에 영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현지사무소 결정 이사회 회의기록 발췌서와 현지 법정 대리 책임자 임명서
- 본사 최근 연차회계보고서 사본
  - 참고) 한국어 서류는 벨기에 법정 번역사에 의해 붙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비용: 10 유로(1건 당)
- 소요 기간: 1-2일
- 신청 및 발급처
- SERVICE DE LEGALISATION
- 전화 : 32-(0)2 501 89 00
- 팩스 : 32-(0)2 501 37 90
- 이메일 : legalisation.ae@diplobel.fed.be

## 나) 지사개설

벨기에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무소나 지점의 책임자가 될 사람을 파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서류들이다. 그러나 벨기에 국적의 현지 거주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일단 VISA, 체류허가, 근로허가를 발급을 필요가 없다.

한국 국적 소유자를 벨기에 파견,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은 벨기에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 체류허가, 노동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와 외국인 카드 (노동허가)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신청하여 획득해야 한다.

### 1) 사전준비단계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임시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주한 벨기에 대사관이 지명한 의사에 의해 신청자의 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와 신원증명서(최근 5년간 위법사실이 없다 증명되어야 한다)가 곁들여 제출되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 직업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직업 신청서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직업카드 신청서에는 한국본사의 회사명, 법인형태, 주종 활동분야 등 법인에 관한 정보와 신청자의 직위, 지사의 법인형태, 활동분야, 생산 또는 판매 제품 등 설치할 지사의 성격에 대한 정보 기재 난이 있는데 동 기재 난을 명료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본사의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번호, 회계(대차대조표), 부가가치세 번호, 회사와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물, 운영현황 등 건실한 회사임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벨기에 지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요건으로 요구 될 수도 있다.

## 2) 사전 조사해 두면 좋은 것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접수한 외국인 직업카드 신청서와 함께 임시체류허가와 건강진단서를 동봉하여 벨기에 외무부에 발송한다. 외무부는 서류 검토 후 외국인 근로카드 발부부서 (중소 기업 및 농산부 소속부서)와 외국인 사무국( l'Office des Etrangers, 내무부 소속의 부서로서 외국인 신원 조사 부서임)에 발송한다. 외국인 근로카드 담당부서는 외국인 사무국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와의 면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신청자는 면담에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도 있으나 직접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 부서는 신청자에게 면담 일, 시간, 장소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외국인 직업카드 발급 소요 기간은 3-5개월 정도 인데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을 통해 신속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임시허가체류는 벨기에 내무부의 외국인 사무국 소관으로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동 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임시 체류 허가증을 발급한다.

## 3) 체류증 취득

벨기에에 입국 후 일주일 내에 임시체류허가증과 직업카드를 가지고 거주지 구청에 가서 거주등록을 하고 거주등록이 되면 체류증이 발급된다. 체류증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빨리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사무실 확보

지점설립 작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하는 것이 사무실 확보 작업이다, 직업 카드 신청서에 벨기에 사무실 주소 기재 난(사무실 주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예정지로 대체할 수 있다)이 있고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임시 체류 허가신청 시 정해진 주소가 있으면 절차가 빠를 뿐 아니라 사무실 설립등기나 공적인 신고, 은행구좌 개설, 직원 채용을 비롯하여 지점개설행정에 사무실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5) 거주지 확보

현지 사무실 설치에 서두러야 할 작업 중 하나가 생활거주지 확보이다. 현지 지점의 대표로 취임하여 거주 증을 교부 받으려면 현지에 거주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야 이삿짐도 빨리 인수 받을 수 있고, 전화, 은행구좌개설, 자녀의 학교등록 등 정착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벨기에에서는 사무실 임대 여건과 주택 임대 여건이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수월한 편이다. 임대 주택을 찾는 방법은 주거를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주위를 직접 다니면서 찾거나 (아파트나 주택건물 앞에 임대광고를 붙임) 또는 신문광고 또는 복덕방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복덕방을 통해 구하는 것이 편하다.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와는 달리 복덕방을 통해 구할 경우에 임차인이 복덕방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한다.

## 다) 법인 설립

벨기에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인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Company Limited by share(S.A/N.V),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S.P.R.L. /B.V.B.A.), Co-operative company,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등 이다.

벨기에에서 영업활동을 목적하는 외국인 기업은 벨기에 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 법인 자회사 (a subsidiary incorporated under Belgian law)나 또는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지점(a branch incorporated under the law of a foreign country)을 택할 수 있다.

#### 1) 현지법인 자회사(subsidiary) 설립

벨기에 법 하에 설립된 자회사는 벨기에 법인으로 모회사와 법적으로 다른 조직이다. 이 같은 자회사는 모회사와 분리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책임한계는 자회사 고유자산 범위 내이며 따라서 주주의 개인적 책임도 자회사 자본에 불입된 금액한도에 그친다.

유한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형태의 현지 자회사는 적어도 2인의 이사 (director)로 구성된 이사회(a board of directors)에 의해 경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벨기에 자회사 이사의 국적과 거주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국국적의 이사일 수도 있다. 자회사는 회사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지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경영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벨기에 법인 자회사는 벨기에 법에 의거한 회계방식을 택해 야 하고 연차 회계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 □ 설립절차

- 은행구좌 개설
- 구좌에 자금 적립
- 은행 또는 회계사 발급 증명서
- 설립 공증
- 상법 등록
- 관보 공표
- 사업자등록 번호 획득/부가가치세 등록번호획득

- 사업자등록은 경제부 소속 Cellule 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에서 하며 동 기관에서 일단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등록을 따로 가서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 세무국에 등록 된다.

○ 유한주식회사(현지에서는 S.A 또는 N.V라고 함)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인의 공증서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며 더불어 설립 2 년간 동안의 사전 재정계획 (preliminary financial plan for 2-year periode)이 첨부되어야 한다. 회사 정관과 이사(director) 및 회계감사(auditor)지명에 관한 모든 서류는 상업 재판소에 기재되어야 하고 15일 내로 벨기에 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자회사가 거주할 지역의 언어에 따라 불어 또는 네덜란 드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설립비용

- 공증 비용: 설립 자본금에 반비례하며 금액이 클수록 비율은 낮아짐
- 등록세(registration tax): 불입자본의 0.5%
- 관보(Official Gazette)공표 비용: 페이지당 약 202 유로)
- 사업자 등록비(registration fee at the Registry of Commerce): 70유로
- 번역비: 줄당 약 1.5 유로

□ 설립자본(Share capital)

○ 최소 주식 자본금인 61,500 유로이며 주식 자본금은 완전 불입되고 완전 지급되어야 한다. 주식 자본은 물품으로 불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인 회계사의 가치 평가 보고 서가 동반 되어야 한다.

○ 최소 주주 수: 2인(주주는 개인일 수도 있으며 법인일 수도 있다. 또한 주주의 국적은 벨기에 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약 3주 소요

□ 회사 설립 신청 및 서류 제출 장소

벨기에 정부는 최근 회사설립 및 사후 행정을 간료화 하기 위해 일명 기업창구(Business one stop shops)를 신설했다. 동 창구에서는 법인 창설 관련 모든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기업창구 관련 정보와 기업창구 리스트는 벨기에 경제부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 관련 부서(경제부 중소기업 일반 정책부)
  - SPF ECONOMIE, P.M.E, CLASSES MOYENNES ET ENERGIE
  - Cellule 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
  - 44, rue de Louvain , 1000 Bruxelles
- 전화 : 32-(0)2 548 6400
- 이메일 : info.bce@mineco.fgov.be
- 웹사이트 : www.mineco.fgov.be

## 라) 투자 방식

투자 방식에는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 합자, 인수 및 합병 등이 있다. 우리 기업의 대다수는 단독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벨기에 파트너 선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현재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독자 투자보다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 하는 것이 적당하다.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긴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합작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 파트너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사항은 어떤 기업을 투자 파트너로 선택하는가 문제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현지 시장을 잘 알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알려져 있다.

□ 합작 투자 계약 양식

○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서는 없으나 대부분 다음 같은 항목이 기재된다.

- 정의
- 목적
- 합작 투자 회사 설립
- 자본금 출자
- 발기인
- 주식의 양도
- 신주 인수권
- 주주총회
- 이사회
-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 전략
- 회계 및 회계감사
- 기술 라이선스 및 상표 사용 승인
- 계약 기간
- 계약의 종료
- 계약 종료의 효과
- 권리의 불 포기
- 독립성
- 불가항력
- 상호 대리의 배제
- 중재
- 계약 양도

- 비용 부담
- 합작 투자회사의 계약
- 계약의 이행
- 이행 강제 비용 감독
- 준거 언어
- 계약 발효 일자
- 완전 계약 조항 등이다.

다. 구비 서류

- 기업 정보 (업체 명, 설립 년도, 업종, 종업원수, 매출액 등)
- 기업 현황 및 기술 보유 상황
- 투자 성격 및 목적
- 투자 규모 (예상 투자액, 고용 인원 수 등)
- 현지 투자 기업 형태 (현지법인, 또는 외국인 법인 등)
- 재원 조달 계획서(FINANCIAL PLAN)등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벨기에에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3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업무 분야도 연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 가) 연방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중 조세 분야(세제 혜택 등)와 입국(비자, 거주, 노동허가 등 포함) 관련 행정은 연방정부에 귀속된다.

- 경제 협력부(ACCORDS ECONOMIQUES, 경제부소속)내 외국인 투자부(service Investissements Etrangers)

- 주소: Rue du Progres 50, 1210 BRUXELLES
- 전화: 32-2-277 78 08
- 팩스: 32-2-277 53 06

- 경제부 소속 경제 협력부(ACCORDS ECONOMIQUES)의 외국인 투자부는 지방정부 외국인 투

자부를 연결하는 일종의 Coordination task로서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보
- 회사설립관련정보, 투자지원제도 등 전반적인 투자정보 제공
- 외국인투자관련 입국수속, 노동허가, 체류 증 관련 행정문제 지원
- 재무부소속 투자 세제지원부(Cellule d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 1997년 벨기에 연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벨기에 조세제도와 세제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실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키 위해 재무부내에 외국인 투자지원부를 설치했다.
  - Cellule de Fiscalité des Investissements
  - 주소: rue de Louvain 38, 1000 Bruxelles
  - 전화: 32-2-233 82 64
  - 팩스: 32-2-233 82 70

#### 나) 지방정부의 권한 및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

각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계획, 수행하고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왈로니아지방 정부(불어계)
  - OFFICE FOR FOREIGN INVESTORS (OFI)
  - 주소: Place de la Wallonie 1, 5100 NAMUR
  - 전화: 32-81-33 37 93 / 팩스: 32-81-30 64 00
  - 인터넷 사이트: [www.awex.be](http://www.awex.be)
- 플란더스지방정부 (화란어계)
  - FLANDERS INVESTMENT and Trade(F.I.T.)
  - 주소: Gaucheretstraat 90, 1030 BRUSSELS
  - 전화: 32-2-504 88 71 / 팩스: 32-2-504 88 70
  - 인터넷 사이트: [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http://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
- 브뤼셀 지방정부

- DEPARTMENT OF FOREIGN INVESTMENT
- 주소: RUE CHAMPS MARS 25, 1050 BRUXELLES
- 전화: 32-2-513 97 00 / 팩스: 32-2-511 52 55
- 인터넷 사이트: [www.inverstinbrussels.com](http://www.inverstinbrussels.com)
-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사업
  - 홍보물 발행 및 배포
  - 투자유치세미나 개최
  - 외국인 투자사절단, 외국인투자자 개별적 지원
  - 투자관련 정보제공, 공업지대물색, 사업파트너물색
  - 투자관련 행정절차 지원 등

#### 4) 투자입지여건

##### 가) 벨기에의 과학연구단지

###### 1) 특징

- 세 지방 정부 별로 구분되어 조직 및 운영
  - 왈로니아지방(불어권), 플란더스지방(네덜란드어권), 브뤼셀지방으로 분리형성, 운영되고 있다.
  - 플란더스 지방: 역사가 깊고 또 개별 단지별로도 활발하게 운영
  - 왈로니아 지방: 상대적으로 낙후. 최근 과학연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연구단지 협회를 구성, 활성화를 도모 중이다

###### ○ 대학 주도의 연구단지

- 각 연구단지가 특정 대학을 끼고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 근처에 입지하는 등, 대학의 영향력이 매우 큼.

###### 2) 플란더스 지방

- 핀란드,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R&D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 과학 단지
  - Haasrode Research Park (일명 Science Park of Leuven)

- 루뱅 카톨릭대학과 IMEC (세계유수 R&D 연구소)을 중심으로 발달
  - 루뱅 지역에 소재한, 규모 16 Ha의 연구단지
  - 주요 연구 분야 : ICT, 생명공학, 신소재
  - Waterfront Research Park
    - Niel (안트워프와 브뤼셀 사이에 위치) 소재 40 Ha 규모
    - 사실상 안트워프 대학을 통해 탄생된 기업들을 위한 단지로 운영되고 있다
    - 1단계: 안트워프 대학의 Antwerp Innovation Center (AIC: 일종의 기술지원센터) 을 통해 창업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 2단계: 안트워프 대학의 The University Business Center Antwerp (UBCA: 일종의 창업 지원 센터)을 통해 창업 및 비즈니스를 지원 받음
      - 3단계: 동 연구단지에 소재지를 설치, 영업
    - 주요 연구 분야 : 하이텍 산업
  - Science Park of Ghent University
    - 겐트대학, 플란디스 생명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 (겐트소재)
    - 주요 연구 분야 : 생명공학, ICT
  - The Limburg Science Park
    - 림부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1989년 설립
    - 주요 연구 분야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신소재 연구
  - The Kortrijk Research Park
    - 루벵카톨릭 대학의 코르트레이크 캠퍼스와 Kortrijk Incubation and Innovation (IICK)를 중심으로 형성
    - 주요 연구 분야 : 혁신 기술
  - The Brussels Research Park
    - 브뤼셀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단지로 20 Ha 규모
- 3) 왈로니아 지방
- 2001년 설립된 '왈로니아 과학연구단지 협회'를 통해 활성화 추진 중

○ 왈로니아 과학연구단지협회 (SpoW: Science Parks of Wallonia)

– 설립경위: Louvain-la Neuve 연구단지 주도로 2001년 결성

– 설립목적

- 과학연구단지 개념 정립 및 활동 촉진
- 이해관계자 (산, 학, 연)간 네트워킹 강화
- 왈로니아 지방 R&D 활동 촉진

□ 주요 과학연구단지

○ Aeropole Charleroi

– 설립일 : 1991

– 면적 : 126 Ha

– 입주현황 : 97개사, 3 R&D센터, 1 대학센터, 3 BIC

– 주요 부문 : 항공, 그래픽, IT, 바이오텍

○ Crelys Gembloux

– 설립일 : 1996

– 면적 : 25 Ha

– 입주현황 : 38개사, 2 R&D센터, 1 BIC, 1 인큐베이터

– 주요 부문 : IT, 생명공학

○ Louvain-la-Neuve Science Park

– 설립일 : 1971

– 면적 : 231 Ha

– 입주현황 : 116개사, 1 대학

– 주요 부문 : 생명공학, 화학, IT

○ Liege Science Park

– 설립일 : 1981

– 면적 : 50 Ha

- 입주현황 : 62개사, 1 BIC, 1 대학, 2 전문인큐베이터(우주 및 바이오텍)

- 주요 부문 : 바이오 산업, 우주, 컴퓨터공학, 전자, 엔지니어링

○ Qualitis Enghien

- 설립일 : 2002

- 면적 : 25 Ha

- 주요 부문 : ICT, 첨단기술

#### 4) 브뤼셀 지방

브뤼셀 지방 개발청 (Brussels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과학연구 단지를 관할하고 있다 (규모 : 150 Ha)

○ De vinci Park

- 1974년 설립된 최초의 브뤼셀 과학연구단지

- 순수한 산학 과학연구단지보다는 첨단기술 기업들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분야 :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자, 마이크로 전자 등 IT 산업

○ Erasmus Science Park

- 브뤼셀자유대학 및 부설 Hopital Erasme 병원에 의해 운영되는 부지 16 Ha의 과학 연구단지

- 주요 연구 분야 : 의학, 제약, 생명 공학

○ Erasmus Technology Center

- 일종의 인큐베이터 빌딩으로, 순수한 기술개발보다는 기업 경영과 기술적 조언이 주업무이다

- 주요 연구 분야 : 의학, 생명공학

○ Vesalius Science Park

- UCL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 주요 연구분야 : 생명공학, 제약

#### 바. 주요 산업단지 리스트

□ AERPOLE (ZONING INDUSTRIEL) 6000 CHARLEROI

○ 공단연락처 : IGRETEC

○ 주 소 : 1, BOULEVARD MAYENCE, 6000 CHARLEROI, Belgium

○ 전 화 : 32)71-20 28 11

○ 팩 스 : 32)71-33 42 36

○ 인터넷 사이트: <http://www.igretec.com>

○ 이메일 : [info@igretec.com](mailto:info@igretec.com)

□ HAUTS-SAERTS SPI BUSINESS PARK

○ 공단연락처: SPI+(LIEGE도 경제개발공사)

○ 주 소 : 11 Rue du Vertbois, 4000 LIEGE, Belgium

○ 전화 : 32-4-230 11 11

○ 팩스 : 32-4-230 11 20

○ 인터넷사이트 : <http://www.spi.be>

○ 이메일 : [info@spi.be](mailto:info@spi.be)

□ SENEFFE-MANAGE INDUSTRIAL PARK

○ 공단연락처 : IDEA

○ 주 소 : RUE DE NIMY 53, 7000 MONS (BELGIQUE)

○ 전 화 : 32-65-37 57 11

○ 팩 스 : 32-65-37 69 54

○ 인터넷사이트 : <http://www.idea.be>

○ 이메일 : [direction@idea.be](mailto:direction@idea.be)

□ GEEL-PUNT INDUSTRIAL PARK GEEL-PUNT

○ 공단연락처 : GOM ANTWERPEN

○ 주 소 : LANGE LOZANASTRAAT 223, BUS 4 53 2018 ANTWERPEN (BELGIUM)

○ 전 화 : 32-3-240 68 00

○ 팩 스 : 32-3-240 68 68

○ 인터넷사이트 : <http://www.gomantwerpen.be>

○ 이메일 : gom@gomantwerpen.be

## 5) 노무관리

### 가) 고용

벨기에에서는 특별한 법적 고용 절차는 없고 광고, 정부구직기관, 민간구직업체, 또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 학교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 단, 근로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문서화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문서화할 경우 계약서 언어는 고용지역의 공식언어에 따라 불어 또는 화란어로 되어야 한다 (단, 브뤼셀은 불어와 화란어가 공용되는 지역이므로 이 경우 피고용인의 언어, 즉, 불어 또는 화란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기한 고용이나 파트타임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업무성격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벨기에에서는 무기한 고용 계약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업무일 경우 한정된 고용 기간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기한이 한정된 고용 계약을 2년간 4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에는 'trial period'를 명시할 수 있고 동 기간은 노동직의 경우 최소 7일 최대 14일이며 사무직의 경우에는 최소 1달 최대 6 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인력

벨기에 총 인구는 약 천만 명인데 활동인구(16-65세)는 6.8백만 명으로 총인구의 67%이나 실질 고용인구는 4.7백만 명이다. 고용인구 중 약 17.2%는 상업(소. 도매) 및 통신, 13.6%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금융, 부동산, 기업서비스는 10.6%, 공무원과 국방, 병원 등 비 상품 서비스는 28.1%, 실업률은 8.2% 상위를 맴돌고 있다.

실업자의 대부분은 학력이 낮고 전문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젊은 층과 나이가 50세 이상의 노년 인구 층이므로 실제로 고학력 소유자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 노동력은 풍부하지 못하다. 특히 공업이 발달한 플란더스 지방 당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최근 외국(기존 이민 자)근로자 유치를 위해 이들에 대한 대우 개선을 권유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임금 수준이 높고 실업수당도 높아 실업수당보다 약간 높은 봉급을 제안할 경우 일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분야의 현지 투자는 적당치 않다.

벨기에에는 공식 언어인 불어와 네덜란드어는 물론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등 보통 3-4개국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외국인 기업이나 기관 들은 브뤼셀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요 이유로 이점을 꼽고 있다.

### 다) 임금

벨기에의 임금 수준은 EU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4위로 높은 수준이다. 벨기에의 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연계되어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 봉급(gross) 이외에 종업원 봉급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 고용 비는 훨씬 높아진다.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률은 해마다 다소 변화되며 현재 사무직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세율은 사무직 봉급(gross)의 32.34%다.

일반적으로 평일의 초과 근무 수당은 임금의 5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수당은 100% 이나 이 경우에도 협약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 한 피고용자에 대해 월 급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연말에 (13개월 분 월 급여) 지급한다. 최대 법정 근무 시간은 주당 5일, 37.5시간이다. 초과 근무는 법규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으며 일정한 상황에서만 특별히 허용된다. 근무 시간은 노동력의 재분배와 작업장의 효율 적인 사용을 위하여 융통적인 근로 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최대 7시간 36분 또는 주간 37.5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루에 최대 11시간 1주에 50시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근무 시간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2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단, 그에 대한 보상 휴가가 있다. 야간 근무 시간은 오후 2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호텔, 이벤트 관리 기업, 병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예외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의 근무는 금지되어 있다. 추가 근무 시 법정 수당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 라)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의 고용은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자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이 최대의 현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취업 허용을 뜻하는 이민 문제에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기술자나 집행 간부급 인력이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 는 정상적 사유가 입증될 경우 예는 당국의 이민 허가를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 마)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 1) 현지인 사회보장

벨기에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보장의 범위는 직업인에 대한 의료, 실업, 노후(연금), 산재 및 직업병이며 가족수당과 의료 보험 등으로 직업인의 가족까지 확대된다. 실업 및 의료 보장기금은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기 할당된 몫을 지불한다.

사회보장 기금 지불은 의무화되어 있다. 근로자의 사회보장 기금의 부담액은 총 급여(gross salary) 의 13.07%이며 고용주의 부담액은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38.44%,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32.34%이다.

고용주는 고용인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총액을 사회보장국(Government Social Security Agency)에 분기마다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지불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법적 구속을 받는다.

## 2)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EU역외 국적의 비 거주인(non-EU-residents)이 벨기에에서 근무할 경우 동인 국가와 벨기에와의 협정 여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인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적용되어 벨기에 사회 보장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예를 들어 외국인 법인의 현지 지사 책임자로 파견 근무할 경우)

한국 국적인의 경우에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미 체결로(현재 협상 중)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상사의 임시 파견직원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벨기에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단, 주재 상사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거주 교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2005년 벨기에와 한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서명한 바 현재 벨기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중이다)

## 6) 조세제도

### 가) 개요

벨기에 조세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재무 부와 세무당국은 조세법을 수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으나 실제로 재무부의 조세법에 대한 해석이 조세 수행에 중요하다. 한편,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최고법원의 판례도 중요하다.

한편, 벨기에의 조세 행정은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조세구조는 연방세, 주세, 지방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연방세가 총 조세의 거의 90%를 점하고 있고 주요 세금은 주로 부동산세이며 부동산 과세기준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지방세는 오세물 등 환경세가 주류를 이룬다.

소득세는 'Code des impots sur les Revenus/Wetboek der conkomsten-belastingen'에 조정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소득세를 관장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 'Administration des Directes/Administratie des Directe Belastingen'와 여러 개의 지방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연방세

비중이 가장 큰 세는 연방세(또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이며 그 외 재산,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조세로서 부가가치세(VAT), 관세 및 입시세, 등록세 및 인지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이 있고 또한 재산세로서는 부동산세와 동산세(배당, 이자 및 로열티 등)가 있다.

한편,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고 직접세의 대표적인 것은 법인소득세와 개인 소득세이고 간접세의 대표적인 것은 부가가치세와 물품세(accise) 및 상속세인데 직. 간접세의 세입비중은 직접세가 55%, 간접세가 43% 그 외 기타 2%의 비율로 구성된다.

법인 소득세는 내국 법인에 대해서 벨기에 내외의 전체소득을, 그리고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벨기에 내의 소득 및 국외의 특정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33%이다. (지난 97년 경제부흥세 3%를 추가, 실제적으로는 33.99%)

개인 소득은 근로 소득, 부동산 소득, 동산 소득, 기타 상속 등이 있으며 세율은 소득에 따라

25-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 조세 원칙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단일 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원천 징수의 방식으로 사전 납부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벨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부과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인 기업에게도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반드시 원천 징수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보장 기관인ONSS(Office Nationale de Sécurité Sociale)에 납부함과 동시에 고용주는 종업원의 봉급(gross salary)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연방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접세 중 가장 중요한 세는 부가가치세로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과세된다.

벨기에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1%인데, 예외적으로 수돗물, 약, 꽃(꽃집에서 파는 꽃), 불구자용품, 병원치료, 장례 서비스, 호텔 투숙, 오물 제거, 문화, 교통 서비스에는 6%가 트랙터 용 타이어, 사회복지, 서민주택건설과 주택실내장식, 자전거, 구두, 옷 수선 등에는 12%가 신문, 잡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물품세(accise)는 담배, 주류, 휘발유, 석유, 등유, 미네랄워터, 맥주 등에 부과된다.

## 다) 법인세

### 1) 법인세

벨기에의 법인 소득세는 벨기에에서 발생된 소득뿐 아니라 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에도 적용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점을 포함하여 벨기에 거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벨기에 거주기업의 활동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부과된다.

#### □ 법인세율

○ 벨기에 명목 법인세율(nominal ordinary tax rate)은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을 차별 하지 않고 모두 33%인데 현재 경제부흥세(97년 경제 불황 때 모든 세의 세율에 3% 추가)가 추가되어 33.99%다.

○ 단, 과세 대상 수익이(taxable profit) 332,5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명목 법인세율은 24.25%이나 현재 경제부흥세 3%가 추가되어 24.98%다.

### 2) 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경제적 예상 수명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첫 구매가격을 기준한다.

일반적으로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이나 declining depreciation method가 통용된다.

Declining depreciation 방법은 연간 감가상각액이 정액법으로 산정된 감가상각액과 동일 하거나 낮을 때까지 사용되고 그 후부터는 정액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부수비용(ancillary costs)은 납세자가 구입 년도 동안에 지출로서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3) 기업간 배당금(Intercorporated dividends)

벨기에에 설립된 업체에 돌아가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는 벨기에에 거주 회사와 비 거주 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이 경우 주식 배당액의 95%가 수익 소득(수익소득이 있을 경우)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로 과세대상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벨기에에 설립된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을 경우(loss position)에도 배당금은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3년부터는 최소한의 주식 보유와 납세 시험(minimum participation test and taxation test)을 만족할 때에만 배당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보유 기간 (holding period condition)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배당금 면제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한 5% 또는 1.25백만 유로의 주식 참가가 요구되는 한편, 면제 자격의 배당금은 벨기에 법인세 납세회사로부터 또는 그와 유사한 외국 법인세 납세 대상의 비 거주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배당금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세제가 전반적으로 벨기에 세제보다 유리한 국가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
- 소재 국가에서 예외적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지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
- 투자업체로부터 오는 배당금
- 외국 소재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으로서 그 회사가 분배하는 소득 자체가 면제대상이 아닌 배당금

### 4) 원천과세(Withholding taxes)

####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율

벨기에 주식회사는 벨기에 거주 주주와 비 거주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할 때 배당금의 25.75%를 원천과세로 보류한다. 대부분의 세제 협정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15%까지 또는 자회사와 모회사간(주식 보유율이 적어도 25%) 경우에는 5%까지 감축될 수 있다. 1991년 10월 14일 법령에 의거 벨기에를 포함한 EU 회원국 에 소재 한 모회사에 분배 하는 배당금에도 원천과세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정 조건 하에 원천과세는 전면 면세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 모회사는 동 법령에서 명시하는 면세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선언서를 벨기에 자회사에 발급해야 한다.

#### 자본 소득 및 손해(Capital gains and losses)

벨기에 거주회사가 벨기에나 외국회사의 보유주식에서 얻은 자본 소득은 법인 소득세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단, 해당 주식배당금이 배당금 면제 자격을 갖출 때의 경우에 한함). 자본 소득을 얻기 위한 주식 참여의 경우 배당금 면제 자격에 최소 참여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회계에 기재된 주식으

로부터 자본소득이 실현되지 않을 때에도 실현 되지 않은 자본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그 자본 소득이 회계장부에서 (RESERVE ACCOUNT) 분리되고 배당금 분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해당 주식으로부터 자본 소득이 있을 때까지 실현 되지 않은 자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외 여타 자본소득은 일반 세율의 과세 대상이다. 주식매각 총액이 3년 내에 감가상각 이 되는 고정자산 구매에 사용될 경우 주식매각으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구매한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걸쳐 나눌 수 있다.

#### □ 그 외 세제 혜택

소득을 발생키 위해 또는 소득을 고수키 위해 일어난 모든 지출은 특별 사항이 없는 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R & D 요원 증원, 투자 등 여러 종류의 세제 혜택이 있다. 벨기에 실질 세율(Effective Tax Rate)은 여타 OECD회원국의 평균 ETR 수준이다.

##### ○ 가상이자 공제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

- 기업의 차입 자금에 대한 이자는 세제상 비용 처리가 되지만, 이자 지불이 없는 자기자본은 비용 처리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을 투자할 경우 가상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현재 가상이자 공제율은 3.781%가 적용되어 자기자본 투자 시 실질 법인세율은 26%선으로 낮아지게 된다(명목 법인세율 33.99%). 동 제도는 자본집약적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국적 기업의 본사 또는 재무본부를 유치하는데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 투자 등록세 폐지

- 2006년 1월 1일부터 현금이나 현물로 투자할 때 투자액의 0.5%를 지불하던 투자 등록세를 폐지했는데 이러한 조치도 현지 투자를 증진키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 R&D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 R&D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과학자나 연구자를 고용할 때 해당 고용인에 대한 원천 징수 소득세 혜택은 물론 신규 특허에서 오는 법인 소득에 대해 6.8%의 법인 세가 부과되고 있다(명목법인세율은 33.99%).

## 라) 개인세

벨기에 거주자의 소득(국내, 국외 포함)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의 소득에는 부동산 소득, 근로자의 경우 봉급 및 수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 소득을 비롯한 여타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

이 중 다양한 소득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상적 직업활동 지출비용을 포함하여 특별 지출, 개인 지출 및 보수(allowances) 등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순 과세소득

(net taxable income) 세율은 소득에 따라 0-50% 사이다.

비거주자나 일정 과건 근무 외국인인 벨기에에서 수행한 직업활동에서 기인하는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다. 벨기에 회사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과건된 외국 경영자(Executives)와 벨기에에 납세자로서의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영자 또는 벨기에가 그들의 경제적 거점 이 아닌 경우에는 벨기에 근무 초기에 벨기에 재무부에 특별 세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벨기에 재무부가 과건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주택 임대 초과 분, 이사비용과 정착 비용, 자녀 학비 등 일정한 지출과 해외 출장 비용 등 해외에서 일어난 직업활동에 대한 모든 수당은 과세 소득에서 공제된다.

#### 마. 부가가치세

벨기에 정상 부가가치세율은 21%이다. 그러나 고용을 증진키위해 일부 노동 집약적 분야 (예: 자전거 수선, 헤어 살롱, 주택 개축 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정상 세율보다 낮은 12%가 적용된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외환관리

벨기에에서는 외환관리정책의 하나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다. 또한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과거 공식 외환 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 시장(THE FREE MARKET)의 2중 구조는 '90.3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되었다. 1961년2월15일에 IMF 제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외환사무국 (L'INSTITUT BELGO-LUXEMBOURGEOIS DU CHANGE: MBLC)이 최고 외환 관리 기관으로서 외환 지급 및 이전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나 외환지급 및 이전 업무 기능은 일반 은행에 위임되고 있다.

### 나) 자금조달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은행 융자다.

기업은 벨기에 은행 이외에도 증권시장(EURONEXT BRUSSELS)에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 은행: 벨기에에는 현재 총 104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중 벨기에 법인 은행이 54개, 외국 인법인 은행이 50개 있다. 한편 EU 서비스 활동 자유 규정 하에 통보된 은행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수는 495개 된다. 벨기에에는 국토 크기에 비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크기) 은행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라 은행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2005년 벨기에 은행이 민간 고객(공공당국에 직대출 포함)에 대출한 총 대출액은 4112억 유로로 2004년 대비 19.9% 증가했으며 이중 59.7%에 해당하는 2453억이 벨기에에서 대출되고 나머지 1659억이 외국에 대출되었다.

한편 브뤼셀 EURONEXT(암스텔담, 파리, 브뤼셀 증권시장 통합)에 상장된 업체 수는 1250개 (2006년 현재)로 총 축적 자본금은 2조 9950억 유로에 달한다.

## 8) 투자유의사항

벨기에 국가체제가 1993년 이후 완전히 연방체제로 변형되면서 연방정부는 통화, 세제, 사회보장 제도, 외교 등 국가 주체성과 직접 연계된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그 외 분야는 지방정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지방정부에서 관할되고 있다. 지방 정부로는 플라미쉬, 왈로니아, 브뤼셀 지방정부의 3개 지방정부가 있다.

따라서, 투자 시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 당국과 투자에 따른 투자 지원 혜택을 협상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와 특히 환경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방 정부 당국을 접촉, 장단점을 심층 분석한 후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나 공장 이전 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 가) 투자 제한

벨기에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5%이상 소유할 경우에 이를 경제부와 금융 감독 위원회 (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간 차별대우 제도가 없으며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영업활동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한도액, 투자비용, 지분소유, 투자분야 등의 제한이 없다.

단, 예외적으로 항공, 내수로 운송과 벨기에에 등록된 선박 해운은 벨기에나 EU기업의 과반수 지분이 요구되고 적어도 25%의 비용을 벨기에 공공당국이 지불하는 공공 사업은 벨기에와 EU기업에 한한다. 그리고 철도와 대중 교통 등 일부 분야는 아직 시장이 개방 되지 않은 공공분야로 민간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벨기에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ONSS)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 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근래 검사가 강화되었다.

## 나) 투자 금지

벨기에는 보험이나 은행, 리스, 운송, 여행, 의약품, 식품과 같은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 하고는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법도 금지가 목적은 아니고 소비자, 건강, 안전 보호를 위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정 조건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 자본 기업이던 내국 기업이던 동등하게 적용된다.

## 다) 우리 기업이 느끼는 애로 사항(비관세 장벽)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 경우 :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내국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별 수출 장비의 부품 사양이 달라지고 부품 공용화에도 저해가 되어 생산성 저하 및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아울러 인증 기관에 인증 비용도 지불하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국가별로 기종 당 약 10,000 유로 소요)

또한 중고 장비 수입 제한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 별도 Newness Certificate 요구하여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든다.

# 10. 스웨덴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스웨덴은 북유럽(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시장 규모를 가진 나라이다. 잘 발달된 산업으로 인하여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세율로 인해 국민간 소득격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이다. 대부분의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 화학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공업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표 3-75> 스웨덴 일반 사항**

<b>국 명</b>	스웨덴(Sweden)
<b>위 치</b>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쪽
<b>면 적</b>	449,964 km <sup>2</sup>
<b>기 후</b>	알라스카 남부 그린랜드와 동일한 위도에 위치하나 이들 지역보다는 기후가 훨씬 따뜻함
<b>수 도</b>	스톡홀름
<b>인 구</b>	9,174,082명 (2007.11월말)
<b>주요 도시</b>	Stockholm(1,762,924명), Goteborg(824,068명) Malmö(510,085명)
<b>민족(인종)</b>	북구 게르만족 (스웨덴인 90%) Sami족 (또는 Lapp족 약 17,000명)
<b>언 어</b>	스웨덴어
<b>종 교</b>	루터교 (국교, 88%)
<b>건국일</b>	6.6.
<b>정부형태</b>	입헌군주제

자료원: 스웨덴 통계청, 2008.04

## 나. 경제 개요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과 가격만 괜찮다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정된 수입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은 무엇보다도 실용성이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고 품질만 좋으면 브랜드를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오래 전부터 품질이 좋고 값이 싼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 양말이 인기를 끌고, 최근에는 PC용 LCD모니터, 핸드폰, 광 케이블 등 첨단 IT제품이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 세계의 특성은 보수성과 정확성이다. 지난 1995년도에 EU에 동참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은 신중함을 보인다.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다.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인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도 한 번 거래관계가 성립되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에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

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표 3-76> 스웨덴 경제 지표**

<b>GDP</b>	US\$ 3,819억(2006)
<b>실질경제성장률</b>	4.3 % (2006), 2.5% (2007.3/4분기)
<b>1인당 GDP</b>	US\$ 42,128 (2006)
<b>실업률</b>	5.2% (2007.11월)
<b>물가상승률</b>	3.3% (2007.11월)
<b>화폐단위</b>	Swedish Krona (SEK)
<b>환율</b>	1 US\$ = 7.37 SEK (2006 연평균 환율)
<b>외채</b>	SEK 3,325억 (US\$ 411억)
<b>외환보유고</b>	US\$ 22,133 백만
<b>교역규모</b>	농림수산업(2.3%), 제조업(20%), 건축(10%), 무역업(18.6%) 금융업(11%), 보건의료업(19.4%), 교육연구업(8%), 기타
<b>교역품</b>	수출(US\$ 1,475억), 수입(US\$ 1,267억) (2006)

자료원: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중앙은행; KOTRA 2008.04 재인용

#### **다. 우리나라의 對스웨덴 관계**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수출입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어 교역규모 확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제 41위 수출국이자 31위 수입 대상 국가로 대 스웨덴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선박, 휴대폰,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이 있으며, 대 스웨덴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제도용구, 화물자동차, 자동차, 의약품 등이 있다.

특히, 스웨덴은 항공기, 의약품, 통신방비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생산품은 수출 하고, 일용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력상품의 부품/소재, 해외조달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표 3-77> 한국-스웨덴 관계

<b>체결 협정</b>	무역의정서('67), 사증면제협정('69), 섬유협정('79) 이중과세방지협정('81),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협정('85) 투자보장협정('95)
<b>교역규모</b>	대 스웨덴 수출 : US\$ 714,836천 달러 (2006.1-10) 대 스웨덴 수입 : US\$ 816,704천 달러 (2006.1-10)
<b>교역품</b>	대 스웨덴 수입 : 견인트랙터, 트럭, 자동차부품 등 대 스웨덴 수출 : 승용차, 휴대폰, 타이어 등
<b>교민</b>	이민교포(1,220명), 한국계 스웨덴인(7,567명)

자료원: 스웨덴 정부, 스웨덴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KOTRA 2008.04 재인용

한국은 2006년도 스웨덴의 주요 수출국 중 24위로 스웨덴 수출시장 점유율 0.6%를 차지하여 전년도 대비 8계단 상승하였고, 금액은 27%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도 스웨덴의 주요 수입국 중 한국은 21위로 스웨덴 수입시장 점유율 0.9%를 차지하여 전년도와 같은 순위이며, 금액은 12% 증가하였다.

<표 3-78> 한국-스웨덴간 수출입 동향(2007년 1-9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5	2006	2007(1-9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스웨덴 수출	904	857	709	10.3%
對 스웨덴 수입	979	987	859	16.7%
무역수지	-75	-130	-15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OTRA 2008.04 재인용

2007년 1-9월 우리나라의 대 스웨덴 수출실적은 70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목 중 전년 동기대비 수출 호조품목은 아연도강판(198%), 선박 (15.8%), 유선전송장치(387.1%) 등이며, 전년 동기대비 수출 부진 품목은 승용차(-1.0%), 자동차 부품(-26.6%) 등이 있다. 수출 호조요인으로는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경쟁력 확보, 스웨덴 경기활성화, 코로나화 강세로 달러화 결제 품목에 대한 수입구매력 회복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향상을 들 수 있다.

수출 부진요인으로는 자동차 및 IT분야 완제품 수입시장 경쟁심화를 들 수 있는데, 자동차시장의 경우, Skoda, Peugeot의 공격적인 마케팅 및 가격경쟁력 우위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수출 감소로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 관련 제품들도 동반 감소하고 있다. 한편 IT완

제품의 경우, 일부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중국, 대만으로 구매선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9월 우리나라의 대 스웨덴 수입액은 85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7%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품목 중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승용차(93.51%), 세미 화물자동차(15.3%), 의약품(7.7%) 등이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열연강판(-4.7%) 등이 있다.

**<표 3-79> 우리나라의 對스웨덴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No.	회사명	투자연도	진출형태	투자금액
1	삼성전자 북구 현지법인	1992	현지법인	13,000
2	LG전자 북구 현지법인	1999	현지판매법인	5,000
3	대우일렉트로닉스 스웨덴 지사	2001	현지사무소	N/A
4	기아자동차 스웨덴 현지법인	1997	현지법인	N/A

자료원: KOTRA 2008.04

우리기업의 스웨덴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3사와 자동차 업체인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자동차는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대우전자는 지사형태로 진출해 있다.

스웨덴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대우전자 등 한국기업들이 밝힌 총 투자 금액은 약 2,300만 불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2004년 이전에 실행된 것이며, 스웨덴 중앙은행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4 -2006년 중 한국의 대 스웨덴 투자금액은 1백만 불 이하로서 대 스웨덴 투자통계에 미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가) 투자 인센티브

##### 1) 세제 인센티브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8%로 숫자상으로 볼 때 주요 유럽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OECD 국가와 비교, 세계에서 가장 우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세금감면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법인세율은 2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법인세 이외에도 계열사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공제, 그룹내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이자에 대한 전액 세금면제, 외국인 투자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및 주요국과의 이중과세 납부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조세 협약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 지역 인센티브 (북부지방 투자에 대한 지원)

○ 지역개발보조금

- 건물 설비투자 시 지방정부에서 2,000만 크로나까지 보조금 지급

○ 개발보조금

- 연구, 마케팅, 교육투자 시 소요경비의 50% 또는 50만 크로나까지 지원

○ 고용보조금

- 동 지역에서 신규인원 채용 시 1 인당 5년간 20만 크로나까지 지원

○ 수송보조금

- 동 지역에서의 수송비용 50%까지 지원

다.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규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현지사무소 설립절차

외국회사의 현지 연락사무소 설치 시에는 관련기관에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다.

현지 연락사무소라 함은 스웨덴 내 오너쉽이 없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상행위도 단독적으로 할 수 없으며, 단지 본사와 현지간의 업무 연락 등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한편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세와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정부 세금청(Local Skattekontor)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세금신고 의무와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연말 회계감사는 필요 없다.

연락사무소는 설치 시 관련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시에는 해외에 있는 본사의 이름을 사용한다.

### 나) 지사 설립절차

### 1) 사무실 확보

지사설립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무실을 확보하는 일이다. 설립등기나 공적인 신고, 거주권 및 노동권 허가, 은행구좌 개설, 종업원 채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사 개설 작업에는 사무실의 주소가 먼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 2) 주거 확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서둘러서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향후 자신이 생활할 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생활의 거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지사의 대표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 3) 회사등록 및 지사개설

지사 설치 신고비용은 2,000 SEK (약 300달러)로서,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지사 설치 신고양식과 본사로부터 가지고 온 취임장을 제출하면 심사 후 약 3-4주 후에 회사등록번호를 수령할 수 있다.

지사의 경우 연말에 세금신고 의무와 정산장부 비치 의무가 있으며, 스웨덴 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사는 특별한 지사 명(Trade Name)으로 활동하며 지사대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지사의 대표는 반드시 EEA(The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사는 일정 회계양식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있어야 하고, 지사의 대표는 지사 회계서 복사본과 공인회계사의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세금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지사명은 외국 본사명에 지사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야 하며, 회사의 국적이 확실히 명기되어야 한다.

지사명은 스웨덴 특허/등록청(The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이나 회사 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기 등록된 다른 회사명과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지사의 편지양식 등에 본사의 회사형태, 등록사무실, 등록번호를 지사 등록번호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다) 법인 설립절차

○ 법인 설치 시에는 정관과 주식납입대금 증명서를 첨부하여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신고한다.

○ 법인은 주주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최소 자본금은 민간기업의 경우 500,000 SEK(약 68,000 달러), 국영기업의 경우 100,000 SEK (약 13,000 달러)이다.

○ 법인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해당 최소 자본금을 예치한 후 예치금 영수증을 수령

하여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법인설치신고 양식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심사 후 약 3-4주 후에 회사등록번호를 수령할 수 있다.

- 법인설치 신고비용은 지사 설립 신고비용과 동일한 2,000 SEK (약 300달러)이다.
-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세금을 확정/정산하여야 하며, 초과 납부액은 환급 받고 부족액은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 한편 매 회계연도 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외부 감사 보고서가 승인되어야 한다.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관

- ISA (Invest in Sweden Agency)
  - Tel : 46-8-402 7880
- NUTEK (Swedish National Board for Industrial & Technical Development)
  - Tel : 46-8-775 4000
- "Regional Development Fund"
  - Tel : 46-8-15 1400

### 4) 투자입지여건

스웨덴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스웨덴 GDP의 약 3%가 연구개발비로 사용되는데 이 비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교육과 산업분야 모두 튼튼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에는 1980년 초 이래 산학협동체인 사이언스 파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주로 대학 및 연구 단체와 테크닉센터 등이 인접해 있어서 20세기 스웨덴 산업을 크게 성공시키는 토양 역할을 해왔다.

스웨덴 사이언스 파크의 총 본산인 Swedepark는 24개의 사이언스 파크로 구성된 우산형 조직이다. 350개 회사, 20,000 여명 종사원이 밀집해 있는 스톡홀름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Kista Science City)를 비롯, 10개 회사에 종사원 100여명의 소형 사이언스 파크도 있다.

- 단지명칭: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 소재지: 스톡홀름
- 공단특성: 유럽내의 가장 다이내믹한 IT 및 전기통신분야 센터 중 하나로 스웨덴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고 있으며 각종 하이테크 업체들이 모여 1970년대 Ericsson사와 IBM사가 들어서면서 발

전되기 시작하여 1988년 현재의 사이언스 시티가 설립되었는데 350개 회사에 25,000명의 종사원이 밀집되어 있다.

- 스톡홀름 대학(The University of Sockholm), 왕립 공대(The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와 연계되어 있으며 30명의 교수진, 500명의 교사 및 연구원, 3,000여 명의 학생이 모여있다.

○ 공단연락처

- 담당자 : Mr. Nils-Erik Selin

- 주 소 : Electrum 203, 164 40 Kista Sweden

- 전 화 : +46-8-790 4032

- 팩 스 : +46-8-751 6062

○ 단지명칭: 매르데이 사이언스 파크

○ 소 재 지 : 린셰핑

○ 공단특성 : 1984년 설립된 공단으로 150개 사 4,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씨그널 및 영상공학, 전기, 소프트웨어, 센서공학 및 전기통신분야가 밀집되어 있다.

- The University of Linkoping과 The Linkoping Institute of Technology와 연계되어 있다.

○ 공단연락처

- 담당자 : Mr. Sten Gunnar Johansson

- 주 소 : Mjardevi Science Park AB 581 81 Linkoping Sweden

- 전 화 : +46-13-20 6415

- 팩 스 : +46-13-21 0176

○ 단지명칭: 스톡홀름 테크닉 웨이드

○ 소 재 지 : 스톡홀름

○ 공단특성 : 1986년 설립된 공단으로 40개사 150명의 종사원이 있으며 재료공학 및 IT 공학 부문에 집중 되어 있으며 화학 및 생화학분야도 있다. 왕립 공대 및 스톡홀름 대학과 연계되어있다.

○ 공단연락처

- 담당자 : Ms. Monica Ekdahl

- 주 소 : Bjornasvagen 21. 113 47 Stockholm Sweden

- 전 화 : +46-8-790 0700

- 팩 스 : +46-8-15 8552

o 단지명칭 : 노뎀 리서치 파크

o 소재지 : 스톡홀름

o 공단특성 : 세계 최초의 생의학 분야 연구센터 중 하나로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The Huddinge University Hospital, Karolinska Institute, Sodertornrs University와 연계되어 있다. 연구 분야로는 장기이식, 감염질환, 유전자 치료 등이 있다.

o 공단연락처

- 담당자 : Ms. Charlotte Munck af Rosenschold

- 주소 : Novum Research Park 141 57 Huddinge Sweden

- 전화 : +46-8-746 0080

- 팩 스 : +46-8-779 5813

o 단지명칭 : 샬머스 사이언스 파크

o 소재지 : 요테보리

o 공단특성 : 1987년 설립된 단지로 30개사 3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재료 과학, 마이크로 전자, 수송차량관련 연구 및 시스템공학, 환경분야 등이다.

o 공단연락처

- 담당자 : Mr. Lars Jacobson

- 주소 : Chalmers Science Park 412 88 Goteborg Sweden

- 전화 : +46-31-772 4039

- 팩 스 : +46-31-82 7035

## 5) 노무관리

2006년 말 기준 스웨덴의 경제활동인구는 4,533천명이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1990년대 초의 경기후퇴로 인해 한때 평균 8%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기의 경제호황으로 인하여 점차 실업률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 5.5%, 2006년에는 5.3%로 감소하였다.

### 가) 경제활동인구

16세-65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는 총 인구 대비 74.3%인 4,533천명(2006년 기준)이다.

## 나) 노동법

### 1) 노동법

고용안정법(Acts on Employment Security)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관련법은 노동시장, 노동환경, 고용자들의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조절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고용안정법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조업단축 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적용되어 왔던 해고순서 관련법(고용법 1982:80, 22§)은 근로자를 감원하는 순서에 있어서 반드시 나중에 채용한 근로자를 먼저 해고하게 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법안 개정으로 인하여 최고 10여명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조업단축 시 근로자를 감원하는데 있어서 최고 2명까지 해고순서 관련법에서 예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즉, 고용주가 특별히 회사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근로자를 인정할 경우 회사 형편상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감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2) 고용주세

고용주세는 32.42%이며, 고용자가 지불하는 소득세는 지방자치세금 형태로 지불하게 되므로 거주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 26%-35%의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 3) 법정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기간

법정근무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연간 최소 법정 유급휴가는 5주일(근무일수로 25일간)이다.

## 6) 조세제도

스웨덴은 OECD국가 중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GDP의 약 50%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 경기 침체가 극심했을 때는 세금비율이 75%에 육박한 때도 있었으나, 1990-1991년 기간 중 스웨덴 정부는 광범위한 세제 개혁 조치를 단행, 개인소득세 지출을 최고 50%까지 축소한 바 있다.

한편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감가 상각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나 사회보장성 경비의 분담 규모가 전체 노동자 급여의 1/3정도가 되는 면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는 식료품 12%, 서적류 6%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5%이다.

과실송금 보장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식배당금 송금 시 원천세를 징수한다(우리나라의 경우

15%).

세제를 보면, 군수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웨덴 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 없다.

법인세는 이익 규모에 관계없이 28%로 일정하며, 개인소득세는 각 자치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28%선부터 시작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외환관리

원칙적으로 외화자금의 반출입이 자유로우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은행을 통하여 100,000 크로나 (중전에는 75,000크로나 이상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2000.7.1 변경 된다)이상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외국으로부터 입금될 경우 거래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은행은 신고된 사항을 중앙은행에 알릴 의무가 있다.

스웨덴 내 직접투자는 중앙은행 허가 사항이었으나 1989.7.1부터 완전 자유화 되었으며, 외자 도입 시에도 금액, 기간, 목적에 대한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다.

### 나) 현지 금융조달 여건

1980년대 말까지는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 대출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1990년부터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 기관이 큰 손실을 입어 현재는 금융 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거래 은행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가 있고 자금 용도 및 상황 계획이 확실하면 융자는 가능하다.

### 다) 과실송금 보장제도

과실송금 보장 제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주식배당금 송금 시에는 원천세를 징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5%)

## 8) 투자유의사항

스웨덴과 관련된 무역 내지는 투자장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현지 진출 한국업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을 들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각 고용인 보수의 32.4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 진출 우리 기업은 스웨덴인 고용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사 파견 한국인 직원에 대해서도 보수의 32.4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인 국민기본연금 수급권이 있으나, 실제로 기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금 수급권 획득 후 외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자에게는 기본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한편 3년 이상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외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에도 동 추가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상사 지사의 본사 파견 직원은 보통 4-5년 후 주재국을 떠나게 되므로 추후 추가연금은 받을 수 있으나, 기본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인정 문제이다. 스웨덴 운전 면허법은 유효한 외국의 운전면허증에 대해 스웨덴 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국가와 여타 국가에 대하여 차별을 두고 있다. EEA 국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동 소지자가 스웨덴의 주민등록을 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스웨덴 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여타 국가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소지자의 스웨덴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인정해 준다. 또한, EEA 국가 이외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일본과 스위스 제외), 스웨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두어, 상사주재원과 같이 일정기간 스웨덴에 체류하는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웨덴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외국운전면허증의 스웨덴 내 효력 규정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행정관청은 동 면제신청이 충분한 사유가 있고, 교통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웨덴 체류기간 동안 외국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해 준다.

## 11. 스위스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스위스(독일어: Schweiz 슈바이츠)는 중부 유럽의 연방 공화국이다. 수도는 베른이며(최대 도시는 취리히), 정식 명칭은 스위스 연방이다.

스위스의 사회는 자유와 보수(保守)라는 두 요소가 특색이다. 계급적인 차별은 적으나 동업조합(同業組合)과 코문(공동체적 지역사회)을 중심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인구의 결혼시기는 비교적 늦은 편이다. 2001년 기준으로 평균결혼연령은 남자가 30.6세, 여자가 28.0세이다. 혼인율과 이혼율은 모두 유럽의 평균치 이상이다. 많은 스위스 부부들은 먼저 동거를 시작했다가 첫 아이가 출생한 직후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 비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표 3-80> 스위스 일반 사항**

<b>국 명</b>	스위스 (The Swiss Confederation)
<b>위 치</b>	위도 북위 45-48도의 유럽대륙 중심부에 위치
<b>면 적</b>	41,285km <sup>2</sup> (※ 한국: 99,394 km <sup>2</sup> )
<b>기 후</b>	계절별 기온 차가 적어 비교적 온난한 날씨
<b>수 도</b>	베른 (Bern)
<b>인 구</b>	750만 명
<b>주요 도시</b>	취리히(109만 명), 제네바(49만 명), 바젤(46만 명),
<b>민족(인종)</b>	켈트족과 게르만족이 주류
<b>언 어</b>	독일어(64%), 불어(20%), 이탈리아어(7%), 레토로만어(1%)가 공용어
<b>종 교</b>	가톨릭(42%), 개신교(35%), 이슬람교(4%), 기타(3.2%)
<b>건국일(독립일)</b>	1291년 8월 1일 (3개 산악지역들이 최초로 스위스연맹동맹 결성)
<b>정부형태</b>	내각책임제

자료원: 스위스 정보; KOTRA 2008.04 재인용

## 나. 경제 개요

인구규모는 750만 명으로 시장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을 상회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스위스는 1인당 구매력이 가장 높은 고밀도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급제품, 고가제품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규모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의 경우 스위스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등한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스위스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의 소비자로 구성되어있어 스위스 시장진출에 성공한 제품은 유럽 지역 대부분의 시장에 걸쳐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스위스 업체들은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언어사용 능력으로 일찍부터 인근 지역국가와 활발 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견업체들은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에 판매처를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스위스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한다면 서유럽 진출에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표 3-81> 스위스 경제 지표**

<b>GDP(명목)</b>	3771억 달러
<b>실질경제성장률</b>	2.7%
<b>1인당 GDP</b>	50,258 달러
<b>실업률</b>	3.3%
<b>물가상승률</b>	1.1%
<b>화폐단위</b>	스위스프랑 (CHF)
<b>환율</b>	-1US\$ = 1.2530CHF -1EURO = 1.5481CHF
<b>외환보유고</b>	26,692억 달러(2005년 기준)
<b>산업구조</b>	농업(3.8%), 제조업(23.7%), 서비스산업(72.5%)
<b>교역규모</b>	-수출: 1,422억 달러(2006년), 1,260억 달러(2005년) -수입: 1,328억 달러(2006년), 1,197억 달러(2005년)
<b>교역품</b>	-수출: 정밀기계, 화학의약품, 시계, 광학의료기기 -수입: 자동차, 전기전자, 의류 등 소비재

자료원: KOTRA 2008.04

스위스는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각 언어권별로 다소 상이한 문화권을 구성하고 있어 스위스 시장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 적합한 시장이다. 또한 스위스시장은 고가 고품질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한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 및 최고 품질 제품에 대해서는 개척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시 유럽시장 공략의 사전단계로 소비자들의 반응 조사를 위해 일단 스위스시장에 제품을 선보인 후 각 언어 문화권별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스위스 시장은 협소하며 안정적인 시장 특성상 수요신장이 빠른 편이 아닌 관계로 대량 구매가 가능한 분야는 중간 도매상을 배제하여 중간 이윤을 소멸시키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소비업자나 대량 소매업 조직(소비자협동조합, 백화점 등)과 수입 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수입하고 있고, 생산재의 경우 해외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있다.

소매업이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Self-Service, Discount store, Supermarket 등의 대형 소매점이 확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 대형 소매점과의 거래가 향후 한국 상품의 대 스위스 시장진출 확대에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전문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제품공급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유통업체들이 생산자로부터의 직접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인 Coop과 Migros등은 홍콩과 대만에 구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본사 내에도 구매파트를 증설하여 직접수입을 늘려가고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인식되

고 있으나 MP3, LCD TV, 휴대폰, 셋톱박스, DVD플레이어 등 전자제품과 아이디어 광고용품에 대해서만은 고품질 신개발제품이라는 인식이 높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브랜드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실례로 MP3, PMP, LCD TV, 마사지기 등에 대해서는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마사지기에 대해서는 지역별 전문 대리점도 다수 운영 중이다. 아시아 음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대형식료품유통점 및 슈퍼마켓에서 간장, 면류, 향신료 등을 아시아식품 코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관계

62년 12월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어 63년 3월에 우리나라의 상주공관이 베른에 설치 되었고,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64년 6월에 설치되었다. 스위스는 중립주의와 보편성 원칙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리 추구에서 경제, 기술협력, 교역대상으로 한국과의 교류에 비중을 두고 있다.

1953년 한국동란 휴전이래, 중립국 감시위원단 (NNSC)에 대표를 파견,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74년 12월 북한을 정식 승인하였으나 경제관계를 제외 하고는 소원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북한이 스위스 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컨츄리 리스크(Country risk)가 큰 북한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97년 12월부터 99년 8월까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한, 북한, 미국 및 중국이 참석한 4자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한-EFT 자유무역협정이 2006.9.1 발효함에 따라 모든 공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100% 폐지되었다. 스위스가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주 및 귀금속류(71종), 의류와 그 부속품(62종),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종), 가족제품(42종) 등 인바, 동 분야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기본농산물에 관하여서는 한-스위스간 별도의 양자농산물협정을 체결, 스위스 측은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는바,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관하여는 쿼터 및 계절관세를 적용을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였다.

**<표 3-82> 한국-스위스 관계**

<b>체결 협정</b>	투자보장협정('71.9) 정기항공운항협정('76.11) 공업소유권협정('77.12) 사증면제협정('79.6) 이중과세방지협정('81.4)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90. 8) 항공협정('95. 5) 무역경제협정('99. 6) 한-EFTA FTA 공식협상개시 서명('04. 12) 한-EFTA 정식서명('05. 12 * '06.9월 발효) 한-유럽입자물리연구소간 협력협정
<b>교역규모</b>	-대 스위스 수출: 840백만 달러(2006년), 576백만 달러(2005년) -대 스위스 수입: 1,319백만 달러(2006년), 1,168백만 달러(2005년)
<b>교역품</b>	-대 스위스 수출: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타이어 -대 스위스 수입: 기계류, 화학의약품, 시계
<b>교민</b>	2,296명(시민 및 영주권자 746명)

자료원: 스위스통계청, 스위스관세청, 스위스국립은행, 한국산업자원부, INVEST KOREA, 수출입은행. 주 스위스한국대사관 ; KOTRA 2008.04 재인용

2004년부터 스위스는 해마다 수출실적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스위스 수출입 호조 요인으로는 스위스 전체 교역규모의 60%이상을 차지하는 EU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유로화 대비 프랑화의 약세 지속에 따른 스위스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시장 및 물가 안정으로 개인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및 설비투자 증가와 건설경기 호조를 꼽을 수 있다.

스위스 2007년 3분기 말 수출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두 자리의 높은 성장을 시현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인도, 동유럽에 대한 수출이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2007년3분기말 기준 스위스 권역별 수출비중을 보면 유럽연합이 전체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63%가 넘으며, 유럽 외 산업국가인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를 묶은 권역이 15%를 차지 하여 유럽 및 유럽 외 선진 산업국가의 수출 비중이 79% 정도이다.

스위스의 최대 수출국가는 독일로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21%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로 전체 스위스 수출 비중에 각각 10.3%, 8.6%, 8.9% 차지하고 있다. 대 유럽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1%로 증가했다.

한국과 스위스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배경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교역 규모가 늘어나 '93년의 경우 8억 1천만 불에 불과하였던 양국간 교역 액은 '03년의 경우 18억 불을 초과 하기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확대 추세에 있다. 2006년 한국-스위스 간의 교역규모 는 전년 동기대비 24%로 증가 하였으며, 무역수지적자는 2002년 이후 가장 적은 폭을 기록하였다. 2007년 한국-스위스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의 수출 부진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83> 한국-스위스간 수출입 동향(2007년 1-9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9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스위스 수출	433	514	576	840	336	-52.2%
對 스위스 수입	1,442	1,211	1,168	1,319	1,457	55.3%
무역수지	1,009	697	592	479	1,121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OTRA 2008.04 재인용

한국과 스위스 양국 간 무역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1971년4월7일 ERPI 투자촉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스위스 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은 한국의 대 스위스 직접투자 금액이 미미하여 별도로 투자실적을 집계하지 않는다. 한국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기준으로 1982년도 이후 스위스에 직접 투자된 금액은 98,462천 불이며 투자건수는 63건이다. 2002년 GM 대우와 LG 화학이 투자신고 하였으며, 2005년 및 2006년에 한국 MCM사가, 2007년에 대한뉴팜이 투자 신고했다.

<표 3-84>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3분기)	누계
건수	1	1	1	15	11	29
금액	3.4	0.016	2.4	6.0	43.4	55.2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투자법 개요

스위스 정부 구조는 연방, 주(26개)와 지자체로 나뉜다. 스위스의 세금제도 또한 정부 구조를 따라 연방, 주와 지자체 각기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정부의 세금 제도는 완만한 성격을 보여 기업설립에 있어서는 주정부와 지자체 세율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보다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들은 보다 매력적인 세금제도를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연방, 주, 지자체 모두 세금을 면제하며 거주 회사에

게는 주와 지자체가 면세혜택을 주고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10년 동안 법인세와 자본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면제기간'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를 수령하려면, 투자 프로젝트가 지역 노동시장, 지역 경제 그리고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 심사위원들이 신청 회사의 보고를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서는 투자 이전에 해당 지자체를 접촉,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투자 장려/제한/금지 분야

스위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와 투자 유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외국의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의 대 스위스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베이스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연방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는 투자유치 성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분야의 투자 및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은 은행-보험-펀드회사, 호텔 및 요식업, 의사-약사-변호사, 와인 도소매업, 인력 파견업체, 카지노, 무기취급관련업 등이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http://bewilligungen.kmuinfo.ch>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스위스은행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며 신규 의약품 생산 시에도 Swissmed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EU지침 및 임상 실험을 통해 합격여부가 결정되고 등록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토지매입 허가제를 '97.10.1일부터 폐지하였으며, 생산, 영업 및 서비스 업무용도로 구입하는 토지의 구입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12개월의 단기 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 다) 투자인센티브

### □ 연방정부

스위스 연방의회는 1995.10.6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침체된 17개 주정부(칸톤)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동 지역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투자자금 일부에 대한 은행융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동 지원 프로그램은 두 차례 연장을 통해 2008말 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2007년 10월부터 2008년까지는 세제혜택만 유효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산업의 다각화를 가능케하고 신규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 프로젝트로 한정하고 있다.

□ 주정부

연방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범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며, 세제혜택, 정착지원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투자지역, 금액,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 2) 투자 진출 형태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외국인이 사전허가 또는 신고없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과 노동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진출형태는 신규법인설립, 기존주식취득, 합작법인설립, 기술 제휴 및 지사설립을 분리된다. 외국인의 대표적인 투자 형태는 현지법인설립(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과 지사 설립이다.

### 가)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법인등기의 의무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경영권은 해외 모기업에 있으며, 최소 법정자본금은 없다.

□ 지사 설치 신청

지사 설립 신청은 자사 소재지의 상업 등기소에 해야 하며, 등기신청서는 사장, 부사장, 비서 또는 이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회사서명, 회사명, 서명권자의 모든 서명은 공증 후 제출해야 하며 서명권자의 모든 서명을 각각의 서명란에 작성 후 제출한다.

서명권의 모든 서명과 지사 설립 등기신청 서명은 공증사무소 또는 상업 등기소에서 공증을 받는다.

□ 모기업의 등기부 등본 제출

모기업의 등기부 등본은 모기업 소재의 관할관청 또는 스위스 영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자본금내역/이사회/감사원 등 내용 포함)

□ 모기업의 정관 제출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스위스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한다.

□ 모기업의 지사 설치 및 지사 대표자 임명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제출

의사록은 대표이사에 의거 서명되어야 하며 지사 대표자는 직접 서명한 취임승락서를 공증 후 제출한다.

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해외지사설치결정, 지사의 상호, 지사의 서명권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서명권의 종류(단독 서명권자, 공동서명권자 등), 지사의 소재지이다.

번역

외국어로 작성된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참고사항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지사형태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은행위원회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 취득 전에는 상업 등기가 불가능 하다.

**나)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최소 3명의 주주로 구성, 이 중 이사의 50%는 스위스 국적 소비자로 거주지 또한 스위스로 지정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인 경영 주식회사도 흔하다. 최소 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으로 이 중 50%는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법인설립 등기 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요기관으로는 주주총회(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사회(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대표이사(업무집행 및 회사대표) 및 감사(업무감사 및 회계감사)가 있다.

**다)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2008.1.1 시행예정)**

회사설립에는 최소 2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이 중 50% 즉 1명은 스위스 거주 스위스 국적자야 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1인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으로 100% 주금 납입해야 법정자본금의 상한선은 200만 스위스 프랑이었으나, 자본금 상한선 폐지 및 설립자본금의 50%만 주금납입 의무가 있다. 지분 양도는 관보에 공지 해야 했으나, 상법개정 이후에는 서면 계약을 통해 지분양도가 가능하다.

**라) 법인설립**

1) 법인설립 전

영업허가 획득

카지노 운영, 은행 업무, 호텔 및 요식업 등 일부 업종은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며 [www.bewilligungen.zh.ch/www.arbeitsbewilligungen.zh.ch](http://www.bewilligungen.zh.ch/www.arbeitsbewilligungen.zh.ch) 에서 영업허가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연간 매출이 75,000 스위스 프랑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스위스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여 회사법인 등기 전에 부가가치세납세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유사상호의 검토

지정한 회사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업 등기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www.zerfix.admin.ch/](http://www.zerfix.admin.ch/) [www.gruenden.ch](http://www.gruenden.ch)

## 2) 설립 진행

### 자본금확정 및 주금 납입

주식회사는 법정 최소 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이며 1주의 액면가는 최소 1 Rappen 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금 납입의 종류(현물, 현금)를 확정된 후, 최소 법정 자본금의 50%인 5만 스위스 프랑을 현금으로 주금납입 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최소 법정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으로 2만 프랑 전액을 주금 납입해야 하며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 주요기관 및 임원직 확정

주식회사의 주요기관 및 임원직은 주주총회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대표이사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 및 감사가 있다.

## 3) 회사설립

### 상업 등기소 등록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회사 소재지 상업 등기소에 회사등록을 함으로써 회사가 설립된다.

### 법인설립 필요서류

아래 법인설립 필요서류 참조

### 법인설립 필요서류의 검토 조치(유한회사, 주식회사 동일)

법인설립 필요서류가 준비 완료되며, 법인설립등기 접수 전 주(칸톤)정부 상업 등기소에 서류가 올바르게 준비 됐는지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사전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2~300 스위스 프랑이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 공증 (유한회사, 주식회사 동일)

준비된 법인설립 서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공증 시 설립자 (발기인)가 직접 공증을 받거나 공증된 위임장을 소지한 법적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한 후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서명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은 공증사무소 또는 상업 등기소에서 할 수 있고 비용은 1개 서명 당 공증사무소는 20~30스위스 프랑, 상업 등기소는 10 스위스 프랑을 청구한다.

### 상업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록 및 관보 공고

법인설립신청서는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상업 등기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법인설립신청서는 담당자가 제출 서류의 정확성, 누락여부 및 법률의 위배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 약 7일 후 주정부 상업 등기소에 등록 된다.

주정부 상업 등기소는 법인설립등기내용을 연방 정부 상업 등기소에 보내고 접수 후 약 2일의 검토기간을 거친 후 연방정부가 승인을 하면 법인설립등기는 완료된 것이다.

법인설립등기 후 3일 이내에 법인설립을 스위스 관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 비용

○ 기본수수료: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600 스위스 프랑 (자본금 20만 스위스 프랑인 경우 할증 수수료 납부)

○ 기타 수수료

- 임원의 추가 등재 시: 20 스위스 프랑/업종
- 서명자 추가 게재 시: 30 스위스 프랑/서명자
- 신청서처리 행정수수료: 70 스위스 프랑
- 등기부등본 발급: 50 스위스 프랑
- 스위스 관보 법인설립 공고: 120 스위스 프랑
- 행정수수료: 5~150 스위스 프랑

□ 주금납입금의 회사계좌로 이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며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은 법인계좌로 이체된다.

다. 법인설립 서류(주식회사/유한회사)

○ 발기인(대리인),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 상호 및 소재지 법인설립등기신청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서명과 서명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회사서명을 해야 하므로 모든 서명은 공증 받아야 한다

○ 공증된 창립사항보고서

○ 정관(법적 의무기재사항인 목적, 상호, 1 주 금액, 발행한 주식 총수,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 감사 및 이사의 취임승락서

○ 창립총회이사록

○ 주금납입보관증

○ 회사 소재지 증명서

○ Lex-Friedrich: 회사가 영업의 용도 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라. 설립비용 및 설립기간

□ 설립 비용

주식회사설립은 개인회사 설립보다 설립비용이 더 많다. 한 예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설립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본금 1백만 스위스 프랑의 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비용은 약 7,000 스위스 프랑 소요된다.

법인설립비용은 컨설팅비용과 법인설립을 위한 수수료로 나뉘며, 상업 등기소 등기, 공증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약 2000 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컨설팅 비용이 약 2,000~5,000 스위스 프랑이다.

채권발행비용은 자본금의 1%이나, 자본금이 1백만 스위스 프랑 또는 자본증액분이 1백만 스위스 프랑까지는 채권발행수수료가 없다.

□ 법인설립소요기간

<표 3-85> 주식회사(AG) 및 유한회사(GmbH) 설립소요기간

구분	설립기간 (단위: 주)					
	1	2	3	4	5	6
사전검토, 업체 등록 및 회사명(허가)	○					
설립을 위한 서류준비		○				
자본금 납입			○	○		
설립 및 설립증명서 발급			○	○		
칸톤 공공일지 발행					○	
경영권자의 사업자등록						○
납세의무등록						○

자료원: Greater Zurich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Location Switzerland
  -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651 CH-8035 Zurich
  - Tel. +41 (0)43 300 56 00
  - Fax +41 (0)43 300 56 05
  - www.locationswitzerland.ch
-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Effingerstrasse 31-35 CH-3003 Bern
  - Tel. +41 (0)31 323 07 10

- Fax +41 (0)31 324 86 00
- E-mail: invest@seco.admin.ch
- www.seco-admin.ch
- Osec Business Network Switzerland
-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492 CH-8035 Zurich
- Tel. +41 (0)1 365 51 51
- Fax +41 (0)1 365 52 21
- E-mail: info@osec.ch
- www.osec.ch
- KTI/CTI
- The Innovation Promotion Agency Effingerstrasse 27 CH-3003 Bern
- Tel. +41 (0)31 322 21 43
- Fax +41 (0)31 322 21 15
- E-mail: info@kti-cti.ch
- www.kti-cti.ch
- SwissParks
- Club of Swiss Technology Parks and Business Incubators Lerchenfeldstrasse 5 9014 St. Gallen
- Tel. +41 (0)71 274 75 00
- Fax +41 (0)71 274 71 61
- E-mail: info@swissparks.ch
- www.swissparks.ch
- Fiscal Information Office
- Eigerstrasse 65 CH-3003 Bern
- Tel. +41 (0)31 322 71 48
- Fax +41 (0)31 322 73 49

- www.estv.admin.ch
- Swiss Fiduciary Association STV/USF
- Schwarztorstrasse 26 CH-3001 Bern
- Tel. +41 (0)31 382 10 85
- Fax +41 (0)31 382 10 87
- E-mail: info@stv-usf.ch
- www.stv-usf.ch

#### 4) 투자입지여건

##### 가) 투자형태 결정

스위스투자진출형태는 신규법인설립, 기존주식취득, 합작법인설립, 기술제휴 및 지사설립으로 분리된다. 외국인의 스위스 내 대표적인 투자형태로는 현지법인설립(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과 지사 설립이 있다.

스위스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업형태는 주식회사(AG)이며, 합작투자나 지분참여 방식은 흔치 않다. 스위스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GmbH가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기업 형태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형태인 AG형태로 투자하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이며, 설립 시 최소한 5만 스위스 프랑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불해야 한다. 주식발행은 기명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최소 액면가액은 10스위스프랑이다. 스위스 또는 외국의 어떤 사람이나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 나)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스위스에서의 기업 설립 및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주 정도이며, 계획추진 단계에서 고려할 많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설립회사 소재지 선정으로서 이는 세법, 활용가능 노동력 및 승인 가능성, 공장 이용가능성 및 비용 등이 주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주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고용문제를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데, 외국 노동자들은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노동이 가능하다.

- 이외에 세금문제를 세밀히 따져 보아야 하는데 외국기업들은 스위스 내 항구적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스위스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

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에는 100% 외국인 소유의 기업설립이 가능하며, 정부의 규제도 거의 없는 편이 나, 은행과 보험분야는 허가가 필요하고 또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다) 파트너 선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는 반드시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국적이 다수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스위스인을 이사로 지정해야 하며 관리자는 스위스 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단독 서명권을 가진 관리자 중 최소한 1인 또는 합동 서명권을 가진 관리자 중 최소한 2인은 스위스 거주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 라) 등록

회사 소재지를 결정하고 나면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ER)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서류에는 회사명, 자본금, 설립목적, 이사 및 관리자의 성명, 그리고 서명권자의 성명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등기서류는 등록된 공증인에 의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인증된 번역가에 의해서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다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마) 투자입지

스위스는 산업구조 특성상 대량 생산체제의 제조업은 발달되어있지 아니하며, 주로 중소 규모의 첨단기술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유사한 공단지대는 발달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스위스의 3대 공업지역으로는 취리히, 바젤, 제네바/로잔 지역에 밀집한 지역은 한국의 공단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이 발달한 거의 모든 지역에는 Industry Zone의 명칭이 붙은 지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단과는 상이하며 주로 사무실 또는 중소규모의 제조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규모 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다. 입지선정 시 투자관련 정부기관 및 서비스기관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 5) 노무관리

750만 인구 중 52%인 360 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노동력의 26%정도를 외국노동력이 차지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법정 최소 휴일, 최대 정년 등을 규정한 고용 계약에 관한 연방법률에 일차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나, 많은 경우,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준수되는 노동협약(Agreement in the Engineering Industry)에 따르고 있다.

동 협약은 보통 노사간의 평화협정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평화 유지를 위한 상호간의 의무, 정의행위의 통일, 모든 갈등을 상호 협의와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사내와 경제부문 에서의 노사의 의

무 등이 명시되어있다.

## 가) 임금수준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돼 임금수준은 지역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데, 취리히(Zurich)와 바젤(Basel)지역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 나)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휴무) 사무실뿐 아니라, 공장, 건설 현장 등 작업장에서의 주당 정규 근무시간은 40-42시간이며, 주5일 근무가 보통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간외근무는 25%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초과 근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휴가혜택을 주어야 한다. 초과근무는 연간 2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휴가제도

휴가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유급휴가: 연간 최소한 4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20세 이하의 고용인에 대하여는 최소한 5주간의 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휴가 중에도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 임신출산휴가: 연간 유급휴가는 임신출산휴가와 구별되어야 하며 임신출산휴가는 14주이며 임신출산휴가 중에도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 질병, 사고, 법적 의무 수행으로 인한 결근시의 급여 지불: 고용자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법적 의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 라) 노동생산성

스위스는 고 임금국가로 임금 수준이 타 유럽 국가보다 높은 반면, 노동 생산성이나 숙련도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하고, 결근률이 적으며 근무시간도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편이다.

## 마) 해고

### 1) 노동법상의 해고절차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약통고 없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가능하며. 단 10년 이상 고용했을 때 3개월 전에 해약통고를 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해고코자 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함께 1차년도 계약기간 중에는 1개월 전에, 2차년도 이후 제9차년도 기간 중에는 2개월 전에 그리고 10차년도 이후부터는 3개월 전에 해약통고를 함으로써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차년도 계약기간 종료 후 양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연장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당사 자간에 사전통고에 의해 해약이 가능하며 해약통고기간은 계약 기간 명시와 동일하다.

적법한 해고 (적법한 해고사유에 의한 적법한 해고통고기간 준수)시의 퇴직금 지불은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은 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50세 이상의 고용인이나 20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을 해고시킬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고용인이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인 배우자나 직계 비속 또는 고용인의 타 부양 가족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퇴직금은 최소한 2개월 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고용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되 최대 8개월 분 급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 적법한 해고 시 고용주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고용인이 향유할 수 있었던 모든 금전상의 이득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최대한 6개월 분의 급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노동법

스위스의 노동법은 엄격하지 않으며, 기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다. 스위스의 주요노동법은 1964년에 제정된 연방노동법으로서 동법은 (1) 특정산업을 위한 단기노동규정 (1975년 11월 제정), (2) 특정산업을 위한 특별규정(1975년 11월 제정), 노동자 보건 및 안전규정 (1969년 3월 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장 근무여건 (1914년 6월 제정), 노동분쟁의 중재 (1949년 2월 제정), 단체임금교섭 (1956년 9월 제정)에 관한 연방법이 있으며 법정휴가보상 (1983년 12월 제정), 사회보장 (1946년 12월 제정), 노인보험에 관한 규정 (1947년 8월 제정), 의료보험 (1981 3월 제정), 사고보험 (1981년 3월 제정), 실업보험 (1982년6월 제정), 개인연금 (1982년 6월 제정) 및 직업훈련 (1987년 4월 제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1) 단체권

외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협력하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자유가 있다. 공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경제체제 변화, 부유한 노동자들의 고도로 높은 생활수준, 중요한 정치, 사회 및 경제문제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노동조합 회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들 자신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공표할 수 있다. 스위스의 노동조합연맹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및 세계노동연맹, 유럽무역노동조합연맹에 속해 있다.

### 2) 단체협상권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벌이고 단체협상을 벌일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합원 차별에 대해 그들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장려하고 있다.

## 사) 사회보장제도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三柱제도(Three-pillar 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다

- 一柱: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노후와 생계에 대한 연방의무보험
- 二柱: 퇴직 이후, 기존 생활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
- 三柱: 자의개인 보험

처음 두 개의 카테고리는 최종소득 60% 수준의 연금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최고 연간 57,600스위스 프랑) 개인적인 보험료에 의한 셋째 카테고리는 기타 다른 필요성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는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된다.

## 아) 외국인 고용

### 1) 노동허가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스위스 시민과 외국 주민들의 인구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EU 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노동의 이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로 2005년 9월 국민투표에서 합의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주어지는 거주와 노동허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계절노동허가 (A허가):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으로 허가되며 한시적인 거주만을 허가 하며 (최장 9개월까지) 계절허가는 주로 건설이나 관광업 등에 이용된다.
- 일시 거주허가 (B허가): 전체적으로 1년간 유효하며 해마다 갱신해야 하고 . 최초 일시 거주허가 수는 매년 전 주에 걸쳐 7,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주에 할당 인가 수를 구체적으로 배정하며 연방정부는 4,000명의 인가를 배정 받는다. 스위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라면 즉시 B허가를 부여 받는다.
- 영주허가 (C허가): 스위스에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이나, 협정을 맺은 국가 (벨기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의 국민으로서 5년 이상 스위스에 거주한 자에게 인가한다.
- 단기 거주허가: 12개월에 한하며 교육목적이나 단기 활동목적 예를 들면 특수계획의 수행목적에 한한다. 12개월의 기간은 14,000명의 할당량을 한도 내에서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국경 노동자 허가: 최소 6개월 이상 인접국의 국경지대에서 거주하여온 외국인이 스위스 영토 안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그들의 거주 지역(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예술인 허가: 연간으로 계산하여 8개월 동안 허가한다.
- 120일 허가: 4개월 미만의 거주자나 노동자들에게 소위 "120일 인가"를 적용한다. 할당제와 관

계없는 이 제도는 외국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제한된 부분에 한하여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허가나 거주허가가 없는 외국인들은 스위스 사용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스위스에서 어떤 이윤추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원이 입국하기 전에 베른(Bern)에 소재하고 있는 연방산업 통상 노동부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정부에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적 주거인가는 노동인가가 나면 신청자의 가족들(아내와 몇 명의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거주허가가 주어지며 일시 노동거주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자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일시 허가 Quota 때문에 노동 허가 획득은 어렵지만, 경영자와 전문가들에 대한 허가는 쉽게 내주고 있다.

이러한 허가들은 단지 1년간 유효하고 해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은 철저히 정부의 관찰로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주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스위스에 처음 일년 거주하는 동안 Kanton(주), 직업, 기업 또는 고용주를 바꿀 수 없다. 새로 고용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노동, 거주 허가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스위스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 자) 2008년 노동시장 변동 사항

### 1) 불법노동 근절을 위한 연방법안 마련 및 발효

불법노동 근절을 위해 스위스 정부는 2008.1.1 부로 불법노동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과 고용주에게는 벌금부과를 비롯한 최대 5년 까지 공공 조달 참여제한, 공공자금 지급 중단 또는 삭감, 스위스 연방경제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법기업 리스트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효된다.

노동허가 미소지 외국인고용 적발 시 고용주는 최대 50만 프랑의 벌금부과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2) 외국인 노동자 노동허가 취득 용이

유럽연합 국가 외 외국인 채용 시 노동허가 취득이 어려웠으나, 2008년부터 기업의 경영진 급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취득이 용이해 진다.

### 3) 19세 이상 20세 미만 노동자 야간 및 주말 노동 허가

만 19-20세 노동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야간, 주말 작업 등을 법으로 금지했으나, 만 19세 이상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이 부여된다.

## 6) 조세제도

### 가) 세제개황

스위스 조세제도는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구 등 3차원의 행정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스위스 연

방세법과 26개 칸톤 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볼 때 연방정부는 스위스 내 간접세의 거의 전체를 세원으로 사용하는 반면 연방정부의 직접세 수입은 칸톤 주정부 또는 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직접세의 대부분은 칸톤 주정부 및 구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

- 직접세 (Direct federal tax; direkte Bundessteuer): 법인소득세는 8.5% 정률제이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결혼 유무, 자년 유무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있다.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Mehrwertsteuer '01.1.1부터 시행): 7.6%

- 배당 및 이자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 on dividends and on interest; Verrechnungssteuer): 35%

- 인지세 (Stamp duty; Stempelabgaben): 1%

- 관 세 (Customs duty; Einfuhrzoll)

- 기타 물품소비세 및 군면제세(Military exemption tax) 등

#### 나) 지방정부세

-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Income tax; Einkommenssteuer)

- 법인자본세 (Capital tax on corporations; Kapitalsteuer)

- 순자산세 (Net wealth tax on individuals; Vermoegenssteuer)

- 교 구 세 (Parish tax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Vermoegenssteuer)

- 부동산이득세(Real estate gains tax 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Grundstueck-gewinnsteuer)

- 상속 및 증여세 (Inheritance and gift taxes;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상기 세금은 칸톤별로 상이하며 부동산재산세(Real estate property tax), 부동산양도세 (real estate transfer tax), 거래세(trade tax), 소방세(firebrigade tax) 등이 있다.

칸톤 및 구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소득세의 2배 수준까지 달하고 있으며 칸톤의 조세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의 산정방식과 개인별 할인(allowance), 공제(deduction), 평가(assessment) 등의 제도에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일시키기 위해 Tax Harmonization Law (90.12.14 제정, 93.1.1부터 시행)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칸톤별로 또는 동일 칸톤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 다) 법인세

## 1) 조세법에 따른 기업 구분

스위스 조세법은 기업을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분리된다.

- 생산기업 : 생산, 무역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주회사 : 타 회사에 지분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다국적기업: 영업활동의 대부분의 해외에서 일어나고, 스위스에서는 관리, 금융 등 만 전담하는 기업

## 2) 기업유형 별 법인세

### □ 생산/무역 및 서비스기업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은 주정부 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 및 최고 세율은 확정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법인세를 수익에 비례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수익의 8.5%이다.

### □ 지주회사

자산의 2/3가 투자되거나 회사 수익의 2/3가 여타 회사 지분 참여에 의해 발생하면 지주회사로 인정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세금감면을 받는다.

연방 및 주정부는 한 회사가 2백만 스위스 프랑 또는 자본금의 20%이상을 여타 회사에 투자한 경우 배당이익금에 투자금액을 공제 할 수 있는 세제상 이득을 보며, 연방정부는 지주회사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 □ 다국적기업의 관리기업

주정부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정부는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보통 법인세율의 1/10~1/15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 참고사항: EU-스위스 법인세법 개혁 협상 개시

EU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주(칸톤)정부가 스위스 내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1972년 스위스와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조세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 법인세제를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협약을 스위스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U와 스위스는 2007.11.12 베른(스위스) 및 브뤼셀에서 EU의 세금 분쟁 관련 첫 공식 협상을 개시 했다.

## 라)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개인 소득세를, 주정부는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를 부과시킨다. 내국인은 1년에 1회 자진 소득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분기별 원천징수하여 조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내국인은 세전 총 수입에서 사회보장세, 의료보험료 등 세금공제 혜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지방정부마다 기혼여부 및 소득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소득세율이 부과된다.

## 마) 부가가치세

### □ 일반현황

스위스는 유럽에게 가장 낮은 부가가치세인 7.6%, 생필품, 잡지 및 신문에는 2.4%, 요식업 및 호텔업에는 3.6%를 적용시키고 있다.

연간 매출 75,000 스위스 프랑 이상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세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사업장은 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단일화 추진

현 스위스 부가가치세율은 7.6% (생활필수용품 2.6%, 숙박업 3.6%)이나 정부와 스위스 경제인 연합은 부가가치세율을 6%로 단일화 추진 중이나, 숙박 및 소매업연합에서는 이원화된 부가 가치세 유지를 주장하며 숙박 및 식료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그 외 용역 및 상품에 대해서는 6%의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외환 관리

스위스 프랑화(CHF)은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통화로 명성이 높은 편이다. 정치적, 경제적 변수로 인해 달러나 유로화가 불안정할 때도 스위스 프랑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었다. 1980년 이후 미 달러화 대비 스위스프랑의 환율은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는 외환의 구입, 매각, 송금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외환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금의 매입, 매각도 완전히 자유롭다. 다만, 대외경제 지향적인 스위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 금리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앙은행이 다양한 금융 통화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관리범위를 사전 공지한다. 특히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프랑화의 가치를 위협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

### 나) 자금조달

스위스는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 등의 투자계획에 대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은행을 통한 중장기 담보대출, 회사운영을 위한 단기신용대출, 벤처 캐피탈 등이 있다.

#### 1) 투자계획 실현을 위한 중단기 은행대출

공장설립 등 초기투자 자금대출 신청 시 은행은 투자계획서 및 타당성과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검

토 후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공장설립 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건설 및 설비비용을 포함한 공장 가치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비스업 또는 사무실은 업무의 위험도 및 사업목적에 고려해야 하지만 통상 투자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하며 기업의 신용도 및 성장가능성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회사운영을 위한 단기신용 대출

회사운영을 위한 단기신용 대출방법은 담보를 통한 대출과 백지신용대출이 있다. 대출 금액은 기업의 신용도 및 성장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금융방법으로는 파이낸스 리징과 포페이팅이 있으며, 신생 벤처기업은 은행이 외 금융권 대출, 보증, 전환사채발행, 유사 벤처캐피탈 유치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투자기업은 여타 통화보다 스위스 내에서 스위스 프랑화로 자금조달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

## 3) 벤처캐피탈

스위스 벤처캐피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벤처캐피탈의 구성을 보면 개인투자자가 55%, 보험회사 16%, 연금 10% 및 기관투자자 7%를 차지하고 있어, 여타 국가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높다.

스위스연방정부는 연방법을 근거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된 벤처캐피탈은 설립 및 증자 시 채권구입면제를 받으며, 연방직접세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 개인 투자자가 엔젤투자자로 신생기업 설립 시 자금을 지원하면 연방직접세에 대한 감면 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 관련 상세는 다음 기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 SECA Swiss Private Equity&Corporate Finance([www.seca.ch](http://www.seca.ch))
- ASBAN Association of swiss Business Angels Networks([www.asban.ch](http://www.asban.ch))

## 4) 중소기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 보증조합(Buergschaftgenossenschaft)를 통한 지급 보증

대출금의 최대 50만 프랑까지 보증조합을 통한 보증이 가능하며 연방정부는 이중 최대 65%까지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

### 호텔대출

연방정부는 호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호텔 건설 및 운영에 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으며, 시행기관으로는 SGH(Swiss society for Hotel Credit)가 있다. SGH는 자금 조달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정부 경제촉진기관, 은행 및 관련 협회와 함께 투자금액을 마련한다.

### 산간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이자 지원

대출금액 50만 프랑에 대해 연방정부는 90%까지 보증을 서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보증 및 이자 지원을 보증조합(Buergschaftgenossenschaft)에 신청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연방 정부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범주에 드는 중소기업대출을 최고 대출금 50만 프랑에 대한 이자의 40%를 최고 6년간 지원한다.

## 8) 투자유의사항

은행업의 경우 100% 지분소유의 투자가 가능하나 Swiss Banking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 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 관련업종은 일부 주정부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스위스 국적기의 운행, 국내항공사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토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스위스는 환경보호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스위스내 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시에는 반드시 환경보호법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침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고 베른소재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Office가 있으며 각 주정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

## 12. 오스트리아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오스트리아 공화국(독일어: Republik Österreich 레푸블리크 외스터라이히)은 중부 유럽, 알프스 산맥 동부에 있는 나라로, 빈을 수도로 삼고, 독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다.

1939년 제2차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 점령 아래 유럽에 대한 경제원조로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고자 한 경제지원책인 마셜플랜을 받아들였으며, 4개국회의를 거쳐 1955년 오스트리아국가조약으로 자유영세중립국으로 주권이 회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 지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음악분야에서 가장 높이 인정되는 문화적 공헌을 했으며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재조직된 빈 국립 오페라는 밀라노의 라 스칼라 와 함부르크와 뮌헨의 오페라와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빈 교향악단은 세계의 음악도시에서 연주했다.

**<표 3-86> 오스트리아 일반 사항**

<b>국 명</b>	오스트리아(Austria, 獨文 Oesterreich)
<b>위 치</b>	중부유럽 하부
<b>면 적</b>	83,871km <sup>2</sup> (남한 면적보다 다소 작음)
<b>기 후</b>	대륙성 기후
<b>수 도</b>	빈(獨文 Wien, 英文 Vienna)
<b>인 구</b>	826만(2005년 12월, 인구 밀도= km <sup>2</sup> 당 99명)
<b>주요 도시</b>	빈(165만명), 그라츠(24만명), 린츠(19만명), 잘쯔부르크(15만명), 인스부르크(12만명)
<b>민족(인종)</b>	게르만계 88.7%, 소수민족 2%, 상주 외국인 9.3% 상주 외국인: 舊 유고슬라비아인 35%, 터키인 12%, 독일인 14%
<b>언 어</b>	독일어
<b>종 교</b>	가톨릭 73.6%, 개신교 5.5%, 이슬람 4.2%, 무종교 12.0%, 기타 4.6%
<b>건국일(독립일)</b>	최초 건국년은 996년, 국경일 10월 26일은 1938년 독일에 강제 합병된 후 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50년 승전연합국의 승인을 얻어 독립을 선언한 날
<b>정부형태</b>	내각책임제

자료원: KOTRA 2008.04

## 나. 경제 개요

오스트리아는 중부유럽의 중심국가로서 오랫동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있었으며, 예술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1인당 GDP는 EU 국가들 중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4위이며 OECD 역내에서는 10위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는 관계로 노후 걱정이 없어서 저축보다는 소비성향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약 30% 수준의 저축률을 보이는데 반하여 오스트리아의 저축률은 9-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인들은 상당한 소비력을 지니고 있지만 인구가 8백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소량주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3-87> 오스트리아 경제 지표(2006년도 기준)

GDP	2,567억 유로
실질경제성장률	3.2%
1인당 GDP	31,060 유로
실업률	4.9%
물가상승률	1.4 %
화폐단위	Euro(유럽화폐동맹 참가국)
환율	1 US 불 = 0.6814 Euro (2007년 12월 13일 기준)
외채	321억 불(2003년도, 2003년 이후 수치 미발표)
외환보유고	유럽중앙은행EUR 3,153억, 유럽중앙은행 보유금(외환계산에서 제외) = 4억2천만 파운드
산업구조	제조업 19.4%, 유통업 12.8%, 금융업 5.4%, 건설업 7.6%, 교통통신 7.0%
교역규모	1,037억 유로 (오스트리아 수출) 1,042억 유로(수입)
교역품	공업 설비, 자동차 부품(오스트리아 수출) 자동차, 전자/가전 제품(수입)

자료원: KOTRA, 2008.04

오스트리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품질의 정도를 잘 고려하며, 최근 환경보호 의식의 증가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recycling 가능 여부 등이 제품 구매 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7-8월과 2월경의 할인 판매 기간을 많이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 할인 품목 등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내구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품질과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 시간의 증가 및 건강의식의 증대로 레저, 스포츠에 대한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품목은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여권신장, 나아가서는 남녀평등이 제도화되어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여성 용품의 소비기반이 강하며, 여성의 직장근무가 일반화된다는 따라 각종 편의용품 및 레저, 스포츠용품 등의 수요기반도 견고하다.

**<표 3-88> 한국-오스트리아 관계(2007년 10월 기준)**

<b>체결 협정</b>	-조선과 오스트리아의 수교 및 무역협정(1892년) -1965년 재수교 경제 협정으로는 무역 협정, 섬유 협정 사증 면제 협정, 이종과세 방지 협정 체결
<b>교역규모</b>	2006년: 8억 9천만 불(對澳 수출), 7억 4천만 불 (對澳 수입) 2007년 10월: 6억 1천만 불(對澳 수출), 7억 불(對澳 수입)
<b>교역품</b>	- 오스트리아로의 수출 : 액정디바이스, 승용차, 휴대용전화기 - 오스트리아에서의 수입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승용차, 돼지고기, 비스코스 섬유
<b>교민</b>	약 300명, 체류자 약 1500명

자료원: 오스트리아 통계청(2007년 12월 13일); KOTRA 2008.04 재인용

2007년에는 그 동안 수출 주력 품목이었던 액정 디바이스, 핸드폰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디스플레이 장치, 위성방송수신기 등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액정 디바이스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핸드폰, 승용차 등을 추월하고 1위 상품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도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 돼지고기 등의 수입품목 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현재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인 반면 자동차, 돼지고기, 비스코스 섬유 등의 수입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입품목 1위로 부상한 가운데, 돼지고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입품목 3위에 자리잡았다.

<표 3-89> 우리나라의 對오스트리아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No.	회사명	업종	투자금액
1	Kretztechnik AG	제조업	8,900
2	Son Kwang Woong Geschenkartikel	제조업	82
3	Jungwoo Development PTY. Ltd.	제조업	222
4	Solar. SI Solarenergic GmbH	제조업	18
5	Chevrolet Austria GmbH	도소매업	66,366
6	Damoa	도소매업	136
7	LG Electronics Austria GmbH	도소매업	-
8	GMS Plantech GmbH	도소매업	44
9	H. Kang GmbH	도소매업	33
10	Trieb	도소매업	17
11	GMP Austria Handels GmbH	도소매업	9
12	FNS Forwarding and Logistics GmbH	운수창고업	307
13	Euronet Cargo Logistics GmbH	운수창고업	154
14	Japanisches Restaurant Sapporo GmbH	숙박음식업	-
15	Arirang	숙박음식업	130
16	Seo Mae Sil GmbH	숙박음식업	121
17	Café-Restaurant Picnic GmbH	숙박음식업	73
18	Kim Hyang Man	숙박음식업	77
19	L.F.S. Restaurant Riebs GmbH	숙박음식업	194
20	Well Being	숙박음식업	99

자료원: 한국수출입 은행(2007년 12월 13일); KOTRA 2008.04 재인용

#### 다.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관계

한국의 對 오스트리아 투자는 (주)메디슨의 현지 초음파 의료기기 제조업체(Kretztechnik) 인수 투자('96.5)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판매법인 설립 투자가 대부분이다.

<표 3-90> 한국-오스트리아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4	2005	2006	2007(1-11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오스트리아 수출	669	970	886	611	-20.9%
對 오스트리아 수입	454	644	737	699	17.0%
무역수지	215	325	148	-87	-

자료원: KOTIS; KOTRA 2008.04 재인용

또한 지리적인 특성상 EU 국가들, 특히 독일로부터의 직접 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부동산/IT/R&D(45.13%), 유통(18.33%)에의 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투자유치 정책 개황

-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집약적 산업의 신규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 생산성 향상과 수입대체, 수출증진이 가능한 산업도 주요 투자유치 대상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 섬유, 철강, 종이산업 등 과도한 시설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투자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 나) 투자유치 관련 법규

- 특별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법은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 수출산업의 경우 강화된 정부의 수출장려책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투자우대제도

- 첨단기술 및 고용효과가 큰 산업, 지역발전예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시의 책임보증, 우대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 오스트리아의 가장 규모가 큰 투자진흥기금은 ERP Fund이다.

○ 오스트리아 내 특정지역에 대해 외국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지역, 철강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른 영향지역, 도산기업 속출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 라) 투자진흥기관

○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오스트리아의 기업보조정책의 혜택을 오스트리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07년 12월 기준 기업보조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10개 기관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 시 이용이 용이한 기관은 다음 7개 기관이다.

- 유럽진흥정책기금(ERP/ -REG, -Inter) : 지역개발, 국제협력, 무역진흥
- 중소기업 보증기금 유한회사(Buerger) : 중소기업 진흥
- 투자대여 주식회사(TOP) : 기술개발 보조, 무역진흥, 국제협력
- 상공연구진흥기금(FFF) : 기술개발 및 혁신 보조
- 채무보증 유한회사(FGG) : 지역개발, 기술개발 및 혁신
- 환경보호진흥정책기금(UFG) : 환경보호
- 감사은행 수출진흥기금(OeKB) : 무역진흥, 국제협력

○ EU에서 낙후 지역으로 지정한 Burgenland州, 일부 Steiermark州 등에 투자할 경우 EU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 동(同)지역에 투자할 계획서를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EU에 제출하면 총 사업에 지출되는 자금의 최대 50%까지 EU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 마) 몰수 및 보상

○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유 재산 보호가 철저히 지켜지므로 갑작스러운 국유화 조치는 상상할 수 없다.

## 2) 투자 진출 형태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이 취급 받는다. 특정한 생산 및 연구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 보조금 수령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진출 외국 기업의 약 80% 이상이 유한회사(GmbH) 형태를 취한다. 설립에 소요 되는 총 비용은 자본금의 약 10-15% 수준이다.

지점(Branch Office)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현지 회사 설립 추진 단계에서 이용 하고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 가) 지점

오스트리아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현지법인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점 설립을 반기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사 이익과 지점 이익을 정확히 구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등 세제 업무가 복잡하며, 이익이 오스트리아 세제로 사정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지점 형태의 설립을 꺼리고 있다.

## 나) 연락 사무소

현지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공식적으로는 연락 사무소이다. 연락 사무소에서는 통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본사와 연결시켜서 연락 사무소 자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항공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연락 사무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라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업무 기록과 금전 관련 증빙 자료를 포함하는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 다) 법인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대부분 유한회사(GmbH)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지위와 대우가 거의 동등하지만, 주식회사 설립이 유한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 형태가 선호되는 것이다.

## 라) 회사설립 절차(유한회사 설립 기준)

### 1) 통역 선정

아래에 추천된 오스트리아 법무 법인이나 변호사들의 경우 영어에 능통하므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 담당자가 영어나 독일어에 능숙하다면 별도의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측 담당자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거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통역을 필요로 한다면 빈 무역관을 통해 통역 선정이 가능하다.

### 2) 변호사 선정

상술한 오스트리아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현지 회사 설립의 실무는 전문 변호사

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관례이다. 오스트리아 현지인들도 회사를 설립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법적 하자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으며, 한편 여러 가지 복잡한 관련 사무 일체를 변호사가 도맡아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업무를 위한 세무사, 공증인 등도 소개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발기 사원은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전문 변호사들이 일단 발기인으로 등록하고 회사 설립 후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

□ 대표적 변호사 및 법무 법인

아래 변호사 및 법무 법인은 한국과 관련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ABA(Austrian Business Agency)를 통해 일단 무료 상담 1번은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ABA나 변호사 협회로부터 다른 변호사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 Strohal & Kretschmer

- 주소 : Opernring 10, A-1010 Wien

- 전화 : (43 1) 5131911

- 팩스 : (43 1) 5131911 - 24

- 이메일 : [advocates@advocates.cc](mailto:advocates@advocates.cc)

- 홈페이지 : [www.advocates.cc](http://www.advocates.cc)

- 추천사유 : 대표 Dr. Theodor Strohal은 한류팬으로서, 한국에서 3년간 생활하며 화엄종 불도를 배운 바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다. 동 합동 법률 사무소는 경제분야 전문이며, 독일 뮌헨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 DSC, Rechtsanwalt Partnerschaft.

- 주소 : Währinger Strasse 2-4, A-1090 Wien

- 전화 : (43 1) 3194520

- 팩스 : (43 1) 3198322

- 이메일 : [dscvienna@aon.at](mailto:dscvienna@aon.at)

- 홈페이지 : [www.dscvienna.at](http://www.dscvienna.at)

- 추천사유 : 중대형 법무법인으로서, 한국S전자의 오스트리아 자회사 설립에 참여한 바 있다.

○ WOLF THEISS & PARTNER

- 주소: Schuberting 8, A-1010 Wien
- 전화: (43 1) 515 10 / 팩스: (431) 515 10-25
- 이메일: choenig@wtp.at
- 홈페이지: www.wtp.at
- 추천 사유: 대형 법무 법인으로서, 동유럽 지역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큰 회사이다. 아시아 지역 회사들과 경험도 있다고 하며, 한국 회사와 접촉을 바라고 있다.

○ Braunegg, Hoffmann & Partner, Rechtsanwälte

- 주소: Gonzagagasse 9, A-1010 Wien
- 전화: (43 1) 53 110-0 / 팩스: (43 1) 53 110-10
- 이메일: office@bhp-law.at
- 홈페이지: www.bhp-law.at

- 추천 사유: 비엔나 변호사 협회가 추천한 회사이다.

○ 비엔나 변호사 협회(Rechtsanwaltskammer Wien)

- 주소: Ertlgasse 2/Ecke Rotemturnstrasse 13, A-1010 Wien
- 전화: (43 1) 533-27180
- FAX: (43 1) 533-271844

3) 회사 설립 절차

- 정관 체결 및 공증
- 이사 임명을 사원들이 결의하고 결의안 공증
- 법정 설립자본자본금 은행 예치
- 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 거래세 납부
-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등록
-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변호사 선정 후 약 1 ~ 2달
-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은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4) 회사 설립 비용

- 최소 설립 자본금

- 유한회사의 법정 최소 자본금은 Euro 35,000 이다.
- 그러나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단 법정 최소 자본금의 50%인 Euro 17,500을 은행에 예치한 증명이 있으면 된다.
- 지분의 법정 최소 단위는 Euro 70 이다.
- 각종 세금 및 요금
- 자본 거래세 :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1%
- 부동산 취득세 : 신고 가의 3.5%
- 소유권 등기 : 등기 액의 1%
- 기타 비용
- 상기 나. 항에 명시된 소요자금고를 포함하여 기타 공증료, 변호사 비용 등 회사 설립을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의 합계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약 10 % ~ 15%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
- 변호사를 선임할 때 예상되는 소요 비용의 수준을 문의해 볼 수 있다.

## 마) 투자방식

### 1) 투자형태의 결정

외국인의 기업 지분소유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형태의 결정은 전적으로 시장상황 및 경제성 그리고 시장침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작투자, 단독투자 또는 현지기업 인수할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 기업의 법적 형태로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한회사가 바람직하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주식 회사보다 간단하며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손쉽기 때문이다.

###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인 ABA와 접촉하면 다량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ABA와 협상하여 우선 관련산업 및 시장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투자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방정부 또는 EU로부터 투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인센티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진흥기금의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업종, 예를 들어 요식업, 호텔업의 경우는 영업면허가 필요한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내국인들로부터 차용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파트너 선정

합작투자와 단독투자간의 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합작투자의 경우 파트너 선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100% 단독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현지 사정에 밝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일은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오스트리아에 현지법인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 S사 및 L사 모두 진출 초기에 현지 에이전트를 심분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적당한 파트너 선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투자 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당해 지방의 투자유치기관 및 지방정부와 접촉하여 파트너 물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 문의할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기관들의 추천은 대개는 신뢰해도 좋으며, 의심이 갈 경우에는 각종 신용조사 기관에 의뢰해 보면 된다.

○ KSV (오스트리아의 가장 대표적 신용조사 기관)

- 주소 : Wagenseilgasse 7, A-1120 Wien

- 전화 : (43 50) 1870-1000

- 팩스 : (43 50) 1870 99-1000

- 홈페이지 : [www.ksv.at](http://www.ksv.at)

- 이메일 : [ksv@ksv.at](mailto:ksv@ksv.at)

- 신용조사가격 : 1건 당 57 ~ 90 유로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Bundeswirtschaftskammer)

- 주소 : Wiedner Hauptstrasse 63, A-1045 Wien

- 전화 : (43 5) 90 900

- 홈페이지 : <http://wko.at>

물론, 현지 회사 설립 후 시장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정말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지 천천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4)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일반 오스트리아기업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 5) 회사 설립비용

자본 거래세(Kapitalverkehrssteuer)는 불입자본금의 2%이다. 공증료는 주식자본금에 따라 가중 계산된다. EUR 36,336 이상 - EUR 72,673 이하 = EUR 603 - EUR 1,003. 공칭자본금이 EUR 72,674 이상인 경우, 공증료는 EUR 1,004 - EUR 6,737 (최고 한도료)이다. 등기 수수료는 명목 주식자본금의 0.45 - 0.55% 사이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액의 3.5%이다. 이외에 소유권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 정도 된다.

### 6) 자본 및 이윤의 본국 송환

일반적으로 이윤의 해외 송환과(이익 배당금의 형태로서) 자본의 회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다.

### 7) 기타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로서는 현금유자를 비롯, 보조금, 저리 혜택의 수출신용 및 보증, 종업원 훈련 보조, R & D보조,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이 있다. 과거 동서 무역을 위한 금융 및 무역 중개기지로서 오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페이팅, 스왑거래 등 현대적인 국제금융 기법들이 이들 금융기관 등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노동 조합은 일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함. 노동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는 현지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하에 놓인다.

현지부품 구입의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자기업에 대해 수출의무 비율을 강제 하는 제도도 없다.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비엔나 변호사 협회(Rechtsanwaltskammer Wien)

- 주소 : Ertlgasse 2 / Ecke Rotenturmstrasse 13, A-1010 Wien
- 홈페이지 : [www.rakwien.at](http://www.rakwien.at)
- 전화 : (43 1) 533-2718-0
- FAX : (43 1) 533-2718-44

오스트리아 공증인 협회(Österreichische Notariatskammer)

- 주소 : Landesgerichtsstraße 20, A-1010 Wien
- 홈페이지 : <http://www.notar.at/de/portal/>
- 전화 : (43 1) 424 4509-0
- FAX : (43 1) 406 3475

공인회계사 및 신탁회사 협회(Kammer der Wirtschaftstreuhänder)

- 주소 : Schönbrunner Straße 222-228/1/6, A-1120 Wien
- 홈페이지 : [www.kwt.or.at](http://www.kwt.or.at)
- 전화 : (43 1) 811 73-0

○ FAX : (43 1) 811 73-100

바. 투자관련 정부 기관

1) ABA (Austrian Business Agency)

○ 주소 : Openring 3, A-1010, Wien, Austria

○ 전화 : (43 1) 588-580

○ 팩스 : (43 1) 586-8659

○ 이메일 : office@aba.gv.at

○ 홈페이지 : www.aba.gv.at

○ 성격: 오스트리아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인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에이전시(AB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연방차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사이트이다.

자세한 지역정보는 각 州별로 존재하는 투자유치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데, 상기한 ABA와 접촉하면 입수 가능하다. 산업 분야별 정보 ABA를 통하거나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입수할 수 있다.

2) Federal Economic Chamber (연방상공회의소)

○ 주소 : Wiedner Hauptstraße 63, A-1045 Wien

○ 전화 : (43 5) 90 900

○ 홈페이지 : http://portal.wko.at

○ 성격 : 오스트리아 상공인 총 연합인 오스트리아연방상공회의소는 오스트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용자연합 단체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산별로 조직된 산하 단체와 연결 가능하며 산별 단체를 통해 무역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3) Federal Economic Chamber of Vienna (비엔나 지방 상공회의소)

○ 주소: Stubenring 8-10, A-1010, Wien

○ 전화: (43 1) 514 50

○ 홈페이지: http://wko.at/wien

○ 성격: 비엔나 지방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비엔나 지역의 상공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참고

- 각 주(州)별 지방 상공회의소와 관련한 정보

—

<http://portal.wko.at/portal.wk?AngID=1&CtxID=16&DstID=686&subcontentparam=AngID%3d1>

#### 5) Austrian National Bank (오스트리아 국립중앙은행)

- 주소 : Otto-Wagner-Platz 3, A-1090 Wien
- 전화 : (43 1) 404 20-0
- 팩스 : (43 1) 404 20-2399
- 홈페이지 : [www.oenb.at](http://www.oenb.at)
- 성격 : EU 중앙 은행 출범 이후 통화량 조절 등의 기타 정책 결정과 관련한 기능은 많이 사라졌지만, 무역 및 투자 관련 각종 통계가 집계되어 발표되는 곳이다.

#### 6)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Arbeit (오스트리아 경제 노동부)

- 주소 : Stubenring 1,A-1011, Wien, Austria
- 전화 : (43 1) 71100-0
- 홈페이지 : [www.bmwa.gv.at](http://www.bmwa.gv.at)
- 성격 : 투자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종업원 고용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부서이다.

자료원 : ABA 자료 및 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 4) 투자입지여건

### 가) 각 주(州)별 입지 조건 요약

물가수준 및 실질구매력은 100을 기준치로 삼은 것이며, 실질 구매력은 음성소득까지로 포함한 “실질” 개념이다.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2005년 말 기준 세전 금액이다.

#### 1) 비엔나(Wien)

- 중심도시: 비엔나
- 인구: 1,651,437
- 물가 수준: 101.9
- 실질 구매력: 106.1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7,644유로

- 특징: 오스트리아의 수도로 다수의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이 위치해 있다.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 쉽고, 제반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물가수준 및 인건비 수준이 높다.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스라바와의 “쌍둥이 도시(Twin City)”계획, 동구권 국가들에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 등의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

## 2)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 중심 도시: 상트 펠턴

- 인구: 1,581,422

- 물가수준: 98.0

- 실질구매력: 102.4

- 근로자 연평균 임금 : 26,805유로

- 특징: 오버외스터라이히州와 함께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많은 지역으로 오스트리아 유일의 자동차 조립 공장인 Magna Steyr社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수도 비엔나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지하기에 좋은 지역 중 하나 이다.

## 3) 포랄베르크(Vorarlberg)

- 중심도시: 브레겐즈

- 인구: 363,526

- 물가 수준: 104.2

- 실질 구매력: 96.8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4,922유로

- 특징: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공업보다는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 4) 잘쯔부르크(Salzburg)

- 중심도시: 잘쯔부르크

- 인구: 528,351

- 물가수준: 104.0

- 실질구매력: 104.0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4,108유로

- 특징: 모짜르트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잘쯔부르크는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독일 뮌헨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계 공업 관련 업체들도 많은 지역이다.

#### 5) 오버외스터라이히(Oberösterreich)

- 중심도시: 린쯔

- 인구: 1,402,050

- 물가 수준: 98.2

- 실질 구매력: 97.9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5,395유로

- 특징: 오스트리아 제1의 공업 도시 린쯔가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세계적인 철강 기업 Voest Alpine社도 이 지역에 있다.

#### 6) 슈타이어막(Steiermark)

- 중심도시: 그라쯔

- 인구 : 1,202,087

- 물가수준 : 98.2

- 실질구매력 : 94.5

- 근로자 연평균 임금 : 24,521유로

- 특징 : 오스트리아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온천 및 휴양 시설들로 더욱 유명한 지역 이다. 자동차 및 의료 장비 관련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 7) 티롤(Tirol)

- 중심도시 : 인스부르크

- 인구 : 697,435

- 물가수준 : 102.9

- 실질구매력 : 95.7

- 근로자 연평균 임금 : 22,934유로

- 특징 :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스키 등의 관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등의 발달은 미미한 지역이다.

8) 케른텐(Kärnten)

○ 중심도시 : 클라겐푸르트

○ 인구 : 560,300

○ 물가수준 : 97.2

○ 실질구매력 : 94.5

○ 근로자 연평균 임금 : 24,143유로

○ 특징 : 이태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광지로서 더 유명한 지역이다. 제조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2004년 9월까지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클라겐푸르트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했었다(현재는 수도 비엔나에 있다).

9) 부르겐란트(Burgenland)

○ 중심도시 : 아이젠슈타트

○ 인구 : 279,317

○ 물가수준 : 97.7

○ 실질구매력 : 94.5

○ 근로자 연평균 임금 : 24,974유로

○ 특징 : 농업 등의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2차 산업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이다.

**나) 오스트리아 내 산업 단지**

1) 단 지 명 : Industriezentrum Noe-Sued

○ 소재지: 니더외스터라이히주 남부

○ 부지면적: 약 280 ha

○ 공단특성: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 근교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특화된 산업분야는 없다.

○ 입주자격: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니더외스터라이히 투자유치기관이자 공단 소유자인 에코플러스(ECO Plus)측이 해당 프로젝트를 허가하면 입주자격이 생긴다.

○ 입주비용: 에코플러스(ECO Plus)측과 해당 프로젝트를 상의하여 임대 또는 구입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임대의 경우, 공장 또는 사무실의 건축은 에코플러스측에서 담당한다.

○ 월 임대가격 = 공장용도 부지 평방미터 당 최하 약 4.07 Euro = 사무실용부지 평방미터 당 최

하 약 8.72 Euro

- 토지 구입가격 = 평방미터당 109 - 145 Euro
- 입주가능시기: 제한 없다.
- 교통 및 통신: 교통망은 오스트리아 남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지역으로의 고속도로와도 연결된다. 통신망 역시 잘 구비되어 있다.
- 인프라스트럭처: 여타 선진국 수준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100 - 200 명 수준의 인력 조달은 언제나 가능하다.
- 기본급 임금수준은 최하 월 1,450 Euro (주당 40시간기준)
- 외국기업입주 현황: 2007년 12월 현재, 단지에 상주하고 있는 총 280여 개 기업 중 약 30%가 외국인투자 기업
- 한국기업 입주현황: 2007년 12월 현재 없다.
- 우대조치: 특별히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없으나 Case by case로 니더외스터 라이히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 공단연락처

- Industrierezentrum NOe-Sued
- Strasse 3, ECO Plus-Buerogebaede Postfach 70, A-2355 Wiener Neudorf, Austria
- Tel : (43 2236) 61626-0
- Fax : (43 2236) 61626-40

## 3) 공단 입주 안내 및 홍보처

- 주소 : ECO PLUS P.O.B. 1476 Lugek 1, A-1011 Wien, Austria
- Tel : (43 1) 513 7850-0
- Fax : (43 1) 513 7850-44

## 다. 입지 선정 시 유의점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혜나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개별 州정부 차원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인건비 비교 이외에 지역별로 필요한 고급 인력의 수급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바,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운송 등

의 관련 인프라 구축 여부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7 및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 5) 노무관리

### 가) 고용

- 사용자와 피고용자간의 인터뷰 후 고용계약 작성.
- 사용자는 고용사실이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사회보험회사에 통고해야 한다.
- 업체별로 견습기간(최고1개월)을 거쳐 정식 사원이 된다. 견습기간이라도 사회보험 회사에 통보가 필요함.

### 나) 인력

- 오스트리아의 인력은 서유럽 내에서도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생산성 향상부문에서 지난 5년간 큰 두각을 나타내 왔음.

### 다) 임금

- 오스트리아의 임금수준은 EU 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안정된 노사관계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국제경쟁에 대처하고 있다. 제조업부문 연평균 급여(2005년 기준, 세전)는 25,451 Euro임.

### 라) 임금부대비용

- 임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액은 임금의 고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이외에도 자녀양육비 보조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
- 오스트리아 제조업부문의 평균적 임금부대비용 구성내역은 순임금 대비 다음과 같다
  - 결근에 따른 발생비용 = 18.4%
  - 특수수당 = 23.0%
  - 퇴직금 = 6.8%
  - 법적 복지후생비 = 41.5%
  - 자율적 복지후생비 = 5.4%
  - 임금관련 세금 = 4.2%
  - 직업훈련비 = 1.0%

- 기타 = 2.0%
- 합계 = 102.3% (순임금 = 100)

### 마)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제도

사무직근로자법(Angestellten Gesetz, 약어 AngG, 제국법발포지 1921년 292호) 제 16조에 의거 사무직근로자는 특수 수당 형태의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법은 상여금의 수준을 기본급의 최소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사무직노조 연맹 및 공무원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1년에 월 기본급 200% 이상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도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 바) 생산직 근로자 관련 상여금 법규

생산직 근로자들에 상여금을 규정한 노동법규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노동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오스트리아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스트리아 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음. 현재 사용자와 산별 노조간에 체결되어 있는 단체 협약에서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월 기본급의 200% 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 사) 상여금 지급시기

상여금 지급시기는 단체협약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회사별로 차이가 많다. 공무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음. 일부 회사는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100%씩 두 번 지급하기도 함.

### 아) 외국인의 고용

- 외국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은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 최근 들어 내국인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여서 노동허가 취득이 매우 힘들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1997년부터는 일정한 노동허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사무직이나 일반생산직에 대한 쿼터는 전무하며, 간부급 사원이나 특수 숙련공에 대해서만 일부 쿼터가 있을 뿐이다.
-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쿼터가 이미 채워진 경우에는 노동허가 발급이 거부된다.

자료원: 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2007년 12월 13일)

## 6) 조세제도

### 가) 세제 개황

-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하면서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정신이 가미된 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 직접, 간접 조세부담(예산총액에서의 동종세입의 비중)은 직접세 27.8%, 간접세 40.5%, 사회 보장부담 31.7%이다(2007년 2월 기준).

○ 간접세는 EU권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향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 조세부담률은 약 44퍼센트이며 이수치는 EU권에서도 중상에 속함.

## 나) 연방세

### 1) 납세 대상

○ 거주자 납세자는 국내의 소득에 대해 납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소득에 대해 납세 대상이 된다.

○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영업이득으로 과세된다.

○ 은행구좌, 유가증권, 채권이자에 대한 25 퍼센트 원천과세.

### 2) 제세 원칙

○ 개인에 대한 소득은 종합 개인소득세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

○ 회사소득에 대해서는 정액세율(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 25%)가 과세.

○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율 적용.

### 3) 세율

○ 부가가치세: 공산품 20%, 식료품 10%.

○ 자본투자세는 공칭자본금의 2% 수준이다.

○ 재산세는 1994년 폐지 되었음.

### 4) 법인 관련 제세

○ 주식 배당금,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참여에 따른 이익배당에 대한 세율은 22%, payroll tax : 3%.

○ 법인유지세(Koerperschaftssteuer): 모든 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년 Euro 1090이 부과된다. 1996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세를 Euro 3633으로 인상하였으나 1997년 1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에서 과다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 Euro 1090로 내렸음.

○ 오스트리아의 회사법은 한국의 회사법과는 달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법인으로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유지세가 부과되는 회사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뿐이다.

### 5) 개인 소득세

- 연간 소득이 Euro 4,128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 3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월 소득이 Euro 836 이하인 경우도 소득세 면제.
- 연말에 가족현황,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감안한 소득세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른 소득세 공제액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 연간 소득에 따른 기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Euro 4,135 - 4,621.9 : 14%
- Euro 4,622 - 10,907.9 : 22%
- Euro 10,908 - 21,809.9 : 32%
- Euro 21,810 - 50,879.9 : 42%
- Euro 50,880 이상 : 50%

6) 상속 및 증여세율(배우자 및 직계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

- Euro 72,672 이하 : 2 - 5%
- Euro 72,673 - 145,345 : 5 - 7%
- Euro 145,346 - 363,363 : 8 - 9%
- Euro 363,364 - 726,726 : 9 - 10%
- Euro 726,727 - 1,453,453 : 10 - 12%
- Euro 1,453,454 - 2,906,906 : 12 - 13%
- Euro 2,906,907 - 4,360,359 : 13 - 14%
- Euro 4,360,360 이상 : 15%

#### 다) 주세 및 지방세

○ 지방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음료세로 판매되는 모든 음료에 대해 10%가 부과되었는데 1999년 EU법원에서 EU법과 상치된다는 판결이 나와 폐지되었음.

-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신고액의 4.5%(취득세 3.5% + 등기료 1%)이다.
- 각 지방별로 인지세 등이 있다.
- 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는 평균 3 - 5년에 한번 실시된다.

라. 관세

○ 오스트리아는 95.1.1일부로 EU회원국이며 EU국과는 모든 교역이 무관세, 자유화 되었음.

○ 그간 동구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터키, 이스라엘 등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EU 가입으로 EU기준으로 전환(동 국가들은 EU와 경제협정을 맺고 있다).

○ 오스트리아의 EU가입(95.1.1.)으로 EU의 무역정책이 오스트리아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그간 오스트리아에서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반덤핑 관세 및 수입쿼터제 등의 조치가 EU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EU가입 이전에 오스트리아에 수입되는 자동차는 부품 중 일정량이 오스트리아산일 경우 관세의 감세혜택이 있었으며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관세를 줄이기 위해 오스트리아로부터 타이어 등을 수입하였는데 EU가입 후 동 감세혜택이 없어지자 일본 자동차 업체의 오스트리아산 자동차 부품수입이 급감하였다.

#### 1) 지역관련 우대관세

EU 관세코드상 국가분류: 아래와 같이 국가를 분류하여 품목별 국가군별로 적용관세를 발표 하고 있다.

○ 무관세국가군: 저개발국(C국) 및 EEC 가입국

- C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페루, 잠비아 등 34국

- EEC: EU역내국가와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등

○ EU와 최혜국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SPGL국)

-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 EU와 특별관세협정을 맺은 국가군: 최혜국보다 우대

- 동구권 4개국(PHC):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 EU가 우대지역으로 지정한 국가군

- 마그레브국가(MGB):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 AKP: 아프리카, 카리브연안국, 태평양지역 국가군

- 구유고지역: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 기타 : 이상의 관세특혜나 우대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EU공통관세가 적용된다

○ 한 국가가 상기 분류법 중 2개 항목 이상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同)국가에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함.

자료원 : ABA 발행, Austrian Tax Law (2007년 12월))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개요

91년 말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구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표시 채권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 나) 외환거래

외환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거래, 자본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14,500 유로 이상의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는 없지만 국내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지역이나 특별 산업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5 - 7% 수준인데, 최근 기준금리인 Euro Libor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대출금리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 다) 금융권의 대외신인도 및 가용외환보유고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신용 평가 기관에서 최고점수인 트리플 A로 평가 받고 있다.

외채는 GDP의 약 12%선인 321억 불인데 이 수치는 보유 외환 및 금 보유 현황을 고려할 때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다.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연감 2007 및 오스트리아 일간지 보도 종합(2007년 12월 13일)

## 8) 투자유의사항

### 가)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철저한 준비

가급적 사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투자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오스트리아 기관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지 투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에 나서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 나) 법인설립시 전문가 활용 바람직

오스트리아에서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오스트리아 내국인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 외국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회사 설립 실무를 전문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3. 체코 국가개요

### 가. 일반 사항

체코는 2004년 5월 1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다른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EU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EU 외에 WTO, IMF, OECD 등의 국제기구에도 가입하고 있다. EU 가입에 따른 수출 및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호조로 체코 경제는 2004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3-91> 체코 일반 사항

국 명	체코 공화국(영문: The Czech Republic, 현지어: Ceska Republika)
위 치	북위 48-51도, 동경 12-19도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접경)
면 적	78,864km <sup>2</sup> (한반도의 1/3, 산악:평지=3:7)
기 후	대륙성 기후. 겨울이 비교적 온화. 여름이 무덥지 않다 (연평균 9-10도)
수 도	프라하(Praha)
인 구	1,033만 명 (2007년 6월 말 기준)
주요 도시	프라하(120만 명), 브르노(37만 명), 오스트라바(34만 명), 올로모츠(23만 명), 플젠(18만 명) 등
민족(인종)	체코 모라비아인(94%), 슬로바키카인(2%), 기타(4%)
언 어	공용어: 체코어 / 상용어: 영어, 독일어
종 교	가톨릭(39.2%), 개신교(9.2%), 회랍 정교(3.4%), 무교(40%), 기타(11.2%)
건국일(독립일)	1918.10.28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자료원: 체코 통계청 및 체코 정부, 2007.10; KOTRA 재인용, 2007.11

### 나. 경제 개요

체코 경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GDP에서 제조업과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각각 48%와 8%에서 2005년에는 31.3%와 3%로 낮아진 반면, 도·소매업, 음식업, 금융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체코의 무역량은 EU 가입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6년에는 체코의 주력시장인 서유럽의 경기회복과 자동차 수출의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951억 달러, 수입 932억 달러, 무역흑자 19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표 3-92> 체코 경제 지표

GDP	US\$ 1,425억 (경상가격, 2006년)
실질경제성장률	6.4% (2006년)
1인당 GDP	US\$ 13,848 (2006년)
실업률	7.1% (2006년)
물가상승률	2.5% (2006년)
화폐단위	Czech Crown (CZK, Kc)
환율	US\$ 1 = CZK 19.512 (2007.10.4 기준)
외채	US\$ 583억 (2006년 말)
외환보유고	US\$ 315억 (2006년 말)
산업구조	제조업 (24.5%), 서비스업 (67.0%), 건설업 (6.1%), 1차 산업 (2.4%) (2006년)
교역규모	- US\$ 780억 (수출), US\$ 763억 (수입), 무역흑자 US\$ 17억 (2005년) - US\$ 951억 (수출), US\$ 932억 (수입), 무역흑자 US\$ 19억 (2006년)
교역품	- 수출 : 자동차, 기계류, 기초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수입 :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원유, 가스

자료원: 체코 통계청 및 체코 중앙은행, IMF, 2007.10; KOTRA 재인용, 2007.11

1998년 5월 투자 인센티브법 도입 이후 FDI 유치가 본격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국영통신회사 매각과 제조업투자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對체코 최대 투자국은 네덜란드로 총 180억 달러를 투자,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의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이 135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93> 체코의 FDI 유치 동향

(단위: 천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564	848	210	497	1,166	596	6,662

자료원: 체코 중앙은행

#### 다. 우리나라의 對체코 관계

우리나라는 1990년 체코와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체코의 EU 가입 이후 수출 면에서 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체코 수출은 2006년 5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6.5%나 증가했다. 주력 수출상품은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기계류 등이며, 현지투자 증가로 반도체와 금속공작기계 등 설비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표 3-94> 한국-체코 관계**

<b>체결 협정</b>	외교관계 수립(1990.3)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1990.10 서명, 1991.4 발효)
	항공협정 (1990.10 서명 및 발효) - 항공협정 개정 (편명 공유 조항 등 신설) 협상 타결 (2004.5)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및 투자보장 협정 (1992.4 서명, 1995.3 발효)
	'00-'02간 문화교류 시행계획 의정서 서명 (2000.5)
	문화협정(1994.10 서명 및 발효)
	사증 면제 협정 (1994.10 서명, 1994.11 발효)
	과학기술 협력 협정 (1995.3 서명, 1995.4 발효)
	원자력 협력 협정 (2001.3 서명)
<b>교역규모</b>	- 체코로의 수출 : US\$ 5억 6,000만 - 체코에서의 수입 : US\$ 2억 6,000만 - 무역흑자 : US\$ 3억
<b>교역품</b>	- 체코로의 수출 : 승용차, 컴퓨터 부품, 금형, 무선통신기기, 기계류, 반도체 등 - 체코에서의 수입 :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유리공예품, 수동부품, 컴퓨터부품 등
<b>투자교류</b>	우리나라의 對체코 투자 - 2006년 : 7건, US\$ 10억 4,000만 (신고기준) - 2006년 말 누계 : 15건, US\$ 11억 (신고기준)
<b>교민</b>	약 1,100여 명 (대사관 등록기준)

자료원: 駐체코대사관, KOTIS, 수출입은행, 2007.10; KOTRA 재인용, 2007.11

우리나라와 체코간 경제협력은 외교관계 수립 직전인 1990년 2월 프라하에 KOTRA 무역관이 개설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3년 8,236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8억 2,285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7년 들어서는 8월까지 약 8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對체코 수출은 외환위기 이후 주춤하기도 했으나, 2002년부터 연 40% 이상 증가했고, 2004년 체코의 EU 가입을 계기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체코 투자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건수 13건, 투자금액 16억 6,577만 달러에 불과, 중동부 유럽 인접국인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 비해 극히 미약한 수준이었으나,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인해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체코 주요 투자사례로는 지난 1995년에 진출한 대우자동차를 들 수 있으나, 대우사태로 인해 현지 투자법인이 미국 업체에 매각되었으며, 2003년에 진출한 LG전자 역시 TV용 CRT를 생산하다가 브라운관 TV의 사양화로 인해 현지 공장을 매각하고 판매법인만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對체코 투자는 2005년 9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성우하이텍이 체코 북동부의 오스트라바 지역에 약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 자동차 차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6년 5월 현대자동차가 오스트라바시 인근 노소비체 지역에 10억 유로를 투자, 2009년 3월부터 연간 20

만대, 오는 2011년까지 연간 30만 대의 승용차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의 동반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3-95> 한국-체코간 수출입 실적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8월)
수출	금액(천 달러)	157,627	312,952	338,791	564,042	562,364
	증가율(%)	44.8	98.5	8.3	66.5	63.5
수입	금액(천 달러)	104,623	108,257	149,867	258,806	227,703
	증가율(%)	4.4	3.5	38.4	72.7	39.1
무역수지(천 달러)		53,004	204,695	188,924	305,236	334,661
총교역량(천 달러)		262,250	421,209	488,658	822,848	790,067

자료원: KOTIS, 2007.10

<표 3-96> 우리나라의 對체코 주요 투자기업

투자진출 시기	회사명	모기업	업종
1993.8	Kia Motors Czech s.r.o.	기아자동차	도소매업(자동차)
2003.9	LG Electronics CZ s.r.o.	LG전자	도소매업(전자)
2005.9	SungWoo Hitech s.r.o.	성우하이텍	제조업(자동차부품)
2006.6	Plakor Czech s.r.o.	플라코	제조업(자동차부품)
2006.7	Hyundai Motor Manufacturing Czech s.r.o.	현대자동차	제조업(자동차)
2006.10	Sejong Czech s.r.o.	세종산업	제조업(자동차부품)
2006.12	Dymos Czech Republic s.r.o.	다이모스	제조업(자동차부품)
2006.12	Mobis Automotive Czech s.r.o.	모비스	제조업(자동차부품)
2006.12	KOS Wire Europe s.r.o.	고려상사	제조업(강선)
2007.2	Donghee Czech s.r.o.	동희산업	제조업(자동차부품)
2007.4	Matador-dongwon CZ, s.r.o.	동원금속	제조업(자동차부품)
2007.5	Hysco Czech s.r.o.	하이스코	제조업(철강)

자료원: KOTRA 프라하무역관, 2007.10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對체코 투자는 투자신고 기준으로 투자건수 19건, 투자금액 11억 2,330만 달러로, 신고기준으로는 중동부유럽 국가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부상했다.

<표 3-97> 우리나라의 체코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6월)	누계
투자신고	건수	1	0	2	7	9	19
	금액	5.5	0	10.6	1,043.3	63.9	1,123.3
투자	건수	1	0	2	5	9	17
	금액	5.5	0	10.1	111.8	180	345.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0;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체코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체코 투자는 자동차 및 연관업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체코 정부가 낙후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EU 구조조정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앞서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체코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국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원회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또한 통상정책 역시 EU의 통상정책에 따른다.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체코는 자유화 이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온 폴란드나 헝가리와는 달리 자유화 이후에도 외국인투자에 국내 상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별다른 특혜제도를 시행하지 않다가 1998년 4월 처음으로 “투자인센티브법”을 도입하였다.

2000년 5월에는 투자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액 규모 하향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투자인센티브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 초에는 인센티브 대상 투자를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였다.

2004년 5월부터는 EU 가입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 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EU 규정이 변경되는데 따라 “투자인센티브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나) 투자 장려 분야

체코 정부는 체코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부문 및 하이테크 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점을 두고 있다.

○ 체코 주요 중점 산업 분야

- Electronics
- Precision Engineering and Automobile Industry
- Chemicals and Plastics

○ High-tech 산업

- Microelectronics and Semiconductors
- Biotechnology and Pharmaceuticals
- Optoelectronics

○ High-tech 서비스 분야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oftware Development
- Strategic Service : Shared Service Centers, Expert and Solution Provider Center
- High-Tech Repair Centers

#### 다) 외국인 투자 제한

체코는 기업 인수 이든 신규 법인 설립이든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정부의 별도 승인 등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액의 규모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체코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하여 회사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그러나 군수산업 및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재무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미디어의 경우 공중파 방송은 방송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은 등록 절차만 필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체코 중앙 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에는 통상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설 은행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CZK 5억이며, 체코 내 법인이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 시에는 중앙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 소유가 외국인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며, 지사나 현지법인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다.

체코의 외환 관리 규정에 따르면 투자 지분에 대한 정부의 허가는 요구되지 않으며, 투자 지분에 대한 대정부 보고 의무도 면제되고 있다. 투자 지분의 해외 외국환 은행 예치도 허용되며 과실 송금 또한 자유롭다.

## 라) 외국인 투자 보호

체코는 1995년 12월 구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OECD(경제개발 협력 기구) 회원국이 되면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 대우 및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한 등에 대한 OECD 기준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 이외에 체코는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회원국이며, 국가별로 상호 투자 보호 조약을 체결한 국가 들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투자가 보호된다.

## 마) 투자허가

기업인수든 신규 법인 설립이든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투자 시 체코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체코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체코기업과 동일한 기업설립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러나 투자에 따른 체코정부의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체코투자청(CzechInvest)에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는 투자대상 산업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 바) 투자 인센티브제도

### 1)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 □ 인센티브 지급제외 대상 산업

##### ○ 철강산업

##### ○ 인조섬유(Synthetic fiber) 제조업

#### □ 인센티브의 종류

##### ○ 법인세 감면

- 신규 투자기업에 최장 5년간 법인세 면제

- 기존 기업의 추가 투자에 대하여 최장 5년간 법인세 부분 감면

##### ○ 고용창출 보조금(Job-Creation Grants)

-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A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CZK 200,000 지원

##### ○ 교육 및 재교육(Training and Re-training) 보조금

-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A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의 최대 35% 지원(중소기업은 최대 45% 까지)

\* 고용창출 보조금과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은 노동부와 협약에 의하여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은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다

○ 공장부지 지원

- 중앙 또는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를 공장 건설 부지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 인센티브 수혜 조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 시설이 체코의 환경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투자 지역에 따른 최소 투자액 등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통적인 인센티브 수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생산시설의 건립 또는 현 생산시설의 확장을 위한 투자여야 한다
- 최소투자 규모는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A지역의 경우 CZK 5천만, B지역 CZK 6천만, C지역 CZK 1억 이상
- 최소투자금액의 50%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 총 투자금액의 최소 60%를 기계설비(신품이어야 한다)에 투자해야 한다
- 인센티브 수혜조건은 인센티브 공여일로부터 3년 내에 충족되어야 한다
- 체코투자청(CzechInvest)로부터 프로젝트등록확인서(Confirmation of Project Registration) 를 발급받기 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인센티브 수혜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 고용창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신규 창출된 종업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 생산시설은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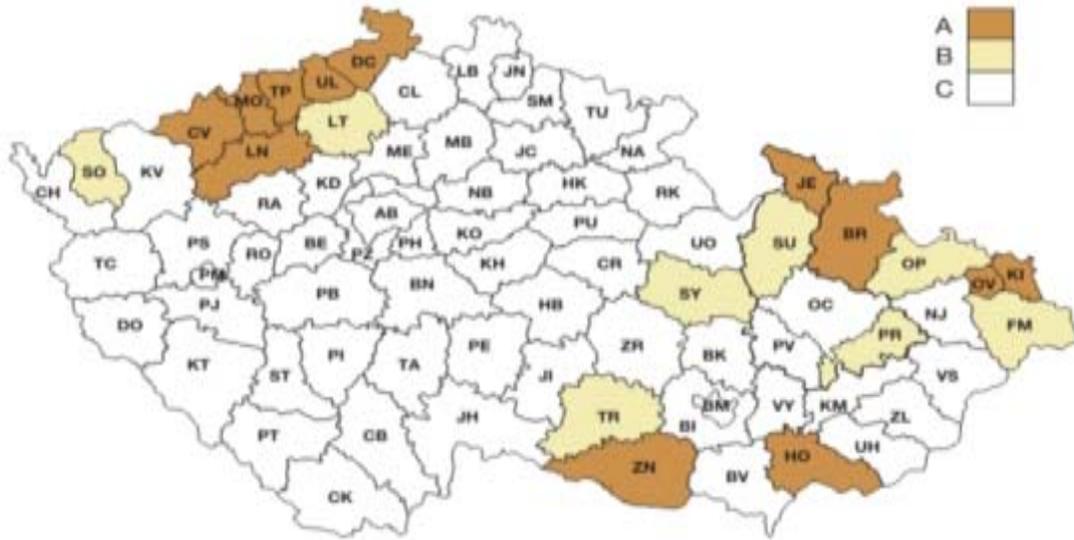
<표 3-98> 체코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조건

(단위: CZK 백만)

	A지역	B지역	C지역
최소 투자액	50	60	100
최소 자기자본	25	30	50

주: A지역-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소 50% 이상 높은 지역, B 지역-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소 25% 이상 높은 지역, C지역-기타 지역

<그림 3-5> 체코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조건



주: 동 지역 구분은 2007년 말까지 유효함

□ 인센티브 수혜 한도

인센티브(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제외) 총액은 EU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제공 가능하며 최대 수혜한도는 지역별로 유효 투자비의 0~40%로 차이가 있다.

투자금액이 5천만 유로 이하일 경우 소기업(종업원 50명 미만, 자산 및 연매출액 1천만 유로 이하)은 지역별 최대 수혜한도보다 20%, 중견기업(종업원 250명 미만, 자산 4,300만 유로 이하, 연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의 경우 10%를 증액하여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의 경우 전체 투자 중 5천만 유로- 1억 유로에 대해서는 최대 수혜한도의 50%,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수혜한도의 34%가 적용된다.

EU 산업분류(NACE) 기준 화학 및 제약산업(DG), 기계장비 제조업(DK), 전기광학장비 제조업(DL), 운송기기 제조업(DM)에 속하지 않는 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는 지역별 수혜한도의 75%가 적용된다.

인센티브 신청 절차

- CzechInvest에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CzechInvest에서 1개월 이내 서류 검토 후 산업무역부에 제출
- 산업 무역부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취합하여 2개월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 형태 및 규모를 포함한 “투자인센티브 지원 제안서(Offer of Investment Incentives)” 발급
- 투자자는 산업무역부의 제안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6개월 이내에 회신

- 산업무역부에서 투자자의 동의를 CzechInvest를 통하여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투자 인센티브 지원 결정서(Decision to Grant Investment Incentives)” 발급

2) Technology Centers & Business Support Services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수혜대상 투자분야

○ Technology Centers

- 하기의 산업분야에 관련된 하이테크 제품 및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Aerospace

- Computers and office machines

- Electronics and micro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 Pharmaceuticals

- Automotive

- Electronic machines

- Chemical products

○ 기업지원서비스(Business Support Services)

- Customer Contact Centers: 콜센터, 기술지원 등 고객 지원센터

- Shared Services Centers: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재무, 마케팅, 홍보, IT 등 일반 업무 분야의 아웃소싱 센터

- ICT Expert Solution Centers: IT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등 아웃소싱 센터

- Software Development Centers: 외국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High-Tech Repair Centers: 컴퓨터,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항공기 등의 A/S 센터

인센티브

○ 영업활동 보조금(Subsidy)

- 연속 2년간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2년간 평균임금(사회보장세 기업부담금 포함)에 대하여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0-40%)내에서 보조금 지급

-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는 제조업과 동일
  -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 교육 및 재교육에 소요된 비용의 35%(프라하는 30%) 지원
  - . 신규 고용 창출 100명 미만: 3년간 교육비용의 35%
  - . 신규 고용 창출 100명 이상(Customer Contact Centres는 150명 이상): 5년간 교육 비용의 35%
- \* 중소기업은 10% 상향 조정
  - 기타 조건
  - 상기 조건을 “프로젝트지원 결정서(Project Aid Decision)” 획득 후 3년 이내에 충족해야 한다
  - 투자규모 및 일자리를 5년간 유지
  - 체코 투자청(CzechInvest)로부터 “프로젝트 등록확인서(Confirmation of Project Registration)”을 발급받기 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 Business Support Services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여야 한다
  - 인센티브 신청절차
  - CzechInvest에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CzechInvest에서 60일 이내 서류 검토
  - 신청서 검토 후 CzechInvest에서 산업무역부에 프로젝트 평가서를 송부하며, 산업 무 역부에서 는 동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관련부처에 검토 요청
  - 관련부처에서 30일 이내에 산업무역부에 의견 회신
  - 산업무역부는 관련부처 의견 접수 7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형태 및 규모를 포함한 “프로젝트 지원안(Draft Project Support Decision)” 준비
  - 투자자는 산업무역부의 지원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6개월 이내에 회신
  - 산업무역부에서 투자자 동의서 접수 후 “프로젝트 지원결정서(Project Support Decision)” 발급
- 3) 신규 고용창출 인센티브
  - 지원대상 투자
    - 실업률이 체코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에만 해당되며 제조업, Customer Support Centers(Call Centers 등), Shared Service Centers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추가 투자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2007년까지 동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은 Decin, Usti nad Labem, Teplice, Most, Chomutov, Louny, Jesenik, Bruntal, Karvina, Ostrava, Znojmo, Hodonin의 12개 지역이다

□ 인센티브

○ 고용 보조금

- 신규 고용 종업원 1인 당 최대 CZK 20만까지 보조금 지원
- 최대 지원한도는 신규 고용된 종업원 2년간 급여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 교육비의 35%까지 보조금 지급
- 지급한도는 신규고용 종업원 1인 당 최대 CZK 3만

□ 인센티브 수혜 조건

○ 최소 투자액: CZK 1천만(리스를 제외한 유, 무형 고정자산 기준)

○ 최소 신규 고용창출: 10명

○ 최소 자기 자본액: CZK 5백만

○ 인센티브 지원협약이 체결된 후 2년 내에 상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지원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투자규모 및 신규 고용창출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 투자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장자산의 최초 소유주여야 한다(즉, 중고기계는 인센티브 대상투자에 포함되지 않다)

## 2) 투자 진출 형태

외국 기업은 체코 내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체코 내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체코에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4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 중 외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주식회사(a.s. Joint-Stock Company) 와 유한책임 회사(s.r.o.: Limited Liability Company)이며, 주식회사의 경우 프라하 주식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 가) 지사(Branch Office)

외국 기업의 지사는 체코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체코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 회사 설립, 합작 투자, 기존 기업 인수 및 판매 등 모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기업 설립 근거 규정이 지사 내부 활동에도 적용된다. 지사는 영업 지사와 비영업 지사의 두 가지 종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설립 절차는 동일하나 세금 적용에 차이가 있다. 2002년 1월부터 지사도

체코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지사 개설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은 지사 설치 신청서에 지사의 향후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상업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장은 체코인 이나 체코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갖고 있는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다.

상업 등기소에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사의 향후 활동 내역 및 최초 지사장을 명기한 체코 내 지사 설립을 승인한 본사 이사회 등의 공증된 결정문
- 영업 내용이 명기된 공증된 사업자 등록증 등 본사 설립 근거 서류
- 체코 영업허가소(Trade License Office)에서 발행된 영업허가서
- 지사장의 공인 사인 증명서
- 지사장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무 범죄증명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한다)

#### 나) 현지법인

□ 유한책임회사(s.r.o. Limited Liability Company)

외국 기업이 체코에 가장 많이 설립하는 현지법인 형태로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할 수 있다. 최소 1명 이상의 법정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최소 등록 자본금은 CZK 20만이다. 법정 대표 자는 회사를 대표하며 외국인의 경우 적법한 체코 내 거주 허가가 있어야 한다.

대표자는 1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등록 자본금의 증감, 이윤의 배분, 회사 청산, 이사 선임 등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설립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법적 근거 서류
- 공증된 회사 설립 의향서(establishment memorandum)
- 법정 최소 등록 자본금 은행 입금 증명서
- 체코 영업 허가소 발행 영업 허가서
- 법정 대표자의 공인 사인 증명서
- 법정 대표자의 법률 준수 서약서
- 법정 대표자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무 범죄 증명서

- 사업장 임대 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한다)
- 법정 대표자의 체코 장기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
- 회사 설립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위임장

□ 주식회사(a.s. Joint-Stock Company)

주로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최소 등록 자본금은 CZK 2백만이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 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의 임기는 5년을 넘길 수 없고(연임은 가능), 주주총회 에서 선출된다. 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 등록 자본금의 증감, 결산 승인, 이윤의 배분, 청산, 이사회 및 감사 기구의 선출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최소 3명 이상의 감사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사인은 이사회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의 1/3은 종업원 특히 노동 조합원 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감사인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할 수 있다.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증된 회사 설립 의향서(establishment memorandum)
-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주주총회 의사록
- 법정 최소 등록 자본금 은행 입금 증명서
- 체코 영업 허가소 발행 영업허가서
- 등기 이사들의 공인 사인 증명서
- 등기 이사 및 감사인 들의 법률 준수 서약서
- 등기 이사 및 감사인 들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무 범죄 증명서
- 사업장 임대 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한다)
- 등기 이사들의 체코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

**다) 설립 절차**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영업 분야별로 영업 허가서를 체코 영업 허가소 (Trade License Office)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영업 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대표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동 대표자가 기업의 영업 허가 조건 충족에 책임을 진다. 대표자는 허가 별로 지명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복수의 영업 허가

에 대하여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 대표자는 체코인이나 체코 내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을 보유한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영업 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의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종전 3개월이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일주일로 단축되었으며, 인터넷으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4) 투자입지여건

#### 가) 입지선정 시 유의사항

체코 내 공장설립을 위하여 입지를 선정할 때는 대상지역의 제반 인프라뿐 아니라 대상 토지의 법적 문제와 동 지역의 인력확보 용이성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체코는 자유화 과정에서 공산화 이전의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관계를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회복해 주어 왔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명확한 토지소유권의 획득이 쉽지 않다. 이는 토지의 현 소유주와 이전 소유주 간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등기부 등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체코 등 중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직장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공장 설립 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지역의 실업률 및 가용 노동인력 등 인력확보 용이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투자 대상지역의 실업률은 투자 시 인센티브 수혜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 나) 산업단지

체코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산업공단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지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체코 내 대부분의 산업 단지들은 우리나라 개념의 대규모 공단이라기 보다는 지방정부 및 민간 개발업체들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체코에는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200여 개 있으며, 27개의 Science and Technology Park가 설립 또는 건설 중에 있다.

산업단지는 일반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 및 비즈니스 지원시설이 양호하고, 토지의 소유권 관계 등이 정리되어 있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단지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입주대상 단지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체코 내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는 체코투자청 홈페이지([www.czechinvest.org](http://www.czechinvest.org))나 지역개발 센터(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Regional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www.iriscrr.cz)”에서 찾아볼 수 있다.

## 5) 노무관리

### 가) 노동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전반적인 생산성은 서구에 비하여 떨어지는 편이다. 비교적 숙련 인력을 구하기가 쉬운 편이나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규정은 공산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노동자들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 의 경우 10-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에 관계없이 팀 인원수 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공장 인근지에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선정 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에 규정되어 있는데, 체코의 노동법은 1965년 제정된 이후 47번의 부분 개정을 거쳐 2007.1.1일부터 대폭 개정된 “신노동법(New Labour Code)”이 시행되고 있다.

신노동법에는 이전의 노동법에 빠져있던 급여 및 여행경비, 노동안전 문제 등이 추가 되었으며, 차별금지조항은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Anti-Discriminatory Act)로 제정되었다.

현재 신노동법은 균형감을 잃고 노동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재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해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나) 임금

임금수준은 2007년 1-9월 월평균 임금이 CZK 21,119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급격한 실업률 감소로 명목 임금인상률이 2006년 6.4%, 2007년 1-9월 7.6%를 기록하여 매년 6-9%의 인상률을 보일 정도로 임금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

법정 월 최저임금은 2007년에 월 CZK 8,000, 시간당 CZK 48.10이 적용되고 있다.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급이 월평균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해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 화 현금으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다) 고용계약

체코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직무의 성격과 근무장소, 근무 시작일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고용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월 급여 및 지급일, 휴가, 종업원의 의무, 경쟁회사 취업금지 조항(퇴직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수습기간(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며 계약기간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종업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어도 종업원의 4%는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체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분기 및 3분기 월평균 임금의 1.5배를 부족한 종업원 수만큼 노동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직원 채용 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및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조치는 금지되며, 외국인의 고용은 고용주가 지역별 노동사무소에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고용허가기간은 통상 1년으로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 라)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체코의 법정 근로시간은 종전의 주당 42.5시간에서 2001.1.1일부로 주당 5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광산 등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2교대 근무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는 주당 37.5시간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 일당 6시간이다.

근로시간은 매일 동일한 시간을 일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최소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30분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 연속 근로시간이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가 끝난 후 다음 근무까지 최소 12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시간외 근무한도는 주당 8시간 및 연간 41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중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한도는 연간 150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종업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광산이나 물리적으로 부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의 야간근무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최소 125%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만큼 근무일에 휴가를 주거나 시간당 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이나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10%를 지급하여야 한다.

## 마) 휴가

### 1) 연차휴가

최소 60일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연차휴가(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근무일에 비례)를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업무상 또는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따른 휴가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 2) 출산 및 육아휴가

출산휴가는 28주(쌍둥이는 37주)이며, 산모가 원하는 경우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도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가가 가능하다.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휴가 후 고용주는 근로자를 재고용해야만 한다.

### 3) 병가

신노동법에 따르면 질병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2007.1.1일부터 첫 14일간은 고용주가 질병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항은 시행이 1년간 연기되어 2007년에는 종전과 같이 질병보험에서 지급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다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4.5배를 상배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미망인에게 CZK 15,000, 자녀 1인당 CZK 25,000, 부모에게 CZK 15,000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 바) 해고

노동법상 고용계약은 합의에 의한 경우, 해고 통보, 즉시 해고, 수습기간 중의 해고, 고용 계약의 만료 또는 피고용인의 사망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피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코 내 거주허가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경우에도 노동계약이 해지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계약의 해지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용주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고용계약 만료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종료일에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 합의를 작성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1부를 주어야 하며, 피고용인이 요구하는 경우 동 합의서에 계약해지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해고 통지

고용주나 피고용인은 최소 2달 전(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30일 전)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가 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철회 통지 및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통지 최소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협의회 (Work Council)와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유와 해고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용인은 2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직을 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 회사 청산 및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 생산제품, 기술, 생산성 향상 또는 조직개편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 피고용인이 주어진 업무에 대한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장기적인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고용주의 정당한 작업 재배치에 피고용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 3) 즉시 해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용인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거나, 근로규칙을 빈번히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 경우 서면으로 즉시 해고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즉시 해고 사유를 인지한 지 1개월 이내에 해당 피고용인을 해고시켜야 하며, 즉시 해고 사유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와 육아휴가 중인 남녀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가 불가능하다.

한편, 피고용인은 건강진단의 결과 더 이상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한 후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해당 피고용인을 다른 적절한 업무에 배치 하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사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용인은 2달치 임금을 보상금으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사) 노조

체코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자의 조합가입은 자유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수는 2006년 6월 기준 약 11%로 1989년의 92%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영역은 단체협상(고용자 및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상호간 관계설정)과 통제, 노동법상의 피고용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보호, 피고용자 사회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토론 참가 등인데 노동조합은 조합과 경영자간의 상호협정을 제외한 업무협약에 참석할 수 있으며 조합은 회사의 경영상태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5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노동자들이 감사위원회의 3인 중 1명을 선출할 권

리가 있으며. 그밖에 경영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입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은 없다.

## 아) 사회보장제도

체코 내에서 일하는 모든 체코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체코의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연금보험, 실업보험, 질병보험의 사회보장성 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및 종업원이 법률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사회보장세율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사회보장 세율

체코의 사회보장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연금, 질병, 실업의 3대 사회보장세 34.0%와 의료보험 13.5%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35.0%, 종업원이 12.5% 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라 2008년부터는 사회보장세 적용대상 소득이 체코 월평균 임금의 48배까지로 한도(Cap)가 설정되어 더 높은 소득에 대해서도 동 금액까지만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며, 2008년도 한도는 CZK 1,034,880 이다.

### 2) 사회보장세 신고 및 납부절차

고용주는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시작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8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신상에 변화(이름 변경, 결혼, 주거지 변경 등)가 생긴 경우에도 8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건 당 CZK 2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보장보험의 신고는 각 지역별 Czech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CSSZ)에 하며 의료보험은 General Health Insurance Company(VZP)에 한다.

사회보장세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부담 분까지 사전 공제하여 매 분기별로 CSSZ 및 VZP의 구좌로 각각 송금하여야 한다.

## 6) 조세제도

체코의 조세제도는 1993년 1월에 시행된 소득세법(Income Taxes Act, Law 586/1992)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지사를 포함하여 체코 내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회계법(Accounting Act)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로 납세자가 회계연도(Tax Period)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계연도를 역년(Calendar year)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체코 정부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2007년 8월 21일 하원을 통과하여 10월 5일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2008년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율이 대폭 인하되고, 부가가치세 할인세율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체코의 소득세 제도는 신고납부 제도를 따르고 있다.

**가)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24%**

- 2008년 21%, 2009년 20%, 2010년 19%로 단계별 인하 예정
- 기타 원천과세(Withholding taxes)
  - 체크 비 거주자에 대한 배당, 로열티 등에 부과

**<표 3-99> 체코의 대상별 세율**

세율	적용 대상
<b>25%</b>	License payments, royalties, rents and operating lease payments, copyright payments, payments for technical assistance, business consultancy and other related services
<b>15%</b>	Dividends, profit shares and other related distributions, depository promissory notes
<b>1%</b>	Financial lease payments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일부 세율 감면
  - Dividends : 5% 또는 10% (한국 기업이 25% 이상의 지분 보유 시 5% 적용)
  - Interest : 0% 또는 10% (정부에 대한 경우 0% 적용)
  - Royalties : 0% 또는 10% (저작권에 대해서 0% 적용)
- 2008년부터 15%로 단일화되고, 2009년부터는 12.5%로 인하예정

**나)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과세소득에 따라 15%-32%**

**<표 3-100> 체코의 대상별 세율**

과세소득(CZK)	개인 소득세
<b>0-121,200</b>	12%
<b>121,201-218,400</b>	CZK 14,544 + CZK 121,200 초과소득의 19%
<b>218,400-331,200</b>	CZK 33,012 + CZK 218,400 초과소득의 25%
<b>331,200 이상</b>	CZK 61,212 + CZK 331,200 초과소득의 32%

- 2008년부터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2008년 15%, 2009년부터 12.5%로 인하
- 과세 소득은 공제 대상이었던 사회보장세 본인 부담분 뿐 아니라 고용주 부담분도 개인 소득에

포함되는 Supergross Wage로 확대, 실효세율은 2008년 23.1%, 2009년 이후 19.4%이다

#### 다) 부가가치세(VAT) : 19%

- 식품류(과자, 커피, 차 등 포함), 서적, 의약품, 의료관련 서비스, 교통, 문화서비스 등은 5%
- 2008년부터 5% 세율 적용대상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이 9%로 인상

라. 소비세(Excise tax)

-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에 부과

#### 라) 도로세

-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에 따라, 트럭 등 상용 차량의 경우 차축 수와 중량에 따라 부과된다
- 세금은 승용차의 경우 연 CZK 1,200 - 4,200, 트럭의 경우 CZK 1,800 - 50,400 이다

#### 마) 부동산세(Real estate tax)

- 토지세와 건물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와 지역,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름
- 2008년부터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사.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3%

#### 바) 상속세: 0.5% - 20%

- 직계 준비속에 대해서는 면제
- 2008년부터는 방계친척(형제, 자매, 3촌 이내,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준비속)에 대한 상속세도 면제

#### 사) 증여세: 1% - 40%

- 2008년부터 직계 준비속 및 방계 친척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차. 기타
- 2008년부터 전기, 가스 및 고체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신설
  - 전기: CZK 28.30/MWh
  - 가스: 가스 종류에 따라 CZK 0/MWH-CZK 264.80/MWh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외환관리

체코의 외환관리는 '95년 10월 1일부로 신외환법이 발효되면서 크라운화의 완전대환이 실시되고 있다. 이 조치로 경상거래의 완전자유화 및 자본거래의 일부 자유화가 실시(IMF 8조국)되었으며 체코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완전자유화, 기업 및 개인의 외환구좌 보유 허용 그리고 개인의 외환보유 무제한 허용 조치가 이루어졌다.

외환거래에 있어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도 어떠한 제약도 없다.

## 나) 현지 자금조달 방법

현지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현지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체코의 은행들은 투자자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이다.

현재 한국 데스크가 운영되고 있는 체코 은행은 다음과 같다.

○ KB(Komerční banka)

- Add : Vaclavske nam. 42, 114 07 Praha 1, Czech Republic

- Tel : +420 222 420 119

- Fax : +420 222 420 202

- E-mail : inho\_lee@kb.cz

- 담당자 : 이인호, Relationship Manager(M/P: +420 606 711 770)

○ CSOB(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 Add : Radlicka 333/150, 150 57 Praha 5, Czech Republic

- Tel : +420 224 114 169

- Fax : +420 2224 119 577

- E-mail : jknoppova@csob.cz

- 담당자 : Mr. Prmysl Hanzelka, Director of Corporate Sales(M/P: +420 603 800 391)

Ms. Jolana Knoppova, Int'l Corporation Desk(M/P: +420 737 201 301)

## 8) 투자유의사항

### 가) 무역거래 시 애로사항

체코는 EU 국가로 무역이 자유화되어 있어 무역거래에 있어서 법적인 애로사항은 없다.

그러나 체코 바이어들의 대부분이 인보이스에 의한 역내 거래에 익숙해져 있고 아시아 등 원거리 국가와의 무역거래 경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가격조건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실수요자인 공장등과 거래 시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체코어 통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나)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 시 명확한 토지소유권 획득이 쉽지 않은데, 이는 공산화 이전 소유권 자들과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장부지 매입 때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역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인설립 및 공장 건설을 위한 각종 인허가 서류가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관련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이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투자 시에는 유능한 컨설팅업체나 법률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14. 터키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나라로, 13세기 말 오스만투르크 제국(1297~1922)이 성립하였고 1922년 술탄제(制)를 폐지하였다. 1923년 10월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고 1924년 칼리프제(制) 폐지와 함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식명칭은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연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 에게해에서 그리스와 해역·상공·영토에 관련된 분쟁을 벌이고 있고, 1984년부터 쿠르드족(族)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터키 정부를 상대로 유혈투쟁을 벌여왔다. 행정구역은 81개주(il)로 되어 있다.

터어키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유럽과 아시아에 영향을 주고 받아 왔다. 강한 민족의식, 견고한 위계질서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의 명예, 및 무사기질을 중시하는 터어키인의 특성은 이슬람의 전통적 윤리와 융합되어 서구화된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계층간 윤리관의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 터어키인의 윤리는 코란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고와 행위가 숙명론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터키 인구의 약 99%가 이슬람교도(수니파)로 민중에 대한 이슬람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 공화국 성립 후 종교적 인습은 차례로 폐지되었으며, 공화국 헌법에서 국교(國教)로 제정되었던 이슬람교 역시 뒤에 해당 자구(字句)가 삭제되었고 1961년에는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에 비해 종교적 색채가 덜하다. 전체 인구 74,709,412명(2005년) 중에서 터어키계가 86%, 쿠르드계가 9%, 기타 아르메니아계 등이다.

터키인의 대부분은 스포츠 애호가이며 터키에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 클럽이 있다. 특히 축구나 농구 등의 프로 스포츠가 인기가 높으며, 레슬링은 전통적인 터키의 스포츠로서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따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표 3-101> 터키 일반 사항**

국 명	터키공화국 (Republic of Turkey)
위 치	유럽 남동부 및 아시아 서부
면 적	783,562km <sup>2</sup> (남한의 7.8배)
기 후	지중해성기후(해안) 대륙성기후(내륙)
수 도	앙카라 (Ankara)
인 구	73,875,000명
주요 도시	Istanbul(1,192만명), Ankara(445만명), Izmir(378만명), Bursa(247만명), Adana(201만명), Gaziantep (145만명)
민족(인종)	터키계(86%), 쿠르드계(9%), 아랍인(36만명), 아르메니아인(5만명), 소수의 유대인 등
언 어	터키어 (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종 교	이슬람교(99.8%, 수니파 다수), 기타(0.2%, 기독교 및 유대교)
건국일(독립일)	1923년 10월 29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자료원: 터키통계청, TAIK(Turkish-U.S. Business Council) 등; KOTRA 2008.04 재인용

## 나. 경제 개요

터키는 높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경제가 만연해 있는데, 터키 세무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의 지하경제 규모는 개발도상국 평균인 GNP 대비 30%를 크게 웃도는 50%에 달해 세원확보 및 불공정경쟁 유발로 인한 자본 및 투자시장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형태로 근무하는 종사자 수도 3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하경제규모를 소득에 반영한다면 터키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실제 국민 소득인 5,000 불보다 훨씬 높은 8,000 불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국민 다수가 이슬람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친 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유럽과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잇는 경제적 가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흡수하여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흑해 주변 동유럽 국가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들과도 우호 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터키는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품과 문화의 전파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해양교통의 연결로에 위치하여 흑해 주변국가들에 대한 상품공급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3-102> 터키 경제 지표

GDP	3,485억 불(2007년 3/4분기)
실질경제성장률	3.8%(2007년 3/4분기)
1인당 GDP	5,126 불(2006년)
실업률	9.3%(2007년 9월)
물가상승률	8.86%(2007년 11월)
화폐단위	New Turkish Lira(YTL)
환율	US 1 불 = 1.18YTL(2007년 12월 현재)
외채	2,264 억 불(2007년 2/4분기)
외환보유고	1,036 억 불(2007년 10월)
산업구조	농수산업 및 임업(11.1%), 제조업(29.3%), 서비스업 (59.6%) (2006년)
교역규모	855.02억 불(수출), 1,382.95억 불(수입) 무역적자 527.93억 불(2006년) 861.55 억 불(수출), 1,370.36억 불(수입) 무역적자 USD 508.82억 불(2007년 10월 누계)
교역품	수출: 자동차, 기계류, 철강, 의류 수입: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계및장비, 자동차, 플라스틱류

자료원: 터키 중앙은행, 대외무역청, 통계청, EIU; KOTRA 2008.04 재인용

## 다. 우리나라의 對터키 관계

터키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나라를 혈맹 우방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다. 터키는 UN, IAEA 등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부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터키정부는 차세대전차 및 훈련기 도입에 있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등 국방조달분야에서도 새롭게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양국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없으나 한국의 對 터키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된다는 따라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터키정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국간 산업 구조 및 산업 발달 정도에 기인하는 문제로 한국이 수출할 품목은 많은 반면 수입할 품 목이 많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무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문제점은 한국인 터키 관광객 증가 및 한국기업들의 對터키 투자를 통하 여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인 터키 관광객 숫자는 1999년 15,000명 에서 2005년

92,040명까지 급증하였으며 2006년에는 108,399 명의 관광객이 터키를 방문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對터키 투자의 경우 1987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108건에 USD 3억 6천만 불(신고기준) 수준으로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표 3-103> 한국-터키 관계**

<b>체결 협정</b>	사증면제협정 (72.5) 문화협정 (74.5)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77.12) 항공협정 (79.10) 2중과세방지협정 (86.3) 투자보장협정 (94.6) 섬유협정 (97.12) 원자력협력협정 (99.6) EDCF 기본협정 (03.4 서명, 미발효) 관광협력협정 (06.10 서명, 미발효)
<b>교역규모</b>	2006년 -30억 4천만 불(우리나라 수출) -1억 9천만 불(수입): 무역흑자 28억 4천만 불 2007년 10월 누계 -34억 2천만 불(우리나라 수출) -2억 5천만 불(수입): 무역흑자 31억 7천만 불
<b>교역품</b>	-터키로의 수출 : 자동차, 무선통기기기,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형 양구조물 및 부품 -터키에서의 수입 : 원유, 의류, 자동차부품, 기호식품
<b>교민</b>	총 교민 수 약 1,400명(일시 체류자 포함) (2007년 추정)

자료원: 터키 대외무역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KOTRA 2008.04 재인용

터키는 한국의 전세계 수출대상국 중 2005년 23위, 2006년 25위에 이어 2007년 11월 현재 19위(금액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터키의 수입대상국 중 10위(2005년) 및 11위(2006년, 2007년 11월)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 터키 수출증가율은 2003년 58.8%, 2004년 71.4%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 하였으나, 2005년 18.1%, 2006년 9.1%로 다소 둔화되었다. 그러나, 2007년 11월 35.3%로 다시 수출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터키로부터의 수입은 아직 수출에 비해 미미한 편이나 증가율은 2005년 22.5%, 2006년 52.5%에 이어 2007년 11월 4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터키로부터의 수입 규모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 터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전자 부품 및 철강 제품 등이다. 2006년에 산업용 전자 제품, 전자 부품, 철강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2007년 상반기에는 선박 및 그 부품, 철강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터키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류의 경우 2005년부터 섬유 쿼터가 폐지되어 수출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으나 고급 직물 위주로 수출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광물류, 자동차 부품, 식품류, 섬유 제품 등이나 그 규모는 수출에 비해 매우 적은편이다.

**<표 3-104> 한국-터키간 수출입 동향(2007년 1-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11월)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터키 수출	1,375	2,356	2,782	3,036	3,760	35.3%
對 터키 수입	78	104	127	194	267	44.4%
무역수지	1,297	2,252	2,655	2,841	3,492	-

자료원: 관세청; KOTRA 2008.04 재인용

우리나라의 對터키 투자는 2007년 9월 말 기준으로 투자신고기준 총 108건, 351,685천 불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3건(금액기준: 294,361천 불)로 전체에서 8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투자지역은 대부분 이스탄불 및 이즈미트, 부르사 등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마르마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터키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터키가 가진 7,400만 인구의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EU 시장을 겨냥한 투자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터키는 EU시장에 근접하여 있으면서도 풍부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EU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이며, 실제로 터키는 수출의 60% 정도를 EU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터키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자동차부품, 섬유 등을 중심으로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업체의 문의가 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수준이 터키기업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터키인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對터키 투자는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05> 우리나라의 對터키 업종별 투자현황(1987~2007.9월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 스업	총계
투자건수	1	2	94	4	11	4	5	9	137
투자금액	217	14,250	200,821	2,040	14,160	381	550	437	232,857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A 2008.04 재인용

<표 3-106> 우리나라의 對터키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No.	회사명	투자연도	진출형태	투자금액
1	기아자동차	1999	현지법인	96,685
2	삼성전자	1982	현지법인	96,117
3	현대중합상사	1987	현지법인	70,757
4	효성	1977	현지법인	61,373
5	삼성물산	1975	현지법인	57,004
6	삼성코닝	1994	현지법인	33,400
7	현대자동차	1992	현지법인, 연구소	31,361
8	삼성SDI	1992	현지법인	26,784
9	하이닉스	1988	현지법인	26,314
10	LG상사	1975	현지법인	11,437

자료원: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및 개별법인 접촉; KOTRA 2008.04 재인용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터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국제 기준에 따른 투자 및 투자자의 의미를 정의,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의 일환으로 FDI 법을 발표하였다.

#### 가) 투자 장려분야

터키의 기본적인 투자정책은 내외국인 동등 대우이다. 다만, 일부 산업은 국가독점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출이 제한되나 관광, 교육, 보건,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도 보장 된다. 실제로 내국인 고용의무, 수출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의무 등 제한이 없으며 과실 송금도 보장되며 자본금의 외화구좌 납입도 보장된다. 외국인 투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공단을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분야보다 투자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지역을 크게 3개(개발지역, 일반지역, 개발장려 우선지역)로 나누어 이스탄불(인근지역 포함), 앙카라, 이즈미르 등 개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일반지역, 개발장려 우선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유 무역 지대에서는 아래의 분야에 대한 투자시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 연구개발 투자
- 환경보고 관련 투자
- The High Commi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및 TUBITAK(The Scientific and Techni

cal Research Council of Turkey)가 선정한 고급기술 투자

- 지역 불균형 개선이 목적인 투자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를 장려 하고 있어서 이 분야도 투자진출 검토 대상이다. 1996년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 체결을 계기로 세계 최대경제 경제블록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CIS 지역 및 중, 동구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세계 10위권의 해외 직접 투자(FDI) 유치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나) 투자 제한분야

터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 라디오 TV 방송(방송법 Law No: 3984)

-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EU에서 20 09~2013년까지 외국인 지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국내 민간 항공(항공법 Law No: 2920)

- 터키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의 수송은 터키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이루어 져야 한다.

- 국내해운(해운법 Law No: 815)

- 터키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터키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터키 국민들만 수행이 가능하다.

- 예외적으로 터키 국적 선박에 없는 특수 목적 선박의 경우 외국 선사들이 최소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허가 취득이 가능하다.

- 선박소유(무역법 Law No: 6732)

- 터키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 의 과반 수 이상이 터키 국민이어야 가능하다.

- 전화 및 전보 서비스(통신법 Law No: 406)

- Turk Telekom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4.6.16일부로 투자제한 해제된다.

-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터키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투표권만 보유)

- 정부조달(정부조달법 Law No: 4734)

- 정부조달 관련 입찰시 외국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터키산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음.

○ 수산업(수산물법 Law No: 1380)

-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터키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 양식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이 2003.7.22일부로 해제된다.

○ 요트 선착장(관광 촉진법 Law No: 2634)

-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터키 국민 또는 터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 인력알선회사(고용법 Law No: 4904)

- 터키 국민만 인력알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사설 경호 서비스법: Law No : 5188)

- 터키 국민만 인력알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광산, 석유, 전력, 천연가스의 경우 특별조항에 따라 투자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터키가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 다) 투자 인센티브

<표 3-107> 터키의 투자지역 구분

지역 구분	주요 지역
개발 지역	이스탄불 및 근교, 이즈미르, 앙카라, 부르사, 안탈라, 아다나
일반 지역	터키 서부 및 중부
개발장려 우선지역	터키 동부, 남동부, 중동부, 북부

터키는 국내 및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투자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 인센티브와 비세금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다음은 투자 인센티브 종류이다.

○ 관세 및 기금 면제

○ 부가세 면제

○ 투자대출 지원

○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면제

- 전기세 지원
- 토지 무상제공
- 연구개발 지원

또한 투자지역과 투자규모, 그리고 기타사항에 따라 지원 가능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인센티브 항목들은 통상 일반 지역, 개발장려 우선지역 투자시 지원되며 이스탄불 등의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공단에 투자를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라) 투자인센티브 항목별 내역

### 1) 관세 및 기금 면제

투자 목적인 수입 기계 및 장비에 한하며 사전에 GDFI(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재 및 중간재는 제외된다.

### 2) 부가세 면제

투자 목적으로 수입 또는 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및 장비에 한하며 사전에 GDFI(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투자대출 지원

개발 장려 우선지역 투자, 중소기업 투자, 연구개발 투자, 환경 투자에는 투자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 4) 개발 장려 우선지역 투자 인센티브

신규 고용 직원 급여의 소득세 80-100% 면제, 신규 고용 직원의 사회보장세 80-100% 면제, 신규고용 직원 수에 따라 터키 재무성이 사용 전기세의 20 - 50% 지원(이상 2008년 12월 말까지 적용), 공유지 투자용지 무료 할당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5)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1~250명의 고용인 또는 100만~2,500만 YTL(USD 86만~2,174만)의 매출액 또는 자산가치 규모의 기업을 설립할 경우 관세 및 기금 면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이자 지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6) 연구 개발 지원

TUBITAK(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ouncil of Turkey)에서는 제품 컨셉 개발, 기술 실용성 조사, 테스트 제품 생산, 판매 후 발생하는 제품 디자인 문제 해결 등과 관련 된 활동을 지원하며, TTGV(Turkish Technology Development Foundation)에서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금을 대출해준다.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투자형태별 특징

#### 1) 지사

외국기관의 지사는 외국 모회사 소속으로 공식적인 지사임을 명시해야 하며, 외국의 은행 및 보험 회사의 지사일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외국기관의 지사인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익은 터키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나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세금 납부시 터키에 납부의무가 없다.

#### 2) 연락사무소

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재무성 산하 GDFI(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을 얻은 후 터키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 3)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의 주주가 참여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은 5만 YTL (약 38,500 불)이다. 이사회 구성은 최소 3인이며 주주들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관에 의해 지정된다.

#### 4) 유한책임회사

발기인은 최소 2인에서 최대 50인으로 구성되며, 최소 설립 자본금은 5,000 YTL (약 3,850 불)이다. 단, 금융업과 보험업에는 진출할 수 없다. 지정된 경영인이 회사 전권을 위임받으며 이사회는 없다. 회사 경영방침은 주주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 나) 투자형태별 설립신청서류

#### ○ 지사

- 이사회 혹은 승인된 기관의 지사 설립 결의서
- 자본금 납부확인 은행 증명서
- 소비자 보호기금 납부증명서
-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

#### ○ 연락사무소

- 터키 재무성 산하 해외투자처(GDFI, 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 제출용 설립 허가 신청서

#### ○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 회사정관 공증: 공증을 받은 회사정관 3부(원본 1부 포함)를 공증일자 기준으로 최소 15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상업등기소(상업등기소는 지역별로 회사 설립 시 등록을 하는 곳으로 대체로 해당지역 상업회의소가 역할을 수행)에 제출
- 자본금 납부확인 증명서(은행 영수증)
- 소비자 보호기금 납부증명서(회사자본금의 0.1%를 소비자 보호기금으로 납부한 은행 납부증명서)
-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공증본)
- 실제 주주의 사진 및 여권 사본 : 주주 전체에 해당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터키 공공기관에 문의하는 방법과 사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재무성 산하의 외국인투자국(GDFI: General Directorate for Foreign Investment)과 외국인투자가협회(YASED: Foreign Investors Association of Turkey)가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문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웬만한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절차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이나 서비스는 투자관련 변호사나 법률 회사 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투자절차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가 대부분 터키어가 필요 하며 현지 변호사나 브로커가 아니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들 변호사나 회계사 혹은 브로커를 활용하고 있다.

투자신고에서 회사설립 전 과정을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업무량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보통 US\$ 5,000 정도가 소요되며,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통상 US\$ 2,000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전문가를 물색할 경우 2 - 3명 정도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활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기 진출 한국기업들로부터 우수한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다.

#### 가) 공공 기관

-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국(GDFI: General Directorate for Foreign Investment)
  - 전화: 90-312-212-5877
  - 팩스: 90-312-212-5878
  - 홈페이지: [www.investinturkey.gov.tr](http://www.investinturkey.gov.tr)
- 외국인투자가협회(YASED: Foreign Investors Association of Turkey)

- 전화: 90-212-272-5094
- 팩스: 90-212-274-6664
- 이메일: yased@yased.org.tr
- 홈페이지: www.yased.org.tr
- 대외경제관계위원회(DEIK: Foreign Economic Relations Board)
- 전화: 90-212-339-5000/270-4190
- 팩스: 90-212-270-3092
- 이메일: info@deik.org.tr
- 홈페이지: www.deik.org.tr
- 터키상공회의소연합(TOBB: The Unions of Chambers and Commodity Exchanges of Turkey)
- 전화: 90-312-413-8000
- 팩스: 90-312-418-3268
- 이메일: info@tobb.org.tr
- 홈페이지: www.tobb.org.tr
- 중소기업개발청(KOSGEB : Small and Medium Industry Development Organization)
- 전화: 90-312-32-5425
- 팩스: 90-312-230-4430
- 이메일: bilgi@kosgeb.gov.tr
- 홈페이지: www.kosgeb.gov.tr

**나) 외국인 투자관련 전문 법률 회사 명단**

**<표 3-108> 터키의 외국인 투자관련 전문 법률회사 명단**

회사명	홈페이지	비고
Pekin & Pekin Int'l Law Firm	www.pekin-pekin.com	영어상담가능
Pekin & Bayar Law Firm	www.pekin.com.tr	
Bozat & Dokmeci Law Firm	www.bozat-dokmeci.av.tr	
Yarsuvat Law Firm	www.yarsuvat.com	
Sahin Law Firm	www.sahinlawfirm.com	

#### 4) 투자입지여건

터키의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이스탄불과 인접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터키 전체인구의 1/7 이상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동 지역이 터키 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즈미트(Izmit), 부르사(Bursa) 등 이스탄불 근교 도시들에 주요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연관 효과를 볼 때도 이들 지역에 투자 하는 것이 유리하다.

터키의 3대 주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자, 섬유의 경우 이스탄불 근교에 주요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이즈미트 지역, 전자의 경우 이즈미트, 케브체 지역, 섬유의 경우 부르사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이스탄불 근교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배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 투자가 유망한 지역으로는 터키 제 3의 도시이자 에게해 지역 최대 도시인 이즈미르 (Izmir)가 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터키 내륙이 유리할 경우도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품목에 해당된다.

다만, 터키인근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터키 남동부 지역으로의 투자도 고려 할 수 있다. 남동부 지역의 경우는 인건비는 물론 공장부지 등 각종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높지 않으며, 이라크, 시리아,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진출 여건이 우수하다. 그리고 남동부 지역의 경우는 개발우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인센티브의 혜택도 많은 장점이 있다.

한편, 터키의 경우 지역마다 다양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 및 인근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지방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있어 다소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각 산업 단체별로 특정 지역을 산업단지화 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5) 노무관리

##### 가) 노동법 주요 내용

터키의 노동 관련 법규는 노동법(법률 제 1475호), 노동조합법(법률 2821호), 노동 쟁의 조정 법(법률 제 2822호) 등이다. 노동법은 고용계약서 체결에서 임금지급, 휴가기준, 퇴직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서에 의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노동쟁의 조정 법은 단체 협상, 파업, 직장폐쇄를 다루고 있다. 교사, 공무원, 군무원, 경찰은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특이한 것은 회사들은 공장지부보다는 전국적인 조합의 지도부와 협상을 벌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경영자협회의 회원가입은 협회가 자주 단체협상에서 고용주를 대표하거나 고용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나 가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터키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자유다. 즉, CLOSED SHOP, UNION SHOP등의 강제규정은 없다. 터키는 사업장 단위노조-산업별노조-전국노조연합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국 노조연합은 TURK-IS (터키 노동 조합연맹), HAK-IS (이슬람노조), DISK (혁명노조연합) 등 3개로 나뉘어 있으나 회원수 (168만 명)나 역사 면에서 TURK-IS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국제회의에 터키 노동 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다.

터키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법(법률 제 506호)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 보장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는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보장 병원에서의 무료진료와 약간의 연금제도이다. 실업보험과 관련 근로자는 급여의 1%를, 터키 정부와 고용주는 급여의 2%를 실업보험료로 납부 한다. 이를 통해 터키 정부는 실업자에게 실직 직전 4개월 동안 1일 평균 급여의 50%를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최장 300일 동안 지급한다. 출산 및 산후휴가는 3개월이며 출산 직원이 출산 후에도 전일직책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질병 치료 중 보수규정은 없다. 조제처방을 제외하고 건강검진은 사회보장병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데 시설이 낙후되고 매우 혼잡하다.

근로자는 근무일 기준 9,000일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남성은 60세, 여성은 58세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 규정은 2035년까지 유지되며, 2048년에는 남성 및 여성 모두 퇴직 연령이 65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모든 고용주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관할 사회보장기금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가 기준 급여의 21.5%, 근로자가 1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매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36.5%를 일괄 납부한다.

## 나) 채용 / 해고 조건

근로자는 큰 어려움 없이 채용할 수 있다. 일부는 지역고용사무소를 통해 채용되나 대부분 회사는 공장 정문에 채용광고를 게재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또는 지역신문광고를 통해 채용한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여름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고용하고 졸업 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정식 채용하기도 한다. 경력이 있는 간부직원의 채용은 용이하지 않다. 국제수준급의 잘 훈련된 관리자들은 있으나 그들은 임금은 낮아도 승진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국기업보다 터키 일류회사를 선호하는 편이다.

고용계약은 고용된 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또는 일방의 의지에 따라 해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고용종료의 고지(해고 예고)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고용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나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있는 퇴직 또는 군복무, 여성의 결혼 등을 위한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수당지급액은 근속연수에 1개월치 임금을 곱한 금액에 근무 연수에 따라 구직 기간 동안의 급여(최장 8주)를 합한 금액이다. (근속연수 X 1개월치 임금 + 구직기간 동안 급여) 정부에서는 퇴직수당계산에 기준이 되도록 최고 월 임금액을 정하며 매년 2회에 걸쳐 이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2007. 1.1~2007.6.30 최고 임금액: 1,960.69 YTL) 근로자의 실제임금이 이 금액을 상회하더라도 퇴직수당 계산시 정부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최저 임금, 평균 임금 등 노동관련 통계

최저임금은 정부, 근로자,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것이 노동 시장의 최저 임금 수준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02년까지는 1년에 2차례 조정되었으나 2002년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보이자 터키정부는 2003년부터 1회 조정을 통해 1년간 유효하도록 조정하였다.

임금의 경우, 일반노동자는 400~600불, 엔지니어(중견기술자)는 900~1,500불, 중간 관리 직 1,900~3,500불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회사의 노동자는 일반 터키회사보다 높은 임금을 기대한다. 또한 지역별 임금차이가 커서 이스탄불 지역의 인건비 수준은 다른 지역 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터키에서는 임금인상이 노사간의 주요 현안사항이 된다. 임금인상의 기준은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근로자들이 감수하는 경우가 있다.

## 라) 노무 관리 유의 사항

임금인상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에서 식비, 교통비 지급은 일반적이며 결혼, 출생, 질병, 사망 시 재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회사는 터키 회사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회계 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부대편의 관련 지출을 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터키의 대기업에서 보너스 지급은 대체로 일반적이며 연말보너스, 가족수당, 휴가나 종교 명절 전에 상여금 지급 등이 단체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석유산업과 같은 고수익 산업은 보너스로 6개월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법정 근무 요일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이며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45시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 2일간은 휴일로 한다. 초과 근무는 매년 90일에 하루 3시간(즉 연간 2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하 작업에서는 초과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초과 근무수당은 주중의 경우 50%, 일요일과 기타 휴일의 경우 100%의 프리미엄을 적용한다. 초과근무 사용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유급휴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5년 근무: 14일, 6~15년 근무: 20일, 15년 이상 근무: 26일을 주도록 되어 있다. 법정휴일은 국경일, 종교휴일, 신년 등으로 평균 13일이다.

분야별 취업자 비중은 농업 26.1%, 제조업 20.3%, 건설업 5.4% 서비스업: 48.2%를 나타내고 있고, 2007년 9월 기준 15세 이상 총 노동가능인구는 25,766 천명이고 실업자 수는 2,405 천명으로 실업률은 9.3%를 보이고 있다. (자료원: 터키 통계청 2007. 12월).

## 6) 조세제도

터키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세 납부기한은 익년 4월 말까지 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재무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은 5년간 세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탈세기

업체는 탈세액의 3배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터키는 현재 총 67개국(보스니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카타르, 남아공 등 의회 비준 후 발효를 기다리는 국가 6개국 포함)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는 1986년 3월 27일 발효되어 1987년 1월 1일부로 이중과세 방지가 적용되었다.

명목 법인세율은 20%이나,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율이 10%로 실질 법인세율은 22%이다. 부가 가치세의 일반 세율은 18%이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1%, 8%, 26%, 40%의 부가세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 1%: 농산물, 신문/잡지, 리스거래(자동차, 비행기 제외) 등
- 8%: 식품, 극장/오페라 등 입장권, 교육서비스 등
- 26%: 화장품, 주방 용품, 음향 및 영상 기기, 보석류 등
- 40%: 자동차, LPG 등

또한 배당 소득세의 경우, 한-터키 이중과세 조약에 따라 25% 이상의 주식 소유 배당금 세율은 15%로, 25% 미만의 주식 소유 배당금 세율은 20%로 적용한다. 그 외에도 개인 소득세(15~40%), 자영업자 소득세(20~45%), 인지세(문서에 따라 개별 적용), 상속세(4~ 30%), 자산보유세(0.3~0.6%) 등이 있다. 참고로 현지연락사무소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터키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자본, 수익, 배당금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이 보장되어 있어 외환 관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터키가 OECD 회원국으로 외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자본 시장 개방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자금 조달의 경우 초기 투자시 현지 파트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터키의 경우 금융시장이 일찍부터 개방되어 있어 신용도 조사가 철저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래내역 없이 처음부터 대출 및 용자와 같은 자금 조달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초기 투자를 위한 자본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단 투자가 시작된 후에는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많이 덜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은행 계좌에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예치시켜야 하는 등의 조항이 있다.

## 8) 투자유의사항

터키는 숙련된 노동자와 관리자 등 현지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지만 과거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이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 소수의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따라 대도시 중심지역은 인프라도 좋은 반면에 노동력의 임금도 높은 편이다. 여타지역은 임금은 낮은 수준이지만 질 좋은 노동력 확보

가 어렵고 인프라도 열악한 편이다.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정처리가 만연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각종 행정처리가 지연 되거나,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등 세부행정처리 지침이 불투명하여 투자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을 실행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투자 진출 시에는 오랫동안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교민이나 기진출 업체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현지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정해진 요율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인지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고액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진출업체나 무역관으로부터 사전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 언어문제, 인프라 낙후와 전기, 용수 등 국가 기간산업의 취약 등도 투자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5. 폴란드 국가개요

### 가. 일반 사항

폴란드는 2004년 5월 1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다른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EU 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이에 따라 EU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을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표 4-109> 폴란드 일반 사항

국 명	폴란드 (The Republic of Poland)
위 치	중부유럽
면 적	312,685km <sup>2</sup> (한반도의 1.4배)
기 후	대륙성 기후 (동부), 해양성 기후 (서부), 연평균 기온 7~10°C
수 도	바르샤바 (Warszawa: Warsaw)
인 구	3,812만 명 (2006년 말 기준)
주요 도시	Warszawa (170만 명), Lodz (82만 명), Krakow (74만 명), Wroclaw (64만 명), Poznan (58만 명) 등
민족(인종)	폴란드인 (98%), 기타 독일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등
언 어	폴란드어 (슬라브어 계통)
종 교	가톨릭(95%), 개신교, 러시아정교 등 기타(5%)
건국일(독립일)	1918.11.11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국 분할 종료)
정부형태	의회공화제 (Parliamentary Republic)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KOTRA 재인용, 2007.11

### 나. 경제 개요

폴란드 경제는 지난 10년간 최고 호황을 누려 왔으며, 2007년 1/4분기 7.4%, 2/4분기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은 내수신장과 투자지출확대로, 내수의 2/4분기 증가율은 9.3%에 달했으며, 투자지출은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으며, 수입 역시 24.7%나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활기찬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 통화정책 당국은 경기과열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 2007년 들어 8월 말까지 3번이나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리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EURO 2012) 개최를 위해 대형 건설 프로젝트(경기장, 도로, 교통 인프라, 호텔 등)들이 진행되고 있어 폴란드 경제는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10> 폴란드 경제 지표**

<b>GDP</b>	US\$ 3,376억 (명목 GDP, 2006년)
<b>실질경제성장률</b>	6.1% (2006년)
<b>1인당 GDP</b>	US\$ 8,856 (2006년)
<b>실업률</b>	14.9% (2006년)
<b>물가상승률</b>	1.0% (2006년)
<b>화폐단위</b>	Zloty (주위티, 약자는 ZL 또는 PLN)
<b>환율</b>	US\$ 1 = PLN 3.1025 (2006 평균환율 기준)
<b>외채</b>	US\$ 1,160억 (2006년)
<b>외환보유고</b>	US\$ 426억 (2006년 말)
<b>산업구조</b>	농림수산 (4.5%), 공업 (22.5%), 건설업 (4.9%), 서비스업 (56.6%)
<b>교역규모</b>	- 수출 : US\$ 1,091억 (수출), US\$ 1,246억 (수입) (2006년)
<b>교역품</b>	- 수출 : 승용차, 자동차부품, 내연기관, 의자/가구, TV, 전선류, 선박 - 수입 : 원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방송/TV 부품, 컴퓨터/주변기기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및 중앙은행(NBP); KOTRA 재인용, 2007.11

폴란드는 1989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계기로 90년대 초반부터 서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6년 말 기준 폴란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계는 800억 유로를 넘어서며, 중동부 유럽 중 가장 많은 FDI를 유치했다. 폴란드의 FDI 유치금액은 2000년대 초반 부진을 보이기도 했으나, EU 가입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對폴란드 최대 투자국은 네덜란드로 2005년까지 164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독일이 123억 유로, 프랑스가 96억 유로, 미국이 56억 유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111> 폴란드의 FDI 유치 동향**

(단위: 백만 유로)

년도	2003	2004	2005	2006
<b>투자유입액</b>	4,313	9,983	7,668	11,690

## 다.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관계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양국간 교역규모가 커질수록 무역불균형도 커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2006년 한국의 對폴란드 수출은 26억 1,300만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2억 7,10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무려 23억 4,246만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그 동안 수차례 무역불균형에 대한 우리나라측의 배려를 요청했는데, 특히 돼지고기와 같은 농축산물과 식품 등의 對한국 수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표 4-112> 한국-폴란드 관계

체결 협정	투자보장협정 (1989.11)
	무역협정 (1989.11)
	항공협정 (1991.10)
	이중과세 방지 협정 (1992.1)
	EDCF 차관 공여각서 교환 (1993.2)
	문화협정 (1993.6)
	비자사증 면제 협정 (1993.11)
	표준화 협력 양해각서 (1998.9)
	경제협력 협정 (2004.12)
교역규모	- 폴란드로의 수출 : US\$ 26억 1,300만 (2006년) - 폴란드에서의 수입 : US\$ 2억 7,100만 (2006년)
교역품	- 폴란드로의 수출 : 컬러TV 부품, 액정 디바이스, 승용차, 컴퓨터부품, 자동차부품, 휴대전화기 등 - 폴란드에서의 수입 : 자동차부품, 돼지고기, 산업기계, 전동축 및 기어, 타일, 도자기 제품, 전구 등
투자교류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투자 - 2006년 : 91건, US\$ 9억 8,120만 폴란드의 對우리나라 투자 - 2006년 : 1건, US\$ 32만 9,000
교민	체류자 781명 (2006년 말 기준)

자료원: KOTIS,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재인용, 2007.11

우리나라와 對폴란드 수출은 2006년 26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5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로, 수출대상국 순위도 36위에서 29로 상승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 원부자재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승용차, 휴대폰, 냉장고 등 소비재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동차부품, 돼지고기, 산업기계, 타일, 도자기제품 등 폴란드로부터의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4-113> 한국-폴란드간 수출입 실적

구분		2005	2006	2007(1-8월)
수출	금액(백만 달러)	1,174	2,613	2,214
	증가율(%)	45.6	122.4	36.0
수입	금액(백만 달러)	116	270	192
	증가율(%)	30.9	133.0	0.5
무역수지(백만 달러)		1,058	2,343	2,022

자료원: KOTIS, 2007.10

<표 4-114> 한국의 對폴란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2006		2007(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칼라TV부품	755,617	91.4	452,325	-12.6
2	평판 디스플레이	534,257	1,316.9	311,361	-7.6
3	광학기기부품	3,927	369.3	255,007	54,921.1
4	승용차	334,539	282.0	232,891	29.9
5	무선전화기	60,445	5.8	119,809	133.3
6	자동차부품	93,192	55.0	94,008	70.3
7	컴퓨터부품	118,822	-29.1	78,302	-9.7
8	모니터	40,342	577.2	72,198	314.1
9	기타기계류	54,427	1,567.7	55,890	364.9
10	무선통신기기부품	178,444	81.5	50,158	-62.0

자료원: KOTIS, 2007.10

1991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투자는 90년대 중반 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의 진출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996~1998년 3년간 투자금액이 4억 4,000만 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대우자동차와 파산과 철수 등으로 인해 2000년 초반까지 폴란드에 대한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폴란드의 EU 가입을 전후로 2004년부터 전자와 가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폴란드 투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현지 TV 생산법인들의 투자가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LG전자가 제2공장 설립에 투자하고, LG필립스LCD, LG백색가전부문 등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투자건수는 101건, 투자금액은 10억 7,37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투자건수는 48건, 투자금액은 4억 4,960만 달러를 기록했다.

**<표 4-115>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6월)	누계
투자건수	2	3	16	17	10	48
투자금액	16.9	36.1	77.3	226.8	92.5	449.6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10

우리나라의 폴란드 투자는 건수로나 금액 면에서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제조업은 총 건수의 66%, 총 투자금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LG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동반 투자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은 양적으로나 질적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16>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주요 투자기업**

투자진출 시기	회사명	업종	제품	진출형태	종업원 수
1993	대우일렉트로닉스	전자	컬러TV, 디지털TV 등	단독투자	1,200명
1997	한국유리	유리	자동차 안전유리	합작투자	800명
1997	운화실업	자동차	안전벨트	합작투자	150명
1999	LG전자 생산법인	전자	컬러TV, 디지털TV 등	단독투자	2,500명
2001	제니스-모나미	사무용품	필기구	합작투자	50명
2002	SK유로켄	화학	PET원료	합작투자	80명
2005	LG필립스LCD	전자	LCD 패널	단독투자	na

자료원: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2007.10

폴란드 경제는 향후 수년간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기계장비와 같은 자본재 수입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폴란드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국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원회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또한 통상정책 역시 EU의 통상정책에 따른다. 또한 EU 가입 후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 역시 EU 차원에서 추진하므로, 폴란드 단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EU가 2007년 5월부터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폴란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투자법 개요

폴란드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은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 of 2 July 2004)이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고, 경제활동자유법에 의거하여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 기업(현지법인)은 내국인대우의 원칙하에 일반적으로 폴란드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이다. 그러나, EU나 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EU나 EFTA 지역에서 온 외국인 투자자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과 같이 EU나 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 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branch office)나 대표(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 나) 투자장려 및 제한 분야

##### □ 장려분야

천만 유로 이상의 대형투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5년간 최소 100개 일자리를 창출, 유지하는 최소 50만 유로의 투자),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투자, 환경 개선 투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 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을 설치하여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조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폴란드 당국은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을 따로 명시해 두지는 않고 있지만, 자동차, 식품 가공, 물류, 백색가전, 하이테크 등의 부문에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제한분야

폴란드는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외국인 투자를 민영화 추진과 연계시켜 대부분 자유화하는 한편,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상의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었다. 특히, 99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코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등 선진국형 개방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산업이나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인가를 취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는 이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 다) 투자 인센티브

2004년 5월 EU 가입에 따라 폴란드의 현행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 요건에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는 소위 '지역 지원'(Regional Aid)을 들 수 있는데 신규투자(공장 설립, 기존 공장 확장 등)에 대해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등의 형태로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 지역 지원(Regional Aid) 제도

○ 지역 지원이란 폴란드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초기 또는 신규 투자(initial investment) 지원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초기투자에는 신규기업(공장) 설립, 기존 기업 확장, 신제품, 추가제품으로 생산 다변화, 기존 기업 내 생산공정의 획기적인 변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 한편 지역별로 지원율은 차등을 두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금 보조나 법인세 감면의 한도(즉, 최고 지원율)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 현행(2007~13년) 최고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아래 서술하는 적격비용(투자 또는 고용 창출비용)의 3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예컨대, 수도인 바르샤바의 지원율 상한선은 30% 이고,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남서부 공업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50%로 되어 있다

- 단, 중소기업에 대한 최고 지원율은 더 높는데 소기업(직원 50명 미만)의 경우 각 20% 포인트가 높고, 중견기업(직원 50~250명)의 경우 각 10% 포인트가 높게 책정

- 대형 투자(적격비용 5천만 유로 이상)에 대한 지원율 수준은 낮아지는데 계산식은 이와 같다:  
최대 지원액 =  $R \times (5000만 유로 + 0.50 \times B + 0.34 \times C)$

(\* R은 지역별 최고지원율, B는 적격비용 5천만~1억 유로, C는 적격비용 1억 유로 초과)

○ 적격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된다.

- 개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액은 일반적으로 적격비용(투자비용 또는 일자리 창출비용)에 근거를 두게 된다

- 투자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유형자산(토지, 건물, 플랜트/기계장비), 무형자산(특허, 라이선스, 노우하우 등 기술이전 관련 자산), 리스(토지, 건물) 등이다

- 구입비용 또는 제조비용 (건물, 기계 및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 신규 직원 고용 비용(job creation costs)은 2년 동안의 신규 직원에 대한 노동비용 (사회보장

세 포함) 이다

○ 인센티브의 지원조건은 최소 5년간 투자 또는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다.

○ 한편, 지역지원의 형태에는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부동산세 감면 등이 있다.

- 현금 보조: 투자기업과 폴란드 경제부 사이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에는 투자액, 투자일정, 적용 기술, 신규 고용 인력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자의 신청에 대해 경제부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 법인세 감면: 경제특구(SEZ)에서만 적용된다

- 부동산세 감면

□ 경제특별구역(SEZ) 법인세 감면 제도

○ 경제특별구역(SEZ)은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 행정구역이다. SEZ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

○ SEZ 내 법인세 감면제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감면은 전술한 '지역 지원'의 한가지 형태이므로 상기 지역 지원의 조건과 대부분 동일하다. 단, 법인세 감면은 경제특구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다름

- 감면의 한도: 적격 투자비용 x 상기 지역별(경제특구가 속한 지역) 최고 지원율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율도 지역 지원과 동일(즉, 중소기업은 지원율이 10~20% 포인트 높아짐)

○ 법인세 감면을 위한 기본조건으로는 당연하지만, 경제특구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를 위해서는 특구 관리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은 입찰 또는 협상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액이 최소 10만 유로가 되어야 하며, 지역 지원과 마찬가지로 투자가 최소 5년간 존속되거나, 투자 결과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 지방세 감면 제도

○ 부동산세의 전액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한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당국과의 협상이 필요하고, 지방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한데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며,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Z) 등 자료 종합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회사의 형태

폴란드 내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법령은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 2004. 7. 2) 이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이다. 한국과 같이 EU나 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 (limited partner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지사(branch office)나 대표(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 성격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폴란드 약어 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주주 1인에 의해서도 설립 가능하나, 다른 1인주주 유한책임회사 만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가지며, 이사회에 의해 대표된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0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으로 되어 있다(2006년 평균환율은 1달러에 3.1025 PLN).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폴란드 약어 S.A.)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50만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 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1인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마르샤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을 갖지 못하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는 본사 영업범위 내의 상거래 활동만 가능하며,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 사무소 또는 연락 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 나) 지사 설립 절차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정관, 폴란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사무소가 폴란드 법을 따를 것이라고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이다. 이러한 서류들을 영어로 번역 하여 공증한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영문본을 다시 폴란드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한다.

지사를 설립하는데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외국 기업가는 폴란드 내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자료 작성을 폴란드어로 해야 하므로 현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지사에서 외국 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폴란드 내 이름 및 주소 공개
- 외국 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공증된 서명 첨부
- 정관 사본과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첨부 등

지사는 폴란드 회계법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폴란드어로 별도의 장부를 유지해야 하고, 사실적인 또는 법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경제부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

지사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을 한 후, 중앙통계국에 REGON 번호 (statistical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소에 납세자 번호(NIP;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야 한다. 지사는 본사의 이름에 “branch in Poland”를 추가하여 등록된다.

지사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의 의무는 없으나, 장부 기록은 잘 유지해 두어야 한다.

#### **다) 대표(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대표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사무소의 성격상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 대표사무소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폴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대표사무소를 설립 코자 하는 외국 기업(이하 모기업)의 명칭, 등록사무소 및 법적 지위(한국 내 회사의 형태)
- 모기업의 회사 형태, 자본금
- 모기업의 사업 목적
- 대표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폴란드내 주소
- 대표사무소의 폴란드내 주소

또한, 신청서와 함께 모기업의 정관 사본 및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폴란드내 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관련한 모기업의 결의서(statement) 등을 첨부해야 한다.

#### **라) 현지법인(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설립절차**

한국에서 미리 준비할 서류로는 대표이사 위임장, 이사회 결의서,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인데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폴란드에 와서는 영어본을 폴란드어로 다시 번역 후 공증을 받게 되어 있다.

설립코자 하는 회사의 형태(유한책임 또는 주식회사)를 결정하면,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 단, 서명할 때에는 폴란드 내 공증인 (Notary Public)의 공증이 있어야 한다.

회사 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사업내용, 초기 자본금 액수, 주식의 수량 및 액면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여기에 더해 등록전 자본금 납부액,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수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에 서명이 되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설립자본금(5만 PLN 이상)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공식 조직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자본금 50만 PLN, 주주 수 25명을 넘지 않을 경우 선택사항이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자본금(50만 PLN 이상)의 최소 25%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회사를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한다. 즉,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이나 주로 사업이 영위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등기를 하는 것인데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유한책임회사

- 신청서(소정양식)

- 정관, 자본금납부 내역서(모든 이사회 구성원 작성), 주주 명단, 이사회 구성원 내역 (이름, 주소, 무범죄 증명서 등),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견본(공증된 것), 임대차 계약서 등

○ 주식회사

- 신청서(소정양식)

- 정관, 회사 설립 및 주식인수 관련 공증된 결의서, 자본금납부 내역서, 회사 경영진 명단 및 인적사항,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견본(공증된 것) 등

등록 신청 후 중앙통계국(GUS)에 REGON 번호(statistic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에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납세자 번호(NIP;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REGON과 NIP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후 보완하면 된다.

폴란드 법에 의하면, 모든 기업은 폴란드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로는 회사 정관, 서명 견본, 등기 관련서류, REGON 번호를 부여하는 GUS의 서신, NIP 등이다.

법원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자본금이 납부되어야 하므로(유한책임회사 전액, 주식회사 25% 이상) 은행은 설립과정에 있는 회사에 이러한 결제 목적으로 예치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는 회사의 정식 등록과 함께 일반 계좌로 바꿀 수 있다.

법인 등기부에 등록이 되면, 회사는 등록번호를 받고 정식법인이 된다. 한편,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송금업체(VAT remitter)로 등록되어야 한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Z), “How to do business: Poland” 등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4) 주요 도시별 투자입지연건

#### 가) 입지선정시 체크 포인트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즉 입지 선정은 투자할 업종과 함께 교통물류를 비롯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상황,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입지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체크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특히,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수송을 위한 교통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주요한 고려 요소이다. 폴란드의 도로망이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재 폴란드에서 도로는 화물 수송의 주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중량기준 총 화물 수송의 76.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망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각 고속도로 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운영되는 상황이다. 투자 기업으로서 이미 개통되었거나, 조만간 개통될 고속도로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부자재 운송이나 생산제품을 서유럽 등지로 수출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일부 구간 개통)인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A1 남북노선: 북쪽 발트해 연안 그단스크와 남쪽 체크 접경도시 연결, 총 길이 564km
- A2 동서노선: 독일 국경에서 중부의 포즈난과 바르샤바를 통과, 벨로루시 국경까지 연결, 총 길이 651km (상당 구간 개통 운영중)
- A4 서-남동노선: 독일 국경에서 남부의 카토비체와 크라코프를 통과,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연결, 총 길이 779km (상당 구간 개통 운영 중)

#### 나. 지역별 투자여건

우선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한 지역으로는 정부에서 지정한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Park)를 들 수 있다.

##### 1) 경제특별구역

경제특별구역(SEZ)은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의 행정 구역으로 폴란드 전역에 걸쳐 14개 SEZ(기술단지 1개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SEZ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 면제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투자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월 1일부로 지역별 인세티브 지원율이 일부 변경되었고, 2013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아래 외 지역에서는 적격 투자비용의 50%까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포즈난, 카토비체 지역에서는 적격 투자비용의 40%, 수도인 바르샤바 지역은 30%까지 면제
- 또는 투자기업은 2년에 걸쳐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노동비용의 50%(상기와 같이 지역별 지원을 차등)까지 조세(법인세, 개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새 일자리는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또, 지방정부로부터 부동산세 면제, 직업훈련 보조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투자기업이 SEZ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SEZ 관리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국은 입찰이나 협상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입주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약 3개월이 소요된다.

- SEZ 당국과 접촉 및 입주 신청
- 신청에 대한 심사
- 추가 서류 준비
- 투자가 수용에 대한 최종 결정(입찰)
- SEZ 내 사업활동 허가서 발급

## 2)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폴란드 전역에 30개 정도가 있다. 산업단지 중 일부는 SEZ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크라코프 기술단지(Cracow Technology Park)가 대표적이다.

산업단지 입주시 이점으로는 일반적인 투자보조금 혜택과 함께 부동산세 감면, 에너지, 난방, 용수 등 유틸리티의 저렴한 공급 등을 들 수 있다. 단지 운영당국이 단지 내의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및 개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 된다.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폴란드 투자유치청 홈페이지([www.paiz.gov.pl](http://www.paiz.gov.pl))에서 메뉴 중 Regions > Industry and Technology Parks > 개별 단지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 나) 기진출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지역

현재 외국 기업의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바르샤바에서 1~2 시간 거리의 주변도시, 독일 및 체코 국경과 인접한 남부의 브로츠와프市(Wroclaw) 근방, 체코,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카토비체市

(Katowice) 근방, 그리고 중부의 우지市(Lodz) 등이다.

한국 투자기업을 보면, 바르샤바 근처 1~2시간 거리에 LG전자 무와바,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나와 있고, 2005년에 대규모 투자에 착수한 LG필립스LCD, LG전자 백색가전 부문 등은 브로츠와프 근교에 대규모 생산단지를 설립했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 등 자료 종합)

## 5) 노무관리

### 가) 노동법 주요 내용

#### 1) 채용 및 고용계약

○ 고용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정해진 고용계약 양식은 없다. 고용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고용 계약의 종류, 계약 발효일, 근무 조건, 급여 등을 기본 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업무의 종류, 업무 장소, 근무 시간, 근무 시작일 등도 포함 되어야 한다.

○ 노동법에 의하여 종업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동 손실이 현찰과 같이 종업원 에게 위탁된 것이거나 고의에 의한 손실이 아닐 경우 종업원은 3개월 급여 범위 내에서 변상토록 되어 있다.

○ 2003년부터 임시고용법(Temporary Employment Act)에 의하여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어 파견 근로업체를 통해 임시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사용업체는 파견 근로업체와 업무의 종류, 요구되는 자격수준, 업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은 파견근로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급여는 폴란드 주위티화(PLN)로 지급해야 한다.

#### 2) 법정 근로시간

○ 피고용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동법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근로시간의 초과가 가능하다.

○ 초과근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활동이 필요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보호 혹은 긴급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 고용주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 초과근무시간은 단체협약, 고용주 업무규정, 고용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연중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무일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급여의 200%

- 위에 명시된 시간 외 추가 근무시 급여의 150%

○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근무일에 셀 수 있다.

### 3) 휴가

○ 모든 종업원은 매년 유급 연차 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 휴가 일수는 10년 미만 근무시 20일이며, 10년 이상 근무 경력시 26일이다. 근무 경력에는 직장 경력뿐만 아니라 교육 기간도 포함되는데, 예컨대 고등학교 인문 과정은 4년, 정규 대학 과정은 8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각급 학교의 근무 경력 인정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처음 입사를 하는 종업원은 근무 경력 8년을 인정받아 연간 20일 휴가가 주어지며, 2년을 더 근무하면 근무경력 10년을 채워 연간 26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출산 휴가는 첫 아이의 경우 16주, 둘째부터는 18주이며, 쌍둥이의 경우 26주이다.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최소 2주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산휴가 기간 중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불해야 한다.

○ 병가와 관련, 종업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가는 경우 연 33일까지는 급여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출퇴근 시 사고나 장기기증 등으로 병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연 33일 까지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 4) 해고

○ 고용 계약의 해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사전 서면통지 기간은 고용 계약의 종류,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종업원은 사전 서면통지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사전 서면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3일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일 경우

- 1주일 계약기간이 2주 이상, 3개월 이내일 경우

- 2주일 계약기간이 3개월일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무제한에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

- 1개월 계약기간이 무제한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이내일 경우

- 3개월 계약기간이 무제한으로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 한편, 다음의 경우 사전 서면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

- 종업원이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경우로, 기본적인 의무 불이행(근무지 내 음주, 근무지 무단 이탈, 업무 불이행), 고용기간 중 명백한 범죄 행위, 그리고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 등이다.

- 종업원의 실책이 없어도 근무 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 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나, 질병으로 총 3개월 간 근무를 할 수 없고, 급여, 치료비 등 혜택을 받았을 때,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를 못할 때 등이다.

○ 단, 사전에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 피고용자가 연차 휴가 또는 출산 휴가일 경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병가 중일 경우

- 정년 임기를 마칠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년이 4년 이내로 남았을 때

- 임신 중인 경우

## 나) 임금 수준

2006년 폴란드의 기업 부문(enterprise sector)에서 월 평균임금은 2,644 PLN(주위티) 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852 달러가 된다. 한편, 2007년 9월 기준 평균임금은 2,859 PLN (최근 환율 적용시 약 1,020달러)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5% 올라갔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gross' 개념으로 피고용자 부담 사회보장세와 개인소득세 등이 포함 되며, 상여금 일부(payments from profit)도 포함된다. 단,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19.8%~22.7%)는 gross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폴란드에서 임금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임금 상승의 주된 요인은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경기호조가 계속 되는데다 많은 폴란드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아 서유럽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EU 가입 후 만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소 100만 명이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부문은 건설업(9.8%), 제조업(5.9%), 부동산 및 기업 활동(5.7%)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아직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 다) 노동조합 및 기타 사항

### 1) 노동조합 관련

폴란드에서 모든 피고용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폴란드 헌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최소 10명 이상의 피고용자에 의해 결성될 수 있다. 피고용자 또는 노동자는 노조 가입 또는 거절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노조 가입을 고용이나 승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노조의 간부는 해고 등을 당

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이나 노동조합법은 여러 사항에서 노조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과잉 인력의 해고 등의 경우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인수합병(M&A)에는 일반적으로 노조의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폴란드에서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영기업의 경우 아직 노조의 위력이 상당하나, 민간기업에서 노조의 지위나 역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부문 노조의 약세는 높은 실업률 등에 원인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하여 사용자 측과의 마찰을 꺼리고 있다.

한편,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자유노조(Solidarity)의 존재 등으로 폴란드 노조가 강성으로 보이나, 실제 폴란드에서 파업을 비롯한 노사분규의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사분규는 기본적으로 노사 양측의 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은 의견 차이서(protocol of opinion differences)를 작성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밝히고 조정(mediation) 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조정자 (mediator)를 선택하게 되는데 경제노동부가 준비한 명단 중에서 선택하거나, 경제노동부가 제안하는 사람을 택할 수도 있다.

조정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노사 양측은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재(social arbitration)를 요청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는 1명의 심판관과 6명의 위원(노사 양측에서 각 3명 지정)으로 구성되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중재가 시작될 때 노사 양측이 이를 따르기로 했으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2) 기타 노무관련 유의사항

폴란드의 경우 낮은 노동비용이 투자 메리트의 하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임금 외에 사회보장세 등 부대 비용이 높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은 임금의 19.8%~2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국 투자기업 진출 확대, EU 확대에 따른 서유럽 노동시장의 점진 개방으로 폴란드 노동력이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어 노동력 확보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면적인 실업률과 노동인구 등 통계를 무조건 맹신하면 곤란하다.

노무, 공장 작업환경 등의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 등과의 협력 체제를 미리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투자유치청 등)

## 6) 조세제도

### 가) 조세 제도 개요

○ 폴란드의 조세 제도는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폴란드의 주된 조세로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물품세, 인지세 등이 있다.

○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코자 하는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의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 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 폴란드의 조세 관련 행정기관으로는 세무서(tax office), 조세국(tax chamber),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 있다. 세무서는 관할지역(지방)에서 세금 징수를 맡고 있으며, 조세국은 세무서들을 관리감독하고 세무서의 행정결정을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무부는 폴란드의 예산정책을 총괄하며, 조세체계 전체를 관리감독 한다.

## 나) 법인소득세(CIT; Corporate Income Tax)

○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4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19%로 인하 했다(2003년 법인세율은 27%).

○ 과세대상 소득은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총합에서 공제 대상 비용, 추가적인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금 등)을 차감한 소득이며, 이것이 과세표준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총수익 - [공제대상 비용 + 이월결손금(5년내) + 소득 공제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 공제대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경비: 원자재 구입, 에너지 사용, 수송비 등
-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 감가상각
- 리스 비용
- R&D 비용
- 공제 가능 기부금 등

○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고정자산 취득, 창출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 벌과금

- 주식, 채권 구입비
- 일부 기부금 및 선물 구입비
- 수익의 0.25%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
- 회원가입비: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닐 경우

○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공제의 대상이 된다. 자산의 가액이 3,500 PLN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시점에서 전액 상각 또는 임의의 상각률 적용이 가능하다. 토지와 같은 특정한 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 (depreciation rate)은 다음과 같다.

- 건물: 1.5% - 10%
- 사무기기: 14%
- 컴퓨터: 30%
- 자동차: 20%
- 플랜트 및 기계: 5% - 20%

○ 한편,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는 납세 기업이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 회계연도에 총 손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된다. 그러나, 납세 기업은 12개월을 대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 한편,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 배당금에 대한 과세: 폴란드에 적을 둔 법인의 이익 분배를 통한 소득(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19%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되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의해 송금된다.

- 이자, 로열티, 무형서비스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이자는 소득이면서 공제대상 비용으로 간주된다. 즉, 이자는 채무자에게는 공제대상 비용이 되며 채권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법인에 지급되는 이자는 20%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로열티와 무형서비스(컨설팅, 회계, 시장조사, 법률서비스 등)의 경우에도 20%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개정 법인세법(2004. 11.18)은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2005. 7.1 - 2009. 6.30중 10%, 2009. 7.1 - 2013. 6.30중 5%, 2013. 7.1일 이후 면제로 되어 있다.

○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협정에 의거, 한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배당금 5/10%(수혜업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시 5% 적용), 이자 0/10%(정부/

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지급시 0% 적용),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 다)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 폴란드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개인은 유한 또는 무한 조세 책임을 갖게 된다. 특정 개인의 조세 지위(tax status)는 개인이 폴란드에 '거주지'(place of residence)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폴란드에 거주지가 없는 개인(주로 외국인 임)은 비거주자로 인식되어 유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반면, 거주지가 있는 개인(주로 내국인 임)은 거주자로 인식되어 무한책임 납세자가 되며,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모든 소득과 이득(benefit)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데 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possible deduction from income)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자연인에 대한 기부는 제외, 2005년부터 소득의 6%까지 인정)
- 폴란드 사회보장제도 관련 납부금
-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용비(2005년부터 연간 760 PLN까지 인정) 등

○ 또한, 과세액에서 공제(possible tax deduction)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폴란드 건강보험에 납부한 보험료(건강보험 산출표준의 7.75%까지)
- 자선단체에 대한 현금 (최종 과세액의 1%까지) 등

○ 2006년도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상기 표에 나타난 소득세율은 개인의 총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 소득세법에서는 특정한 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폴란드 및 해외에서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19%를 과세하며, 부동산 판매를 통한 이익에 대해 10%를 과세한다.

○ 개인에 대한 과세연도는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된다.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납부하며, 폴란드 고용주들이 피고용원의 보수에 대한 세액을 산출,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 라) 부가가치세(VAT)

○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2004년 5월 1일 이후 부가세(VAT) 법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폴란드의 규정은 EU에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EU 가입 후 부가세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고 EU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역내(intra-community) 공급 및 인수로 대체되었다.

○ 부가세(VAT, Tax on goods and services)는 폴란드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 되는 광범위한 조세이다. 법인은 연간 매출이 1만 유로를 초과하면, 부가세 대상 업체로 등록되어야 한다.

○ 부가세 기본세율은 22% 이며, 이 세율이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단, 일부 제품이

나 서비스에는 부가세율이 인하되어('reduced VAT rate') 과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일부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문화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등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납세 기업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구입시 지불 부가세(input VAT라고 함)를 환급 받을 수 없다. 한편, 2004년 5월 EU 가입과 함께 건축자재,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에 대한 부가세율이 7%에서 22%로 인상된 바 있다.

○ 부가세 납부대상 등록회사는 구입시 지불된 부가세(input VAT)를 매출시 징수된 부가세(output VAT)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부가세 납부업체 사이의 거래는 부가세 송장(VAT invoice)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등록된 부가세 납부업체는 매월 부가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가세 관련 구매 및 판매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수출기업은 수출통관 후 수출용 원자재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지불된 구입 부가세(input)도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은 최대 180일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기업이 인하된 부가세율 또는 영세율로 과세되는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거나, 구입 부가세가 고정자산 매입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환급 기한이 60일, 더 짧게는 25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 마) 기타 세제

○ 2004년 5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물품세법에 따라 물품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조화된 물품세 제품(Harmonised excise duty goods)으로 석유, 주류, 담배 등 EU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하나는 非조화 물품세 제품(Non-harmonised excise duty goods)으로 자동차, 향수 및 화장품, 전기 등 폴란드 자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이다. 물품세는 제품 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물량기준(단위당 고정비율)에 따라서 산출된다. 재무부 장관은 연중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물품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이다.

○ 지방세(Local tax)에는 부동산세, 차량세(트럭과 버스에만 부과된다), 증여세, 산림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체에서 이러한 세금들에 대한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나 재무부 명령에서 정한 최고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

○ 인지세(Stamp duty)는 행정행위 등에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공적인 신청, 공적 행위, 증명서, 허가 등이 포함된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PAIIIZ), "How to do business" 등)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외환 관리

폴란드의 경제발전과 2004년 5월 EU 가입 등에 따라서 외환 거래에서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의 경우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대규모 외화 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로서 개인의 경우에도 합당한 사유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면 송금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2002년 10월 발효된 외환법(Foreign Exchange Law)이 현재 외환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법은 외환 거래의 유형을 1)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 등)과의 외환거래, 2)BIT 국가(폴란드와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로 非OECD) 및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거래로 크게 나누고 있다.

#### 1) EU 회원국 및 특정 비회원국(OECD 국가로서 EU가 아닌 국가)과의 외환거래

이 국가들과의 외환거래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특히, 거주자(기업 및 개인)는 인가 없이도 이들 국가에서 은행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취득, 단기 증권 및 파생상품 발행과 거래, 단기 증권 및 파생상품 구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차입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국가 출신의 비거주자들은 외환관련 인가 없이도 폴란드 증권, 채권 및 단기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이 범주에 속하는데다 지난 1989년 폴란드와 투자보호협정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거주자)이나 주재원(비거주자)의 경우 외환거래와 관련한 제한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투자협정은 소득의 송금을 포함한 투자와 관련한 지급(payment)의 태환가능 화폐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 2) BIT 국가 및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거래

BIT 국가란 폴란드와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며 아르헨티나,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한다. BIT 국가와의 외환거래에는 다소의 제한조항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BIT 국가에 있는 거주자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해당국가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으로 제한되는 등이다.

OECD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이 아닌 여타 非EU 국가와의 외환거래에서 제한의 범위는 가장 넓어진다.

### 나) 환율 제도

폴란드는 지난 2000년 4월 기존 환율체제인 관리 변동환율제(중앙 패리티율 및  $\pm 15\%$ 의 변동폭 운용)를 폐지하고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

2000년 이후 폴란드 현지화인 주위티(PLN)는 매년 소폭 평가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주위티화의 대US\$ 평균환율(PLN/US\$ 1)은 다음과 같다. 한편, EU에 가입한 2004년 중반부터 주위티화의 가치가 급등하여 주위티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4년 초만 해도 US\$에 대한 주위티 환율은 3.8~3.9에 달했으나, 하반기 이후부터 주위티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고 있다. 연 평균환율을 보면, 최근 주위티화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7년 12월 중순 현재 달러화 대비 주위티화 환율은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 다) 자금 조달 방법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가장 현실적일 방법일 것이다.

현지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제일 큰 문제는 신용 문제가 된다.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본사 보증으로 해서 현지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단계에서는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1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고 난 뒤 사업실적(생산, 판매실적 등)과 담보(부동산 등) 등을 제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기업의 향후 수익성이 대출 결정에 중요하다는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이다.

현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대출금리는 LIBOR + 1~2%가 되는데 유로화로 대출할 경우 현행 금리는 5~6% 정도로 보면 된다.

또한, 우리 투자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는 해외투자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해외투자금융이란 해외투자, 해외사업 등을 하는 국내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서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국내기업 출자 외국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등이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율이다.

(자료원: 폴란드 투자유치청, 중앙은행 및 현지은행 관계자 등)

## 8) 투자유의사항

### 가) 부가세 환급 관련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VAT) 환급 기간이 과다 소요되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한 상황이다. 또한, 환급기한인 60일이 준수되지 않아, 실제 환급에 90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투자진출업체의 자금 회전에 애로가 있다. 게다가 수정 신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라 환급이 지연되어 캐쉬 플로우가 악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 부가세 환급절차 (예시)

통관(부가세 납부)→제조(15일)→출하(1주)→부가세 신고(차월 25일)→환급(신고 후 60일)

(수정 신고시 이날부터 60일 기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폴란드로 들여 오지 않고 부가세 유예제도가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항구를 통해 통관하여 폴란드로 반입하는 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나) 취업비자 발급기간 과다 소요

취업비자 발급기간이 65일 정도로 많이 소요되어 급여 지급, 공식 업무 수행 등에 차질을 주는 사례가 있다. 폴란드의 취업허가서 발급이 까다롭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한국 기

업의 문제이자 여타 폴란드 진출국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 16. 핀란드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핀란드의 전체 인구는 5백만 정도 밖에 안되지만 남한의 3배나 되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유통산업 발달이 여의치 않은 여건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맥도널드 햄버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이 미미했으나, EU 가입 이후 외국계 유통체인이 점차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 독일계의 할인매장 체인인 Lidl이 진출하여 핀란드 유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인구규모에 비해 주변 노르딕 국가보다 비교적 소비재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핀란드 자체 못지 않게 인근 발트 3국 및 러시아 남서부 지방과의 교역량이 많아 이들 제3 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품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 소비재 및 부품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마케팅 활동 여하에 따라 시장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3-117> 핀란드 일반 사항

국 명	핀란드 (Finland) * 정식명칭: Republic of Finland
위 치	북구,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오른쪽에 위치 발트해를 끼고 동으로 러시아 서로는 스웨덴, 북으로는 노르웨이와 접경
면 적	338,145 km <sup>2</sup> (한반도의 약 1.5배) 33,672 km <sup>2</sup> (호수)
기 후	냉대기후 (기후가 극지방에 가까워도 생각보다 안 추운 것은 북대서양 해류와 발트해, 그리고 호수[18만개]의 영향 임)
수 도	헬싱키 (HELSINKI)
인 구	5,276,955 명(2006년 12월 31일 기준)
주요 도시	Helsinki(56만), Espoo(23.5만), Tampere(20.6만), Vantaa(18.9만), Turku(17.5만), Oulu(13만), Lahti(9.8만), Kuopio(9.0만)
민족(인종)	93.4% 핀족, 스웨덴계 국민 5.7%, 러시아 0.4%, 에스토니아 0.2%, 로마(집시) 0.2%, 사미족 0.1%
언 어	핀란드어 92%, 스웨덴어 5.6% (제2공용어), 랍어(Lappish) 또는 러시아어 2.4%
종 교	루터교 84.2%, 러시아정교 1.1%, 기타(무신론자 포함) 14.7%
건국일(독립일)	1917년 12월 6일 (러시아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에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 CIA world factbook; KOTRA 2008.04 재인용

## 나. 경제 개요

GDP 성장률은 2007년도 추정치 3.9% 에서 2008년에 3.1% 그리고 2009년에는 2.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EU 평균치를 웃도는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주요 산업 부분의 생산지수가 감소하면서 다소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2005년간의 0%대의 저 성장률 시대를 지나 2% 대의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최근 상승하는 명목 임금은 소비자 수요와 집값 상승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2007년에는 1.6%로 추정되며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8%와 1.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까지 유럽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경상수지는 큰 흑자폭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 100억 달러 규모의 경상 수지 흑자 기조는 2007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07년 경상수지는 1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과 2009년에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몇 년 간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될 전망이다.

<표 3-118> 핀란드 경제 지표

GDP	1,788억 유로 (2007년) 1,670 억 유로 (2006년)
실질경제성장률	4.4 %(2007년) 4.9% (2006년)
1인당 GDP	33,803 유로 (2007년)
실업률	6.6% (2007년) 7.7% (2006년 기준)
물가상승률	2.6% (2007년) 1.6% (2006년 기준)
화폐단위	Euro
환율	1유로= US\$ 1.518 (2008.2.29)
외채	702 억 유로 (2007년 1분기)
외환보유고	US\$ 73억 (2007년 4월 기준)
산업구조	금융(20.0%), 제조업(17.1%), 무역(11.8%), 운송(4.7%), 통신(4.2%), 건설업(5.5%), 광업(3.7%), 농수산업·임업(2.2%) (2006년)
교역규모	2005년 : 525억 유로(수출), 470억 유로(수입), 무역흑자 54억 유로 2006년 : 615억 유로(수출), 553억 유로(수입), 무역흑자 62억 유로 2007년 : 655억 유로(수출), 594억 유로(수입), 무역흑자 61억 유로
교역품	수출: 목재 및 제지, 운송장비, 휴대폰, 화학제품 등 수입: 중간재, 에너지, 자본재, 소비재 등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 핀란드 중앙은행; KOTRA 2008.04 재인용

## 다. 우리나라의 對핀란드 관계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투자진출 현황은 상기한 수출입은행 통계에서 보듯이 매우 미미한 정도이며

대기업의 우회 진출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여타 국가에 진출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투자의 특징적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굳이 구분해 본다면 다음 세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한 투자진출

핀란드를 경유지로 해서 인근 러시아 혹은 발트 3국 그리고 심지어 유럽 대륙으로 진출 하기 위한 거점으로 핀란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하는 유형이다.

우리나라 관세청이 집계하는 대 핀란드 수출액 중 50% 이상이 최종 도착지는 러시아이다. 주요 품목은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이며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인근 혹은 항구 부근의 물류 창고를 자체 운영 혹은 물류회사를 통해 수출 활동을 하고 있다.

□ 핀란드 국내시장을 타겟으로 한 투자진출

핀란드 인구가 적어 전반적으로 내수시장이 작다고 하지만 핀란드에 큰 고객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의 경우 핀란드 내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핀란드에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모바일 폰 메이커인 노키아를 겨냥해서 진출한 삼성전기, 유성정밀 등 모바일 부품업체들을 들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모바일 부품업체만 3-40여 개 사가 핀란드에 진출해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핀란드 디지털 TV 방송의 시작으로 인해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 업체들이 투자 진출하고 있다.

<표 3-119> 한국-핀란드 관계

<b>체결 협정</b>	사증면제협정(74.3) 특허권보호협정(79.9) 경제기술협력협정(80.2) 소득에 관한 조세와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방지 협 약 (81.12) 과학기술협력협정(89.7) 투자보장협정(93.10.21) 문화협정(94.1) 항공협정(97.2) 과학기술협력각서(97.2)
<b>교역규모</b>	2007년 - US\$ 12억 9300만(대핀란드 수출) - US\$ 9억 6300만(대핀란드 수입) - 무역수지 US\$ 3억 3000만 흑자 *자료원 : 한국관세청
<b>교역품</b>	- 독일로의 수출 :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전자 제품 등 - 독일에서의 수입 : 합판, 선박용 엔진, 송신기기, 스테인레스강
<b>교민</b>	총 교민 수 약 240 명 (2007년)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2008.04 재인용

2006년 핀란드의 수출은 2005년의 수치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 보다 훨씬 높았다. 2005년에 딱 떨어졌던 무역수지도 2006년에는 증가세로 바뀌었었다. 그 이유는 핀란드가 2005년에 있었던 펄프와 제지업계 파업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2006년 2사분기의 수출은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펄프와 제지업계의 수출이 제자리를 찾은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 고도 전년대비 2사분기의 수출 증가량은 22억 유로에 달하였으므로, 수출이 전체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펄프와 제지업계 외에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품목은 비철금속 분야인데, 이것은 전세계 비철금속 시장가격이 상승에 기인한다.

그러나 2007년 1/4분기를 보면 수출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수입이 오히려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는 200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의 거대 무역 파트너로 떠오르는 나라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이다.

### <표 3-120> 한국-핀란드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통관 기준)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6 동기대비 증감율
對 핀란드 수출	1,696	2,012	1,897	1,293	-31.8
對 핀란드 수입	441	659	513	963	87.7
무역수지	1,255	1,353	1,384	330	-

자료원: KOTIS(2008최신자료); KOTRA 2008.04 재인용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1/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투자는 신고기준 12건 3백만 불, 투자도착 기준 10건 2백만 불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분 상시 주재원 파견 없이 현지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도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2004년도 이후 한국식당 진출 이외 국내로부터 투자진출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핀란드 영업활동은 대개 현지인 에이전트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유럽총괄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 여타 국가에 소재한 현지법인 명의로 핀란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였을 경우 한국 수출입은행의 투자현황 집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3-121> 우리나라의 對핀란드 주요 투자기업

(단위: 천 달러)

No.	투자자명	현지법인명	신고년도	업종	취급상품	비율	투자금액
1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종합상사	Globalstar Finland Oy	1996	통신업	위성통신 서비스	49.00	0
2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컨설팅(주)	Proha Oyj	2001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100.00	158
3	(주)에스피지	SPG Europe Oy	2002	도소매업	소형전기모터	100.00	0
4	정의균	Jeong Eui Kyun	2002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100.00	175
5	김포카바링	East Valley Fiber Corp.	2002	제조업	화학사, 카바링사	100.00	100
6	김정훈	Indicom Inc.	2003	서비스업	정보기술	100.00	105
7	성대산업	June Sprayer	2003	제조업	플라스틱	100.00	52
8	지엠대우오토앤 테크놀로지	Chevrolet Finland Oy GMDaewoo Finland Oy	2003	도소매업	자동차판매	100.00	294
9	최상철	RoyalClassic Tobacco	2003	제조업	담배	100.00	240
10	전건석	Young Sin Tronics	2004	제조업	컴퓨터 디스플레이	100.00	50
11	삼일제약	Oy Ajat Ltd	2004	제조업	치과용 X-Ray Sensor	12.90	681
12	최문기	KoreaHouse Restaurant	2005	서비스업	음식점		249

자료원: 한국 수출입 은행; KOTRA 2008.04 재인용

## 라. 투자 개요

### 1)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주요 투자법 내용

핀란드는 1989년 외국인의 대 핀란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소유지 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여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이는 기업,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 1) 주식 규제 관련 법규

주식시장법(the Securities Market Act) 은 1989년8월 발효되었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 및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한 규제를 정하고 있다.

#### 2) 환경 관련

핀란드는 Air Protection Act 및 Water Protection Act 와 같은 여러 환경 보호 관련 법규를 제정

해 왔으며 이러한 법규들은 Noise Control Act, Public Health Act 및 Adjoining Properties Act 등과 더불어 관련 관청 혹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소비자 보호 관련

핀란드의 Product Liability Act 는 엄격한 책임 개념을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다. EU 의 지침과 동 법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핀란드에서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경우에도 제조 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Product Safety Act 그리고 식료품에 대한 법규를 가지고 있다.

### 4) 공정 경쟁 관련

경쟁법 (The Competition Act) 은 1992년 제정되었으며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공정 경쟁을 한 경우 제재조치로서 최고 연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몰도록 되어 있다.

### 5) 정부소유 기업 관련

공익목적을 위해 국영 철도, 주류 도매 및 유통, 복권 판매 등 일부 산업분야 독점을 규정하고 있다.

## 나) 투자 장려 분야

- o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o 환경기술서비스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Services)
- o 보건 (Health Care)
- o 산림 클러스터 (Forest Cluster)
- o 채광업 (Mining Industry)
- o 무역 및 서비스업 (Trade and Services)

## 다) 투자제한/금지분야

현재 핀란드 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1993년 EEA 협정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협정) 이후 종업원 1,000명 이상, 연 매출 미화 2억 불 이상인 핀란드 기업에 대한 투자시 공공이익 및 국방, 공공질서 및 보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핀란드 정부에서 투자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핀란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매매도 자유로운데 다만 레저 및 여름별장 (summer cottage) 그리고 국경선 지역의 경우 일부 투자가 제한된다.

1996년까지 서점, 보안서비스, 국내 항공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있어 외국인들의 투자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개방되었으며, 이전까지 세금 등의 사유로 시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했던 기업 및 사무소 설치, 그리고 M&A 등의 경우에도 EEA 내 자연인 및 법인 일 경우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 EEA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경우에도 통산부 사전 허가만 있으면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 으로 등록 가능하다.

다만 핀란드의 경우 국영기업이 다수 있으며 이들의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사전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듯 완전한 외국인투자 문호 개방으로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인 NOKIA 사의 경우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이 80% 이상이다.

## 라)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제도는 원칙적으로 부재하다.

핀란드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을 국내 투자자들보다 우대하는 정책은 없으며, 다만 낙후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내외국인 업체들에게 자본공여 및 운영보조금 지급, 운송보조금 및 기타 금융지원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기타 연구개발 및 수출증진, 기계 및 장비도입과 reorganizing 등에도 일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금융 및 세제지원의 경우 사전 관련 당국에 의해 검토가 필요하다.

## 마) 외국인 투자 관련 웹사이트

o Invest In Finland

- [www.investinfinland.fi](http://www.investinfinland.fi)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기관)

o 기타 유관기관

- [www.enterpriseinland.fi](http://www.enterpriseinland.fi) (회사설립 및 운영 관련)

- [www.barassociation.fi](http://www.barassociation.fi) (핀란드 법률가 협회)

## 2) 투자 진출 형태

### 가) 지사 (branch)

□ 지사의 정의

핀란드 내에서 영주하는 주소를 가지고 외국조직 혹은 기관의 이름으로, 외국기관 혹은 조직을 대신해서 사업 혹은 전문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 조직 혹은 기관이다.

핀란드 내에서 설립된 외국인 기업의 지사의 상호 (trade name of a branch)는 그 회사의 외국인

법인명과 함께 보충명을 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CDE Cargo Ltd., branch of Finland 와 같이 000 기업의 지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상호 (trade name)는 2개 혹은 3개 언어로 등록이 가능하다.

지사의 장단점

o 장점

- 주식회사보다 설립과정이 덜 복잡하고 구비서류도 간단하다.

o 단점

- 직원들이 받는 혜택이 주식회사의 직원들만큼 법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하여 현지직원 채용에 불리하다.

- 지사형태로는 핀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사의 설립절차

만약 외국조직 혹은 기업이 EEA 지역에서 등록한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Trade Register 에 기본적인 사항 (Statutory notice) 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만약 EEA 이외 지역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먼저 국가 상표등록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 에 핀란드 내에서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출 하고 활동을 개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항 (Statutory notice)

o the postal address of the branch (지사의 우편물 주소)

o the type of activity carried out by the organization(해당조직의 활동 형태)

o the register in which the organization opening the branch is registered in its home state as well as the registration number in the register (투자기업의 등록번호 관련)

o the trade name and legal form of the organization as well the trade name of the branch(상호, 조직의 법적인 형태)

o personal data(서명권자 및 등록 서명)

o persons authorized to represent the organization(대표자)

o personal data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branch(대표자 정보)

o 기타 [www.enterprisefinland.fi](http://www.enterprisefinland.fi) 에 가면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 나) 일반적인 법인 형태-주식회사 (Limited company)

1인 혹은 2인 이상의 자연인 혹은 법인에 의해 설립 가능

국가상표등록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설립자중 적어도 1인은 반드시 영주권자여야 하며 만약 법인의 경우에는 EEA지역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립자의 국적은 상관없다.

법인인 경우 EEA 에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을 경우 그리고 등록된 사무실, 본사 사무실이 EEA에 속한 국가에 소재한 경우 EEA지역에 영구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장단점

o 장점

-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서 대외공신력과 신뢰도 측면에서 비즈니스 활동에 가장 유리한 형태이다.

- 현지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다

- 핀란드의 경우 외국인 신규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무하지만 투자 이후 Tekes 와 같은 핀란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식 회사 형태를 가질 때 가장 유리하다.

o 단점

- 지사(사무소) 설립에 비하여 설립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된다.

설립절차

o 설립의향서 초안 작성 (drafting of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o 정관 초안 작성 (drafting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 주식의 납입 (subscription of the shares)

o 주주총회 (Constituent Meeting of the Shareholders)

o 정관의 채택 (adopt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 사장 및 이사회 의장 선임(election of the Managing Director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 납입자본금 납입 (payment of the share capital)

o 주식회사 등록 (registration of the limited company)

## 다) 한국 기업 진출 검토시 유의사항

### 1) 기업 형태 선정

핀란드 외국인 투자 자문 기관 Invest in Finland(www.investinfinland.fi)는 외국 기업이 핀란드에 진출할때 limited liability company(“oy,” 한국의 주식회사)의 형태나 해외 지사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Representative Office(연락 사무소)”는 핀란드에서 법적 기업 실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왜 주식회사인가?

##### ○ 법적 능력

- 주식회사는 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계약 체결이 자사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주식 회사의 이사는 세금 지불과 채무 이행에 관해 어떠한 개인적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 ○ 대외공신력과 신뢰도

- 주식회사는 핀란드 시장에서 장기간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신력과 신뢰도면에서 핀란드인에게 좋은 인상을 가져다 준다. 만약 해외 지사인 경우 모기업이 파산을 하면 자회사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지만, 현지 법인인 경우 새로운 소유주 아래서 기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 또한 주식회사는 종업원들을 고용하는데 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 들은 핀란드 법에 따라 회사 파산시에도 임금을 보장 받기 때문이다. (=주식회사가 파산할 경우 충분한 보상금이 종업원에게 지급된다) 게다가, 핀란드의 고급 인력은 훗날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 ○ 핀란드 정부의 보조

- 외국인이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주식회사는 Tekes(과학 기술 기금)같은 핀란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라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핀란드 과학 기술계에 받을 들여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 세금

- 주식회사는 자체적인 회계, 세금 설계가 용이하다. 그러나, 현지 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핀란드 시장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거래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해외 지사의 경우, 자회사의 수익 중 어느 부분이 핀란드에서 행한 사업의 결과로 나온 부가가치인지 핀란드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렵고, 해석의 논란의 여지도 다분하다

##### ○ 매각

- 주식회사는 매각이 용이 하지만, 해외 지사의 경우는 쉽지 않다.

#### 왜 해외 지사인가?

○ 법적능력

- 상품 판매 혹은 고객지원 업무만을 하는 연 매출 €500,000정도 규모의 업체는 해외 지사 설립이 적절하다(더 많은 매출 업체의 경우 주식회사가 유리.) 이 경우 한국 모회사와 핀란드 자회사 사이의 모든 계약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

- 해외 지사는 핀란드 현 거주자를 대표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만약 모회사에서 아무도 핀란드로 보내지 않는다면, 핀란드 회계법인이 한시적으로 대표인으로 고용될 수 있다. 한시적 대표인은 세금과 채무에 대한 개인적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럴 경우 보통 한시적 대표인은 모회사에게 보장 계약을 요구한다.

○ 대외 공신력과 신뢰도

- 핀란드인의 관점에서, 해외지사는 대개 시장조사와 같은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 세금

- 핀란드인이 보는 해외 지사의 특성에 따라, 해외 지사는 최소한 1년 동안 법인세를 안내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통상 해외 지사의 사업 초기 무매출 무이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핀란드 국세청이 후에 과세권을 적용할지 모른다. 주식회사의 경우 무매출 무이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설립절차 관련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 보다 관련 법규가 더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설립절차의 간편 여부는 핀란드 진출시 회사 형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회사를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핀란드의 이름있는 법률회사는 € 2,000~3,000 정도를 설립절차 대행비로 요구할 것이다. 설립절차 대행비는 대개 EEA지역외 거주자가 EEA 지역 내에서 회사 설립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허가(special permission)를 얻는 것과 state fee(몇 백 유로 정도 소요된다)를 포함한다.

꼭 핀란드 법률회사를 통해야만 하는 건가요?

외국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핀란드 법률회사를 통하는 것이 요구된다.

○ 모든 서류는 핀란드어 혹은 스웨덴어로 작성된다.

○ 법률회사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그 구성에 관한 모든 절차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해외 지사인 경우 법률회사는 등록절차에 필요한 대표인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만약 한국회사가 핀란드 내 사업 파트너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핀란드 법률회사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 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기간은?

핀란드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보통 2~5주정도 걸린다. 한국 회사의 경우 최소한 5주 정도 예상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관련서류들을 한국어에서 핀란드어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류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다.

특별 허가(special permission)획득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며 많은 시간을 요하진 않는다.

□ 핀란드의 기존 회사를 매입하는 것은 어떤가요?

핀란드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핀란드 회사를 매입하는 것이다. 핀란드에는 매입을 기다리는 많은 수의 비활성 기업이 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법인이 이상 곧바로 사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회사명과 주소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인들의 부족한 기업가 정신으로 인해 어느 정도 기술과 역량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개척이나 진출에 소극적인 회사를 전략적으로 M&A하여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다. 10년후의 1억달러보다 현재의 2~3백만 달러에 만족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M&A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3) 핀란드에서 회사 운영하기

□ 구인

○ 핀란드로 한국인 직원 파견하기

-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3개월 이상 핀란드에서 일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만약 1년 이상 머무르게 된다면 그들은 근무허가(work permit)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가 필요하다. 회사가 일단 핀란드에서 설립된 이후에는 근무허가와 거주허가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

○ 일반적인 고용 법칙

- 핀란드에서 고용된 모든 사람은 핀란드의 고용법률과 세제를 따라야 한다. 그들의 고용주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비임금 비용(non-wage cost)도 지불해야 한다. 핀란드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절차는 다른 여타 선진국에서와 비슷하다.

□ 경영진

○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지사는 이런 절차없이 운영 가능하다.

□ 세금

○ 법인세

- 법인세율은 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26%로 동일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사의 형태는 세금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핀란드 법인세의 기본 원칙은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핀란드의 세금 징수 대상이라는 것이다. 해외지사인 경우 어디서부터가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 규정하기가 모호하다. 만약 해외 지사의 활동이 영속적이라고 간주된다면(1년 이상 지속) 무매출 무이익 주장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만약 지사의 수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핀란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계산한다.

운영비(임금 포함) + 4~6% 이익률  
Operating costs (including salaries) + 4 to 6 % profit margin

○ 부가가치세

- 핀란드 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사업 관련 회사만이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주식회사만이 환급이 가능하다.

○ 소득세

- 만약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반년이상 일한다면, 그들의 봉급은 핀란드 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핀란드 소득세는 누진세이며 거주지와 근무지에 따라 다르다. 외국인 전문가 (foreign experts)일 경우에는 2~3년간 균일세의 혜택을 받는다.

□ 회계

핀란드 회계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해외 지사보다 더 많은 회계 업무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법인(주식회사)과 모회사간의 어떠한 거래도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송장 포함.) 해외 지사인 경우 자회사의 회계는 모회사의 회계에 종속된다.

### 3)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 가) 핀란드 투자유치 지원 기관; 투자청 (Invest in Finland)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1992년 핀란드 상공부 산하에 "Invest in Finland" 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 투자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동 기관은 외국인 투자 가들에게 핀란드가 발트3국 및 동유럽시장의 관문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총 인원 8명 규모로 그 활동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투자청 연락처

- 주소 : Kaivokatu 8, 6th floor FI-00100 Helsinki, Finland
- 전화번호 : +358 10 773 0300
- 팩스번호 : +358 10 773 0301
- 홈페이지 <http://www.investinfinland.fi>

#### 나)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 리스트

##### o BDO

- [www.bdo.fi](http://www.bdo.fi)
- BDO Finland Oy
- Vattuniemenranta 2, 00210 Helsinki
- Tel. +358 207 432 920
- Fax +358 9 4780 8210

##### o Price water house Coopers

- [www.pwcglobal.com](http://www.pwcglobal.com) SVH
- Price Water house Coopers Oy
- Itämerentori 2, P.O.Box 1015, 00101 Helsinki
- Tel. +358 9 228 00
- Fax +358 9 174 102

##### o Deloitte Touche Tohmatsu International

-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 Deloitte & Touche Oy
- Munkkiniemen puistotie 25,
- P.O.Box 94, 00331 Helsinki
- Tel. +358 20 755 500
- Fax +358 20 755 507

##### o Ernst & Young International

- www.ey.com
- Ernst & Young Oy
- Elielinaukio 5 B, 00100 Helsinki
- Tel. +358 9 172 771
- Fax +358 9 1727 7700
- o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 www.revico.fi
- Revico Grant Thornton Oy
- Paciuksenkatu 27, P.O.Box 18, 00271 Helsinki
- Tel. +358 9 512 3330
- Fax +358 9 458 0250
- o KPMG International
- www.kpmg.fi
- KPMG: Investment in Finland KPMG Wideri Oy Ab
- Mannerheimintie 20 B, P.O.Box 1037, 00101 Helsinki
- Tel. +358 9 693 931
- Fax +358 9 6939 3399
- o Midsnell Group International
- www.mgimidsnell.com
- Tilintarkastustoimisto Kalervo Ariluoma Oy
- Keskustie 4, 01900 Nurmijärvi or
- Mannerheimintie 16 A 3, 00100 Helsinki
- Tel. +358 9 250 9595
- Fax +358 9 250 9715

#### **4) 투자입지여건**

핀란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투자 입지를 위한 특별한 장려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 입지 선정은 순수한 투자 동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다시 말해 투자동기가 핀란드의 IT 산업의 발전된 기술과 인력 활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들이 밀집해 있는 오울루, 에스포 등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동기가 가장 큰 거래처와의 인접성과 자주 접촉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면 고객의 본사 혹은 공장 인근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 밖에도 핀란드를 경유하여 러시아 시장 진출에 목적이 있다면 항구 혹은 국경 인근의 물류 기지에 입지를 할 것이고 서비스 업종인 경우 고객의 접근성이 감안되어 주요 도시의 중심가가 될 것이다.

### 가) 산업단지, 공단 등 부재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남해화학공업단지, 구미공단, 구로공단, 인천남동공단 등과 같은 공단이 없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산업인 산림산업(펄프 및 제지)의 경우 목재 등의 원료를 위해 대부분이 지방의 산림 속에 위치해 있으며 각 기업들의 공장들은 원료 및 수소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핀란드 제2의 도시인 탐페레(Tampere)의 경우 예전에는 섬유산업으로 유명했으나, 섬유업계는 현재 거의 도산하였거나 해외로 진출하여 몇몇 업체들만이 있으며, 헬싱키(Helsinki)의 경우 특별한 산업보다는 각 기업 및 행정, 금융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 나) 산업 클러스터

핀란드에는 Science Park 라고 불리는 산-학 연구단체가 결성되어 대학의 연구진과 기업 들이 상호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헬싱키, 오울루, 탐페레, 투르크, 쿠 오피오 등 7개 지역이 가장 성공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오울루(Oulu)의 경우 헬싱키에서 북 서쪽으로 약 600 km 떨어져 있는 인구 12만의 소도시이나, 헬싱키-오울루간 비행기편이 하루 10 여편 가까이 될 정도로 왕래가 활발한데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과 마찬가지로 산-학 -연구소의 집합체로써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 다) 자유무역지대

핀란드에는 별도의 자유무역지대는 없으며, 다만 헬싱키(Helsinki), 투르크(Turku), 항코(Hanko), 코트카(Kotka), 하미나(Hamina) 등 항구에서는 창고 및 임가공을 할 수 있는 Free Zone 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지역 특성상 러시아 및 발트 3국으로의 우회수출 물량이 많은 관계로 이들 항구에서 하역을 한 후 창고 등에 보관하여 러시아 등지로 우회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상당량이 이들 항구를 통해 우회 수출 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국경선에 발리마아(Vaalimaa), 바이니칼라(Vainikkala), 누이야마(Nuijamaa) 등에 자유무역지대와 비슷한 구역을 만들어 창고에서 곧바로 국경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세운송을 통한 수출로 보아야 한다. 지역별 운송수단을 보면 발 리마아는 일반적으로 트럭을

이용하고 있으며, 바이나칼라는 철도를, 누이아마는 사이마 운하 (Saimaan canal) 을 통한 해상운송을 주로 하고 있다.

## 5) 노무관리

### 가) 노동시장의 여건 전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핀란드의 총 노동력은 약 265만 명이며 실업률은 7.7 %에 이른다. (2007년 8월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은 6.9%로 감소하는 등 실업률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실업 해소는 핀란드 정부 최대 정책과제로서 1990년대 초반 발생한 불황 이후 두 자리수를 유지해 오던 실업률도 2000년도 들어서 한자리 수(9.7%)로 하락한 이래 지속 개선되어 왔다.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아직은 여성의 실업률이 약간 더 높은 편이다. (고용율; 남성 69.8%, 여성 65.9%)

한편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등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을 기업운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말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15세 이상 24세 사이의 젊은층의 실업률은 13.5% (계절요인을 반영한 조정수치는 19.2%) 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나) 고용계약

핀란드는 중앙 노사협의회에서 채택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이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에 따라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고용자와 고용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향후 분쟁 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보다는 개별 고용계약서가 우선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 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와 해고대상자 직무가 필요 없어 감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 휴일 및 휴가제도

모든 핀란드인은 연간 10일간의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 1회 5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여름휴가 4주, 겨울휴가 1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방학기간과 연관성이 매우 크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매달 2.5일의 휴가를 적립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2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출산의 경우 최초 156일의 휴가(근무일 기준)가 보장되나 휴가 기간 동안 KELA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임금의 60-70%를 보상 받으며, 이후 아기가 3세에 이르기까지 휴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회지원은 월 500 유로 이하로 매우 미미하다.

### 라) 사회보장제도

고용주는 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3종류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의 책임이 고용주에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원은 매년 세무당국 및 보험회사에 급여 신고를 별도로 하며, 이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및 세금이 결정되고 매년 6월경에 전년도의 세금 및 사회보장금액을 정산하고 있다.

#### 마) 사회보장세 현황

- 종업원 연금: 21.5%(2006년 기준, 연도에 따라 조정된다, 이중 4.3%는 종업원이 부담함.)
- 실업보험: 1.33% (2006년 기준, 연도에 따라 조정된다, 이중 0.58%는 종업원이 부담함)
- 사고보험: 0.1222% (2005년 기준, 연도에 따라 조정된다, 100% 고용주 부담)

실업자들의 경우 상기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위의 실업보험, 사고 보험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고용주 역시 일정한 비중의 고용주세를 통하여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는 외교관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96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일체의 사회보장혜택을 철회하였으며,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외국연락사무소 종사자나 외국기관 파견원 및 유학생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민간의료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물리치료, 예방의학분야, 치과분야 등의 경우 수혜가 제외되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미\$3,500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바) 급여수준

산업 전체적으로 시간당 임금률은 11.97 유로 정도이고 산업별로는 섬유산업 10.23 유로, 운송업체 10.97 유로, 금속산업 및 건축업 11.76유로, 전기업 11.89유로로서 낮은 편이나 펄프제지 15.65 유로, 전기 설비업 14.27유로 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기타 금속, 에너지, 화학 분야는 평균 정도 수준이다.

<표 3-122> 핀란드의 직종별 임금 수준

(단위: 유로)

직종/직위	월임금	연간임금
Sales Manager	5,070	79,853
Sales Representatives	2,776	43,722
Export Sales Representatives	3,758	59,189
PR Management	4,673	73,600
Office Management	2,303	36,272
Accountant	2,792	34,997
Secretary/Personal Assistant	2,222	43,974
Department Secretary	5,408	85,176
R&D Management	4,207	66,260
Production Manager	2,664	41,958

주1: 수치는 세제 전 임금임 (세제는 이전 항목'조세제도'참조)

주2: 연간임금은 월임금 X 1.25(휴가비) X 12.5(각종사회보장세)로 환산

주3: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고용 계약된다

주4: 동 자료는 2006년의 평균 급여임.(2008년 2월 현재 입수가능한 최신 자료임)

자료원: INVEST IN FINLAND BUREAU 의 2006년도 브로슈어

### 사) 초과근무 수당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평일의 2배를 지급하나, 초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가 필요하며, 불시에 초과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직종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의 연간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고 있어 현지영업 및 현지 투자 시에는 이를 잘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일즈 및 일반사무직의 경우 해당업무에 따라 별 도의 신고 없이 알아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아) 해고절차, 조건

직원 해고를 위해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이유가 상실된 경우(감원 등)와 종업원의 비리, 근무태만 등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파산이나 직무상실로 인한 감원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경우 고용주 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2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법정까지 가서 패소하는 경우 최고 24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자) 노조결성 조건

핀란드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노조가 5개가 있으며, 직종에 따라 전국노조에 가입하거나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원은 노조에 회비를 납부하고, 부당행위를 당하는 경우 처 리를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노조아래에는 단위별 직종 노조가 결성되어 임금협상은 정-사-노에서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임금협상은 단위노조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노조파업과 같은 사태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하위의 직장별 개별 노조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단체행동은 단위별 직종 노조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차) 노조활동 보장

핀란드의 노조 역사는 19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러한 전통으로 노조활동은 100%가 보장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동도 활발하고 단위직종 파업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카) 임금 이외의 비용

임금 이외에 비용은 소위 고용주세(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등이며, 보너스 및 휴가비용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연말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위로비조로 1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이 Stock Option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미국과 같이 완전한 Stock option은 금지되어 있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타) 노조활동 실태

노동조합의 활동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 별로 또는 개인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연맹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참여자가 많은 실정이다.

현 정부는 '96년 4월 실업수당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및 파업위협으로 인해 철회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핀란드의 노동조합 영향력은 매우 강한 실정이나, 정부 및 사측에 반대만을 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근래 들어 핀란드 노동자들의 파업이 조금씩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 파) 기타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

핀란드 국민은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장의 범위는 교육, 의료, 실업, 노후연금 등 매우 폭이 넓다.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6세까지의 유치원교육, 9년간의 기본교육, 중등교육(고등학교 및 직업 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는데, 9년제 기본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교재 및 식사 등의 비용이 전면 국고보조로 충당되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중등교육 과정은 2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3년제 고등학교는 학문적 일반교육 과정이 채택되며 학생들은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편 직업교육은 25개의 기본과정이 있으며 이수기간도 1-4년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주요 도시에 분산되어 있으며 대학생수는 총 8 만 명 정도이며, 등록금은 없고 학생들에게는 집세, 생활비 등이 지급되고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는 각 지역마다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가 있으나 간단한 진단만 하며, 입원은 종합병원 및 사설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의료시스템은 KELA라고 불리고 있는데, 종합 및 사설 병원 이용 시 이용료를 먼저 선납하고 현장에 비치된 KELA 서류를 작성하여 영수증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면 구좌로 입금된다.

고용주는 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3종류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급여 신고액 기준이며, 2006년도의 경우 종업원 연금은 22.9522%(이중 4.88%는 종업원 부담), 실업보험은 1.33%(이중 0.58%는 종업원 부담), 사고보험은 0.1222% (100% 고용주 부담)이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정부로부터 약 60%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동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은퇴 이후의 연금은 현재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퇴 전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는 외교관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96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일체의 사회보장 혜택을 철회함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외국연락 사무소 종사자나 외국기관 파견원 및 유학생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민간 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30~50 유로 정도이나, 물리치료, 예방 의학, 치과, 임신 분야 등의 경우 수혜가 제외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 6) 조세제도

####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핀란드의 주요 세금을 보면 일단 법인세가 26%이고 부가가치세가 9-22%, 그리고 개인 소득세가 19 - 50% 정도인데 세금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3-123> 핀란드의 법인세 및 부가세

종류	세율	비고
법인세	26%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세금 포함(중전 29% 에서 인하)
부가세	9-22%	EU 가입에 앞서 '94.6.1일 부로 중전에 시행하던 매출세(TURNOVER TAX)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였다. 대부분의 업종은 중전 매출세율인 22%를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22%의 적용을 받으나, 식료품의 경우 17%, 필름, 의약품, 스포츠용품, 책 등은 12%, 대중교통, 숙박, TV, 문화 및 레저행사는 6%, 의료, 교육, 보험, 신문, 간행물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분야의 부가가치세 인하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나) 감가상각률 및 고용주세

상기의 기본 세율 이외에 감가상각률은 기계 및 고정자산의 경우 연간 최대 30%까지, 건물의 경우 4-7%, 기타 유동자산의 경우 100%를 인정해 주고 있다. 고용주세의 경우 매년 조금씩 변동하고 있으나, 연금보험의 경우 고용주부담이 종업원 총소득의 20%내외, 실업보험의 경우 1% 내외, 그리고 사고보험료가 0.4% 내외 등이다.

## 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서 총 6등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소득신고를 하나 그 해에 적거나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된다. 또한 개인소득세 이외에 지방자치세 (우리나라의 주민세)가 총소득의 약 20% 그 외 연금 등을 합치면 개인 소득자는 약 40-5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 1) 주민세

각 지자체별로 세율은 다르며 헬싱키의 경우 소득의 17.5% (2006년 기준)

### 2) 기타

핀란드의 경우 연금, 실업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함께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연금 보험료의 경우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19% 정도이며, 각 피고용인은 약 4.7%(해마다 조금씩 변경)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피고용인들의 사고에 대비한 사고보험료는 총소득의 1% 내외로서 고용주 부담 이다.

이처럼 핀란드의 경우 세율이 높은 반면 일반 봉급생활자의 급여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어 있다. (관련기관 웹사이트: <http://www.vero.fi>)

### 라. 외국기업 적용 세금 제도

<p>운영비 (임금포함) + 4~6% 이익률</p> <p>(Operating costs (Including salaries) + 4~6% profit margin)</p>
---

법인세: 핀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해외지사의 경우 어디까지가 핀란드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해외 지사의 활동이 연속적이라고 간주된다면 (1년 이상 지속) 무매출 무이익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핀란드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계산함

부가가치세: 핀란드 법에 따르면 부가세 적용대상 사업관련 회사만이 구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주식회사만이 환급 가능하다

개인소득세: 만약 한국인이 핀란드에서 반년 이상 일한다면 그들의 급여도 핀란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핀란드 소득세는 누진세이며 거주지와 근무지에 따라 다름. 외국인 전문가 (Foreign experts) 의 경우에는 2~3년간 균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 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가) 과실송금

핀란드에서는 외국 회사가 과실송금을 하는 경우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 회사가 납세의 의무를 (핀란드, 혹은 본국에서) 완료했다면 이익금 송금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다.

#### 1) 유로중앙은행 총괄

핀란드는 Eurosystem 의 일원으로서 1999년 출범한 Euro 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현재 모든 외환관리는 ECB (European Central Bank in Frankfurt; 유로중앙은행)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단 외환노출 및 위험을 ECB 에서 총괄하며 핀란드 중앙은행은 금리 등 국내 자본만을 관할하고 있다.

#### 2) 외환송금 및 매입 자유

외환관리는 핀란드 중앙은행이 총괄하나, 실제 업무는 시중 은행에 위임하며 중앙 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외환업무를 총괄 감독할 뿐이다. 실제적인 외환거래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 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외환 매입은 수입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인보이스가 첨부되면 자유롭게 매입 가능하고, 국제외환시장에 상장된 통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기업들의 해외자본 및 투자 이익, 모기업과 자회사간 거래, 수출입, 무역 거래, 종업원 임금,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으며,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직접 핀란드 중앙은행에 외환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상의 목적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

관련 웹사이트 ; [www.bof.fi](http://www.bof.fi) (핀란드 중앙은행)

#### 3) 신용장보다 T/T 보편적

대금 결제는 유럽과의 거래 시 Open credit 을 이용하나 아시아와 거래 시에는 아직까지 신용장 거래가 많은 편이다. 핀란드의 경우 소액거래가 많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L/C 개설 비용이 매우 높고, 소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T/T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며 탄력적인 CAD 조건(주문시 50% 대금지급, 선적서류 접수 시 50% 지급) 등을 요청하는 업체도 많다.

일람불 신용장 및 기한부 신용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한부 신용장의 최대 허용기간은 12개월이나 실제사용은 6개월 이내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핀란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대신 다양한 금융상품 (팩토링 등)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사무용품의 리스, 물품대금 등을 할부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어떤 개인간의 거래도 팩토링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 **나) 현지 자금 조달 방법**

외국 회사가 핀란드에서 법인 등 법적 권리를 가진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은 핀란드 회사와의 똑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부에서 펀딩을 받는 것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핀란드 은행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